

하

일본 회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3 판

권종호 역



법무부

하

일본 회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 3 판

권종호 역



법무부

회사법 시행령

[일본 회사법 Ⅱ] / [日本 会社法 Ⅱ]

第1条 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等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の承諾等.....	2
제1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승낙 등....	3
第2条 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の承諾等.....	4
제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승낙 등	5
第3条 電子公告調査機関の登録及びその更新の申請に係る手数料の額.....	4
제3조 전자공고조사기관의 등록 및 그 갱신 신청의 수수료의 액	5
第4条 電子公告調査機関の登録の有効期間.....	6
제4조 전자공고조사기관의 등록의 유효기간	7
附 則	6
부 칙	7

회사법 시행규칙

第一編 總則	8
제1편 총칙	9
第一章 通則(第一条・第二条)	8
제1장 통칙(제1조·제2조)	9

目次

第二章 子会社等及び親会社等(第三条-第四条の二).....	30
제2장 자회사 등 및 모회사 등(제3조~제4조의2).....	31
第二編 株式会社.....	40
제2편 주식회사.....	41
第一章 設立.....	40
제1장 설립.....	41
第一節 通則(第五条-第七条の二).....	40
제1절 통칙(제5조~제7조의2).....	41
第二節 募集設立(第八条-第十八条の二).....	42
제2절 모집설립(제8조~제18조의2).....	43
第二章 株式.....	58
제2장 주식.....	59
第一節 総則(第十九条-第二十一条).....	58
제1절 총칙(제19조~제21조).....	59
第二節 株式の譲渡等(第二十二条-第二十六条).....	62
제2절 주식의 양도 등(제22조~제26조).....	63
第三節 株式会社による自己の株式の取得(第二十七条-第三十三条の三)...	78
제3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제27조~제33조의3).....	79
第三節の二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第三十三条の四-第三十三条の八).....	94
제3절의2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제33조의4~제33조의8).....	95
第三節の三 株式の併合(第三十三条の九・第三十三条の十).....	98
제3절의3 주식의 병합(제33조의9·제33조의10).....	99
第四節 単元株式数(第三十四条-第三十七条).....	102
제4절 단위주식수(제34조~제37조).....	103

목 차

第五節 株主に対する通知の省略等(第三十八條・第三十九條)	108
제5절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등(제38조·제39조)	109
第六節 募集株式の発行等(第四十條-第四十六條の二)	108
제6절 모집주식의 발행 등(제40조~제46조의2)	109
第七節 株券(第四十七條-第四十九條)	118
제7절 주권(제47조~제49조)	119
第八節 雜則(第五十條-第五十二條)	120
제8절 잡칙(제50조~제52조)	121
第三章 新株予約權(第五十三條-第六十二條の二)	124
제3장 신주예약권(제53조~제62조의2)	125
第四章 機關	140
제4장 기관	141
第一節 株主總會及び種類株主總會等	140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등	141
第一款 通則(第六十三條-第七十二條)	140
제1관 통칙(제63조~제72조)	141
第二款 株主總會參考書類	158
제2관 주주총회참고서류	159
第一目 通則(第七十三條)	158
제1목 통칙(제73조)	159
第二目 役員の選任(第七十四條-第七十七條)	160
제2목 임원의 선임(제74조~제77조)	161
第三目 役員の解任等(第七十八條-第八十一條)	182
제3목 임원의 해임 등(제78조~제81조)	183
第四目 役員の報酬等(第八十二條-第八十四條の二)	184
제4목 임원의 보수 등(제82조~제84조의2)	185
第五目 計算關係書類の承認(第八十五條)	190
제5목 계산관련서류의 승인(제85조)	191

目次

第五目の二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第八十五条の二)	192
제5목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제85조2)	193
第五目の三 株式の併合(第八十五条の三)	192
제5목의3 주식의 병합(제85조3)	193
第六目 合併契約等の承認(第八十六条-第九十二条)	192
제6목 합병계약 등의 승인(제86조~제92조)	193
第七目 株主提案の場合における記載事項(第九十三条)	200
제7목 주주제안 경우의 기재사항(제93조)	201
第八目 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の特則(第九十四条)	202
제8목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기재특칙(제94조)	203
第三款 種類株主総会(第九十五条)	204
제3관 종류주주총회(제95조)	205
第四款 電子提供措置(第九十五条の二-第九十五条の四)	206
제4관 전자제공조치(제95조의2~제95조의4)	207
第二節 会社役員の選任(第九十六条-第九十七条)	210
제2절 회사임원의 선임(제96조·제97조)	211
第三節 取締役(第九十八条-第九十八条の五)	214
제3절 이사(제98조~제98조의 5)	215
第四節 取締役会(第九十九条-第百一条)	222
제4절 이사회(제99조~제101조)	223
第五節 会計参与(第百二条-第百四条)	230
제5절 회계참여(제102조~제104조)	231
第六節 監査役(第百五条-第百八条)	234
제6절 감사(제105조~제108조)	235
第七節 監査役会(第百九条)	238
제7절 감사회(제109조)	239
第八節 会計監査人(第百十条)	240
제8절 회계감사인(제110조)	241
第八節の二 監査等委員会(第百十条の二-第百十条の五)	242
제8절의2 감사등위원회(제110조의2~제110조의5)	243

목 차

第九節 指名委員会等及び執行役(第百十一条-第百十二条)	248
제9절 지명위원회 등 및 집행임원(제111조~제112조)	249
第十節 役員等の損害賠償責任(第百十三条-第百十五条)	256
제10절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제113조~제115조)	257
第十一節 役員等のために締結される保険契約(第百十五条の二)	260
제11절 임원 등을 위해 체결되는 보험계약(제115조의2)	261
第五章 計算等	262
제5장 계산 등	263
第一節 計算関係書類(第百十六条)	262
제1절 계산관련서류(제116조)	263
第二節 事業報告	264
제2절 사업보고서	265
第一款 通則(第百十七条)	264
제1관 통칙(제117조)	265
第二款 事業報告等の内容	264
제2관 사업보고서 등의 내용	265
第一目 通則(第百十八条)	264
제1목 통칙(제118조)	265
第二目 公開会社における事業報告の内容(第百十九条-第百二十四条)	268
제2목 공개회사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내용(제119조~제124조)	269
第三目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おける事業報告の内容(第百二十五条)	286
제3목 회계참여설치회사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내용(제125조)	287
第四目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における事業報告の内容(第百二十六条・第百二十七条)	288
제4목 회계감사인설치회사에 있어서 사업내용의 보고(제126조·제127조)	289
第五目 事業報告の附属明細書の内容(第百二十八条)	292
제5목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의 내용(제128조)	293
第三款 事業報告等の監査(第百二十九条-第百三十二条)	292
제3관 사업보고서 등의 감사(제129조~제132조)	293

目次

第四款 事業報告等の株主への提供(第百三十三条).....	300
제4관 사업보고서 등의 주주에게 제공(제133조).....	301
第六章 事業の譲渡等(第百三十四条-第百三十八条).....	304
제6장 사업양도 등(제134조~제138조)	305
第七章 解散(第百三十九条).....	312
제7장 해산(제139조)	313
第八章 清算	314
제8장 청산	315
第一節 総則(第百四十条-第百五十一条).....	314
제1절 총칙(제140조~제151조).....	315
第二節 特別清算(第百五十二条-第百五十八条).....	332
제2절 특별청산(제152조~제158조).....	333
第三編 持分会社.....	340
제3편 지분회사.....	341
第一章 計算等(第百五十九条).....	340
제1장 계산 등(제159조).....	341
第二章 清算(第百六十条・第百六十一条).....	342
제2장 청산(제160조·제161조).....	343
第四編 社債	344
제4편 사채	345
第一章 総則(第百六十二条-第百六十八条)	344
제1장 총칙(제162조~제168조).....	345

목 차

第二章 社債管理者等(第百六十九条-第百七十一条の二)	350
제2장 사채관리자 등(제169조~제171조의2)	351
第三章 社債権者集会(第百七十二条-第百七十七条).....	352
제3장 사채권자집회(제172조~제177조)	353
第五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 交付	360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361
第一章 吸収分割契約及び新設分割計画.....	360
제1장 흡수분할계약 및 신설분할계획	361
第一節 吸収分割契約(第百七十八条).....	360
제1절 흡수분할계약(제178조)	361
第二節 新設分割計画(第百七十九条).....	362
제2절 신설 분할 계획(제179조).....	363
第一章の二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の申込み(第百七十九条の二・第 百七十九条の三).....	362
제1장의2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양도신청(제179조의2·제179조의3) ..	363
第二章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手続(第百八十条・第百八十一条)	370
제2장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절차(제180조·제181조)	371
第三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 の手続(第百八十二条-第百九十条)	374
제3장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흡수분할주식회사 및 주식교환 완전자회사 의 절차(제182조-제190조)	375

目次

第四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續(第百九十一条-第二百三条).....	402
제4장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절차(제191조~제203조)	403
第五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續(第二百四条-第二百十条).....	424
제5장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신설분할주식회사 및 주식이전 완전자회사의 절차(제204조~제210조).....	425
第六章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手續(第二百十一条-第二百十三条).....	438
제6장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설립 완전모회사의 절차(제211조~제213조)	439
第七章 株式交付親会社の手續(第二百十三条の二-第二百十三条の十).....	440
제7장 주식교부모회사의 절차(제213조의2~제213조의10).....	441
第六編 外国会社(第二百十四条-第二百十六条).....	452
제6편 외국회사(제214조~제216조)	453
第七編 雜則	454
제7편 잡칙	455
第一章 訴訟(第二百十七条-第二百十九条)	454
제1장 소송(제217조~제219조).....	455
第二章 登記(第二百二十条).....	460
제2장 등기(제220조)	461

목 차

第三章 公告(第二百二十一条).....	462
제3장 공고(제221조)	463
第四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464
제4장 전자적방법 및 전자적기록 등	465
第一節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第二百二十二条-第二百三十条)	464
제1절 전자적방법 및 전자적기록 등(제222조~제230조)	465
第二節 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第二百三十一条-第二百三十条)	474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제231조~제238조)	475
附 則	494
부 칙	495
제3판 역자 해제	530
개정판 역자 해제	546
역자 해제	552
회사법 시행령 국문 색인	566
회사법 시행령 일본어 색인	567
회사법 시행규칙 국문 색인	568
회사법 시행규칙 일본어 색인	586

일러 두기

1. 여기 번역된 것은 현행 일본회사법전이다.
2. 본서의 번역의 기본이 된 일본회사법전의 원문은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법령 제공시스템(<http://law.e-gov.go.jp>)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조문은 판보에 게재된 원문에 충실한 것이다. 다만 본서에서는 원문에 약간의 편집을 하였다. 첫째로 일본회사법의 원문에서는 조문 표제가 각 조문 앞머리에 위치하지만 본서에서는 우리상법과 같이 조문숫자와 각 항의 중간에 위치시켰다. 둘째로 일본회사법의 원문에는 제1항을 표시하는 기호가 없으나 본서에서는 '①'을 삽입하였다. 셋째, 일본회사법의 원문에서는 우리상법의 목에 해당하는 표시로 'イ' 'ロ' 'ハ'...를 사용하나 본서에서는 '가목', '나목', '다목'...으로 표시하였다. 넷째로 일본회사법의 원문에서는 "イ"의 세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로 표시하고 있으나 본서에는 ')'로 표시하였다.
3. 번역어의 선택 및 문장표현에 관해서는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직역을 할 경우 이해가 어렵거나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우리 상법상의 표현을 참고하여 의역을 하였다. 특히 법무성령과 정령은 회사법시행규칙과 회사법시행령으로 각각 번역하였다.
4. 연호에 관해서는 권말의 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5. 각조문의 개정경과에 대해서 일일이 표시할 수 없는 관계로 '역자해제'에서 일본상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의 개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 일본상법 및 일본회사법제정이후의 개정사항에 관해서는 역자해제, 한일회사법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6. 번역에 있어서 오류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고견을 주시면 감사히 받아 들여 앞으로 개정판을 낼 때 반영하고자 한다.

会社法 施行令

(平成十七年十二月十四日政令第三百六十四号)

最終改正: 令和二年一月二〇日政令第三二七号

内閣は、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の規定に基づき、この政令を制定する。

第1条 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等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の承諾等

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事項を電磁的方法(会社法 (以下「法」という。) 第二条第三十四号 に規定する電磁的方法をいう。以下同じ。) により提供しようとする者(次項において「提供者」という。) 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事項の提供の相手方に対し、その用いる電磁的方法の種類及び内容を示し、書面又は電磁的方法による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法第五十九条第四項
- 二 法第七十四条第三項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三 法第七十六条第一項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四 法第二百三条第三項
- 五 法第二百四十二条第三項
- 六 法第三百十条第三項 (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七 法第三百十二条第一項 (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八 法第五百五十五条第三項 (法第八百二十二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九 法第五百五十七条第一項 (法第八百二十二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十 法第六百七十七条第三項
- 十一 法第七百二十一条第四項
- 十二 法第七百二十五条第三項

회사법 시행령

(2005년 12월 14일 시행령 제364호)

최종 개정 : 2020년 11월 20일 시행령 제327호

내각은 회사법 (2005년 법률 제8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시행령을 제정한다.

제1조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승낙 등

① 다음의 규정의 사항을 전자적 방법 (회사법 (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2조 제34호의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제공하려고 하는 자(다음항에서 “제공자” 라고 한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사항의 제공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표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법 제59조 제4항
2. 법 제74조 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76조 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203조 제3항
5. 법 제242조 제3항
6. 법 제310조 제3항(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312조 제1항(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법 제555조 제3항(법 제8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557조 제1항(법 제8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77조 제3항
11. 법 제721조 제4항
12. 법 제725조 제3항

会社法 施行令

十三 法第七百二十七条第一項

十四 法第七百三十九条第二項

十五 法第七百七十四条の四第三項(法第七百七十四条の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2 前項の規定による承諾を得た提供者は、同項の相手方から書面又は電磁的方法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る事項の提供を受けない旨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当該事項の提供を電磁的方法によって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相手方が再び同項の規定による承諾を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2条 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の承諾等

1 次に掲げる規定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り通知を発しようとする者(次項において「通知発出者」という。)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当該通知の相手方に対し、その用いる電磁的方法の種類及び内容を示し、書面又は電磁的方法による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法第六十八条第三項(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二 法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法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三 法第五百四十九条第二項(同条第四項(法第八百二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法第八百二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四 法第七百二十条第二項

2 前項の規定による承諾を得た通知発出者は、同項の相手方から書面又は電磁的方法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を受けない旨の申出があったときは、当該相手方に対し、当該通知を電磁的方法によって発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当該相手方が再び同項の規定による承諾をし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3条 電子公告調査機関の登録及びその更新の申請に係る手数料の額

法第九百四十二条第二項(法第九百四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政令で定める手数料の額は、四十二万六百元とする。

13. 법 제727조 제1항
14. 법 제739조 제2항
15. 법 제774조의4 제3항(법 제774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은 제공자는 동항의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뜻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사항의 제공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상대방이 다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승낙 등

①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를 발송하려는 자(다음 항에서 “통지발송자”라고 한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의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용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을 표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법 제68조 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299조 제3항(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549조 제2항(동조 제4항(법 제8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및 법 제8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720조 제2항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은 통지발송자는 동항의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뜻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상대방이 다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전자공고조사기관의 등록 및 갱신 신청의 수수료의 액

법 제942조 제2항(법 제94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의 액은 42만 6백엔으로 한다.

第4条 電子公告調査機関の登録の有効期間

法第九百四十五条第一項 の政令で定める期間は、三年とする。

附 則 抄

1 (施行期日) この政令は、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2 (関係政令の廃止) 次に掲げる政令は、廃止する。

一 商法、有限会社法及び株式会社の監査等に関する商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の関係規定に基づく電磁的方法による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承諾の手続等
を定める政令(平成十四年政令第二十号)

二 電子公告を行う調査機関の登録の申請等に係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平成十六年政令第三百八十六号)

附 則(平成二〇年三月三十一日政令第一〇〇号)

この政令は、平成二十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令和二年一一月二〇日政令第三二七号) 抄

この政令は、会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元年法律第七十号)の施行の日
(令和三年三月一日)から施行する。

제4조 전자공고조사기관의 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945조 제1항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 칙 초(抄)

- ① (시행 기일) 이 시행령은 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② (관계시행령의 폐지)다음의 시행령은 폐지한다.
 - 1. 상법, 유한회사법과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기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승낙절차 등을 정하는 시행령(2002년 시행령 제20호)
 - 2. 전자공고를 행하는 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 등을 정하는 시행령(2004년 시행령 제386호)

부 칙(2008년 3월 31일 시행령 제100호)

이 시행령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11월 20일 시행령 327호) 초

이 시행령은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9년 법률 제70호)의 시행일(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会社法 施行規則

(平成十八年二月七日法務省令第十二号)

最終改正：令和六年三月二七日法務省令第一一号

会社法 (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 及び会社法施行令 (平成十七年政令第三百六十四号) の規定に基づき、会社法施行規則を次のように定める。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第1条 目的

この省令は、会社法 (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以下「法」という。) の委任に基づく事項その他法の施行に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2条 定義

1 この省令において、「会社」、「外国会社」、「子会社」、「子会社等」、「親会社」、「親会社等」、「公開会社」、「取締役会設置会社」、「会計参与設置会社」、「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会設置会社」、「会計監査人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種類株式発行会社」、「種類株主総会」、「社外取締役」、「社外監査役」、「譲渡制限株式」、「取得条項付株式」、「単元株式数」、「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社債」、「配当財産」、「組織変更」、「吸収合併」、「新設合併」、「吸収分割」、「新設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株式交付」又は「電子公告」とは、それぞれ法第二条に規定する会社、外国会社、子会社、子会社等、親会社、親会社等、公開会社、取締役会設置会社、会計参与設置会社、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会設置会社、会計監査人設置会

회사법 시행규칙

(2006년 2월 7일 시행규칙 제12호)

최종 개정 : 2024년 3월 27일 시행규칙 제11호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및 회사법 시행령(2005년 정령 제36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회사법 (2005년 법률 제86호. 이하 “법” 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시행규칙에서 ‘회사’, ‘외국회사’, ‘자회사’, ‘자회사 등’, ‘모회사’, ‘모회사 등’, ‘공개회사’, ‘이사회설치회사’, ‘회계참여설치회사’, ‘감사역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종류주식발행회사’, ‘종류주주총회’, ‘사외이사’, ‘사외감사’, ‘양도제한주식’, ‘취득조항첨부주식’ ‘단원주식수’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첨부사채’, ‘사채’, ‘배당재산’, ‘조직변경’, ‘흡수합병’, ‘신설합병’, ‘흡수분할’, ‘신설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주식 교부’ 또는 ‘전자공고’란 각각 법 제2조의 회사, 외국회사, 자회사, 자회사 등, 모회사, 모회사 등, 공개회사, 이사회설치회사, 회계참여설치회사, 감사설치회사, 감사회설치회사, 회계감사인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종류주식발행회사, 종류주주총회, 사외이사, 사외감사, 양도제한주식, 취득조항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種類株式発行会社、種類株主総会、社外取締役、社外監査役、譲渡制限株式、取得条項付株式、単元株式数、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社債、配当財産、組織変更、吸収合併、新設合併、吸収分割、新設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株式交付又は電子公告をいう。

2 この省令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指名委員会等 法第二条第十二号 に規定する指名委員会等をいう。
- 二 種類株主 法第二条第十四号 に規定する種類株主をいう。
- 三 業務執行取締役 法第二条第十五号 イに規定する業務執行取締役をいう。
- 四 業務執行取締役等 法第二条第十五号 イに規定する業務執行取締役等をいう。
- 五 発行済株式 法第二条第三十一号 に規定する発行済株式をいう。
- 六 電磁的方法 法第二条第三十四号 に規定する電磁的方法をいう。
- 七 設立時発行株式 法第二十五条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設立時発行株式をいう。
- 八 有価証券 法第三十三条第十項第二号 に規定する有価証券をいう。
- 九 銀行等 法第三十四条第二項 に規定する銀行等をいう。
- 十 発行可能株式総数 法第三十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発行可能株式総数をいう。
- 十一 設立時取締役 法第三十八条第一項 に規定する設立時取締役をいう。
- 十二 設立時監査等委員 法第三十八条第二項 に規定する設立時監査等委員をいう。
- 十三 監査等委員 法第三十八条第二項 に規定する監査等委員をいう。
- 十四 設立時会計参与 法第三十八条第三項第一号 に規定する設立時会計参与をいう。
- 十五 設立時監査役 法第三十八条第三項第二号 に規定する設立時監査役をいう。
- 十六 設立時会計監査人 法第三十八条第三項第三号 に規定する設立時会計監査人をいう。
- 十七 代表取締役 法第四十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代表取締役をいう。

부주식, 단원주식수,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사채, 배당재산, 조직변경, 흡수합병, 신설합병, 흡수분할, 신설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주식교부 또는 전자공고를 말한다.

② 이 시행규칙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용어 정의는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명위원회등 : 법 제2조 제12호의 지명위원회등을 말한다.
2. 종류주주 : 법 제2조 제14호의 종류주주를 말한다.
3. 업무집행이사 : 법 제2조 제15호 가목의 업무집행이사를 말한다.
4. 업무집행이사등 : 법 제2조 제15호 가목의 업무집행이사등을 말한다.
5. 발행주식총수 : 법 제2조 제31호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
6. 전자적 방법 : 법 제2조 제34호의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7. 설립시발행주식 :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설립시발행주식을 말한다.
8. 유가증권 : 법 제33조 제10항 제2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9. 은행등 : 법 제34조 제2항의 은행등을 말한다.
10. 발행가능주식총수 : 법 제37조 제1항의 발행가능주식총수를 말한다.
11. 설립시이사 : 법 제38조 제1항의 설립시이사를 말한다.
12. 설립시감사등위원 : 법 제38조 제2항의 설립시감사등위원을 말한다.
13. 감사등위원 : 법 제38조 제2항의 감사등위원을 말한다.
14. 설립시회계참여 : 법 제38조 제3항 제1호의 설립시회계참여를 말한다.
15. 설립시감사 : 법 제38조 제3항 제2호의 설립시감사를 말한다.
16. 설립시회계감사인 : 법 제38조 제3항 제3호의 설립시회계감사인을 말한다.
17. 대표이사 : 법 제477조 제1항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 十八 設立時執行役 法第四十八条第一項第二号 に規定する設立時執行役をいう。
- 十九 設立時募集株式 法第五十八条第一項 に規定する設立時募集株式をいう。
- 二十 設立時株主 法第六十五条第一項 に規定する設立時株主をいう。
- 二十一 創立総会 法第六十五条第一項 に規定する創立総会をいう。
- 二十二 創立総会参考書類 法第七十条第一項 に規定する創立総会参考書類をいう。
- 二十三 種類創立総会 法第八十四条 に規定する種類創立総会をいう。
- 二十四 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 法百一条第一項第三号 に規定する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をいう。
- 二十五 株式等 法第一百七条第二項第二号 ホに規定する株式等をいう。
- 二十六 自己株式 法百十三条第四項 に規定する自己株式をいう。
- 二十七 株券発行会社 法百十七条第七項 に規定する株券発行会社をいう。
- 二十八 株主名簿記載事項 法第二百二十一条 に規定する株主名簿記載事項をいう。
- 二十九 株主名簿管理人 法第二百二十三条 に規定する株主名簿管理人をいう。
- 三十 株式取得者 法第三百三十三条第一項 に規定する株式取得者をいう。
- 三十一 親会社株式 法第三百三十五条第一項 に規定する親会社株式をいう。
- 三十二 譲渡等承認請求者 法第三百三十九条第二項 に規定する譲渡等承認請求者をいう。
- 三十三 対象株式 法第四百十条第一項 に規定する対象株式をいう。
- 三十四 指定買取人 法第四百十条第四項 に規定する指定買取人をいう。
- 三十五 一株当たり純資産額 法第四百十一条第二項 に規定する一株当たり純資産額をいう。
- 三十六 登録株式質権者 法第四百九条第一項 に規定する登録株式質権者をいう。
- 三十七 金銭等 法第五百十一条第一項 に規定する金銭等をいう。
- 三十八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 法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 に規定する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いう。
- 三十九 特別支配株主 法第一百七十九条第一項 に規定する特別支配株主をいう。
- 四十 株式売渡請求 法第一百七十九条第二項 に規定する株式売渡請求をいう。

- 18. 설립시 집행임원 :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설립시 집행임원을 말한다.
- 19. 설립시 모집주식 : 법 제58조 제1항의 설립시 모집주식을 말한다.
- 20. 설립시 주주 : 법 제65조 제1항의 설립시 주주를 말한다.
- 21. 창립총회 : 법 제65조 제1항의 창립총회를 말한다.
- 22. 창립총회 참고서류 : 법 제70조 제1항의 창립총회 참고서류를 말한다.
- 23. 종류창립총회 : 법 제84조의 종류창립총회를 말한다.
- 24.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 : 법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를 말한다.
- 25. 주식등 :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주식등을 말한다.
- 26. 자기주식 : 법 제113조 제4항의 자기주식을 말한다.
- 27. 주권발행회사: 법 제117조 제7항의 주권발행회사를 말한다.
- 28. 주주명부 기재사항 : 법 제121조의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말한다.
- 29. 주주명부 관리인 : 법 제123조의 주주명부 관리인을 말한다.
- 30. 주식 취득자 : 법 제133조 제1항의 주식 취득자를 말한다.
- 31. 모회사 주식 : 법 제135조 제1항의 모회사 주식을 말한다.
- 32. 양도등 승인청구자 : 법 제139조 제2항의 양도등 승인청구자를 말한다.
- 33. 대상주식 : 법 제140조 제1항의 대상주식을 말한다.
- 34. 지정매수인 : 법 제140조 제4항의 지정매수인을 말한다.
- 35. 1주당 순자산액 : 법 제141조 제2항의 1주당 순자산액을 말한다.
- 36. 등록주식질권자 : 법 제149조 제2항의 등록주식질권자를 말한다.
- 37. 금전등 : 법 제151조 제1항의 금전등을 말한다.
- 38.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 법 제171조 제1항의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말한다.
- 39. 특별지배주주 : 법 제179조 제1항의 특별지배주주를 말한다.
- 40. 주식매도청구 : 법 제179조 제2항의 주식매도청구를 말한다.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 四十一 対象会社 法第七十九条第二項 に規定する対象会社をいう。
- 四十二 新株予約権売渡請求 法第七十九条第三項 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いう。
- 四十三 売渡株式 法第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二号 に規定する売渡株式をいう。
- 四十四 売渡新株予約権 法第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四号 ロに規定する売渡新株予約権をいう。
- 四十五 売渡株式等 法第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五号 に規定する売渡株式等をいう。
- 四十六 株式等売渡請求 法第七十九条の三第一項 に規定する株式等売渡請求をいう。
- 四十七 売渡株主等 法第七十九条の四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売渡株主等をいう。
- 四十八 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 法第九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をいう。
- 四十九 募集株式 法第九十九条第一項 に規定する募集株式をいう。
- 五十 株券喪失登録日 法第二百二十一条第四号 に規定する株券喪失登録日をいう。
- 五十一 株券喪失登録 法第二百二十三条 に規定する株券喪失登録をいう。
- 五十二 株券喪失登録者 法第二百二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株券喪失登録者をいう。
- 五十三 募集新株予約権 法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 に規定する募集新株予約権をいう。
- 五十四 新株予約権付社債券 法第二百四十九条第二号 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いう。
- 五十五 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 法第二百四十九条第二号 に規定する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をいう。
- 五十六 証券発行新株予約権 法第二百四十九条第三号 ニに規定する証券発行新株予約権をいう。
- 五十七 自己新株予約権 法第二百五十五条第一項 に規定する自己新株予約権をいう。

- 41. 대상회사 : 법 제179조 제2항의 대상 회사를 말한다.
- 42. 신주예약권매도청구 : 법 제179조 제3항의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말한다.
- 43. 매도주식 : 법 제179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도주식을 말한다.
- 44. 매도신주예약권 : 법 제179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매도신주예약권을 말한다.
- 45. 매도주식등 : 법 제179조의2 제1항 제5호의 매도주식등을 말한다.
- 46. 주식등매도청구 : 법 제179조의3 제1항의 주식등매도청구를 말한다.
- 47. 매도주주등 : 법 제179조의4 제1항 제1호의 매도주주등을 말한다.
- 48.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 : 법 제194조 제1항의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를 말한다.
- 49. 모집주식 : 법 제199조 제1항의 모집주식을 말한다.
- 50. 주권상실등록일 : 법 제221조 제4호의 주권상실등록일을 말한다.
- 51. 주권상실등록 : 법 제223조의 주권상실등록을 말한다.
- 52. 주권상실등록자 : 법 제224조 제1항의 주권상실등록자를 말한다.
- 53. 모집 신주예약권 : 법 제238조 제1항의 모집 신주예약권을 말한다.
- 54. 신주예약권부사채권 : 법 제249조 제2호의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말한다.
- 55. 증권발행 신주예약권부사채 : 법 제249조 제2호의 증권발행 신주예약권 부사채를 말한다.
- 56. 증권발행 신주예약권 : 법 제249조 제3호 라목의 증권발행 신주예약권을 말한다.
- 57. 자기 신주예약권 : 법 제255조 제1항의 자기 신주예약권을 말한다.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五十八 新株予約権取得者 法第二百六十条第一項 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取得者をいう。

五十九 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 法第二百七十三条第一項 に規定する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をいう。

六十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 法第二百七十七条 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をいう。

六十一 株主総会参考書類 法第三百一条第一項 に規定する株主総会参考書類をいう。

六十二 電子提供措置 法第三百二十五条の二に規定する電子提供措置をいう。

六十三 報酬等 法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報酬等をいう。

六十四 議事録等 法第三百七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議事録等をいう。

六十五 執行役等 法第四百四条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執行役等をいう。

六十六 役員等 法第四百二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をいう。

六十七 補償契約 法第四百三十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補償契約をいう。

六十八 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 法第四百三十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いう。

六十九 臨時決算日 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臨時決算日をいう。

七十 臨時計算書類 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臨時計算書類をいう。

七十一 連結計算書類 法第四百四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連結計算書類をいう。

七十二 分配可能額 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分配可能額をいう。

七十三 事業譲渡等 法第四百六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業譲渡等をいう。

七十四 清算株式会社 法第四百七十六条に規定する清算株式会社をいう。

七十五 清算人会設置会社 法第四百七十八条第八項に規定する清算人会設置会社をいう。

七十六 財産目録等 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財産目録等をいう。

七十七 各清算事務年度 法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各清算事務年度をいう。

七十八 貸借対照表等 法第四百九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貸借対照表等をいう。

七十九 協定債権 法第五百十五条第三項に規定する協定債権をいう。

- 58. 신주예약권 취득자 : 법 제260조 제1항의 신주예약권 취득자를 말한다.
- 59. 취득조항부 신주예약권 : 법 제273조 제1항의 취득조항부 신주예약권을 말한다.
- 60. 신주예약권 무상배정 : 법 제277조의 신주예약권 무상배정을 말한다.
- 61. 주주총회 참고서류 : 법 제301조 제1항의 주주총회 참고서류를 말한다.
- 62. 전자제공조치: 법 제325조의2의 전자제공조치를 말한다.
- 63. 보수 등: 법 제361조 제1항의 보수 등을 말한다.
- 64. 의사록 등: 법 제371조 제1항의 의사록 등을 말한다.
- 65. 집행임원 등: 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집행임원 등을 말한다.
- 66. 임원 등: 법 제423조 제1항의 임원 등을 말한다.
- 67. 보상계약: 법 제430조의2 제1항의 보상계약을 말한다.
- 68.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 법 제430조의3 제1항의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말한다.
- 69. 임시결산일: 법 제441조 제1항의 임시결산일을 말한다.
- 70. 임시계산서류: 법 제441조 제1항의 임시계산서류를 말한다.
- 71. 연결계산서류: 법 제444조 제1항의 연결계산서류를 말한다.
- 72. 분배가능액: 법 제461조 제2항의 분배가능액을 말한다.
- 73. 사업양도 등: 법 제468조 제1항의 사업양도 등을 말한다.
- 74. 청산주식회사: 법 제476조의 청산주식회사를 말한다.
- 75. 청산인회설치회사: 법 제478조 제8항의 청산인회설치회사를 말한다.
- 76. 재산목록 등: 법 제492조 제1항의 재산목록 등을 말한다.
- 77. 각 청산사무연도: 법 제494조 제1항의 각 청산사무연도를 말한다.
- 78. 대차대조표 등: 법 제49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등을 말한다.
- 79. 협정채권: 법 제515조 제3항의 협정채권을 말한다.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 八十 協定債権者 法第五百十七條第一項に規定する協定債権者をいう。
- 八十一 債権者集会参考書類 法第五百五十條第一項に規定する債権者集会参考書類をいう。
- 八十二 持分会社 法第五百七十五條第一項に規定する持分会社をいう。
- 八十三 清算持分会社 法第六百四十五條に規定する清算持分会社をいう。
- 八十四 募集社債 法第六百七十六條に規定する募集社債をいう。
- 八十五 社債発行会社 法第六百八十二條第一項に規定する社債発行会社をいう。
- 八十六 社債原簿管理人 法第六百八十三條に規定する社債原簿管理人をいう。
- 八十七 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 法第七百二十一條第一項に規定する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をいう。
- 八十八 組織変更後持分会社 法第七百四十四條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組織変更後持分会社をいう。
- 八十九 社債等 法第七百四十六條第一項第七号二に規定する社債等をいう。
- 九十 吸収合併消滅会社 法第七百四十九條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吸収合併消滅会社をいう。
- 九十一 吸収合併存続会社 法第七百四十九條第一項に規定する吸収合併存続会社をいう。
- 九十二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 法第七百四十九條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をいう。
- 九十三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 法第七百四十九條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をいう。
- 九十四 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 法第七百五十一條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をいう。
- 九十五 新設合併設立会社 法第七百五十三條第一項に規定する新設合併設立会社をいう。
- 九十六 新設合併消滅会社 法第七百五十三條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新設合併消滅会社をいう。
- 九十七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 法第七百五十三條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をいう。
- 九十八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 法第七百五十三條第一項第六号に規定する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をいう。

- 80. 협정채권자: 법 제517조 제1항의 협정채권자를 말한다.
- 81. 채권자집회참고서류: 법 제550조 제1항의 채권자집회참고서류를 말한다.
- 82. 지분회사: 법 제575조 제1항의 지분회사를 말한다.
- 83. 청산지분회사: 법 제645조의 청산지분회사를 말한다.
- 84. 모집사채: 법 제676조의 모집사채를 말한다.
- 85. 사채발행회사: 법 제682조 제1항의 사채발행회사를 말한다.
- 86. 사채원부관리인: 법 제683조의 사채원부관리인을 말한다.
- 87.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 법 제721조 제1항의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를 말한다.
- 88. 조직변경후지분회사: 법 제744조 제1항 제1호의 조직변경후지분회사를 말한다.
- 89. 사채등 :법 제746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사채 등을 말한다.
- 90. 흡수합병소멸회사: 법 제749조 제1항 제1호의 흡수합병소멸회사를 말한다.
- 91. 흡수합병존속회사: 법 제749조 제1항의 흡수합병존속회사를 말한다.
- 92. 흡수합병존속회사: 법 제749조 제1항 제1호의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를 말한다.
- 93.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법 제749조 제1항 제2호의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를 말한다.
- 94.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법 제751조 제1항 제1호의 흡수합병존속지분회사를 말한다.
- 95. 신설합병설립회사: 법 제753조 제1항의 신설합병설립회사를 말한다.
- 96. 신설합병소멸회사: 법 제753조 제1항 제1호의 신설합병소멸회사를 말한다.
- 97.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 법 제753조 제1항 제2호의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를 말한다.
- 98.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법 제753조 제1항 제6호의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를 말한다.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九十九 吸収分割承継会社 法第七百五十七条に規定する吸収分割承継会社をいう。

百 吸収分割会社 法第七百五十八条第一号に規定する吸収分割会社をいう。

百一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 法第七百五十八条第一号に規定する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をいう。

百二 吸収分割株式会社 法第七百五十八条第二号に規定する吸収分割株式会社をいう。

百三 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 法第七百六十条第一号に規定する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をいう。

百四 新設分割会社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新設分割会社をいう。

百五 新設分割株式会社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新設分割株式会社をいう。

百六 新設分割設立会社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新設分割設立会社をいう。

百七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をいう。

百八 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 法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をいう。

百九 株式交換完全親会社 法第七百六十七条に規定する株式交換完全親会社をいう。

百十 株式交換完全子会社 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換完全子会社をいう。

百十一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 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をいう。

百十二 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 法第七百七十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をいう。

百十三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 法第七百七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をいう。

百十四 株式移転完全子会社 法第七百七十三条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株式移転完全子会社をいう。

99. 흡수분할승계회사: 법 제757조의 흡수분할승계회사를 말한다.
100. 흡수분할회사: 법 제758조 제1호의 흡수분할회사를 말한다.
101.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법 제758조 제1호의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를 말한다.
102. 흡수분할주식회사: 법 제758조 제2호의 흡수분할주식회사를 말한다.
103.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 법 제760조 제1호의 흡수분할승계지분회사를 말한다.
104. 신설분할회사: 법 제763조 제1항 제5호의 신설분할회사를 말한다.
105. 신설분할주식회사: 법 제763조 제1항 제5호의 신설분할주식회사를 말한다.
106. 신설분할설립회사: 법 제763조 제1항의 신설분할설립회사를 말한다.
107.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 법 제763조 제1항 제1호의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를 말한다.
108.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 법 제765조 제1항 제1호의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를 말한다.
109. 주식교환완전모회사: 법 제767조의 주식교환완전모회사를 말한다.
110. 주식교환완전자회사: 법 제768조 제1항 제1호의 주식교환완전자회사를 말한다.
111.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 법 제768조 제1항 제1호의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를 말한다.
112.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 법 제720조 제1항 제1호의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를 말한다.
113.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 법 제773조 제1항 제1호의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를 말한다.
114. 주식이전완전자회사: 법 제773조 제1항 제5호의 주식이전완전자회사를 말한다.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百十五 株式交付親会社 法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付親会社をいう。

百十六 株式交付子会社 法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付子会社をいう。

百十七 吸収分割合同会社 法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吸収分割合同会社をいう。

百十八 存続株式会社等 法第七百九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存続株式会社等をいう。

百十九 新設分割合同会社 法第八百十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新設分割合同会社をいう。

百二十 責任追及等の訴え 法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責任追及等の訴えをいう。

百二十一 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 法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をいう。

百二十二 最終完全親会社等 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最終完全親会社等をいう。

百二十三 特定責任追及の訴え 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いう。

百二十四 完全親会社等 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二項に規定する完全親会社等をいう。

百二十五 完全子会社等 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完全子会社等をいう。

百二十六 特定責任 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四項に規定する特定責任をいう。

百二十七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 法第八百四十九条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をいう。

3 この省令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法人等 法人その他の団体をいう。

二 会社等 会社（外国会社を含む。）、組合（外国における組合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事業体をいう。

三 役員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理事、監事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

115. 주식교부모회사: 법 제774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식교부모회사를 말한다.
116. 주식교부자회사: 법 제774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식교부자회사를 말한다.
117. 흡수분할합동회사: 법 제79조 제2항의 흡수분할합동회사를 말한다.
118. 존속주식회사 등: 법 제794조 제1항의 존속주식회사 등을 말한다.
119. 신설분할합동회사: 법 제813조 제2항의 신설분할합동회사를 말한다.
120. 책임추궁 등의 소: 법 제847조 제1항의 책임추궁 등의 소를 말한다.
121.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 법 제847조의2 제1항의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를 말한다.
122. 최종완전모회사 등: 법 제847조의3 제1항의 최종완전모회사 등을 말한다.
123. 특정책임추궁의 소: 법 제847조의3 제1항의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말한다.
124. 완전모회사 등: 법 제847조의3 제2항의 완전모회사 등을 말한다.
125. 완전자회사 등: 법 제847조의3 제2항 제2호의 완전자회사 등을 말한다.
126. 특정책임: 법 제847조의3 제4항의 특정책임을 말한다.
127.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 법 제849조 제2항 제1호의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를 말한다.
- ③ 이 시행규칙에서 다음 각호의 용어의 정의는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인등 : 법인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2. 회사등 :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조합(외국에 있어서 조합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3. 임원 :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者をいう。

四 会社役員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及び執行役をいう。

五 社外役員 会社役員のうち、次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をいう。

イ 当該会社役員が社外取締役又は社外監査役であること。

ロ 当該会社役員が次のいずれかの要件に該当すること。

(1) 当該会社役員が法第三百二十七条の二、第三百三十一条第六項、第三百七十三条第一項第二号、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五項又は第四百条第三項の社外取締役であること。

(2) 当該会社役員が法第三百三十五条第三項の社外監査役であること。

(3) 当該会社役員を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又は社外監査役であるものとして計算関係書類、事業報告、株主総会参考書類その他当該株式会社が法令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の規定に基づき作成する資料に表示していること。

六 業務執行者 次に掲げる者をいう。

イ 業務執行取締役、執行役その他の法人等の業務を執行する役員(法第三百四十八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による委託を受けた社外取締役を除く。)

ロ 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者

ハ 使用人

七 社外取締役候補者 次に掲げるいずれにも該当する候補者をいう

イ 当該候補者が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に就任した場合には、社外取締役となる見込みであること。

ロ 次のいずれかの要件に該当すること。

(1) 当該候補者を法第三百二十七条の二、第三百三十一条第六項、第三百七十三条第一項第二号、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五項又は第四百条第三項の社外取締役であるものとする予定があること。

(2) 当該候補者を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であるものとして計算関係書類、事業報告、株主総会参考書類その他株式会社が法令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の規定に基づき作成する資料に表示する予定があること。

ハ 当該候補者を就任後当該株式会社の業務を執行する取締役として選定す

를 말한다.

4. 회사임원 : 주식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및 집행임원을 말한다.

5. 사외임원 : 회사임원 중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임원이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일 것

나. 회사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1) 해당 회사임원이 법 제327조의2, 제331조 제6항, 제373조 제1항 제2호, 제399조의13 제5항 또는 제400조 제3항의 사외이사일 것.

2) 해당 회사임원이 법 제335조 제3항의 사외감사일 것.

3) 해당 회사임원을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인 자로 계산관계 서류,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참고서류 그 밖에 주식회사가 법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자료에 표시하고 있을 것.

6. 업무집행자 :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업무집행이사, 집행임원 그 밖의 법인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법 제3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위탁을 받은 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업무집행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자

다. 사용인

7. 사외이사후보자 :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후보자를 말한다.

가. 후보자가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예정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1) 해당 후보자를 법 제327조의2, 제330조 제6항, 제373조 제1항 제2호, 제399조의13 제5항 또는 제400조 제3항의 사외이사인 자로 할 예정일 것.

2) 해당 후보자를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인 자로 계산관계서류,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참고서류 그 밖에 주식회사가 법령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자료에 표시할 예정일 것.

다. 후보자를 취임 후 당해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로 선정할 예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る予定がないこと。

ニ 当該候補者を就任後当該株式会社の執行役として選任する予定がないこと。

ホ 当該候補者を就任後当該株式会社の使用人とする予定がないこと。

ヘ 次のいずれかの要件に該当すること。

(1) 当該候補者を法第三百七十三条第一項第二号、第四百条第三項、第四百二十五条第一項第一号ハ又は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社外取締役であるものとする予定があること。

(2) 当該候補者を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であるものとして計算関係書類、事業報告、株主総会参考書類その他株式会社が法令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の規定に基づき作成する資料に表示する予定があること。

ハ 社外監査役候補者 次に掲げるいずれにも該当する候補者をいう。

イ 当該候補者が当該株式会社の監査役に就任した場合には、社外監査役となる見込みであること。

ロ 次のいずれかの要件に該当すること。

(1) 当該候補者を法第三百三十五条第三項の社外監査役であるものとする予定があること。

(2) 当該候補者を当該株式会社の社外監査役であるものとして計算関係書類、事業報告、株主総会参考書類その他株式会社が法令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の規定に基づき作成する資料に表示する予定があること。

九 最終事業年度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ものをいう。

イ 株式会社 法第二条第二十四号 に規定する最終事業年度

ロ 持分会社 各事業年度に係る法第六百十七条第二項 に規定する計算書類を作成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各事業年度のうち最も遅いもの

十 計算書類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ものをいう。

イ 株式会社 法第四百三十五条第二項 に規定する計算書類

ロ 持分会社 法第六百十七条第二項 に規定する計算書類

十一 計算関係書類 株式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イ 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정이 아닌 경우

라. 후보자를 취임 후 당해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 아닌 경우

마. 후보자를 취임 후 당해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할 예정이 아닌 경우

바.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후보자를 법 제373조 제1항 제2호, 제400조 제3항, 제425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제427조 제1항의 사외이사로 할 예정인 경우

2) 후보자를 당해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계산관계서류,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참고서류 그 밖에 주식회사가 법령 기타 이에 준하는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료에 표시할 예정인 경우

8. 사외감사후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후보자를 말한다.

가. 후보자가 주식회사의 감사에 취임 한 경우에는 사외감사가 될 예정일 것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할 것

1) 후보자를 법 제335조 제3항의 사외감사로 할 예정일 것

2) 후보자를 주식회사의 사외감사로 계산관계서류, 사업보고, 주주총회참고서류 그 밖에 주식회사가 법령 기타 이에 준하는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료에 표시할 예정일 것

9. 최종사업연도 :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 법 제2조 제24호의 최종사업연도

나. 지분회사 : 각 사업연도마다 법 제617조 제2항의 계산서류를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중 가장 늦은 연도

10. 계산서류 :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계산서류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 법 제435조 제2항의 계산서류

나. 지분회사 : 법 제617조 제2항의 계산서류

11. 계산관계서류 : 주식회사에 관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第1編 総則

第1章 通則

ロ 各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

ハ 臨時計算書類

ニ 連結計算書類

十二 計算書類等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ものをいう。

イ 株式会社 各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法第四百三十六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又は会計監査報告を含む。）

ロ 持分会社 法第六百十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計算書類

十三 臨時計算書類等 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臨時計算書類（同条第二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又は会計監査報告を含む。）をいう。

十四 新株予約権等 新株予約権その他当該法人等に対して行使することにより当該法人等の株式その他の持分の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権利（株式引受権（会社計算規則第二条第三項第三十四号に規定する株式引受権をいう。以下同じ。）を除く。）をいう。

十五 公開買付け等 金融商品取引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第二十七条の二第六項（同法第二十七条の二十二の二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公開買付け及びこれ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に基づく制度をいう。

十六 社債取得者 社債を社債発行会社以外の者から取得した者（当該社債発行会社を除く。）をいう。

十七 信託社債 信託の受託者が発行する社債であって、信託財産（信託法（平成十八年法律第百八号）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信託財産をいう。以下同じ。）のために発行するものをいう。

十八 設立時役員等 設立時取締役、設立時会計参与、設立時監査役及び設立時会計監査人をいう。

十九 特定関係事業者 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イ 次の1)又は2)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1)又は2)に定めるもの

(1) 当該株式会社に親会社等がある場合 当該親会社等並びに当該親会社等の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を除く。）及び関連会社（当該親会社等が会社

- 나. 각 사업연도의 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
- 다. 임시계산서류
- 라. 연결계산서류
- 12. 계산서류등 :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 : 각 사업연도의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법 제43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 나. 지분회사 : 법 제617조 제2항의 계산서류
- 13. 임시계산서류등 : 법 제441조 제1항의 임시계산서류(동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4. 신주예약권 등 : 신주예약권 그 밖에 해당 법인 등에 대해 행사함으로써 해당 법인 등의 주식 그 밖의 지분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주식인수권(회사계산규칙 제2조 제3항 제34호의 주식인수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15. 공개매수등 : 금융상품거래법 (1948년 법률 제25호) 제27조의2 제6항 (동법 제27조의22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개매수 및 이에 상당한 외국법령에 의한 제도를 말한다.
- 16. 사채취득자 : 사채를 사채발행회사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자(사채발행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17. 신탁사채 : 신탁의 수탁자가 발행하는 사채로 신탁재산(신탁법 (2006년 법률 제 108호)제2조 제3항의 신탁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 18. 설립시 임원등 : 설립시 이사, 설립시 회계참여, 설립시 감사 및 설립시 회계감 사인을 말한다 .
- 19. 특정관계사업자 : 다음의 자를 말한다.
 - 가. 다음의 1) 또는 2)의 구분에 따라 당해 1) 또는 2)에서 정하는 자
 - 1) 주식회사에 모회사등이 있는 경우 : 모회사등 및 모회사등의 자회사등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및 관련회사 (모회사등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第1編 総則

第2章 子会社等及び親会社等

でない場合におけるその関連会社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

(2) 当該株式会社に親会社等がない場合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及び関連会社

ロ 当該株式会社の主要な取引先である者 (法人以外の団体を含む。)

二十 関連会社 会社計算規則(平成十八年法務省令第十三号)第二条第三項第二十一号に規定する関連会社をいう。

二十一 連結配当規制適用会社 会社計算規則第二条第三項第五十五号に規定する連結配当規制適用会社をいう。

二十二 組織変更株式交換 保険業法 (平成七年法律第百五号) 第九十六条の五第一項 に規定する組織変更株式交換をいう。

二十三 組織変更株式移転 保険業法第九十六条の八第一項 に規定する組織変更株式移転をいう。

第2章 子会社等及び親会社等

第3条 子会社及び親会社

1 法第二条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同号 に規定する会社が他の会社等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他の会社等とする。

2 法第二条第四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会社等が同号 に規定する株式会社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会社等とする。

3 前二項に規定する「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場合」とは、次に掲げる場合 (財務上又は事業上の関係からみて他の会社等の財務又は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を除く。) をいう (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一 他の会社等 (次に掲げる会社等であって、有効な支配従属関係が存在しないと認められ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の議決権の総数に対する自己 (その子会社及び子法人等 (会社以外の会社等が他の会社等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他の会社等をい

그 관련회사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식회사에 모회사 등이 없는 경우 : 주식회사의 자회사 및 관련회사

나. 주식회사의 주요한 거래처인 자(법인 외의 단체를 포함한다)

20. 관련회사: 회사계산규칙(2006년 시행규칙 제13호) 제2조 제3항 제21호의 관련회사를 말한다.

21. 연결배당규제적용회사: 회사계산규칙 제2조 제3항 제55호의 연결배당규제적용회사를 말한다.

22. 조직변경주식교환 : 보험업법 (1995년 법률 제105호) 제96조의5 제1항의 조직변경주식교환을 말한다.

23. 조직변경주식이전 : 보험업법 제96조의8 제1항의 조직변경주식이전을 말한다.

제2장 자회사 등 및 모회사 등

제3조 자회사 및 모회사

① 법 제2조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호의 회사가 다른 회사등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회사등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4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회사등이 동호의 주식회사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회사등을 말한다.

③ 전2항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재무상 또는 사업상의 관계에서 볼 때 다른 회사등의 재무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1. 다른 회사등(다음의 회사등으로서 유효한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의 총수에 대하여 자기(그 자회사 및 자법인등(회사 이외의 회사등이 다른 회사등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회사등을 말한다)을 포

第1編 総則

第2章 子会社等及び親会社等

う。)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計算において所有している議決権の数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場合

イ 民事再生法(平成十一年法律第二百二十五号)の規定による再生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会社等

ロ 会社更生法(平成十四年法律第百五十四号)の規定による更生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株式会社

ハ 破産法(平成十六年法律第七十五号)の規定による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会社等

ニ その他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会社等に準ずる会社等

二 他の会社等の議決権の総数に対する自己の計算において所有している議決権の数の割合が百分の四十以上である場合(前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であって、次に掲げるいずれかの要件に該当する場合

イ 他の会社等の議決権の総数に対する自己所有等議決権数(次に掲げる議決権の数の合計数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こと。

(1) 自己の計算において所有している議決権

(2) 自己と出資、人事、資金、技術、取引等において緊密な関係があることにより自己の意思と同一の内容の議決権を行使すると認められる者が所有している議決権

(3) 自己の意思と同一の内容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に同意している者が所有している議決権

ロ 他の会社等の取締役会その他これに準ずる機関の構成員の総数に対する次に掲げる者(当該他の会社等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に関して影響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の数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こと。

(1) 自己の役員

(2) 自己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

(3) 自己の使用人

4) 1) から 3) までに掲げる者であった者

ハ 自己が他の会社等の重要な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する契約等が存在すること。

ニ 他の会社等の資金調達額(貸借対照表の負債の部に計上されているもの

함한다. 이하 이항에 있어서 같다)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가. 민사재생법 (1999년 법률 제2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회사등
 - 나. 회사갱생법 (2002년 법률 제15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 다. 파산법 (2004년 법률 제75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회사등
 -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사등에 준하는 회사등
2.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의 총수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전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자기소유등의결권수(다음의 의결권의 합계수를 말한다. 다음 호에 있어서 같다)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 2) 자기와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 3) 자기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동의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 나. 다른 회사등의 이사회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구성원의 총수에 대한 다음의 자(다른 회사등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에 관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한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 자기의 임원
 - 2) 자기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 3) 자기의 사용인
 - 4) 1)부터 3)까지의 자였던 자
 - 다. 자기가 다른 회사등의 중요한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는 계약등이 존재하는 경우
 - 라. 다른 회사등의 자금조달액(대차대조표의 부채의 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

第1編 総則

第2章 子会社等及び親会社等

に限る。)の総額に対する自己が行う融資(債務の保証及び担保の提供を含む。二において同じ。)の額(自己と出資、人事、資金、技術、取引等において緊密な関係のある者が行う融資の額を含む。)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こと。

ホ その他自己が他の会社等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ことが推測される事実が存在すること。

三 他の会社等の議決権の総数に対する自己所有等議決権数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場合(自己の計算において議決権を所有していない場合を含み、前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であって、前号ロからホまでに掲げるいずれかの要件に該当する場合

四 法第百三十五条第一項の親会社についての第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第一項の子会社を第二項の法第二条第四号に規定する株式会社とみなす。

第3条の2 子会社及び親会社

1 法第二条第三号の二ロ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同号ロに規定する者が他の会社等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他の会社等とする。

2 法第二条第四号の二ロ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ある者(会社等であるものを除く。)が同号ロに規定する株式会社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ある者とする。

3 前二項に規定する「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場合」とは、次に掲げる場合(財務上又は事業上の関係からみて他の会社等の財務又は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な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を除く。)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一 他の会社等(次に掲げる会社等であって、有効な支配従属関係が存在しないと認められ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議決権の総数に対する自己(その子会社等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計算において所有している議決権の数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場合

イ 民事再生法の規定による再生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会社等

ロ 会社更生法の規定による更生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株式会社

에 한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자기가 행한 용자(채무의 보증 및 담보의 제공을 포함한다. 라목에 있어서 같다)액(자기와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가 행한 용자액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마. 그 밖에 자기가 다른 회사등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추측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3.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의 총수에 대하여 자기소유등의결권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전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전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35조 제1항의 모회사에 관한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조 제1항의 자회사를 제2항의 법 제2조 제4호의 주식회사로 본다.

제3조의2 자회사 및 모회사

① 법 제2조 제3호의2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은 동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른 회사등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다른 회사등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4호의2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은 어떤 자(회사등인 것은 제외한다)가 동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의 어떤 자로 한다.

③ 전2항에서 규정하는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재무상 또는 사업상의 관계에서 볼 때 다른 회사 등의 재무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다른 회사등(다음의 회사등으로서 유효한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자기(자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가. 민사재생법의 규정에 의한 재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등

나. 회사갱생법의 규정에 의한 갱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第1編 総則

第2章 子会社等及び親会社等

ハ 破産法の規定による破産手続開始の決定を受けた会社等

ニ その他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会社等に準ずる会社等

二 他の会社等の議決権の総数に対する自己の計算において所有している議決権の数の割合が百分の四十以上である場合(前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であって、次に掲げるいずれかの要件に該当する場合

イ 他の会社等の議決権の総数に対する自己所有等議決権数(次に掲げる議決権の数の合計数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こと。

(1) 自己の計算において所有している議決権

(2) 自己と出資、人事、資金、技術、取引等において緊密な関係があることにより自己の意思と同一の内容の議決権を行使すると認められる者が所有している議決権

(3) 自己の意思と同一の内容の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に同意している者が所有している議決権

(4) 自己(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の配偶者又は二親等内の親族が所有している議決権

ロ 他の会社等の取締役会その他これに準ずる機関の構成員の総数に対する次に掲げる者(当該他の会社等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に関して影響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ものに限る。)の数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こと。

(1) 自己(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

(2) 自己の役員

(3) 自己の業務を執行する社員

(4) 自己の使用人

(5) 2)から 4)までに掲げる者であった者

(6) 自己(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の配偶者又は二親等内の親族

ハ 自己が他の会社等の重要な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する契約等が存在すること。

ニ 他の会社等の資金調達額(貸借対照表の負債の部に計上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の総額に対する自己が行う融資(債務の保証及び担保の提供を含む。二において同じ。)の額(自己と出資、人事、資金、技術、取引等において緊密

- 다. 파산법의 규정에 의한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등
라. 그 외의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회사등에 준하는 회사등
2.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자기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전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의 총수에 대한 자기소유등의결권수(다음의 결권수의 합계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1) 자기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 2) 자기와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 등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 3) 자기의 의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동의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 4) 자기(자연인에 한한다)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 나. 다른 회사등의 이사회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구성원의 총수에 대한 다음의 자(당해 다른 회사등의 재무 및 사업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한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1) 자기(자연인에 한한다)
 - 2) 자기의 임원
 - 3) 자기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 4) 자기의 사용인
 - 5) 2)에서 4)까지의 자에 해당하였던 자
 - 6) 자기(자연인에 한한다)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다. 자기가 다른 회사등의 중요한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는 계약등이 존재할 것
- 라. 다른 회사 등의 자금조달금액(대차대조표의 부채부에 계상되어있는 것에 한한다)총액에 대한 자기가 행한 용자(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포함한다. 라목에서 같다)의 금액(자기와 출자, 인사, 자금, 기술, 거래 등에 있

第1編 総則

第2章 子会社等及び親会社等

な関係のある者及び自己(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の配偶者又は二親等内の親族が行う融資の額を含む。)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こと。

ホ その他自己が他の会社等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ことが推測される事実が存在すること。

三 他の会社等の議決権の総数に対する自己所有等議決権数の割合が百分の五十を超えている場合(自己の計算において議決権を所有していない場合を含み、前二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であって、前号ロからホまでに掲げるいずれかの要件に該当する場合

第4条 特別目的会社の特則

1 第三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特別目的会社(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百五号)第二条第三項 に規定する特定目的会社及び事業の内容の変更が制限されているこれと同様の事業を営む事業体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は、次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特別目的会社に資産を譲渡した会社の子会社に該当しないものと推定する

一 当該特別目的会社が適正な価額で譲り受けた資産から生ずる収益をその発行する証券(当該証券に表示されるべき権利を含む。)の所有者(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第二条第十二項 に規定する特定借入に係る債権者及びこれと同様の借入に係る債権者を含む。)に享受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設立されていること。

二 当該特別目的会社の事業がその目的に従って適切に遂行されていること。

第4条の2 株式交付子会社

法第二条第三十二号の二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同条第三号に規定する会社が他の会社等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している場合(第三条第三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他の会社等とする。

어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및 자기(자연인에 한한다)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행한 용자금(을 포함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마. 그 외의 자기가 다른 회사등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사실이 존재할 것

3.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총수에 대한 자기소유등의결권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자기계산으로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전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전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특별목적회사의 특칙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목적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05호)제2조 제3항의 특정목적회사 및 사업내용의 변경이 제한되는 것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에 관하여는 다음 요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목적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별목적회사가 적정한 가액으로 양수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그 발행하는 증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항의 특정 차입의 채권자 및 이와 동일한 차입의 채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향수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2. 특별목적회사의 사업이 그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경우

제4조의2 주식교부자회사

법 제2조 제32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동조 제3호의 회사가 다른 회사등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제3조 제3항 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에 다른 회사 등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第1節 通則

第5条 設立費用

法第二十八条第四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定款に係る印紙税
- 二 設立時発行株式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の取扱いをした銀行等に支払うべき手数料及び報酬
- 三 法第三十三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り決定された検査役の報酬
- 四 株式会社の設立の登記の登録免許税

第6条 検査役の調査を要しない市場価格のある有価証券

法第三十三条第十項第二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同号 に規定する有価証券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法第三十条第一項 の認証の日における当該有価証券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法第三十条第一項 の認証の日において当該有価証券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有価証券の価格

第7条 銀行等

法第三十四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株式会社商工組合中央金庫
- 二 農業協同組合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三十二号) 第十条第一項第三号 の事業を行う農業協同組合又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설립

제1절 통칙

제5조 설립비용

법 제28조 제4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정관의 인지세
2. 설립시발행주식과 교환으로 하는 금전납입의 취급을 한 은행등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보수
3.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감사인의 보수
4.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

제6조 감사인의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법 제33조 제10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동호의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0조 제1항의 인증일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서의 최종가격 (해당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해당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법 제30조 제1항의 인증일에 있어서 유가증권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해당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유가증권의 가격

제7조 은행등

법 제34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식회사상공조합중앙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 (1947년 법률 제132호)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 三 水産業協同組合法 (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四十二号) 第十一条第一項第四号、第八十七条第一項第四号、第九十三条第一項第二号又は第九十七条第一項第二号の事業を行う漁業協同組合、漁業協同組合連合会、水産加工業協同組合又は水産加工業協同組合連合会
- 四 信用協同組合又は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八十一号) 第九条の九第一項第一号 の事業を行う協同組合連合会
- 五 信用金庫又は信用金庫連合会
- 六 労働金庫又は労働金庫連合会
- 七 農林中央金庫

第7条の2 出資の履行の仮装に関して責任をとるべき発起人等

- 1 法第五十二条の二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出資の履行(法第三十五条 に規定する出資の履行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の仮装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発起人及び設立時取締役
 - 二 出資の履行の仮装が創立総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次に掲げる者
 - イ 当該創立総会に当該出資の履行の仮装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発起人
 - ロ イの議案の提案の決定に同意した発起人
 - ハ 当該創立総会において当該出資の履行の仮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た発起人及び設立時取締役

第2節 募集設立

第8条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

- 法第五十九条第一項第五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発起人が法第三十二条第一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り割当てを受けた設立時発行株式 (出資の履行をしたものに限る。) 及び引き受けた設立時募集株式の数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3. 수산업협동조합법 (1948년 법률 제242호)제11조 제1항 제4호, 제87조 제1항 제4호, 제9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어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 또는 수산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4. 신용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1949년 법률 제181호)제9조의 9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연합회
5. 신용금고 또는 신용금고연합회
6. 노동금고 또는 노동금고연합회
7. 농림중앙금고

제7조의2 출자이행가장에 관해 책임을 져야할 발기인등

① 법 제5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출자이행 (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의 이행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가장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발기인 및 설립시이사
2. 출자이행가장이 창립총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의 자

가. 창립총회에 출자이행가장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발기인

나. 가목의 의안제안결정에 동의한 발기인

다. 창립총회에서 출자이행가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한 발기인 및 설립시이사

제2절 모집설립

제8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발기인이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설립시발행주식(출자이행을 한 것에 한한다) 및 인수한 설립시 모집주식의 수 (설립하려고 하는 주식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종류 및 종류별의 수)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 二 法第三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の内容
- 三 株主名簿管理人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営業所
- 四 定款に定められた事項 (法第五十九条第一項第一号 から第四号 まで及び前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 であって、発起人に対して設立時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が当該者に対して通知することを請求した事項

第9条 招集の決定事項

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五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 又は第四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創立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
 - ロ 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の期限 (創立総会の日時以前の時であって、法第六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発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以後の時に限る。)
 - ハ 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の期限 (創立総会の日時以前の時であって、法第六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発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以後の時に限る。)
- 二 第十一条第一項第二号の取扱いを定めるときは、その取扱いの内容
- ホ 一の設立時株主が同一の議案につき次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次に定める規定により重複して議決権を行使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同一の議案に対する議決権の行使の内容が異なるものであるときにおける当該設立時株主の議決権の行使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とき (次号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 は、その事項
 - (1) 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 法第七十五条第一項
 - (2) 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四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 法第七十六条第一項
- 二 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 及び第四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次

2. 법 제32조 제2항의 결정내용
3. 주주명부관리인을 두는 취지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영업소
4. 정관에 규정한 사항(법 제5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전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발기인에게 설립시 모집주식의 인수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가 해당자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청구한 사항

제9조 소집의 결정사항

법 제67조 제1항 제5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가.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립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나. 법 제67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기한(창립총회일 이전으로 법 제68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날 이후에 한한다)

다. 법 제67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기한(창립총회일 이전으로 법 제68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한 날 이후에 한한다)

라.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취급을 정하는 때에는 그 취급 내용

마. 1인의 설립시 주주가 동일 의안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의안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내용이 다른 때에 있어서의 설립시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다음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사항

1) 법 제67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

2) 법 제67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 법 제76조 제1항

2. 법 제6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に掲げる事項

イ 法第六十八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設立時株主の請求があった時に当該設立時株主に対して法第七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同項に規定する議決権行使書面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の交付(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を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ロ 一の設立時株主が同一の議案につき法第七十五条第一項又は第七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重複して議決権を行使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同一の議案に対する議決権の行使の内容が異なるものであるときにおける当該設立時株主の議決権の行使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ときは、その事項

三 第一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が創立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であるときは、当該事項に係る議案の概要

イ 設立時役員等の選任

ロ 定款の変更

第10条 創立総会参考書類

1 法第七十条第一項又は第七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すべき創立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議案及び提案の理由

二 議案が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を除く。)の選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ときは、当該設立時取締役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

三 議案が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ときは、当該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の三に規定する事項

四 議案が設立時会計参与の選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ときは、当該設立時会計参与についての第七十五条に規定する事項

五 議案が設立時監査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ときは、当該設立時監査役についての第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

- 가. 법 제68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설립시 주주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설립시 주주에게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 서면(동항의 의결권행사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 있어서 같다)의 교부(교부에 갈음하여 행하는 동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를 하는 것으로 할 때에는 그 뜻
- 나. 1인의 설립시 주주가 동일한 의안에 관하여 법 제75조 제1항 또는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의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이 다른 때에 있어서의 설립시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그 사항
3. 제1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창립총회의 목적인 때에는 당해 사항의 의안의 개요
- 가.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
- 나. 정관의 변경

제10조 창립총회 참고서류

- ① 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창립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의안 및 제안이유
 2. 의안이 설립시이사(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에 관한 의안인 때에는 설립시이사에 관한 제74조의 사항
 3. 의안이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인 때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에 관한 제74조의3의 사항
 4. 설립시 회계참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인 경우에는 제75조의 사항
 5. 설립시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인 경우에는 제76조의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 六 議案が設立時会計監査人の選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ときは、当該設立時会計監査人についての第七十七条に規定する事項
 - 七 議案が設立時役員等の解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ときは、解任の理由
 - 八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設立時株主の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参考となると認める事項
- 2 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 及び第四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発起人が行った創立総会参考書類の交付 (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 は、法第七十条第一項 及び第七十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創立総会参考書類の交付とする。

第11条 議決権行使書面

- 1 法第七十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交付すべき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又は法第七十一条第三項 若しくは第四項 の規定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べき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各議案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もの) についての賛否 (棄権の欄を設ける場合にあっては、棄権を含む。) を記載する欄
 - イ 二以上の設立時役員等の選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場合 各候補者の選任
 - ロ 二以上の設立時役員等の解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場合 各設立時役員等の解任
 - 二 第九条第一号二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前号の欄に記載がない議決権行使書面が発起人に提出された場合における各議案についての賛成、反対又は棄権のいずれかの意思の表示があったものとする取扱いの内容
 - 三 第九条第一号ホ又は第二号ロ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当該事項
 - 四 議決権の行使の期限
 - 五 議決権を行使すべき設立時株主の氏名又は名称及び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議決権の数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事項を含む。)
 - イ 議案ごとに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議決権の数が異なる場合 議案ごとの議決権の数
 - ロ 一部の議案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議決権を行使す

6. 설립시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의안인 경우에는 제77조의 사항
7. 설립시 임원등의 해임에 관한 의안인 경우에는 해임의 이유
8. 전 각호의 사항외에 설립시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 ② 법 제6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발기인이 행한 창립총회 참고서류의 교부(교부에 갈음하여 행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는 법 제70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항의 창립총회 참고서류의 교부로 한다.

제11조 의결권행사서면

- ①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법 제71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각 의안(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것)의 찬부(기권의 난을 둔 경우에는 기권을 포함한다)를 기재하는 난
 - 가. 2인 이상의 설립시 임원등의 선임에 관한 의안인 경우 : 각 후보자의 선임
 - 나. 2인 이상의 설립시 임원등의 해임에 관한 의안인 경우 : 각 설립시 임원등의 해임
 2. 제9조 제1호 라목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전호의 난에 기재가 없는 의결권행사서면이 발기인에게 제출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의안에 관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어느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한다는 내용
 3. 제9조 제1호 마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당해 사항
 4. 의결권행사의 기한
 5.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설립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 가. 의안마다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다른 경우 : 의안마다의 의결권의 수
 - 나. 일부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ることができる議案又は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議案

2 第九条第二号イ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発起人は、法第六十八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設立時株主の請求があった時に、当該設立時株主に対して、法第七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2条 実質的に支配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関係

法第七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設立時株主は、成立後の株式会社（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を含む。）が、当該成立後の株式会社の株主となる設立時株主である会社等の議決権（法第三百八条第一項その他これに準ずる法以外の法令（外国の法令を含む。）の規定により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される議決権を含み、役員等（会計監査人を除く。）の選任及び定款の変更に關する議案（これらの議案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の全部につき株主総会（これ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式（これ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に係る議決権を除く。）の総数の四分の一以上を有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おける当該成立後の株式会社の株主となる設立時株主である会社等（当該設立時株主であるもの以外の者が当該創立総会の議案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当該議案を決議す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設立時株主を除く。）とする。

第13条 書面による議決権行使の期限

法第七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第九条第一号ロの行使の期限とする。

第14条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行使の期限

法第七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第九条第一号ハの行使の期限とする。

第15条 発起人の説明義務

法第七十八条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있는 의안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안

② 제9조 제2호 가목의 사항을 정한 경우 발기인은 법 제68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설립시 주주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설립시 주주에게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서면을 교부(교부에 갈음하여 행하는 동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

법 제72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설립시 주주는 성립 후 주식회사(주식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성립 후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는 설립시 주주인 회사등의 의결권(법 제308조 제1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 이외의 법령(외국법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 의결권을 포함하여, 임원등(회계감사인인 제외한다)의 선임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이러한 의안들에 상당하는 의안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것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의결권은 제외한다)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성립 후 주식회사의 주주로 되는 설립시 주주인 회사등(설립시 주주 이외의 자가 창립총회의 의안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당해의안을 결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설립시 주주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3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기한

법 제75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제9조 제1호 나목의 행사기한을 말한다.

제14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기한

법 제76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제9조 제1호 다목의 행사기한을 말한다.

제15조 발기인의 설명의무

법 제78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 一 設立時株主が説明を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するために調査を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場合を除く。)
 - イ 当該設立時株主が創立総会の日より相当の期間前に当該事項を発起人に対して通知した場合
 - ロ 当該事項について説明をするために必要な調査が著しく容易である場合
- 二 設立時株主が説明を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することにより成立後の株式会社その他の者 (当該設立時株主を除く。) の権利を侵害することとなる場合
- 三 設立時株主が当該創立総会において実質的に同一の事項について繰り返して説明を求める場合
- 四 前三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設立時株主が説明を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ないことにつき正当な事由がある場合

第16条 創立総会の議事録

- 1 法第八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創立総会の議事録の作成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創立総会の議事録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 (法第二十六条第二項に規定する電磁的記録をいう。第七編第四章第二節を除き、以下同じ。) をもって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創立総会の議事録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創立総会が開催された日時及び場所
 - 二 創立総会の議事の経過の要領及びその結果
 - 三 創立総会に出席した発起人、設立時取締役 (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設立時執行役、設立時会計参与、設立時監査役又は設立時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 四 創立総会の議長が存するときは、議長の氏名
 - 五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発起人の氏名又は名称
- 4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創立総会の議事録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八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創立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

1. 설립시 주주가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설립시주주가 창립총회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당해 사항을 발기인에게 통지한 경우
 - 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가 현저하게 용이한 경우
2. 설립시주주가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성립 후 주식회사 그 밖의 자(설립시주주는 제외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3. 설립시주주가 창립총회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반복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4. 전3호의 규정 외에 설립시 주주가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 창립총회의 의사록

- ①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립총회 의사록의 작성은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창립총회의 의사록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법 제26조 제2항의 전자적 기록을 말한다. 제7편 제4장 제2절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창립총회의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
 2. 창립총회의 의사 경과의 요령 및 결과
 3. 창립총회에 출석한 발기인, 설립시이사(설립하고자하는 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는 그 이외의 설립시이사), 설립시집행임원, 설립시회계참여, 설립시감사 또는 설립시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창립총회의 의장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성명
 5. 의사록 작성의 직무를 행한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의사록은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た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創立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事項の内容

ロ イの事項の提案をした者の氏名又は名称

ハ 創立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

ニ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発起人の氏名又は名称

二 法第八十三条の規定により創立総会への報告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創立総会への報告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事項の内容

ロ 創立総会への報告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

ハ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発起人の氏名又は名称

第17条 種類創立総会

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について準用する。

一 第九条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六十七条第一項第五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二 第十条 種類創立総会の創立総会参考書類

三 第十一条 種類創立総会の議決権行使書面

四 第十二条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七十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設立時株主

五 第十三条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七十五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

六 第十四条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七十六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

七 第十五条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七十八条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

八 前条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八十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議事録の作成

第18条 累積投票による設立時取締役の選任

1 法第八十九条第五項 の規定により法務省令で定めるべき事項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된 경우 : 다음의 사항

- 가.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사항의 내용
 - 나. 가목의 사항을 제안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다.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 날
 - 라. 의사록의 작성의 직무를 행한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 경우 : 다음의 사항
- 가. 창립총회에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 사항의 내용
 - 나. 창립총회에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 날
 - 다. 의사록의 작성의 직무를 행한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 종류창립총회

다음 각호의 규정은 그 각호에 규정하는 것에 준용한다.

1. 제9조 :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7조 제1항 제5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
2. 제10조 : 종류창립총회의 창립총회 참고서류
3. 제11조 : 종류창립총회의 의결권행사서면
4. 제12조 :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2조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설립시 주주
5. 제13조 :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
6. 제14조 :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6조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
7. 제15조 :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8조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8. 전조 :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 제1항의 의사록의 작성

제18조 누적투표에 의한 설립시 이사의 선임

- ① 법 제8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1章 設立

2 法第八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は、発起人(創立総会の議長が存する場合にあっては、議長)は、同項の創立総会における設立時取締役(設立しようとす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設立時監査等委員である設立時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設立時取締役。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選任の決議に先立ち、法第八十九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り設立時取締役を選任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第八十九条第四項の場合において、投票の同数を得た者が二人以上存することにより同条第一項の創立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設立時取締役の数の設立時取締役について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から順次設立時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するのができないときは、当該創立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設立時取締役の数以下の数であって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から順次設立時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する数のできる数の範囲内で、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から順次設立時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する。

4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法第八十九条第一項の創立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設立時取締役の数から前項の規定により設立時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された者の数を減じて得た数の設立時取締役は、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らないで、創立総会の決議により選任する。

第18条の2 払込みの仮装に関して責任をとるべき発起人等

1 法第百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払込み(法第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払込み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の仮装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発起人及び設立時取締役
- 二 払込みの仮装が創立総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次に掲げる者
 - イ 当該創立総会に当該払込みの仮装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発起人
 - ロ イの議案の提案の決定に同意した発起人
 - ハ 当該創立総会において当該払込みの仮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た発起人及び設立時取締役。

② 법 제89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발기인(창립총회의 의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동항의 창립총회에서 설립시이사(설립하고자 하는 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설립시감사등위원인 설립시이사 또는 그 외의 설립시이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임 결의에 앞서 법 제8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시이사를 선임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9조 제4항의 경우 투표의 동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 존재하여 동조 제1항의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는 설립시 이사의 수와 관련하여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설립시 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할 수 없는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는 설립시 이사의 수 이하의 수로서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설립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설립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1항의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는 설립시 이사의 수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시 이사로 선임되는 자의 수를 감하여 얻은 수의 설립시 이사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18조의2 **납입가장에 관해 책임을 져야할 발기인등**

① 법 제10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납입(법 제63조 제1항의 납입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가장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발기인 및 설립시이사
2. 납입가장이 창립총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의 자
 - 가. 창립총회에서 납입가장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발기인
 - 나. 가목의 의안제안 결정에 동의한 발기인
 - 다. 창립총회에서 납입가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한 발기인 및 설립시이사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2章 株式

第1節 総則

第19条 種類株主総会における取締役又は監査役の選任

法第百八条第二項第九号 二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あつて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社外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社外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社外取締役。イ及びロにおいて同じ。)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社外取締役の数
 - ロ イの定めにより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社外取締役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種類株主と共同して選任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当該他の種類株主の有する株式の種類及び共同して選任する社外取締役の数
 - ハ 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を変更する条件があるときは、その条件及びその条件が成就した場合における変更後の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
- 二 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監査役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あつて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社外監査役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社外監査役の数
 - ロ イの定めにより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社外監査役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種類株主と共同して選任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当該他の種類株主の有する株式の種類及び共同して選任する社外監査役の数
 - ハ 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を変更する条件があるときは、その条件及びその条件が成就した場合における変更後の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

第20条 種類株式の内容

- 1 法第百八条第三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の各号に掲げる

제2장 주식

제1절 총칙

제19조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법 제108조 제2항 제9호 라목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밖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가. 종류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등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사외이사 또는 그 이외의 사외이사. 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를 선임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선임하여야 하는 사외이사의 수
 - 나. 가목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사외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주주와 공동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다른 종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공동으로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수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및 조건이 성취한 경우에 있어서 변경 후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
2.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가. 종류주주총회에서 사외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뜻과 선임하여야 하는 사외감사의 수
 - 나. 가목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사외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주주와 공동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다른 종류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공동으로 선임하는 사외감사의 수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조건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및 조건이 성취한 경우에 있어서 변경 후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

제20조 종류주식의 내용

- ① 법 제108조 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에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事項について内容の異なる種類の株式の内容のうち、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以外の事項とする。

- 一 剰余金の配当 配当財産の種類
- 二 残余財産の分配 残余財産の種類
- 三 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事項 法第百八条第二項第三号 イに掲げる事項
- 四 譲渡による当該種類の株式の取得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の承認を要すること 法第百七条第二項第一号 イに掲げる事項
- 五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株主が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その取得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次に掲げる事項
 - イ 法第百七条第二項第二号 イに掲げる事項
 - ロ 当該種類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種類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財産の種類
- 六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が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これ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 次に掲げる事項
 - イ 一定の事由が生じた日に当該株式会社がその株式を取得する旨
 - ロ 法第百七条第二項第三号 ロ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同号 イの事由
 - ハ 法第百七条第二項第三号 ハに掲げる事項 (当該種類の株式の株主の有する当該種類の株式の数に応じて定めるものを除く。)
 - ニ 当該種類の株式一株を取得するのと引換えに当該種類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財産の種類
- 七 当該種類の株式について、当該株式会社が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その全部を取得すること 法第百八条第二項第七号 イに掲げる事項
- 八 株主総会 (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取締役会、清算人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株主総会又は清算人会) において決議すべき事項のうち、当該決議のほか、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の決議があることを必要とするもの 法第百八条第二項第八号 イに掲げる事項
- 九 当該種類の株式の種類株主を構成員とする種類株主総会において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又は監査役を選任すること 法第百八条第二項第九号 イ及びロに掲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내용 중 각호의 규정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1. 잉여금의 배당 : 배당재산의 종류
2. 잔여재산의 분배 : 잔여재산의 종류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 : 법 제108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사항
4. 양도에 의한 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것 : 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사항
5. 종류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것 :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항
 - 나. 종류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종류주주에게 교부하는 재산의 종류
6. 종류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득 할 수 있는 것 : 다음의 사항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에 주식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는 뜻
 - 나. 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의 사유
 - 다. 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사항(종류주식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종류주식의 수에 따라 정한 것은 제외한다)
 - 라. 종류주식 1주의 취득과 교환하여 종류주주에게 교부하는 재산의 종류
7. 종류주식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그 전부를 취득하는 것 : 법 제108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사항
8. 주주총회(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청산인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사항 중 당해 결의 외에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 : 법 제108조 제2항 제8호 가목의 사항
9. 종류주식의 종류주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 : 법 제108조 제2항 제9호 가목 및 나목의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げる事項

2 次に掲げる事項は、前項の株式の内容に含まれる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 一 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二 法第百六十七条第三項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三 法第百六十八条第一項 及び第百六十九条第二項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四 法第百七十四条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五 法第百八十九条第二項 及び第百九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六 法第百九十九条第四項 及び第二百三十八条第四項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第21条 利益の供与に関して責任をとるべき取締役等

法第百二十条第四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利益の供与 (法第百二十条第一項 に規定する利益の供与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及び執行役
- 二 利益の供与が取締役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次に掲げる者
 - イ 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 ロ 当該取締役会に当該利益の供与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及び執行役
- 三 利益の供与が株主総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次に掲げる者
 - イ 当該株主総会に当該利益の供与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
 - ロ イの議案の提案の決定に同意した取締役 (取締役会設置会社の取締役を除く。)
 - ハ イの議案の提案が取締役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 ニ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利益の供与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た取締役及び執行役

第2節 株式の譲渡等

第22条 株主名簿記載事項の記載等の請求

1 法第百三十三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 一 株式取得者が、株主として株主名簿に記載若しくは記録がされた者又はそ

② 다음의 사항은 전항의 주식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4조 제1항의 정관의 정함
2. 법 제167조 제3항의 정관의 정함
3. 법 제168조 제1항 및 제169조 제2항의 정관의 정함
4. 법 제174조의 정관의 정함
5. 법 제189조 제1항 및 제194조 제1항의 정관의 정함
6. 법 제199조 제4항 및 제238조 제4항의 정관의 정함

제21조 이익공여의 책임을 지는 이사 등

법 제120조 제4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이익공여(법 제120조 제1항의 이익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관한 직무를 행한 이사 및 집행임원
2. 이익공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행해진 때에는 다음의 자
 - 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 나. 이사회에 이익공여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및 집행임원
3. 이익공여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행해진 때에는 다음의 자
 - 가. 주주총회에 이익공여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 나. 가목의 의안의 제안결정에 동의한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이사는 제외한다)
 - 다. 가목의 의안의 제안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행해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 라. 주주총회에서 이익공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한 이사 및 집행임원

제2절 주식양도 등

제22조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기재등의 청구

① 법 제133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취득자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이 된 자 또는 그 일반승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の一般承継人に対して当該株式取得者の取得した株式に係る法第百三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確定判決を得た場合において、当該確定判決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二 株式取得者が前号の確定判決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もの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三 株式取得者が指定買取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譲渡等承認請求者に対して売買代金の全部を支払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四 株式取得者が一般承継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一般承継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五 株式取得者が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競売により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競売により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六 株式取得者が株式売渡請求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する売渡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 七 株式取得者が株式交換（組織変更株式交換を含む。）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 八 株式取得者が株式移転（組織変更株式移転を含む。）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 九 株式取得者が法第百九十七条第一項の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売却に係る代金の全部を支払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十 株式取得者が株券喪失登録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株券喪失登録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した日以降に、請求をしたとき（株券喪失登録が当該日前に抹消された場合を除く。）。
- 十一 株式取得者が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売却に係る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

계인에게 주식취득자가 취득한 주식에 관한 법 제133조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함을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2. 주식취득자가 전호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3. 주식취득자가 지정매수인 경우에 있어서 양도등승인청구자에게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4. 주식취득자가 일반승계에 의하여 당해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일반승계를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5. 주식취득자가 당해주식회사의 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경매로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6. 주식취득자가 주식매도청구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매도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7. 주식취득자가 주식교환(조직변경주식교환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당해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부를 취득한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8. 주식취득자가 주식이전(조직변경 주식이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당해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부를 취득한 주식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9. 주식취득자가 법 제197조 제1항의 주식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10. 주식취득자가 주권상실등록자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주권상실등록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 청구를 한 때(주권상실등록이 해당일 전에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1. 주식취득자가 법 제234조 제2항(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매각주식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매각대금의 전부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場合において、当該売却に係る代金の全部を支払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が株券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は、法第百三十三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 一 株式取得者が株券を提示して請求をした場合
- 二 株式取得者が株式売渡請求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する売渡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 三 株式取得者が株式交換（組織変更株式交換を含む。）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 四 株式取得者が株式移転（組織変更株式移転を含む。）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 五 株式取得者が法第百九十七条第一項 の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同項 の規定による競売又は同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売却に係る代金の全部を支払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六 株式取得者が法第二百三十四条第一項 若しくは第二百三十五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競売又は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売却に係る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競売又は当該売却に係る代金の全部を支払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第23条 子会社による親会社株式の取得

法第百三十五条第二項第五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 一 吸収分割（法以外の法令（外国の法令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基づく吸収分割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に際して親会社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場合
- 二 株式交換（法以外の法令に基づく株式交換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に際してその有する自己の株式（持分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引換えに親会社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場合

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주권발행회사인 경우에는 법 제133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취득자가 주권을 제시하여 청구를 한 경우
2. 주식취득자가 주식매도청구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매도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3. 주식취득자가 주식교환(조직변경 주식교환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4. 주식취득자가 주식이전(조직변경 주식이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부를 취득한 주식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5. 주식취득자가 법 제197조 제1항의 주식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6. 주식취득자가 법 제234조 제1항 또는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법 제234조 제2항 (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매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경매 또는 매각의 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제23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법 제135조 제2항 제5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흡수분할(법 이외의 법령(외국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한 흡수분할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시 모회사주식의 배정을 받는 경우
2. 주식교환(법 이외의 법령에 기한 주식교환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시 그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지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교환으로 모회사주식의 배정을 받는 경우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三 株式移転 (法以外の法令に基づく株式移転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 に際してその有する自己の株式と引換えに親会社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場合
- 四 他の法人等が行う株式交付 (法以外の法令に基づく株式交付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 に際して親会社株式の割当てを受ける場合
- 五 親会社株式を無償で取得する場合
- 六 その有する他の法人等の株式につき当該他の法人等が行う剰余金の配当又は残余財産の分配 (これら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 により親会社株式の交付を受ける場合
- 七 その有する他の法人等の株式につき当該他の法人等が行う次に掲げる行為に際して当該株式と引換えに当該親会社株式の交付を受ける場合
 - イ 組織の変更
 - ロ 合併
 - ハ 株式交換 (法以外の法令に基づく株式交換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
 - ニ 株式移転 (法以外の法令に基づく株式移転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
- ホ 取得条項付株式 (これに相当する株式を含む。) の取得
- ヘ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 (これに相当する株式を含む。) の取得
- 八 その有する他の法人等の新株予約権等を当該他の法人等が当該新株予約権等の定めに基づき取得することと引換えに親会社株式の交付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親会社株式の交付を受けるとき。
- 九 法第三百三十五条第一項の子会社である者 (会社を除く。) が行う次に掲げる行為に際して当該者がその対価として親会社株式を交付するために、その対価として交付すべき当該親会社株式の総数を超えない範囲において当該親会社株式を取得する場合
 - イ 組織の変更
 - ロ 合併
 - ハ 法以外の法令に基づく吸収分割に相当する行為による他の法人等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の承継
 - ニ 法以外の法令に基づく株式交換に相当する行為による他の法人等が発行している株式の全部の取得
- 十 他の法人等 (会社及び外国会社を除く。) の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る場合に

3. 주식이전(법 이외의 법령에 기한 주식이전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시 그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교환으로 모회사주식의 배정을 받는 경우
4. 다른 법인 등이 행하는 주식교부(법 이외의 법령에 기한 주식교부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시에 모회사 주식의 배정을 받는 경우
5. 모회사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6.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등의 주식에 관하여 다른 법인등이 행하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이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모회사 주식의 교부를 받는 경우
7.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등의 주식에 관하여 다른 법인등이 행하는 다음의 행위시에 주식과 교환으로 모회사주식의 교부를 받는 경우
 - 가. 조직변경
 - 나. 합병
 - 다. 주식교환(법 이외의 법령에 기한 주식교환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라. 주식이전(법 이외의 법령에 기한 주식이전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마. 취득조항부주식(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의 취득
 - 바.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의 취득
8.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등의 신주예약권등을 다른 법인등이 신주예약권등의 정함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과 교환으로 모회사주식의 교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회사주식의 교부를 받는 때
9. 법 제135조 제1항의 자회사인 자(회사는 제외한다)가 행하는 다음의 행위시에 해당자가 그 대가로서 모회사주식을 교부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교부하여야 하는 모회사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어서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가. 조직변경
 - 나. 합병
 - 다. 법 이외의 법령에 기한 흡수분할에 상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다른 법인등이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승계
 - 라. 법 이외의 법령에 기한 주식교환에 상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다른 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의 취득
10. 다른 법인등(회사 및 외국회사는 제외한다)의 사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において、当該他の法人等の有する親会社株式を譲り受けるとき。

十一 合併後消滅する法人等（会社を除く。）から親会社株式を承継する場合

十二 吸収分割又は新設分割に相当する行為により他の法人等（会社を除く。）から親会社株式を承継する場合

十三 親会社株式を発行している株式会社（連結配当規制適用会社に限る。）の他の子会社から当該親会社株式を譲り受ける場合

十四 その権利の実行に当たり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親会社株式を取得することが必要かつ不可欠である場合（前各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

第24条 株式取得者からの承認の請求

1 法第百三十七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株式取得者が、株主として株主名簿に記載若しくは記録がされた者又はその一般承継人に対して当該株式取得者の取得した株式に係る法第百三十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確定判決を得た場合において、当該確定判決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二 株式取得者が前号の確定判決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もの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三 株式取得者が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競売により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競売により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四 株式取得者が組織変更株式交換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五 株式取得者が株式移転（組織変更株式移転を含む。）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六 株式取得者が法第百九十七条第一項 の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同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売却に係る代金の全部を支払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七 株式取得者が株券喪失登録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株

우에 있어서 다른 법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주식을 양수하는 때

11.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등(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모회사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12. 흡수분할 또는 신설분할에 상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다른 법인등(회사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모회사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13. 모회사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연결배당규제적용회사에 한한다)의 다른 자회사로부터 모회사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14. 권리의 실행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전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주식취득자로부터의 승인청구

① 법 제137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취득자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이 된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에 대해 취득한 주식에 관련된 법 제137조 제1항의 청구를 할 것을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확정판결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2. 주식취득자가 전호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3. 주식취득자가 당해주식회사의 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경매로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4. 주식취득자가 조직변경 주식교환에 의하여 당해주식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5. 주식취득자가 주식이전(조직변경 주식이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당해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부를 취득한 주식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6. 주식취득자가 법 제197조 제1항의 주식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7. 주식취득자가 주권상실등록자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주권상실등록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券喪失登録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経過した日以降に、請求をしたとき(株券喪失登録が当該日前に抹消された場合を除く。)

八 株式取得者が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売却に係る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売却に係る代金の全部を支払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が株券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は、法第三百三十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株式取得者が株券を提示して請求をした場合

二 株式取得者が組織変更株式交換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三 株式取得者が株式移転(組織変更株式移転を含む。)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四 株式取得者が法第九十七条第一項の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る競売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売却に係る代金の全部を支払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五 株式取得者が法第二百三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競売又は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売却に係る株式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競売又は当該売却に係る代金の全部を支払っ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第25条 一株当たり純資産額

1 法第四百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基準純資産額を基準株式数で除して得た額に一株当たり純資産額を算定すべき株式についての株式係数を乗じて得た額をもって当該株式の一株当たりの純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2 当該株式会社が算定基準日において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基準純資産額」とあるのは、「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から

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 청구를 한 때(주권상실 등록이 해당일 전에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주식취득자가 법 제234조 제2항 (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매각 주식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매각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주권발행회사인 경우에는 법 제137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취득자가 주권을 제시하여 청구를 한 경우
2. 주식취득자가 조직변경 주식교환에 의하여 당해주식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3. 주식취득자가 주식이전(조직변경 주식이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당해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부를 취득한 주식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4. 주식취득자가 법 제197조 제1항의 주식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5. 주식취득자가 법 제234조 제1항 또는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법 제234조 제2항 (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매각 주식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있어서 경매 또는 매각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제25조 1주당 순자산액

① 법 제141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기준순자산액을 기준주식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에 1주당 순자산액을 산정하여야 할 주식에 관한 주식계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주식의 1주당의 순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주식회사가 산정기준일에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 중 “기준순자산액”을 “법 제4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한 금액에서 부채의 부에 계상한 금액을 제하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負債の部に計上した額を減じて得た額 (零未満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零)」とする。

3 第一項に規定する「基準純資産額」とは、算定基準日における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七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 (零未満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零) をいう。

一 資本金の額

二 資本準備金の額

三 利益準備金の額

四 法第四百四十六条 に規定する剰余金の額

五 最終事業年度 (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 の期間 (当該期間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末日が最も遅いもの)) 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会社の成立の日) における評価・換算差額等に係る額

六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七 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

八 自己株式及び自己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の合計額

4 第一項に規定する「基準株式数」とは、次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数をいう。

一 種類株式発行会社でない場合 発行済株式 (自己株式を除く。) の総数

二 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場合 株式会社が発行している各種類の株式 (自己株式を除く。) の数に当該種類の株式に係る株式係数を乗じて得た数の合計数

5 第一項及び前項第二号に規定する「株式係数」とは、一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おいて、定款である種類の株式についての第一項及び前項の適用に関して当該種類の株式一株を一とは異なる数の株式として取り扱うために一以外の数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数) をいう。

6 第二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算定基準日」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一株当たり純資産額を算定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各号に定める日をいう。

一 法第四百四十一条第二項 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

二 法第四百四十二条第二項 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

三 法第四百四十四条第五項 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

여 얻은 금액(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기준순자산액”이란 산정기준일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7호의 금액을 제하여 얻은 금액(0 미만인 경우에는 0)을 말한다.

1. 자본금
2. 자본준비금
3. 이익준비금
4. 법 제446조의 잉여금
5. 최종사업연도(법 제4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당해 기간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말일이 가장 느린 것))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성립일)에 있어서 평가·환산차액등의 금액
6.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7. 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8. 자기주식 및 자기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④ 제1항의 “기준주식수”란 다음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하는 수를 말한다.

1. 종류주식발행 회사가 아닌 경우 :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은 제외한다)
2. 종류주식발행 회사인 경우 :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각 종류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의 수에 종류주식의 주식계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합계수

⑤ 제1항 및 전항 제2호의 “주식계수”란 1(종류주식발행회사에 있어서 정관으로 어떤 종류주식에 관한 제1항 및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 당해 종류주식 1주를 1과는 다른 수의 주식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1 이외의 수를 정한 경우에는 당해수)을 말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산정기준일”이란 다음 각호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자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각호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141조 제2항 : 동조 제1항의 통지일
2. 법 제142조 제2항 : 동조 제1항의 통지일
3. 법 제144조 제5항 : 법 제141조 제1항의 통지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四 法第百四十四条第七項 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五項 法第百四十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
- 五 法第百六十七条第三項第二号 法第百六十六条第一項 本文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
- 六 法第百九十三条第五項 法第百九十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
- 七 法第百九十四条第四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百九十三条第五項 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の日
- 八 法第二百八十三条第二号 新株予約権の行使の日
- 九 法第七百九十六条第二項第一号イ 吸収合併契約、吸収分割契約又は株式交換契約を締結した日(当該契約により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と異なる時(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後から当該吸収合併、吸収分割又は株式交換の効力が生ずる時の直前までの間の時に限る。))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時)
- 十 法第八百十六条の四第一項第一号イ 株式交付計画を作成した日(当該株式交付計画により当該株式交付計画を作成した日と異なる時(当該株式交付計画を作成した日後から当該株式交付の効力が生ずる時の直前までの間の時に限る。))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時)
- 十一 第三十三条第二号 法第百六十六条第一項 本文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

第26条 承認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場合

法第百四十五条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 一 株式会社が法第百三十九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から四十日 (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以内に法第百四十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期間内に譲渡等承認請求者に対して同条第二項 の書面を交付しなかったとき (指定買取人が法第百三十九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から十日 (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以内に法第百四十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を除く。)
- 二 指定買取人が法第百三十九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から十日 (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以内に法第百四十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期間内に譲渡等承認請求者に対して同条第二項 の書面を交付しなかったとき。

4. 법 제144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5항 : 법 제142조 제1항의 통지일
5. 법 제167조 제3항 제2호 : 법 제166조 제1항 본문의 청구일
6. 법 제193조 제5항 : 법 제192조 제1항의 청구일
7. 법 제19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 제5항 :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일
8. 법 제283조 제2호 : 신주예약권의 행사일
9. 법 제796조 제2항 제1호 가목 : 흡수합병계약, 흡수분할계약 또는 주식교환계약의 체결일(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때(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흡수합병, 흡수분할 또는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에 한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때)
10. 법 제816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주식교부계획을 작성한 날(주식교부계획에 의하여 주식교부계획을 작성한 날과 다른 때(해당 주식교부계획을 작성한 날로부터 주식교부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사이의 시간에 한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시)
11. 제33조 제2호 : 법 제166조 제1항 본문의 청구일

제26조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45조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식회사가 법 제139조 제2항의 통지일로부터 40일(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법 제141조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간 내에 양도등승인청구자에게 동조 제2항의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지정매수인이 법 제139조 제2항의 통지일로부터 10일(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법 제142조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매수인이 법 제139조 제2항의 통지일로부터 10일(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법 제142조 제1항의 통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기간 내에 양도등 승인청구자에게 동조 제2항의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三 譲渡等承認請求者が当該株式会社又は指定買取人との間の対象株式に係る売買契約を解除した場合

第3節 株式会社による自己の株式の取得

第27条 自己の株式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法第百五十五条第十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 一 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無償で取得する場合
- 二 当該株式会社が有する他の法人等の株式（持分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つき当該他の法人等が行う剰余金の配当又は残余財産の分配（これら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交付を受ける場合
- 三 当該株式会社が有する他の法人等の株式につき当該他の法人等が行う次に掲げる行為に際して当該株式と引換えに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交付を受ける場合
 - イ 組織の変更
 - ロ 合併
 - ハ 株式交換（法以外の法令（外国の法令を含む。）に基づく株式交換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
- ニ 取得条項付株式（これに相当する株式を含む。）の取得
- ホ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これに相当する株式を含む。）の取得
- 四 当該株式会社が有する他の法人等の新株予約権等を当該他の法人等が当該新株予約権等の定めに基づき取得することと引換えに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交付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交付を受けるとき。
- 五 当該株式会社が法第百十六条第五項、第百八十二条の四第四項、第四百六十九条第五項、第七百八十五条第五項、第七百九十七条第五項、第八百六条第五項又は第八百十六条の六第五項（これらの規定を株式会社について他の法令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株式買取請求に応じて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場合
- 六 合併後消滅する法人等（会社を除く。）から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承継する場合

3. 양도등승인청구자가 주식회사 또는 지정매수인과 대상주식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27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5조 제1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주식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당해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등의 주식(지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에 관하여 다른 법인등이 행하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이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3. 당해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등의 주식에 관하여 다른 법인등이 행하는 다음의 행위시에 주식과 교환하여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 가. 조직변경
 - 나. 합병
 - 다. 주식교환(법 이외의 법령(외국법령을 포함한다)에 기한 주식교환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라. 취득조항부주식(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의 취득
 - 마.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의 취득
4. 당해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등의 신주예약권등을 다른 법인등이 신주예약권등의 정함에 기하여 취득하는 것과 교환하여 당해주식회사의 주식의 교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의 교부를 받는 때
5. 주식회사가 법 제116조 제5항, 제182조의4 제4항, 제469조 제5항, 제785조 제5항, 제793조 제5항, 제806조 제5항 또는 제816조의6 제5항(이러한 규정을 주식회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등(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七 他の法人等 (会社及び外国会社を除く。) の事業の全部を譲り受ける場合において、当該他の法人等の有す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譲り受けるとき。
- 八 その権利の実行に当たり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ことが必要かつ不可欠である場合 (前各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

第28条 特定の株主から自己の株式を取得する際の通知時期

法第六十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法第一百五十六条第一項 の株主総会の日の二週間前と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時とする。

- 一 法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発すべき時が当該株主総会の日の二週間を下回る期間 (一週間以上の期間に限る。) 前である場合 当該通知を発すべき時
- 二 法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発すべき時が当該株主総会の日の一週間を下回る期間前である場合 当該株主総会の日の一週間前
- 三 法第三百条 の規定により招集の手続を経ることなく当該株主総会を開催する場合 当該株主総会の日の一週間前

第29条 議案の追加の請求の時期

法第六十条第三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法第一百五十六条第一項 の株主総会の日の五日 (定款で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前とする。ただし、前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三日 (定款でこれを下回る期間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期間) 前とする。

第30条 市場価格を超えない額の対価による自己の株式の取得

法第六十一条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同条 に規定する株式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法第一百五十六条第一項 の決議の日の前日における当該株式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法第一百五十六条第一項 の決議の日の前日において当該株式が公開買付け

7. 다른 법인등(회사 및 외국회사는 제외한다)의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법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때
8. 그 권리의 실행에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전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의 통지시기

법 제160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법 제156조 제1항의 주주총회일 2주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규정한 때를 말한다.

1. 법 제299조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때가 주주총회일 2주를 하회하는 기간(1주간 이상의 기간에 한한다)전인 경우 : 통지를 발송하여야 할 때
2. 법 제299조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할 때가 주주총회일 1주를 하회하는 기간 전인 경우 : 주주총회일의 1주전
3. 법 제300조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 주주총회일의 1주전

제29조 의안추가에의 청구시기

법 제160조 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법 제156조 제1항의 주주총회일의 5일(정관에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을 말한다. 다만 전조 각호의 경우에는 3일(정관에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전을 말한다.

제30조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대가로 자기주식의 취득

법 제161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동조의 주식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156조 제1항의 결의일의 전날의 당해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해당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해당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법 제156조 제1항의 결의일의 전날에 주식의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株式の価格

第31条 取得請求権付株式の行使により株式の数に端数が生ずる場合

法第百六十七条第三項第一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同号 に規定する株式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法第百六十六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 (以下この条において「請求日」という。) における当該株式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請求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請求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請求日において当該株式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請求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株式の価格

第32条 取得請求権付株式の行使により市場価格のある社債等に端数が生ずる場合

法第百六十七条第四項 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三項第一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の各号に掲げる財産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もって当該財産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社債 (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もの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請求日」という。) における当該社債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請求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請求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新株予約権 (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
 - イ 請求日における当該新株予約権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請求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請求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ロ 請求日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請求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新株予約権の価格

해당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주식의 가격

제31조 취득청구권부주식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의 수에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동호의 주식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166조 제1항의 청구일(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 이라고 한다)의 당해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청구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청구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청구일에 주식의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청구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주식의 가격

제32조 취득청구권부주식의 행사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있는 사채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16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재산의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당해재산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법 제166조 제1항의 청구일(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 이라고 한다)의 당해사채를 거래 하는 시장의 최종가격(청구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청구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
 - 가. 청구일의 신주예약권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청구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청구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 나. 청구일에 신주예약권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청구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신주예약권의 가격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33条 取得請求権付株式の行使により市場価格のない社債等に端数が生ずる場合

法第百六十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三項第二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額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とする。

- 一 社債について端数がある場合 当該社債の金額
- 二 新株予約権について端数がある場合 当該新株予約権につき会計帳簿に付すべき価額(当該価額を算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当該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各株式についての一株当たり純資産額の合計額から当該新株予約権の行使に際して出資される財産の価額を減じて得た額(零未満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零))

第33条の2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関する事前開示事項

1 法第百七十一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取得対価(法第百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 二 取得対価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
- 三 計算書類等に関する事項
- 四 備置開始日(法第百七十一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をいう。第四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後株式会社が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日までの間に、前三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2 前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法第百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当該定め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定めがないこと)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とする。

- 一 取得対価の総数又は総額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 二 取得対価として当該種類の財産を選択した理由
- 三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取得する株式会社に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は、当該株式会社の株主(当該親会社等を除く。)の利益を害さないように留意した

제33조 취득청구권부주식의 행사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없는 사채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16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사채에 관하여 단수가 있는 경우 : 사채의 금액
2.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단수가 있는 경우 : 신주예약권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부기 하여야 할 가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주예약권의 목적인 각 주식에 관한 1주당 순자산액의 합계액에서 신주예약권의 행사시 출자된 재산의 가액을 제하여 얻은 금액(0 미만인 경우에는 0))

제33조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전공시사항

① 법 제17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취득대가(법 제171조 제1항 제1호의 취득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취득대가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사항
3. 계산서류 등에 관한 사항
4. 비치개시일(법 제171조의2 제1항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제4항 제1호에서 같다) 후 주식회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전부를 취득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전3호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 후의 사항

② 전항 제1호의“취득대가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 그 외의 법 제17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함이 없는 것)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 취득대가의 총수 또는 총액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취득대가로서 당해 종류의 재산을 선택한 이유
3.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주식회사에 모회사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주주(모회사등을 제외한다)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유의한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事項(当該事項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その旨)

四 法第二百三十四条の規定により一に満たない端数の処理をすることが見込まれる場合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

イ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当該処理の方法に関する事項

(1) 法第二百三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いずれの規定による処理を予定しているかの別及びその理由

(2) 法第二百三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処理を予定している場合には、競売の申立てをする時期の見込み(当該見込みに関する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っては、取締役会。(3)及び(4)において同じ。)の判断及びその理由を含む。)

(3) 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理(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による売却に限る。)を予定している場合には、売却する時期及び売却により得られた代金を株主に交付する時期の見込み(当該見込みに関する取締役の判断及びその理由を含む。)

(4) 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理(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による売却を除く。)を予定している場合には、売却に係る株式を買い取る者となると見込まれる者の氏名又は名称、当該者が売却に係る代金の支払のための資金を確保する方法及び当該方法の相当性並びに売却する時期及び売却により得られた代金を株主に交付する時期の見込み(当該見込みに関する取締役の判断及びその理由を含む。)

ロ 当該処理により株主に交付することが見込まれる金銭の額及び当該額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3 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その他これに準ずる事項(法第七十一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これらの事項の全部又は一部の記載又は記録をしないことにつき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取得する株式会社の総株主の同意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同意があったものを除く。)とする。

一 取得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当該株式会社の株式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株式の内容

(당해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

4. 법 제234조에 따라 1주에 미치지 못하는 단수를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의 다음 사항

가. 다음 사항 그 밖의 해당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법 제234조 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규정에 의한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별 및 그 이유

2) 법 제234조 제1항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할 할 시기에 관한 전망(해당 전망에 관한 이사(이사회설치회사에서는 이사회, (3) 및 (4)에서 같다)의 판단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3) 법 제234조 제2항의 처리(시장에서 행하는 거래에 의한 매각에 한한다)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하는 시기 및 매각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시기의 전망(해당 전망에 관한 이사의 판단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4) 법 제234조 제2항의 처리(시장에서 행하는 거래에 의한 매각은 제외한다)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 주식을 매수하는 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해당 자가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및 해당 방법의 상당성과 매각 시기 및 매각으로 얻은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시기에 관한 전망(해당 전망에 관한 이사의 판단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나. 해당 처리에 의하여 주주에게 교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해당 금액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제2호의 “취득대가에 관해 참고가 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그 외의 이에 준하는 사항(법 제171조의2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이러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해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주식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가 있었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취득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식회사의 주식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당해 주식의 내용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ロ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取得対価の換価の方法に関する事項

- (1) 取得対価を取引する市場
- (2) 取得対価の取引の媒介、取次ぎ又は代理を行う者
- (3) 取得対価の譲渡その他の処分に制限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

ハ 取得対価に市場価格があるときは、その価格に関する事項

二 取得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法人等の株式、持分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除く。)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事項(当該事項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表示され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事項(氏名又は名称を除く。)を日本語で表示した事項)

イ 当該法人等の定款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定め

ロ 当該法人等が会社でないときは、次に掲げる権利に相当する権利その他の取得対価に係る権利(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

- (1) 剰余金の配当を受ける権利
- (2) 残余財産の分配を受ける権利
- (3) 株主総会における議決権
- (4) 合併その他の行為がされる場合において、自己の有す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権利
- (5) 定款その他の資料(当該資料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表示したものの)の閲覧又は謄写を請求する権利

ハ 当該法人等が、その株主、社員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者(以下この号において「株主等」という。)に対し、日本語以外の言語を使用して情報の提供を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言語

二 当該株式会社が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日に当該法人等の株主総会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開催があるものと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法人等の株主等が有すると見込まれる議決権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権利の総数

ホ 当該法人等について登記(当該法人等が外国の法令に準拠して設立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法第九百三十三条第一項の外国会社の登記又は外国法人の登記及び夫婦財産契約の登記に関する法律(明治三十一年法律第十四号)第二条の外国法人の登記に限る。)がされていないときは、次に

나. 다음의 사항, 그 외의 취득대가의 환가방법에 관한 사항

- 1) 취득대가를 거래하는 시장
- 2) 취득대가 거래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자
- 3) 취득대가의 양도, 그 외의 처분에 제한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다. 취득대가에 시장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관한 사항

2. 취득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 등의 주식, 지분, 기타 이에 준하는 것(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인 경우 다음의 사항(당해 사항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성명 또는 명칭은 제외한다)을 일본어로 표시한 사항)

가. 법인 등의 정관, 기타 이에 상당하는 정함

나. 법인 등이 회사가 아닌 때에는 다음의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 그 외의 취득대가에 관련된 권리(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 1)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
- 2)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 4) 합병, 그 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
- 5) 정관, 그 외의 자료(자료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 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권리

다. 법인 등이 주주, 직원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해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된 때에는 당해 언어

라. 주식회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전부를 취득하는 날에 법인 등의 주주총회,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의 개최가 있는 것으로 한 경우의 법인등의 주주등이 소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결권 기타 이에 상당하는 권리의 총수

마. 법인 등에 관하여 등기(법인 등이 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법 제933조 제1항의 외국회사의 등기 또는 외국법인의 등기 및 부부재산계약등기에 관한 법률(1898년 법률 제4호) 제2조 외국법인의 등기에 한한다)가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掲げる事項

- (1) 当該法人等を代表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2) 当該法人等の役員(1)に掲げる者を除く。)の氏名又は名称

ヘ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当該法人等が会社以外の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終事業年度に相当するもの。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計算書類(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法人等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当該計算書類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監査委員会、会計監査人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の概要を含む。)

ト 次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次に定める事項

- (1) 当該法人等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に係る事業報告の内容(当該事業報告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の内容を含む。)
- (2) 当該法人等が株式会社以外のものである場合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に係る第百十八条各号及び第百十九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相当する事項の内容の概要(当該事項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監査委員会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の概要を含む。)

チ 当該法人等の過去五年間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各事業年度(次に掲げる事業年度を除く。)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

- (1) 最終事業年度
- (2)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につき、法令の規定に基づく公告(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 の措置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を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 (3)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につき、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リ 前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ヌ 取得対価が自己株式の取得、持分の払戻し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方法により払戻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手続に関する事項

- 1) 법인등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법인 등의 임원(1)의 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 바.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법인 등이 회사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최종사업연도에 상당하는 것.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련된 계산서류(최근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설립일의 대차대조표),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것의 내용(계산서류,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에 관해 감사, 감사등위원회,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인,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것의 내용의 개요를 포함한다)

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 사항

- 1) 법인 등이 주식인 경우 :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사업보고의 내용 (사업보고에 관해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의 내용을 포함한다)
 - 2) 법인 등이 주식회사 이외의 것인 경우 :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에 관련된 제118조 각 호 및 제119조 각 호의 사항에 상당하는 사항의 내용의 개요(당해 사항에 관해 감사, 감사등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 기타 이에 상당하는 내용의 개요를 포함한다)
- 아. 법인 등의 과거 5년간 그 말일이 도래한 각 사업연도(다음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
- 1) 최종사업연도
 - 2) 사업연도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에 관해 법령의 규정에 기한 공고(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사업연도
 - 3) 특정 사업연도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에 관해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사업연도

자. 전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차. 취득대가가 자기주식의 취득, 지분의 환불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절차에 관한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三 取得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当該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場合 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四 取得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法人等の社債、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当該株式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を除く。)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事項(当該事項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表示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項(氏名又は名称を除く。)を日本語で表示した事項)

イ 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ロ 第二号イ及びホからチまでに掲げる事項

五 取得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当該株式会社その他の法人等の株式、持分、社債、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及び金銭以外の財産である場合 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4 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計算書類等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取得する株式会社(清算株式会社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備置開始日後当該株式会社が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全部を取得す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二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取得する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当該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第33条の3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関する事後開示事項

法第七十三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株式会社が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全部を取得した日

二 法第七十一条の三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三 法第七十二条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四 株式会社が取得した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数

3. 취득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식회사의 사채,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인 경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4. 취득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등의 사채,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주식회사의 사채,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는 제외한다)인 경우 : 다음의 사항(당해 사항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성명 또는 명칭은 제외한다)을 일본어로 표시한 사항)
 - 가. 제1호의 나목과 다목의 사항
 - 나. 제2호 나목 및 마목에서 아목까지의 사항
 5. 취득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식회사, 그 이외의 법인 등의 주식, 지분, 사채,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및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 ④ 제1항 제3호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주식회사(청산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최종사업연도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기타 회사의 재산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비치개시일 이후 주식회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전부를 취득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새로운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내용에 한한다)
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한 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제33조의3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후공시사항

법 제10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주식회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전부를 취득한 날
2. 법 제171조의3의 청구에 관한 절차의 경과
3. 법 제172조의 절차의 경과
4. 주식회사가 취득한 전부취득조항부종류 주식의 수

第3節の2 特別支配株主の株式等売渡請求

第33条の4 特別支配株主完全子法人

- 1 法第七百七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法人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七百七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がその持分の全部を有する法人(株式会社を除く。)
 - 二 法第七百七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及び特定完全子法人(当該者が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株式会社及び前号に掲げる法人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又は特定完全子法人がその持分の全部を有する法人
- 2 前項第二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に掲げる法人は、同号に規定する特定完全子法人とみなす。

第33条の5 株式等売渡請求に際して特別支配株主が定めるべき事項

- 1 法第七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六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株式売渡対価(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その新株予約権売渡請求に係る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法第七百七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含む。以下同じ。))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株式売渡対価及び新株予約権売渡対価)の支払のための資金を確保する方法
 - 二 法第七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のほか、株式等売渡請求に係る取引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取引条件
- 2 前項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売渡対価」とは、法第七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二号の金銭をいう(第三十三条の七第一号イ及び第二号において同じ。)
- 3 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売渡対価」とは、法第七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四号ロの金銭をいう(第三十三条の七第一号イ及び第二号において同じ。)

第33条の6 売渡株主等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

- 法第七百七十九条の四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前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とする。

제3절의2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제33조의4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

- ① 법 제1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법 제179조 제1항의 자가 그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법인(주식회사는 제외한다)
 2. 법 제179조 제1항의 자 및 특정완전자법인(당해 자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및 전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완전자법인이 그 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법인
- ② 전항 제2호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호의 법인은 동호의 특정완전자법인으로 본다.

제33조의5 주식등매도청구시 특별지배주주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

- ① 법 제79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주식매도대가(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신주예약권매도청구에 관련된 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것인 경우에 법 제179조 제3항에 의한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도대가 및 신주예약 권매도대가)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2. 법 제17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주식등매도청구에 관련된 거래조건을 정하는 때에는 그 거래조건
- ② 제1항 제1호의 “주식매도대가”는 법 제179조의2 제1항 제2호의 금전을 말한다(제33조의7 제1호 가목 및 라목에서 같다).
- ③ 제1항 제1호의 “신주예약권매도대가”는 법 제179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금전을 말한다(제33조의7 제1호 가목 및 제2호에서 같다).

제33조의6 매도주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 법 제17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조 제1항 제2호의 사항으로 한다.

第33条の7 対象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百七十九条の五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法第百七十九条の二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する場合にあつては、同項第二号及び第三号並びに第四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当該相当性に関する対象会社の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次号及び第三号において同じ。)の判断及びその理由を含む。)
 - イ 株式売渡対価の総額(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する場合にあつては、株式売渡対価の総額及び新株予約権売渡対価の総額)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 ロ 法第百七十九条の三第一項の承認に当たり売渡株主等の利益を害さないように留意した事項(当該事項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その旨)
- 二 第三十三条の五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相当性その他の株式売渡対価(株式売渡請求に併せて新株予約権売渡請求をする場合にあつては、株式売渡対価及び新株予約権売渡対価)の交付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当該見込みに関する対象会社の取締役の判断及びその理由を含む。)
- 三 第三十三条の五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ときは、当該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当該相当性に関する対象会社の取締役の判断及びその理由を含む。)
- 四 対象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対象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対象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法第百七十九条の四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通知の日又は同条第二項の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次号において「備置開始日」という。))後特別支配株主が売渡株式等の全部を取得す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 ロ 対象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対象会社の成立の日にお

제33조의7 대상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179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다음의 사항, 그 외 법 제179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상당성에 관한 대상회사의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다음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판단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가. 주식매도대가의 총액(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도대가의 총액 및 신주예약권매도대가의 총액)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79조의3 제1항의 승인에 즈음하여 매도주주 등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유의한 한 사항 (당해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

2. 제33조의5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 그 외의 주식매도대가(주식매도청구와 함께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도대가 및 신주예약권매도대가)의 교부 예정에 관한 사항(당해 예정에 관한 대상회사 이사의 판단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3. 제33조의5 제1항 제2호의 사항에 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당해 상당성에 대하여 대상 회사의 이사판단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4. 대상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대상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설립일) 후에 중요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기타 회사재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법 제179조의4 제1항 제1호의 통지일 또는 동조 제2항의 공고일 중에서 빠른 날(다음 호에서 “비치게시일”이라 한다) 후 특별지배주주가 매도주식 등의 전부를 취득하는 날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새로운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발생한 사실의 내용에 한한다)

나. 대상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대상회사의 성립일에 있어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ける貸借対照表

五 備置開始日後特別支配株主が売渡株式等の全部を取得する日までの間に、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33条の8 対象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百七十九条の十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特別支配株主が売渡株式等の全部を取得した日
- 二 法第百七十九条の七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三 法第百七十九条の八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四 株式売渡請求により特別支配株主が取得した売渡株式の数(対象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売渡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五 新株予約権売渡請求により特別支配株主が取得した売渡新株予約権の数
- 六 前号の売渡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各社債(特別支配株主が新株予約権売渡請求により取得したものに限る。)の金額の合計額
-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株式等売渡請求に係る売渡株式等の取得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3節の3 株式の併合

第33条の9 株式の併合に関する事前開示事項

法第百八十二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法第百八十条第二項第一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
 - イ 株式の併合をする株式会社に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は、当該株式会社の株主(当該親会社等を除く。)の利益を害さないように留意した事項(当該事項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その旨)
 - ロ 法第二百三十五条の規定により一株に満たない端数の処理をすることが

서의 대차대조표

5. 비치개시일후 특별지배주주가 매도주식 등의 전부를 취득하는 날까지 전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 후의 당해사항

제33조의8 대상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179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특별지배주주가 매도주식등의 전부를 취득한 날
2. 법 제179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3. 법 제179조의8에 의한 절차의 경과
4. 주식매도청구에 의하여 특별지배주주가 취득한 매도주식의 수(대상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경우에는 매도주식의 종류 및 종류주식별 수)
5. 신주예약권매도청구에 의하여 특별지배주주가 취득한 매도신주예약권의 수
6. 전호의 매도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것인 경우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각 사채(특별지배주주가 신주예약권매도청구로 취득한 것에 한한다) 금액의 합계액
7. 전 각호의 것 외에 주식등매도청구에 관련된 매도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절의3 주식병합

제33조의9 주식병합에 관한 사전공시사항

법 제18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다음의 사항, 그 외의 법 제18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합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235조에 따라 1주에 미치지 못하는 단수를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다음 사항
 - 나. 법 제235조에 따라 1주에 미치지 않는 단수를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경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見込まれる場合における当該処理の方法に関する事項、当該処理により株主に交付することが見込まれる金銭の額及び当該額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1)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当該処理の方法に関する事項

- i) 法第二百三十五条第一項又は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のいずれの規定による処理を予定しているかの別及びその理由
- ii) 法第二百三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処理を予定している場合には、競売の申立てをする時期の見込み(当該見込みに関する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っては、取締役会。(iii)及び(iv)において同じ。)の判断及びその理由を含む。)
- iii) 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理(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による売却に限る。)を予定している場合には、売却する時期及び売却により得られた代金を株主に交付する時期の見込み(当該見込みに関する取締役の判断及びその理由を含む。)
- iv) 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理(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による売却を除く。)を予定している場合には、売却に係る株式を買い取る者となると見込まれる者の氏名又は名称、当該者が売却に係る代金の支払のための資金を確保する方法及び当該方法の相当性並びに売却する時期及び売却により得られた代金を株主に交付する時期の見込み(当該見込みに関する取締役の判断及びその理由を含む。)

2) 当該処理により株主に交付することが見込まれる金銭の額及び当該額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二 株式の併合をする株式会社(清算株式会社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備置開始日(法第百八十二条の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早い日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後株式の併合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まで

우에 다음 사항

1) 다음 사항 그 밖에 해당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i) 법 제23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34조 제2항 중 어느 규정에 의한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별 및 그 이유

ii) 법 제235조 제1항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을 하는 시기에 관한 전망(해당 전망에 관한 이사(이사회설치회사에서는 이사회. (iii) 및 (iv)에서 같다)의 판단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iii) 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한 처리(시장에서 행하는 거래에 의한 매각에 한한다)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하는 시기 및 매각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시기에 관한 전망(해당 전망에 관한 이사의 판단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iv) 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한 처리(시장에서 행하는 거래에 의한 매각은 제외한다)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 주식을 매수하는 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해당자가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및 해당 방법의 상당성과 매각 시기 및 매각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하는 시기에 관한 전망(해당 전망에 관한 이사의 판단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2) 해당 처리에 의하여 주주에게 교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의 금액 및 해당 금액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주식병합을 하는 주식회사(청산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성립일)후에 중요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 부담, 기타 회사재산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비치개시일 (법 제182조의2 제1항 각 호의 날 중에 빠른 날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후부터 주식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의 사이에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当該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当該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三 備置開始日後株式の併合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までの間に、前二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33条の10 株式の併合に関する事後開示事項

法第百八十二条の六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株式の併合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法第百八十二条の三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三 法第百八十二条の四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四 株式の併合が効力を生じた時における発行済株式(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法第百八十条第二項第三号の種類の発行済株式)の総数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株式の併合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4節 単元株式数

第34条 単元株式数

法第百八十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数は、千及び発行済株式の総数の二百分の一に当たる数とする。

第35条 単元未満株式についての権利

1 法第百八十九条第二項第六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権利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三十一条第二項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権利
- 二 法第百二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主名簿記載事項(法第百五十四条の二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株主の有する株式が信託財産に属する旨を含む。)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又は当該株主名簿記載事項を記録した電磁的記録の提供を請求する権利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새로운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내용에 한한다)

나. 주식회사에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3. 비치개시일후 주식병합의 효력 발생 일사이에 전2호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후의 당해사항

제33조의10 주식병합에 관한 사후공시사항

법 제182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법 제182조의3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3. 법 제182조의4의 절차의 경과
4.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때의 발행 주식(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180조 제2항 제3호의 종류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전 각호의 것 외에 주식병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절 단원주식수

제34조 단원주식수

법 제188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란 1,000 및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한다.

제35조 단원미만주식에 관한 권리

① 법 제189조 제2항 제6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31조 제2항 각호의 청구를 할 권리
2.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 기재사항(법 제154조의2 제3항의 경우에는 당해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뜻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주주명부 기재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三 法第二百二十五条第二項 各号に掲げる請求をする権利
- 四 法第三百三十三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請求 (次に掲げる事由により取得した場合における請求に限る。) をする権利
 - イ 相続その他の一般承継
 - ロ 株式売渡請求による売渡株式の全部の取得
 - ハ 吸収分割又は新設分割による他の会社と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承継
 - ニ 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による他の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の取得
 - ホ 法第九十七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売却
 - ヘ 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 (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る売却
 - ト 競売
- 五 法第三百三十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請求(前号イからトまでに掲げる事由により取得した場合における請求に限る。)をする権利
- 六 株式売渡請求により特別支配株主が売渡株式の取得の対価として交付する金銭の交付を受ける権利
- 七 株式会社が行う次に掲げる行為により金銭等の交付を受ける権利
 - イ 株式の併合
 - ロ 株式の分割
 - ハ 新株予約権無償割当て
 - ニ 剰余金の配当
 - ホ 組織変更
- 八 株式会社が行う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により当該各号に定める者が交付する金銭等の交付を受ける権利
 - イ 吸収合併 (会社以外の者を行う合併を含み、合併により当該株式会社が消滅する場合に限る。) 当該吸収合併後存続するもの
 - ロ 新設合併 (会社以外の者を行う合併を含む。) 当該新設合併により設立されるもの
 - ハ 株式交換 株式交換完全親会社
 - ニ 株式移転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株式会社が株券発行会社である場合には、法第百八

3. 법 제125조 제2항 각호의 청구를 할 권리
 4. 법 제133조 제1항의 청구(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청구에 한한다)를 할 권리
 - 가.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 나. 주식매도청구에 의한 매도주식의 전부취득
 - 다. 흡수분할 또는 신설분할로 다른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의무의 승계
 - 라.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부의 취득
 - 마. 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
 - 바. 법 제234조 제2항(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매각
 - 사. 경매
 5. 법 제137조 제1항의 청구(전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의 청구에 한한다)를 할 권리
 6. 주식매도청구에 의해 특별지배주주가 매도주식의 취득대가로서 교부하는 금전을 받을 권리
 7. 주식회사가 행한 다음의 행위에 의하여 금전등의 교부를 받을 권리
 - 가. 주식의 병합
 - 나. 주식의 분할
 - 다. 신주예약권 무상 배정
 - 라. 잉여금의 배당
 - 마. 조직변경
 8. 주식회사가 행한 다음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교부하는 금전등의 교부를 받을 권리
 - 가. 흡수합병(회사 이외의 자와 행한 합병을 포함하고, 합병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흡수합병후존속하는 것
 - 나. 신설합병(회사 이외의 자와 행한 합병을 포함한다):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
 - 다. 주식교환 : 주식교환완전모회사
 - 라. 주식이전 :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가 주권발행회사인 경우에는 법 제189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十九条第二項第六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権利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前項第一号、第三号及び第六号から第八号までに掲げる権利
- 二 法第百三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権利
- 三 法第百三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権利
- 四 法第百八十九条第三項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ける法第百二十五条第四項及び第二百十七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株券の発行を請求する権利
- 五 法第百八十九条第三項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ける法第二百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券の所持を希望しない旨の申出をする権利

第36条 市場価格のある単元未満株式の買取りの価格

法第百九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同号に規定する株式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法第百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の日（以下この条において「請求日」という。）における当該株式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当該請求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請求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請求日において当該株式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請求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株式の価格

第37条 市場価格のある単元未満株式の売渡しの価格

法第百九十四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百九十三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に係る株式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の日（以下この条において「請求日」という。）における当該株式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当該請求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請求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請求日において当該株式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請求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株式の価格

조 제2항 제6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권리
2. 법 제133조 제1항의 청구를 할 권리
3. 법 제137조 제1항의 청구를 할 권리
4. 법 제189조 제3항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법 제215조 제4항 및 제2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권리
5. 법 제189조 제3항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법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소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뜻의 신청을 할 권리

제36조 시장가격이 있는 단원미만주식의 매수가격

법 제193조 제1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동호의 주식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192조 제1항의 청구일(이하 이 조에 있어서 “청구일” 이라고 한다)의 해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청구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청구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청구일에 주식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청구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주식의 가격

제37조 시장가격이 있는 단원미만주식의 매도가격

법 제19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 제1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의 주식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일(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 이라고 한다)의 당해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청구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청구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청구일에 주식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청구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주식의 가격

第5節 株主に対する通知の省略等

第38条 市場価格のある株式の売却価格

法第百九十七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もって同項 に規定する株式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当該株式を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によって売却する場合 当該取引によって売却する価格
-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
 - イ 法第百九十七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日 (以下この条において「売却日」という。) における当該株式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売却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売却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ロ 売却日において当該株式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売却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株式の価格

第39条 公告事項

法第百九十八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百九十七条第一項 の株式 (以下この条において「競売対象株式」という。) の競売又は売却をする旨
- 二 競売対象株式の株主として株主名簿に記載又は記録がされた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三 競売対象株式の数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競売対象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四 競売対象株式につき株券が発行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株券の番号

第6節 募集株式の発行等

第40条 募集事項の通知等を要しない場合

法第二百一条第五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株式会社が同条第

제5절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등

제38조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의 매각가격

법 제197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동항의 주식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주식을 시장거래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거래에 의한 매각가격
2. 전호의 규정 이외의 경우 :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
 - 가. 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매각일” 이라고 한다)의 당해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매각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 나. 매각일에 주식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매각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주식의 가격

제39조 공고사항

법 제198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197조 제1항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경매대상주식” 이라고 한다)의 경매 또는 매각을 하는 뜻
2. 경매대상주식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이 된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3. 경매대상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경매대상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4. 경매대상주식의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때에는 주권의 번호

제6절 모집주식의 발행 등

제40조 모집사항의 통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주식회사가 동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三項に規定する期日の二週間前までに、金融商品取引法 の規定に基づき次に掲げる書類(同項 に規定する募集事項に相当する事項をその内容とするものに限る。)の届出又は提出をしている場合(当該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同法の規定に基づき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場合を含む。)であって、内閣総理大臣が当該期日の二週間前の日から当該期日まで継続して同法の規定に基づき当該書類を公衆の縦覧に供しているときとする

- 一 金融商品取引法第四条第一項 から第三項 までの届出をする場合における同法第五条第一項 の届出書 (訂正届出書を含む。)
- 二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三条の三第一項 に規定する発行登録書及び同法第二十三条の八第一項 に規定する発行登録追補書類 (訂正発行登録書を含む。)
- 三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有価証券報告書 (訂正報告書を含む。)
- 四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の四の七第一項 に規定する四半期報告書 (訂正報告書を含む。)
- 五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の五第一項 に規定する半期報告書 (訂正報告書を含む。)
- 六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の五第四項 に規定する臨時報告書 (訂正報告書を含む。)

第41条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

法第二百三条第一項第四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発行可能株式総数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各種類の株式の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を含む。)
- 二 株式会社 (種類株式発行会社を除く。) が発行する株式の内容として法第一百七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ているときは、当該株式の内容
- 三 株式会社 (種類株式発行会社に限る。) が法第一百八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内容の異なる株式を発行することとしているときは、各種類の株式の内容 (ある種類の株式につき同条第三項 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定款の定めにより株式会社が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を定めていないときは、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の要綱)

조 제3항의 기일의 2주간 전까지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에 기하여 다음의 서류(동항의 모집 사항에 상당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의 신고 또는 제출을 하고 있는 경우(당해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내각총리대신이 당해 기일의 2주간 전의 날부터 당해 기일까지 계속하여 동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서류를 공중의 종람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때로 한다.

1. 금융상품거래법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2. 금융상품거래법 제23조의3 제1항의 발행등록서 및 동법 제23조의8 제1항의 발행등록추보서류(정정발행등록서를 포함한다)
3.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의 유가증권보고서(정정보고서를 포함한다)
4.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의4의7 제1항의 4분기 보고서(정정보고서를 포함한다)
5.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의5 제1항의 반기보고서(정정보고서를 포함한다)
6.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의5 제4항의 임시보고서(정정 보고서를 포함한다)

제41조 청약에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법 제203조 제1항 제4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가능주식총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능 종류주식총수를 포함한다)
2. 주식회사(종류주식발행회사는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으로 법 10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내용
3. 주식회사(종류주식발행회사에 한한다)가 법108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 때에는 각 종류주식의 내용(어느 종류주식에 관하여 동조 제3항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종류주식의 내용의 요강)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四 単元株式数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単元株式数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各種類の株式の単元株式数)
- 五 次に掲げる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規定
- イ 法第百三十九条第一項、第百四十条第五項又は第百四十五条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ロ 法第百六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ハ 法第百六十七条第三項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ニ 法第百六十八条第一項 又は第百六十九条第二項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ホ 法第百七十四条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ヘ 法第百四十七条 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ト 第二十六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六 株主名簿管理人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営業所
- 七 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規定
- 八 定款に定められた事項 (法第百三条第一項第一号 から第三号 まで及び前各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 であつて、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が当該者に対して通知することを請求した事項

第42条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する通知を要しない場合

法第百三条第四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であつて、株式会社が同条第一項 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同項 各号に掲げる事項を提供している場合とする。

- 一 当該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 の規定に基づき目論見書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場合
- 二 当該株式会社が外国の法令に基づき目論見書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いる場合

第42条の2 株主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

法第百六条の二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特定引受人(法第百六条の二第一項 に規定する特定引受人をいう。以下こ

4. 단원주식수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단원주식수(종류주식발행 회사의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단원주식수)
5. 다음에 규정하는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 가. 법 제139조 제1항, 제140조 제5항, 제14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정관의 정함
 - 나. 법 제164조 제1항의 정관의 정함
 - 다. 법 제167조 제3항의 정관의 정함
 - 라. 법 제168조 제1항 또는 제169조 제2항의 정관의 정함
 - 마. 법 제174조의 정관의 정함
 - 바. 법 제347조의 정관의 정함
 - 사. 제26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정관의 정함
6. 주주명부 관리인을 두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영업소
7.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취지에 관해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8. 정관에 정해진 사항(법 제2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전 각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당해주식회사에 대하여 모집주식의 인수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가 당해자(자신)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한 사항

제42조 청약할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3조 제4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로 주식회사가 동조 제1항의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동항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2. 당해주식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제42조의2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법 제206조의2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특정인수인(법 제206조의2 제1항의 특정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 の条において同じ。)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二 特定引受人(その子会社等を含む。第五号及び第七号において同じ。)がその引き受けた募集株式の株主となった場合に有することとなる議決権の数
- 三 前号の募集株式に係る議決権の数
- 四 募集株式の引受人の全員がその引き受けた募集株式の株主となった場合における総株主の議決権の数
- 五 特定引受人に対する募集株式の割当て又は特定引受人との間の法第二百五条第一項の契約の締結に関する取締役会の判断及びその理由
- 六 社外取締役を置く株式会社において、前号の取締役会の判断が社外取締役の意見と異なる場合には、その意見
- 七 特定引受人に対する募集株式の割当て又は特定引受人との間の法第二百五条第一項の契約の締結に関する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の意見

第42条の3 株主に対する通知を要しない場合

法第二百六条の二第三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株式会社が同条第一項に規定する期日の二週間前までに、金融商品取引法の規定に基づき第四十条各号に掲げる書類(前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相当する事項をその内容とするものに限る。)の届出又は提出をしている場合(当該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同法の規定に基づき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場合を含む。)であって、内閣総理大臣が当該期日の二週間前の日から当該期日まで継続して同法 の規定に基づき当該書類を公衆の縦覧に供しているときとする。

第42条の4 株主に対する通知を要しない場合における反対通知の期間の初日

法第二百六条の二第四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日は、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の規定に基づき前条の書類の届出又は提出(当該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同法 の規定に基づき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提供)をした日とする。

第43条 検査役の調査を要しない市場価格のある有価証券

法第二百七条第九項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

- 같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특정인수인(자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5호 및 제7호에서 같다)이 인수한 모집주식의 주주가 된 경우에 소유하게 되는 의결권의 수
 3. 전호의 모집주식의 의결권의 수
 4. 모집주식의 인수인 전원이 인수한 모집주식의 주주가 되는 경우의 총주주의 의결권의 수
 5. 특정인수인에 대한 모집주식의 배정 또는 특정인수인간의 법 제205조 제1항의 계약체결에 관한 이사회판단 및 그 이유
 6. 사외이사를 둔 주식회사에서 전호의 이사회판단이 사외이사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의견
 7. 특정인수인에 대한 모집주식의 배정 또는 특정인수인간의 법 제205조 제1항의 계약체결에 관한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

제42조의3 주주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법 제20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주식회사가 동조 제1항의 기일의 2주간 전까지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40조 각 호의 서류(전조 각 호의 사항에 상당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의 신고 또는 제출한 경우(당해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내각총리대신이 당해 기일의 2주간 전일부터 당해 기일까지 계속하여 동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서류를 공중의 종람에 제공하고 있는 때로 한다.

제42조의4 주주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반대통지기간의 초일

법 제20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은 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전조의 서류의 신고 또는 제출(당해 서류에 기재할 사항을 동법의 규정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로 한다.

제43조 검사인의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법 제207조 제9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금액 중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同号 に規定する有価証券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法第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 の価額を定めた日 (以下この条において「価額決定日」という。) における当該有価証券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価額決定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価額決定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価額決定日において当該有価証券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価額決定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有価証券の価格

第44条 出資された財産等の価額が不足する場合に責任をとるべき取締役等

法第二百十三条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現物出資財産 (法第二百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現物出資財産をいう。以下この条から第四十六条までにおいて同じ。) 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及び執行役
- 二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ときは、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現物出資財産の価額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た取締役及び執行役
- 三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ときは、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第45条

法第二百十三条第一項第二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株主総会に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
- 二 前号の議案の提案の決定に同意した取締役 (取締役会設置会社の取締役を除く。)
- 三 第一号の議案の提案が取締役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높은 금액을 동호의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199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을 정한 날(이하 이조에서 “가액결정일” 이라고 한다)의 당해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가액결정일에 매매 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가액결정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가액결정일에 유가증권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가액결정일의 공개 매수 등의 계약상의 유가증권의 가격

제44조 출자된 재산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에 책임을 져야할 이사 등

법 제213조 제1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현물출자재산(법 제207조 제1항의 현물출자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로 부터 제46조까지 같다)의 가액 결정에 관한 직무를 행한 이사 및 집행임원
2.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당해 주주총회에서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한 이사 및 집행임원
3.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당해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

제45조

제45조 법 제213조 제1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 현물출자재산의 가액 결정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2. 전호의 의안의 제안결정에 동의한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의 의안의 제안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행해진 때에는 당해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第46条

法第二百十三条第一項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取締役会に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及び執行役とする。

第46条の2 出資の履行の仮装に関して責任をとるべき取締役等

法第二百十三条の三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出資の履行(法第二百八条第三項 に規定する出資の履行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仮装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及び執行役
- 二 出資の履行の仮装が取締役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次に掲げる者
 - イ 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 ロ 当該取締役会に当該出資の履行の仮装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及び執行役
- 三 出資の履行の仮装が株主総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次に掲げる者
 - イ 当該株主総会に当該出資の履行の仮装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
 - ロ イの議案の提案の決定に同意した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の取締役を除く。)
 - ハ イの議案の提案が取締役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 ニ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出資の履行の仮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た取締役及び執行役

第7節 株 券

第47条 株券喪失登録請求

- 1 法第二百二十三条の規定による請求(以下この条において「株券喪失登録請求」という。)は、この条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券喪失登録請求は、株券喪失登録請求をする者(次項において「株券喪失登録請求者」という。)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喪失した株券の番号を明

제46조

법 제213조 제1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사회에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 결정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및 집행임원을 말한다.

제46조의2 출자의 이행가장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이사 등

법 제21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출자이행(법 제208조 제3항의 출자이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장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사 및 집행임원
2. 출자이행가장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의 자

가.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

나. 이사회에서 출자이행가장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및 집행임원

3. 출자이행가장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의 자

가. 주주총회에 출자이행가장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나. 가목의 의안의 제안 결정에 동의한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이사는 제외한다)

다. 가목의 의안제안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이사

라. 주주총회에서 출자이행가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한 이사 및 집행임원

제7절 주권**제47조 주권상실등록청구**

① 법 제223조의 청구(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실등록청구” 라고 한다)는 이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실등록청구는 주권상실등록청구를 하는 자(다음 항에 있어서 “주권상실등록청구자” 라고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상실한 주권의 번호를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株券喪失登録請求者が株券喪失登録請求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資料を株式会社に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券喪失登録請求者が当該株券に係る株式の株主又は登録株式質権者として株主名簿に記載又は記録がされている者である場合 株券の喪失の事実を証する資料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次に掲げる資料

イ 株券喪失登録請求者が株券喪失登録請求に係る株券を、当該株券に係る株式につき法第二百二十一条第三号 の取得の日として株主名簿に記載又は記録がされている日以後に所持していたことを証する資料

ロ 株券の喪失の事実を証する資料

4 株券喪失登録に係る株券が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経過措置を定める政令（平成十七年政令第三百六十七号）第二条の規定により法第二百二十一条第三号 の規定が適用されない株式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前項第二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次に」とあるのは、「ロに」とする。

第48条 株券を所持する者による抹消の申請

法第二百二十五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申請は、株券を提示し、当該申請を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49条 株券喪失登録者による抹消の申請

法第二百二十六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申請は、当該申請をする株券喪失登録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当該申請に係る株券喪失登録がされた株券の番号を明らかに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節 雑則

第50条 株式の発行等により一に満たない株式の端数を処理する場合における市場価格

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실등록청구자가 주권상실등록청구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주식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권상실등록청구자가 당해주권에 관한 주식의 주주 또는 등록주식질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자인 경우 : 주권상실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전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 : 다음의 자료

가. 주권상실등록청구자가 주권상실등록청구의 대상인 주권을 당해 주권에 관한 주식의 법 제121조 제3호의 취득일로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날 이후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자료

나. 주권상실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4. 주권상실등록대상인 주권이 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정한 시행령(2005년 정령 제367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식인 경우 전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호 중 “다음에” 는 “나목에” 로 한다.

제48조 주권 소지인에 의한 말소의 신청

법 제225조 제1항의 신청은 주권을 제시하고, 신청을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9조 주권상실등록자에 의한 말소의 신청

법 제226조 제1항의 신청은 당해 신청을 하는 주권상실등록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신청의 대상인 주권상실등록이 된 주권의 번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절 잡칙

제50조 주식의 발행등에 의하여 1주에 미달하는 주식의 단수를 처리하는 경우의 시장가액

법 제234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第2編 株式会社

第2章 株式

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もって同項に規定する株式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当該株式を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によって売却する場合 当該取引によって売却する価格
-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
 - イ 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日 (以下この条において「売却日」という。) における当該株式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売却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売却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ロ 売却日において当該株式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売却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株式の価格

第51条 一に満たない社債等の端数を処理する場合における市場価格

法第二百三十四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もって同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財産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法第二百三十四条第六項に規定する社債又は新株予約権を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によって売却する場合 当該取引によって売却する価格
-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社債 (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社債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を売却するとき 法第二百三十四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日 (以下この条において「売却日」という。) における当該社債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売却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売却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三 第一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新株予約権 (当該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を売却するとき 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
 - イ 売却日における当該新株予約権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売却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売却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동항의 주식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주식을 시장거래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 당해거래에 의하여 매각하는 가격

2. 전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 :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

가. 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매각일” 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매각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나. 매각일에 주식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매각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주식의 가격

제51조 1에 미달하는 사채등의 단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가격

법 제23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234조 제6항의 사채 또는 신주예약권을 시장거래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당해거래에 의하여 매각하는 가격

2. 전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로 사채(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련된 사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매각하는 때 : 법 제23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매각일” 이라고 한다)의 당해사채를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매각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3. 제1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로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것인 경우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매각하는 때 :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

가. 매각일의 신주예약권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매각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ロ 売却日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売却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新株予約権の価格

第52条 株式の分割等により一に満たない株式の端数を処理する場合における市場価格

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をもって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 に規定する株式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当該株式を市場において行う取引によって売却する場合 当該取引によって売却する価格
-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
 - イ 法第二百三十五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百三十四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り売却する日 (以下この条において「売却日」という。) における当該株式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売却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売却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ロ 売却日において当該株式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売却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株式の価格

第3章 新株予約権

第53条 募集事項の通知等を要しない場合

法第二百四十条第四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株式会社が割当日(法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割当日をいう。第五十五条の四において同じ。)の二週間前までに、金融商品取引法の規定に基づき次に掲げる書類(法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募集事項に相当する事項をその内容とするものに限る。)の届出又は提出をしている場合(当該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

거래의 성립가격)

나. 매각일에 신주예약권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매각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신주예약권의 가격

제52조 **주식의 분할등에 의한 1주에 미달하는 주식의 단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가격**

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34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34조 제2항의 주식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주식을 시장거래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 당해거래에 의하여 매각하는 가격
2. 전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 :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
 - 가. 법 제23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매각일” 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 가격(매각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매각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나. 매각일에 주식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매각일의 공개매수등의 계약상의 주식의 가격

제3장 신주예약권

제53조 **모집사항의 통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4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주식회사의 배정일(법 제238조 제1항 제4호의 배정일을 말한다. 제55조의 4에서 같다)의 2주간 전까지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서류(법 제238조 제1항의 모집사항에 상당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의 신고 또는 제출하고 있는 경우(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を同法の規定に基づき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場合を含む。)であって、内閣総理大臣が当該割当日の二週間前の日から当該割当日まで継続して同法の規定に基づき当該書類を公衆の縦覧に供しているときとする

- 一 金融商品取引法第四条第一項 から第三項 までの届出をする場合における同法第五条第一項 の届出書 (訂正届出書を含む。)
- 二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三条の三第一項 に規定する発行登録書及び同法第二十三条の八第一項 に規定する発行登録追補書類 (訂正発行登録書を含む。)
- 三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有価証券報告書 (訂正報告書を含む。)
- 四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の四の七第一項 に規定する四半期報告書 (訂正報告書を含む。)
- 五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の五第一項 に規定する半期報告書 (訂正報告書を含む。)
- 六 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の五第四項 に規定する臨時報告書 (訂正報告書を含む。)

第54条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

法第二百四十二条第一項第四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発行可能株式総数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各種類の株式の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を含む。)
- 二 株式会社 (種類株式発行会社を除く。) が発行する株式の内容として法第一百七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ているときは、当該株式の内容
- 三 株式会社 (種類株式発行会社に限る。) が法第百八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き内容の異なる株式を発行することとしているときは、各種類の株式の内容 (ある種類の株式につき同条第三項 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定款の定めにより株式会社が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を定めていないときは、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の要綱)
- 四 単元株式数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単元株式数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各種類の株式の単元株式数)

동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내각총리대신이 배정일의 2주전부터 배정일까지 계속하여 이 법에 따라 서류를 공중의 종람에 제공하고 있는 때로 한다.

1. 금융상품거래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를 한 경우 동법 제5조 제1항의 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2. 금융상품거래법 제23조의3 제1항의 발행등록서 및 동법 제23조의8 제1항의 발행 등록추가보충서류(정정발행등록서를 포함한다)
3.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의 유가증권보고서(정정보고서를 포함한다)
4.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의4의7 제1항의 4분기보고서(정정보고서를 포함한다)
5.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의5 제1항의 반기보고서(정정보고서를 포함한다)
6.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의5 제4항의 임시보고서(정정보고서를 포함한다)

제54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법 제242조 제1항 제4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가능주식총수(종류주식발행회사에서는 각 종류주식의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를 포함한다)
2. 주식회사(종류주식발행회사는 제외한다)가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으로 법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주식의 내용
3. 주식회사(종류주식발행회사에 한한다)가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 때에는 각 종류주식의 내용(종류주식에 관하여 동조 제3항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종류주식의 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류주식의 내용의 요강)
4. 단원주식수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단원주식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각 종류주식의 단원주식수)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 五 次に掲げる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規定
- イ 法第三百三十九条第一項、第四百十条第五項又は第四百十五条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ロ 法第六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ハ 法第六十七条第三項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ニ 法第六十八条第一項又は第六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ホ 法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ヘ 法第三百四十七条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ト 第二十六条第一号又は第二号に規定する定款の定め
- 六 株主名簿管理人を置く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営業所
- 七 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その規定
- 八 定款に定められた事項(法第二百四十二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及び前各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であって、当該株式会社に対して募集新株予約権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が当該者に対して通知することを請求した事項

第55条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通知を要しない場合

法第二百四十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であって、株式会社が同条第一項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提供している場合とする。

- 一 当該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の規定に基づき目論見書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場合
- 二 当該株式会社が外国の法令に基づき目論見書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いる場合

第55条の2 株主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

法第二百四十四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特定引受人(法第二百四十四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引受人をいう。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5. 다음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 가. 법 제139조 제1항, 제140조 제5항, 제14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정관의 정함
 - 나. 법 제164조 제1항의 정관의 정함
 - 다. 법 제167조 제3항의 정관의 정함
 - 라. 법 제168조 제1항 또는 제169조 제2항의 정관의 정함
 - 마. 법 제174조의 정관의 정함
 - 바. 법 제347조의 정관의 정함
 - 사. 제26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정관의 정함
6. 주주명부관리인을 둔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명칭, 주소 및 영업소
7. 전자제공조치를 취할 취지의 정관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8. 정관에 정해진 사항(법 제2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전 각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주식회사에 대해 모집신주예약권의 인수의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가 당해자(자신)에게 통지할 것을 청구한 사항

제55조 청약を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42조 제4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로서 주식회사가 동조 제1항의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
2. 주식회사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투자설명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제55조의2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법 제244조의2 제1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특정인수인(법 제244조의2 제1항의 특정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3항에서 같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 二 特定引受人(その子会社等を含む。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がその引き受けた募集新株予約権に係る交付株式(法第二百四十四条の二第二項 に規定する交付株式をいう。次号及び次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の株主となった場合に有することとなる最も多い議決権の数
- 三 前号の交付株式に係る最も多い議決権の数
- 四 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最も多い総株主の議決権の数
- 五 特定引受人に対する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又は特定引受人との間の法第二百四十四条第一項の契約の締結に関する取締役会の判断及びその理由
- 六 社外取締役を置く株式会社において、前号の取締役会の判断が社外取締役の意見と異なる場合には、その意見
- 七 特定引受人に対する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又は特定引受人との間の法第二百四十四条第一項の契約の締結に関する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の意見

第55条の3 交付株式

- 1 法第二百四十四条の二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株式は、次に掲げる株式とする。
 - 一 募集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て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新株予約権(次号及び次項において「取得対価新株予約権」という。)の目的である株式
 - イ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へに掲げる事項 同号への他の新株予約権
 - ロ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トに掲げる事項 同号トの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
 - 二 取得対価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て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二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ける同号ニの株式
- 2 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取得対価新株予約権の内容として同項第一号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新株予約権は、取得対価新株予約権とみなす。
- 3 交付株式の数が特定引受人に対する募集新株予約権の割当ての決定又は特定引受人との間の法第二百四十四条第一項の契約の締結の日(以下この項にお

2. 특정인수인(자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3항에서 같다)이 그가 인수한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교부주식(법 제244조의2 제2항의 교부주식을 말한다. 다음 호 및 다음 조 제3항에서 같다)의 주주가 된 경우에 소유하게 되는 가장 많은 의결권의 수
3. 전호의 교부주식에 관한 가장 많은 의결권의 수
4. 제2호의 경우의 가장 많은 총주주의 의결권의 수
5. 특정인수인에 대한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 또는 특정인수인간의 법 제244조 제1항의 계약체결에 관한 이사회판단의 판단 및 그 이유
6. 사외이사를 둔 회사에서 전호의 이사회판단이 사외이사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의견
7. 특정인수인에 대한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 또는 특정인수인간의 법 제244조 제1항의 계약체결에 관한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

제55조의3 교부주식

① 법 제2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은 다음의 주식으로 한다.

1. 모집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의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신주예약권(다음 호 및 다음 항에서 “취득대가신주예약권”이라한다)의 목적인 주식
 - 가. 법 제236조 제1항 제7호 바목의 사항 : 동호 바목 이외의 신주예약권

나. 법 제236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사항 : 동호 사목의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

2. 취득대가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서 법 제236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의 동호 다목의 주식

②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취득대가신주예약권의 내용으로서 동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의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신주예약권은 취득대가신주예약권으로 본다.

③ 교부주식의 수가 특정인수인에 대한 모집신주예약권의 배정결정 또는 특정인수인간의 법 제244조 제1항의 계약체결일(이하 이 항에서 “배정등결정일”이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いて「割当等決定日」という。)後のいずれか一日の市場価額その他の指標に基づき決定する方法その他の算定方法により決定される場合における当該交付株式の数は、割当等決定日の前日に当該交付株式が交付されたものとみなして計算した数とする。

第55条の4 株主に対する通知を要しない場合

法第二百四十四条の二第四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株式会社が割当日の二週間前までに、金融商品取引法の規定に基づき第五十三条各号に掲げる書類(第五十五条の二各号に掲げる事項に相当する事項をその内容とするものに限る。)の届出又は提出をしている場合(当該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同法の規定に基づき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場合を含む。)であって、内閣総理大臣が当該割当日の二週間前の日から当該割当日まで継続して同法の規定に基づき当該書類

第55条の5 株主に対する通知を要しない場合における反対通知の期間の初日

法第二百四十四条の二第五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日は、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の規定に基づき前条の書類の届出又は提出(当該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を同法の規定に基づき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提供)をした日とする。

第56条 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の記載等の請求

1 法第二百六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 一 新株予約権取得者が、新株予約権者として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若しくは記録がされた者又はその一般承継人に対して当該新株予約権取得者の取得した新株予約権に係る法第二百六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確定判決を得た場合において、当該確定判決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二 新株予約権取得者が前号の確定判決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もの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三 新株予約権取得者が一般承継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取得した

라 한다) 후의 어느 1일의 시장가격, 그 외의 지표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 그 외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의 교부주식의 수는 배정등결정일의 전날에 당해 교부주식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제55조의4 주주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법 제24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주식회사가 배정일의 2주전까지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53조 각 호의 서류(제55조의2 각 호의 사항에 상당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의 신고 또는 제출을 하고 있는 경우(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내각총리대신이 배정일의 2주전부터 배정일까지 계속해서 동법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공중의 종람에 제공하고 있는 때로 한다.

제55조의5 주주에 대하여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반대통지기간의 초일

법 제244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은 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전조의 서류의 신고 또는 제출 (당해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한 날로 한다.

제56조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의 기재 등의 청구

① 법 제260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신주예약권자로서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 또는 등록된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에 대하여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취득한 신주예약권에 관한 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당해확정판결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한 때
2.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전호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한 때
3.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일반승계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취득한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一般承継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四 新株予約権取得者が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競売により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競売により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五 新株予約権取得者が新株予約権売渡請求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する売渡新株予約権の全部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新株予約権取得者が取得した新株予約権が証券発行新株予約権又は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場合には、法第二百六十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新株予約権取得者が新株予約権証券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提示して請求をした場合

二 新株予約権取得者が新株予約権売渡請求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発行する売渡新株予約権の全部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新株予約権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第57条 新株予約権取得者からの承認の請求

1 法第二百六十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新株予約権取得者が、新株予約権者として新株予約権原簿に記載若しくは記録がされた者又はその一般承継人に対して当該新株予約権取得者の取得した新株予約権に係る法第二百六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確定判決を得た場合において、当該確定判決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二 新株予約権取得者が前号の確定判決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もの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三 新株予約権取得者が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競売により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競売により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자인 경우 일반승계를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한 때

4. 신주예약권취득자가 당해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인 경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한 때
5.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통해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매도신주예약권 전부를 취득한 자인 경우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취득한 신주예약권이 증권발행신주예약권 또는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첨부된 신주예약권인 경우에는 법 제260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한다.

1.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신주예약권증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
2.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신주예약권매도청구를 통해 주식회사가 발행한 매도신주예약권의 전부를 취득한 자인 경우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제57조 신주예약권취득자로부터의 승인청구

① 법 제263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경우를 말한다.

1.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신주예약권자로서 신주예약권원부에 기재 또는 등록된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에 대하여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취득한 신주예약권에 관한 법 제263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할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확정판결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한 때
2.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전호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한 때
3. 신주예약권취득자가 당해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인 경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한 때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新株予約権取得者が取得した新株予約権が証券発行新株予約権又は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新株予約権である場合には、法第二百六十三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新株予約権取得者が新株予約権証券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券を提示して請求をした場合とする。

第58条 新株予約権の行使により株式に端数が生じる場合

法第二百八十三条第一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同号 に規定する株式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新株予約権の行使の日 (以下この条において「行使日」という。) における当該株式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行使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行使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行使日において当該株式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行使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株式の価格

第59条 検査役の調査を要しない市場価格のある有価証券

法第二百八十四条第九項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同号 に規定する有価証券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新株予約権の行使の日 (以下この条において「行使日」という。) における当該有価証券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 (当該行使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行使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行使日において当該有価証券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行使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有価証券の価格

第60条 出資された財産等の価額が不足する場合に責任をとるべき取締役等

法第二百八十六条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現物出資財産 (法第二百八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現物出資財産をい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취득한 신주예약권이 증권발행신주예약권 또는 증권발행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예약권인 경우에는 법 제263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주예약권취득자가 신주예약권증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권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제58조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에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283조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동호의 주식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신주예약권의 행사일(이하 이 조에서 “행사일”이라고 한다)의 당해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행사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행사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행사일에 주식이 공개매수 등의 대상인 때에는 행사일의 공개매수 등의 계약상의 주식가격

제59조 검사인의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법 제284조 제9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동호의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신주예약권의 행사일(이하 이 조에서 “행사일”이라고 한다)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행사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행사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행사일에 유가증권이 공개매수 등의 대상인 때에는 행사일의 공개매수 등의 계약상의 유가증권의 가격

제60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에 책임져야 할 이사 등

법 제286조 제1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현물출자재산(법 제284조 제1항의 현물출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내

第2編 株式会社
第3章 新株予約権

- う。以下この条から第六十二条までにおいて同じ。) 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及び執行役
- 二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ときは、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現物出資財産の価額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た取締役及び執行役
- 三 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ときは、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第61条

法第二百八十六条第一項第二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株主総会に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
- 二 前号の議案の提案の決定に同意した取締役 (取締役会設置会社の取締役を除く。)
- 三 第一号の議案の提案が取締役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第62条

法第二百八十六条第一項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取締役会に現物出資財産の価額の決定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及び執行役とする。

第62条の2 新株予約権に係る払込み等の仮装に関して責任をとるべき取締役等

法第二百八十六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払込み等(法第二百八十六条の二第一項各号の払込み又は給付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仮装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及び執行役
- 二 払込み等の仮装が取締役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次に掲げる者
- イ 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 ロ 当該取締役会に当該払込み等の仮装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及び

지 제62조에서 같다)의 가액의 결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사 및 집행임원

2.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현물출자재산의 가액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한 이사 및 집행임원
3.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의 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

제61조

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 현물출자재산의 가액결정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2. 전호의 의안제안의 결정에 동의한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의 의안제안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

제62조

법 제286조 제1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이사회에 현물출자재산의 가액결정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및 집행임원을 말한다.

제62조의2 신주예약권에 관한 납입 등의 가장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이사 등

법 제286조의3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납입 등(법 제286조의2 제1항 각호의 납입 또는 급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장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사 및 집행임원
2. 납입 등의 가장이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의 자

가.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

나. 이사회에 납입 등의 가장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및 집행임원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執行役

三 払込み等の仮装が株主総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次に掲げる者

イ 当該株主総会に当該払込み等の仮装に関する議案を提案した取締役

ロ イの議案の提案の決定に同意した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の取締役を除く。)

ハ イの議案の提案が取締役会の決議に基づいて行われたときは、当該取締役会の決議に賛成した取締役

ニ 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当該払込み等の仮装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た取締役及び執行役

第4章 機関

第1節 株主総会及び種類株主総会

第1款 通則

第63条 招集の決定事項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五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株主総会が定時株主総会である場合において、同号 の日が次に掲げる要件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日時を決定した理由 (ロに該当す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日時を決定したことにつき特に理由が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理由に限る。)

イ 当該日が前事業年度に係る定時株主総会の日に応当する日と著しく離れた日であること。

ロ 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日と同一の日において定時株主総会を開催する他の株式会社 (公開会社に限る。) が著しく多いこと。

二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株主総会の場所が過去に開催した株主総会のいずれの場所とも著しく離れた場所であるとき (次に掲げる

3. 납입 등의 가장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때에는 다음의 자

- 가. 주주총회에 납입 등의 가장에 관한 의안을 제안한 이사
- 나. 가목 의안의 제안결정에 동의한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이사는 제외한다)
- 다. 가목 의안의 제안이 이사회 결의로 행하여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 한 이사
- 라. 주주총회에서 납입 등의 가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한 이사 및 집행임원

제4장 기관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제1관 통칙

제63조 소집의 결정사항

법 제298조 제1항 제5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8조 제1항 제1호의 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인 경우 동호의 날이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일시를 결정한 이유(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유에 한한다)
 - 가. 당해일이 전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대응하는 날로부터 현저하게 먼 날 일 것
 - 나.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당해일과 같은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다른 주식회사(공개회사에 한한다)가 현저하게 많을 것
2. 법 제298조 제1항 제1호의 주주총회의 장소가 과거에 개최한 주주총회의 장소로부터 현저하게 떨어진 장소인 때(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장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場合を除く。)は、その場所を決定した理由

イ 当該場所が定款で定められたものである場合

ロ 当該場所で開催することについて株主総会に出席しない株主全員の同意がある場合

三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定款に口から二まで及びへ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又はこれらの事項の決定を取締役に委任する旨を決定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を除く。)

イ 次款の規定により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第八十五条の二第三号、第八十五条の三第三号、第八十六条第三号及び第四号、第八十七条第三号及び第四号、第八十八条第三号及び第四号、第八十九条第三号、第九十条第三号、第九十一条第三号、第九十一条の二第三号並びに第九十二条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

ロ 特定の時(株主総会の日時以前の時であって、法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発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以後の時に限る。)をもって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の期限とする旨を定めるときは、その特定の時

ハ 特定の時(株主総会の日時以前の時であって、法第二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発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以後の時に限る。)をもって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の期限とする旨を定めるときは、その特定の時

ニ 第六十六条第一項第二号の取扱いを定めるときは、その取扱いの内容

ホ 第九十四条第一項の措置をとることにより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しないものとする事項

ヘ 一の株主が同一の議案につき次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次に定める規定により重複して議決権を行使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同一の議案に対する議決権の行使の内容が異なるものであるときにおける当該株主の議決権の行使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とき(次号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は、その事項

1)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 法第三百十一条第一項

소를 결정한 이유

가. 그 장소가 정관에 정해진 장소인 경우

나. 그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법 제29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정관에 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사항의 결정을 이사에게 위임하는 뜻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은 제외한다)

가. 다음 관에 따라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제85조의2 제3호, 제85조의3 제3호, 제86조 제3호 및 제4호, 제87조 제3호 및 제4호, 제88조 제3호 및 제4호, 제89조 제3호, 제90조 제3호, 제91조 제3호, 제91조의2 제3호 및 제92조 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나. 특정한 때(주주총회 실시 이전의 때로 법 제299조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한 날 이후의 때에 한한다)를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기한으로 한다는 뜻을 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한 때

다. 특정한 때(주주총회 실시 이전의 때로 법 제299조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를 경과한 날 이후의 때에 한한다)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기한으로 한다는 뜻을 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한 때

라.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취급을 정하는 때에는 취급의 내용

마. 제94조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주주에게 제공하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사항

바. 주주가 같은 의안에 대하여 다음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중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내용이 다를 때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다음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사항

1)법 제298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 법 제311조 제1항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2)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 法第三百十二条第一項
- ト 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のうち、法第三百二十五条の五第三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き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交付する書面(第九十五条の四において「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という。)に記載しないものとする事項
- 四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三号 及び第四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定款に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を除く。)
- イ 法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 の承諾をした株主の請求があった時に当該株主に対して法第三百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法第三百一条第一項 に規定する議決権行使書面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の交付(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同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を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ロ 一の株主が同一の議案につき法第三百十一条第一項 又は第三百十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重複して議決権を行使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同一の議案に対する議決権の行使の内容が異なるものであるときにおける当該株主の議決権の行使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ときは、その事項
- ハ 電子提供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株主の請求があった時に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当該株主に係る事項に限る。第六十六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係る情報について電子提供措置をと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五 法第三百十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代理人による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代理権(代理人の資格を含む。)を証明する方法、代理人の数その他代理人による議決権の行使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とき(定款に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は、その事項
- 六 法第三百十三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の方法を定めるとき(定款に当該通知の方法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く。)は、その方法
- 七 第三号に規定する場合以外の場合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項が株主総会の目的である事項であるときは、当該事項に係る議案の概要(議案が確定し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その旨)

2)법 제298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 : 법 제312조 제1항

아.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 중 법 제325조의 5 제3항의 정관의 정함에 기하여 동조 제2항의 교부서면(제95조의 4에서 '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을 말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사항

4. 법 제29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정관에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 제299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주주에 대하여 법 제301조 제1항에 의한 의결권행사서면(법 제301조 제1항의 의결권행사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교부(교부에 대신하여 한 동조 제2항에 의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나. 1인의 주주가 같은 의안에 대하여 법 제311조 제1항 또는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중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같은 의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의 내용이 다를 때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그 사항

다.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취지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법 제299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해당 주주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66조 제3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뜻

5. 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대리권(대리인의 자격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방법, 대리인의 수 그 밖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정관에 그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사항

6. 법 제313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방법을 정한 때(정관에 통지방법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방법

7. 제3호 이외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인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안의 개요(의안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イ 役員等の選任
- ロ 役員等の報酬等
- ハ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
- ニ 株式の併合
- ホ 法第百九十九条第三項 又は第二百条第二項 に規定する場合における募集株式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
- ヘ 法第二百三十八条第三項 各号又は第二百三十九条第二項 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ける募集新株予約権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
- ト 事業譲渡等
- チ 定款の変更
- リ 合併
- ヌ 吸収分割
- ル 吸収分割による他の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の全部又は一部の承継
- ヲ 新設分割
- ワ 株式交換
- カ 株式交換による他の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全部の取得
- コ 株式移転
- タ 株式交付

第64条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定めることを要しない株式会社

法第二百九十八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株式会社の取締役 (法第二百九十七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り株主が株主総会を招集す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株主) が法第二百九十八条第二項 (同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 に規定する株主の全部に対して金融商品取引法の規定に基づき株主総会の通知に際して委任状の用紙を交付することにより議決権の行使を第三者に代理させることを勧誘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式会社とする。

第65条 株主総会参考書類

- 1 法第三百一条第一項 又は第三百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交付すべき株主

- 가. 임원등의 선임
- 나. 임원등의 보수등
- 다.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 라. 주식의 병합
- 마. 법 제199조 제3항 각호 또는 제200조 제2항 각호의 경우 인수자의 모집
- 바. 법 제238조 제3항 각호 또는 제239조 제2항 각호의 경우에 모집신주에
약권 인수자의 모집
- 사. 사업양도등
- 아. 정관변경
- 자. 합병
- 차. 흡수분할
- 카. 흡수분할로 다른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승계
- 타. 신설분할
- 파. 주식교환
- 하. 주식교환에 의한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부의 취득
- 가. 주식이전
- 냐. 주식교부

제6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없는 주식회사

법 제298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의 이사(법 제297조 제4항에 의하여 주주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법 제298조 제2항(동조 제3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주 전부에 대하여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통지시 위임장의 용지를 교부하여 의결권행사를 제3자에게 대리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 회사를 말한다.

제65조 주주총회참고서류

- ① 법 제301조 제1항 또는 제302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주주총회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は、次款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三号 及び第四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株式会社が行った株主総会参考書類の交付 (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 は、法第三百一条第一項 及び第三百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株主総会参考書類の交付とする。

3 取締役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について、招集通知 (法第二百九十九条第二項 又は第三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 を発出した日から株主総会の前日までの間に修正をすべき事情が生じた場合における修正後の事項を株主に周知させる方法を、当該招集通知と併せて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

第66条 議決権行使書面

1 法第三百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交付すべき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又は法第三百二条第三項 若しくは第四項 の規定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べき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各議案 (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もの) についての賛否 (棄権の欄を設ける場合にあっては、棄権を含む。) を記載する欄

イ 二以上の役員等の選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場合 各候補者の選任

ロ 二以上の役員等の解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場合 各役員等の解任

ハ 二以上の会計監査人の不再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場合 各会計監査人の不再任

二 第六十三条第三号ニ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ときは、第一号の欄に記載がない議決権行使書面が株式会社に提出された場合における各議案についての賛成、反対又は棄権のいずれかの意思の表示があったものとする取扱いの内容

三 第六十三条第三号へ又は第四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

四 議決権の行使の期限

五 議決権を行使すべき株主の氏名又は名称及び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議決権の数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事項を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법 제29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정한 주식회사가 한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교부(교부에 대신하여 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란 법 제301조 제1항 및 제302조 제1항에 의한 주주총회참고서류의 교부를 말한다.

③ 이사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소집통지(법 제29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발송한 날로부터 주주총회 전날까지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후의 사항을 주주에게 주지시키는 방법을 당해소집통지와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66조 의결권행사서면

① 법 제301조 제1항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또는 법 제30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각 의안(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에는 당해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찬부(기권의 난을 둔 경우에는 기권을 포함한다)를 기재하는 난

가. 2이상의 임원등의 선임에 관한 의안인 경우 : 각 후보자의 선임

나. 2이상의 임원등의 해임에 관한 의안인 경우 : 각 임원등의 해임

다. 2이상의 회계감사인의 부재임에 관한 의안인 경우 각 회계감사인의 부재임

2. 제63조 제3호 라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제1호의 난에 기재가 없는 의결권행사서면이 주식회사에 제출된 경우 각 의안에 관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어느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취급의 내용

3. 제63조 제3호 바목 또는 제4호 나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

4. 의결권행사의 기한

5.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주주의 성명, 명칭 및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는 당해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하는 사항을 포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含む。)

イ 議案ごとに当該株主が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議決権の数が異なる場合 議案ごとの議決権の数

ロ 一部の議案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 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議案又は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議案

2 第六十三条第四号イ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法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株主の請求があった時に、当該株主に対して、法第三百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六十三条第四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株式会社は、法第二百九十九条第三項の承諾をした株主の請求があった時に、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に係る情報について電子提供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株主に対して、法第三百二十五条の三第二項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を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4 同一の株主総会に関して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招集通知の内容とすべき事項のうち、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招集通知の内容とすることを要しない。

5 同一の株主総会に関して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限る。)のうち、招集通知の内容と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67条 実質的に支配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関係

1 法第三百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株主は、株式会社(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を含む。)が、当該株式会社の株主である会社等の議決権(同項その他これに準ずる法以外の法令(外国の法令を含む。)の規定により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される議決権を含み、役員等(会計監査人を除く。)の選任及び定款の変更に係る議案(これらの議案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の全部につき株主総会(これ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株式(これ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に係る議決権を除く。以下この条に

함한다)

가. 의안별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다른 경우 : 의안별 의결권의 수

나. 일부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안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안

② 제63조 제4호 가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법 제 299조제3항의 승낙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주주에게 법 제301조 제 1항에 의한 의결권행사서면을 교부(교부에 대신하여 한 동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하는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63조 제4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법 제 299조 제3항의 승낙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전자제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주에 대하여 법 제325조의3 제2항의 의결권행사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주주총회에 관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할 사항 중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동일한 주주총회에 관해 주주에게 제공하는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한한다) 중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실질적 지배가 가능한 관계

① 법 제308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식회사(주식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주식회사의 주주인 회사 등의 의결권(동향 기타 이에 준하는 법 이외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된 의결권을 포함하고 임원등(회계감사인은 제외한다)의 선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이러한 의안에 상당하는 의안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의결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호보유대상의결권”이라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において「相互保有対象議決権」という。)の総数の四分の一以上を有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主であるもの(当該株主であるもの以外の者が当該株式会社の株主総会の議案につき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当該議案を決議する場合に限る。)における当該株主を除く。)とする。

2 前項の場合には、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の有する相互保有対象議決権の数並びに相互保有対象議決権の総数(以下この条において「対象議決権数」という。)は、当該株式会社の株主総会の日における対象議決権数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特定基準日(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者を定めるための法第二百二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基準日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定めた場合には、対象議決権数は、当該特定基準日における対象議決権数と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における対象議決権数とする。

一 特定基準日後に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が株式交換、株式移転その他の行為により相互保有対象議決権の全部を取得した場合 当該行為の効力が生じた日

二 対象議決権数の増加又は減少が生じた場合(前号に掲げる場合を除く。)において、当該増加又は減少により第一項の株主であるものが有す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につき議決権を行使できることとなること又は議決権を行使できないこととなることを特定基準日から当該株主総会についての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全部を決定した日(株式会社が当該日後の日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日)までの間に当該株式会社が知ったとき 当該株式会社が知った日

4 前項第二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株式会社は、当該株主総会についての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全部を決定した日(株式会社が当該日後の日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日)から当該株主総会の日までの間に生じた事項(当該株式会社が前項第二号の増加又は減少の事実を知ったことを含む。)を勘案して、対象議決権数を算定することができる。

第68条 欠損の額

法第三百九条第二項第九号ロ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欠損の額とする方法とする。

一 零

고 한다)총수의 4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주주(그 주주 이외의 자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그 의안을 결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주주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가지는 상호보유대상의결권의 수 및 상호보유대상의결권의 총수(이하 이 조에서 “대상의결권수”라고 한다)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일의 대상의결권수로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준일(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하기 위한 법 제124조 제1항의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한 경우에는 대상의결권수는 특정기준일의 대상의결권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정하는 날의 대상의결권수로 한다.

1. 특정기준일후에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교환, 주식이전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상호보유대상의결권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 그 행위의 효력발생일
2. 대상의결권수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경우(전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하여 제1항의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특정기준일로부터 주주총회에 관한 법 제298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전부를 결정한 날(주식회사가 그날 이후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가 알았을 때 : 주식회사가 안 날

④ 전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 관한 법 제298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전부를 결정한 날(주식회사가 그날 이후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항(주식회사가 전항 제2호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을 안 것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대상의결권수를 산정할 수 있다.

제68조 결손의 액

법 제309조 제2항 제9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결손금의 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영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二 零から分配可能額を減じて得た額

第69条 書面による議決権行使の期限

法第三百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株主総会の日時の直前の営業時間の終了時(第六十三条第三号ロ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同号ロの特定の時)とする。

第70条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行使の期限

法第三百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株主総会の日時の直前の営業時間の終了時(第六十三条第三号ハ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同号ハの特定の時)とする。

第71条 取締役等の説明義務

法第三百十四条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 一 株主が説明を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するために調査を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場合(次に掲げる場合を除く。)
 - イ 当該株主が株主総会の日より相当の期間前に当該事項を株式会社に対して通知した場合
 - ロ 当該事項について説明をするために必要な調査が著しく容易である場合
- 二 株主が説明を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することにより株式会社その他の者(当該株主を除く。)の権利を侵害することとなる場合
- 三 株主が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実質的に同一の事項について繰り返して説明を求める場合
- 四 前三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株主が説明を求めた事項について説明をしない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

第72条 議事録

- 1 法第三百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主総会の議事録の作成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株主総会の議事録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영으로부터 분배가능액을 감하여 얻은 액

제69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기한

법 제311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주주총회 일시의 직전 영업 시간의 종료시(제63조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호 나목의 특정한 때)를 말한다.

제70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기한

법 제312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주주총회 일시의 직전 영업 시간의 종료시(제63조 제3호 다목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호 나목의 특정한 때)를 말한다.

제71조 이사등의 설명의무

법 제314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경우를 말한다.

1. 주주가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주가 주주총회일보다 상당 기간 전에 그 사항을 주식회사에 통지한 경우
 - 나. 그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가 현저하게 용이한 경우
2. 주주가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설명에 의하여 회사 그 밖의 자(그 주주는 제외한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3. 주주가 그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사항에 관하여 반복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4. 전3호의 경우 외에 주주가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2조 의사록

- ① 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주주총회 의사록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ない。

3 株主総会の議事録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株主総会が開催された日時及び場所(当該場所に存しない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第四号において同じ。)、執行役、会計参与、監査役、会計監査人又は株主が株主総会に出席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出席の方法を含む。)

二 株主総会の議事の経過の要領及びその結果

三 次に掲げる規定により株主総会において述べられた意見又は発言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又は発言の内容の概要

イ 法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一項

ロ 法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二項

ハ 法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四項

ニ 法第三百四十五条第一項 (同条第四項 及び第五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ホ 法第三百四十五条第二項 (同条第四項 及び第五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ヘ 法第三百六十一条第五項

ト 法第三百六十一条第六項

チ 法第三百七十七条第一項

リ 法第三百七十九条第三項

ヌ 法第三百八十四条

ル 法第三百八十七条第三項

ヲ 法第三百八十九条第三項

ヱ 法第三百九十八条第一項

カ 法第三百九十八条第二項

コ 法第三百九十九条の五

四 株主総会に出席した取締役、執行役、会計参与、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五 株主総会の議長が存するときは、議長の氏名

六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の氏名

③ 주주총회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당해 장소에 존재하지 않은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외의 이사, 제4호에서 같다)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 회계감사인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출석방법을 포함한다)
2. 주주총회의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
3.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진술된 의견 또는 발언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또는 발언 내용의 개요
 - 가. 법제342조의2 제1항
 - 나. 법제342조의2 제2항
 - 다. 법제342조의2 제4항
 - 라. 법 제345조 제1항(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마. 법 제345조 제2항(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바. 법제361조 제5항
 - 사. 법제361조 제6항
 - 아. 법 제377조 제1항
 - 자. 법 제379조 제3항
 - 차. 법 제384조
 - 카. 법 제387조 제3항
 - 타. 법 제389조 제3항
 - 파. 법 제398조 제1항
 - 하. 법 제398조 제2항
 - 가. 법제399조의5
4. 주주총회에 출석한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주주총회의 의장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성명
6. 의사록작성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이사의 성명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4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株主総会の議事録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とする。

一 法第三百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事項の内容

ロ イの事項の提案をした者の氏名又は名称

ハ 株主総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

ニ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の氏名

二 法第三百二十条の規定により株主総会への報告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株主総会への報告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事項の内容

ロ 株主総会への報告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

ハ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の氏名

第2款 株主総会参考書類

第1目 通 則

第73条

1 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議案

二 提案の理由 (議案が取締役の提出に係るものに限り、株主総会において一定の事項を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議案の場合における当該説明すべき内容を含む。)

三 議案につき法第三百八十四条 又は第三百八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株主総会に報告すべき調査の結果があるときは、その結果の概要

2 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この節に定めるもののほか、株主の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参考となると認め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3 同一の株主総会に関して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のうち、他の書面に記載している事項又は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これらの事項は、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株主総会参考書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사항
 - 가.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사항의 내용
 - 나. 가목의 사항을 제안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다.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날
 - 라. 의사록작성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이사의 성명
2. 법 제320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사항
 - 가. 주주총회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 사항의 내용
 - 나. 주주총회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 날
 - 다. 의사록작성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이사의 성명

제2관 주주총회참고서류

제1목 통칙

제73조

①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의안
2. 제안의 이유(의안이 이사가 제출한 것에 한하고 주주총회에서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안의 경우 설명하여야 할 내용을 포함한다)
3. 의안에 관하여 법 제384조 또는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조사결과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의 개요
- ②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이 절에 정하는 것 외에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 ③ 같은 주주총회에 관하여 주주에게 제공하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다른 서면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은 주주에게 제공하는 주주총회참고서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類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他の書面に記載している事項又は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る事項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同一の株主総会に関して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招集通知又は法第四百三十七条の規定により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事業報告の内容とすべき事項のうち、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招集通知又は法第四百三十七条の規定により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事業報告の内容と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2目 役員の選任

第74条 取締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

1 取締役が取締役(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次項第二号において同じ。)の選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候補者の氏名、生年月日及び略歴
- 二 就任の承諾を得ていないときは、その旨
- 三 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四項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会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 四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契約の内容の概要
- 五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補償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補償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補償契約の内容の概要
- 六 候補者を被保険者とする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の内容の概要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候補者の有す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数 (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

류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에는 다른 서면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같은 주주총회에 관하여 주주에게 제공하는 소집통지 또는 법 제437조에 의하여 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업보고의 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 중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은 주주에게 제공하는 소집통지 또는 법 제437조에 의하여 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업보고의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목 임원의 선임

제74조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

① 이사가 이사(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 회사인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 다음 항 제2호에서 같다)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 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약력
2. 취임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뜻
3.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법 제342조의2 제4항의 감사등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의 개요
4. 후보자와 주식회사간에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계약체결을 할 예정인 때에는 계약의 개요
5. 후보자와 주식회사간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때에는 그 보상계약의 개요
6. 후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때에는 그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의 개요

② 전항의 경우에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보유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에서는 주식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二 候補者が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就任した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一条第八号に定める重要な兼職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こととなるときは、その事実
- 三 候補者と株式会社との間に特別の利害関係があるときは、その事実の概要
- 四 候補者が現に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つて、かつ、他の者の子会社等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候補者が現に当該他の者(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であるときは、その旨
- 二 候補者が現に当該他の者(当該他の者の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を除く。))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業務執行者であるときは、当該他の者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 三 候補者が過去十年間に当該他の者の業務執行者であつたことを当該株式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当該他の者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 4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候補者が社外取締役候補者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にあつては、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に掲げる事項を除く。)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候補者が社外取締役候補者である旨
- 二 当該候補者を社外取締役候補者とした理由
- 三 当該候補者が社外取締役(社外役員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選任された場合に果たすことが期待される役割の概要
- 四 当該候補者が現に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候補者が最後に選任された後在任中に当該株式会社において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その他不当な業務の執行が行われた事実(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があるときは、その事実並びに当該事実の発生の予防のために当該候補者が行った行為及び当該事実の発生後の対応として行った行為の概要
- 五 当該候補者が過去五年間に他の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監査役に就任していた場合において、その在任中に当該他の株式会社において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その他不当な業務の執行が行われた事実があることを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후보자가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제121조 제8호에 정하는 중요한 점직에 해당
3. 후보자와 주식회사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의 개요
4. 후보자가 현재 주식회사의 이사인 때에는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③ 제1항의 경우에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이고 타인의 자회사 등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후보자가 현재 해당 타인(자연인인 자에 한한다)인 때에는 그 뜻
 2. 후보자가 현재 해당 타인(그 타인의 자회사 등(해당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무집행자인 때에는 그 타인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
 3. 후보자가 과거 10년간 해당 타인의 업무집행자이었던 것을 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때에는 그 타인에 있어서의 지위와 책임
- ④ 제1항의 경우 후보자가 사외이사후보자인 때에는 주주총회 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주식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사외이사후보자인 취지
2.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자로 한 이유
3. 후보자가 사외이사(사외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선임된 경우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의 개요
4. 후보자가 현재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인 경우 해당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선임된 후 재임 중에 해당 주식회사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사실 그 밖에 부당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 및 그 사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행한 행위 및 해당 사실의 발생 후 대응책으로서 행한 행위의 개요
5. 후보자가 과거 5년간 다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취임하고 있었던 경우 재임 중에 다른 주식회사에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사실 그 밖에 부당한 업무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을 주식회사가 알고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当該株式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その事実(重要でないものを除き、当該候補者が当該他の株式会社における社外取締役又は監査役であったときは、当該事実の発生の予防のために当該候補者が行った行為及び当該事実の発生後の対応として行った行為の概要を含む。)

六 当該候補者が過去に社外取締役又は社外監査役(社外役員に限る。)となること以外の方法で会社(外国会社を含む。)の経営に関与していない者であるときは、当該経営に関与したことがない候補者であっても社外取締役としての職務を適切に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当該株式会社が判断した理由

七 当該候補者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を当該株式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その旨

イ 過去に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者又は役員(業務執行者であるものを除く。ハ及びホ(2)において同じ。)であったことがあること。

ロ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ロ及びホ(1)において同じ。)であり、又は過去十年間に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であったことがあること。

ハ 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の業務執行者若しくは役員であり、又は過去十年間に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を除く。)の業務執行者若しくは役員であったことがあること。

ニ 当該株式会社又は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から多額の金銭その他の財産(これらの者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者としての報酬等を除く。)を受ける予定があり、又は過去二年間に受けていたこと。

ホ 次に掲げる者の配偶者、三親等以内の親族その他これに準ずる者であること(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

1)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

2) 当該株式会社又は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の業務執行者又は役員

ヘ 過去二年間に合併、吸収分割、新設分割又は事業の譲受け(ヘ、第七十四条の三第四項第七号ヘ及び第七十六条第四項第六号ヘにおいて「合併等」という。)により他の株式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を当該株式会社が承継又は譲受け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合併等の直前に当該株式会

있는 때에는 그 사실(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후보자가 다른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이었던 때에는 해당 사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행한 행위 및 해당 사실의 발생 후 대응책으로서 행한 행위의 개요를 포함한다)

6. 후보자가 과거에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사외임원에 한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자인 때에는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후보이어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가 판단한 이유

7. 후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뜻

가. 과거에 해당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집행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자인 자를 제외한다. 다목 및 마(2)에서도 같다)이었던 적이 있는 것.

나.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자연인인 자에 한한다. 나목 및 마(1)에서 같다)이거나 또는 과거 10년간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이었던 적이 있는 것

다.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의 업무집행자 혹은 임원이거나 또는 과거 10년간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주식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자 혹은 임원이었던 적이 있는 것

라.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전 그 밖의 재산(이러한 자들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기타 이러한 자들과 유사한 자로서의 보수 등은 제외한다)을 받을 예정이 있거나 또는 과거 2년간 받고 있었던 것.

마. 다음 자의 배우자, 3촌 이내의 친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인 것(중요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1)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

2)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의 업무집행자 또는 임원

바. 과거 2년간에 합병, 흡수분할, 신설분할 또는 사업의 양수(바목 제74조의 3 제4항 제7호 바목 및 제76조 제4항 제6호 바목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가 그 사업에 관해서 갖는 권리 의무를 주식회사가 승계 또는 양수한 경우 해당 합병 등의 직전에 해당 주식회사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社の社外取締役又は監査役でなく、かつ、当該他の株式会社の業務執行者であったこと。

八 当該候補者が現に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又は監査役であるときは、これらの役員に就任してからの年数

九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記載についての当該候補者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

第74条の2

削除

第74条の3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

1 取締役が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候補者の氏名、生年月日及び略歴

二 株式会社との間に特別の利害関係があるときは、その事実の概要

三 就任の承諾を得ていないときは、その旨

四 議案が法第三百四十四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より提出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旨

五 法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六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契約の内容の概要

七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補償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補償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補償契約の内容の概要

八 候補者を被保険者とする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の内容の概要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候補者の有す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사외이사 또는 감사가 아니면서 다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자이었던 것

8. 후보자가 현재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이러한 임원으로 취임하고 난 뒤의 연수
9. 전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재에 관하여 후보자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내용

제74조의2

삭제

제74조의3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

① 이사가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약력
2. 주식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의 개요
3. 취임의 승낙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
4. 의안이 법 제344조의2 제2항의 청구에 의해 제출된 것 인 때에는 그 뜻
5. 법 제342조의2 제1항의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개요
6. 후보자와 주식회사간에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의 개요
7. 후보자와 주식회사의 사이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계약의 개요
8. 후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의 개요
- ② 전항의 경우에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수(종류주식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각 종류의 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二 候補者が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就任した場合において、第百二十一条第八号に定める重要な兼職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こととなるときは、その事実
- 三 候補者が現に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り、かつ、他の者の子会社等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候補者が現に当該他の者(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であるときは、その旨
 - 二 候補者が現に当該他の者(当該他の者の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を除く。))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業務執行者であるときは、当該他の者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 三 候補者が過去十年間に当該他の者の業務執行者であったことを当該株式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当該他の者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 4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候補者が社外取締役候補者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であっても、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に掲げる事項を除く。)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候補者が社外取締役候補者である旨
 - 二 当該候補者を社外取締役候補者とした理由
 - 三 当該候補者が社外取締役(社外役員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選任された場合に果たすことが期待される役割の概要
 - 四 当該候補者が現に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候補者が最後に選任された後在任中に当該株式会社において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その他不当な業務の執行が行われた事実(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があるときは、その事実並びに当該事実の発生の予防のために当該候補者が行った行為及び当該事実の発生後の対応として行った行為の概要
- 五 当該候補者が過去五年間に他の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監査役に就任していた場合において、その在任中に当該他の株式会社において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その他不当な業務の執行が行われた事実があることを当該株式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その事実(重要でないものを除き、当該候

2. 후보자가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인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제21조 제8호의 중요한 겸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

3. 후보자가 현재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인 이사인 때에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

③ 제1항의 경우에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이면서 타인의 자회사 등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현재 타인(자연인인 자에 한한다)인 때에는 그 뜻

2. 후보자가 현재 타인(타인의 자회사 등(주식회사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무집행자인 때에는 당해 타인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

3. 후보자가 과거 10년간 타인의 업무집행자였음을 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때에는 타인의 지위 및 담당

④ 제1항의 경우에 후보자가 사외이사후보자인 때에는 주주총회 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주식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사외이사후보자인 뜻

2.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자로 한 이유

3. 후보자가 사외이사(사외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선임된 경우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의 개요

4. 후보자가 현재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인 경우에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선임된 후 재임 중에 주식회사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실 그 외에 부당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 및 해당 사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행한 행위 및 해당 사실의 발생 후 대응책으로서 행한 행위의 개요

5. 후보자가 과거 5년간 다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취임 경하고 있었던 경우 재임 중에 해당 다른 주식회사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사실 그 밖에 부당한 업무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을 해당 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사실(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후보자가 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補者が当該他の株式会社における社外取締役又は監査役であったときは、当該事実の発生の予防のために当該候補者が行った行為及び当該事実の発生後の対応として行った行為の概要を含む。)

六 当該候補者が過去に社外取締役又は社外監査役(社外役員に限る。)となること以外の方法で会社(外国会社を含む。)の経営に関与していない者であるときは、当該経営に関与したことがない候補者であっても監査等委員である社外取締役としての職務を適切に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当該株式会社が判断した理由

七 当該候補者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を当該株式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その旨

イ 過去に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者又は役員(業務執行者であるものを除く。ハ及びホ(2)において同じ。)であったことがあること。

ロ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ロ及びホ(1)において同じ。)であり、又は過去十年間に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であったことがあること。

ハ 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の業務執行者若しくは役員であり、又は過去十年間に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を除く。)の業務執行者若しくは役員であったことがあること。

ニ 当該株式会社又は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から多額の金銭その他の財産(これらの者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者としての報酬等を除く。)を受ける予定があり、又は過去二年間に受けていたこと。

ホ 次に掲げる者の配偶者、三親等以内の親族その他これに準ずる者であること(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

1)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

2) 当該株式会社又は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の業務執行者又は役員

ヘ 過去二年間に合併等により他の株式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を当該株式会社が承継又は譲受け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合併等の直前に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又は監査役でなく、かつ、当該他の株式会社の業務執行者であったこと。

른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이었던 때에는 해당 사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행한 행위 및 해당 사실의 발생 후 대응책으로서 행한 행위의 개요를 포함한다)

6. 후보자가 과거에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사외임원에 한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자일 때는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후보자이어도 감사등위원인 사외이사로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식회사가 판단한 이유

7. 후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뜻

가. 과거에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집행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자인 자는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 (2)에서 같다)이었던 적이 있는 것

나.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자연인인 자에 한한다. 나목 및 마목(1)에서도 같다)이거나 과거 10년간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이었던 적이 있는 것

다.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의 업무집행자 혹은 임원이거나 또는 과거 10년간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주식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자 혹은 임원이었던 적이 있는 것

라.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전, 그 밖의 재산(이러한 자들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기타 이들과 유사한 자로서의 보수 등은 제외한다)을 받을 예정이거나 또는 과거 2년간 받고 있었던 것

마. 다음의 자의 배우자, 3촌 이내의 친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인 것(중요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1) 주식회사의 모회사등

2)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의 업무집행자 또는 임원

바. 과거 2년간에 합병 등으로 다른 주식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소유하는 권리의무를 주식회사가 승계 또는 양수한 경우에 당해 합병 등의 직전에 당해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가 아니면서 다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자이었던 것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八 当該候補者が現に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又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であるときは、これらの役員に就任してからの年数
- 九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記載についての当該候補者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

第75条 会計参与の選任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会計参与の選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事項

イ 候補者が公認会計士（公認会計士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号）第十六条の二第五項に規定する外国公認会計士を含む。以下同じ。）又は税理士である場合 その氏名、事務所の所在場所、生年月日及び略歴

ロ 候補者が監査法人又は税理士法人である場合 その名称、主たる事務所の所在場所及び沿革

二 就任の承諾を得ていないときは、その旨

三 法第三百四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会計参与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四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契約の内容の概要

五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補償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補償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補償契約の内容の概要

六 候補者を被保険者とする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の内容の概要

七 当該候補者が過去二年間に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た者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処分に係る事項のうち、当該株式会社が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ることが適切であるものと判断した事項

第76条 監査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

1 取締役が監査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

8. 후보자가 현재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인 때에는 이러한 임원에 취임한 연수
9. 전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재에 관해 후보자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내용

제75조 회계참여의 선임에 관한 의안

이사가 회계참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하는 사항
 - 가. 후보자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1948년 법률 제103호)제16조의2 제5항의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사인 경우 : 그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생년월일 및 약력
 - 나. 후보자가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인 경우 :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혁
2. 취임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뜻
3. 법 제345조 제1항에 의한 회계참여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내용의 개요
4. 후보자와 주식회사간에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때에는 그 계약의 개요
5. 후보자와 주식회사의 사이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계약의 개요
6. 후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그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의 개요
7. 후보자가 과거 2년간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 처분에 관련된 사항 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76조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

- ① 이사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候補者の氏名、生年月日及び略歴
 - 二 株式会社との間に特別の利害関係があるときは、その事実の概要
 - 三 就任の承諾を得ていないときは、その旨
 - 四 議案が法第三百四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より提出された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旨
 - 五 法第三百四十五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役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 六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契約の内容の概要
 - 七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補償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補償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補償契約の内容の概要
 - 八 候補者を被保険者とする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の内容の概要
- 2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候補者の有する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二 候補者が当該株式会社の監査役に就任した場合において第二百一十一条第八号に定める重要な兼職に該当する事実があることとなるときは、その事実
 - 三 候補者が現に当該株式会社の監査役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における地位
-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り、かつ、他の者の子会社等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候補者が現に当該他の者（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であるときは、その旨
 - 二 候補者が現に当該他の者（当該他の者の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を除く。）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業務執行者であるときは、当該他の者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 三 候補者が過去十年間に当該他の者の業務執行者であったことを当該株式会

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약력
 2.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의 개요
 3. 취임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뜻
 4. 의안이 법 제343조 제2항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제출된 것인 때에는 그 뜻
 5. 법 제34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의한 감사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내용의 개요
 6. 후보자와 주식회사간에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때에는 그 계약의 개요
 7. 후보자와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계약의 개요
 8. 후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의 개요
- ② 전항의 경우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보유하는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에서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후보자가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 한 경우에 제121조 제8호에 정하는 중요한 겸직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게 된 때에는 그 사실
 3. 후보자가 현재 주식회사의 감사인 때에는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 ③ 제1항의 경우에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이면서 타인의 자회사 등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현재 타인(자연인인 자에 한한다)인 때에는 그 뜻
 2. 후보자가 현재 타인(타인의 자회사 등(주식회사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무집행자인 때에는 타인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
 3. 후보자가 과거 10년간 타인의 업무집행자이었던 것을 주식회사가 알고 있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当該他の者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4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候補者が社外監査役候補者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三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る事項を除く。）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候補者が社外監査役候補者である旨

二 当該候補者を社外監査役候補者とした理由

三 当該候補者が現に当該株式会社の社外監査役（社外役員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候補者が最後に選任された後在任中に当該株式会社において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その他不正な業務の執行が行われた事実（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があるときは、その事実並びに当該事実の発生の予防のために当該候補者が行った行為及び当該事実の発生後の対応として行った行為の概要

四 当該候補者が過去五年間に他の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監査役に就任していた場合において、その在任中に当該他の株式会社において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その他不正な業務の執行が行われた事実があることを当該株式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その事実（重要でないものを除き、当該候補者が当該他の株式会社における社外取締役（社外役員に限る。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監査役であったときは、当該事実の発生の予防のために当該候補者が行った行為及び当該事実の発生後の対応として行った行為の概要を含む。）

五 当該候補者が過去に社外取締役又は社外監査役となること以外の方法で会社（外国会社を含む。）の経営に関与していない者であるときは、当該経営に関与したことがない候補者であっても社外監査役としての職務を適切に遂行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当該株式会社が判断した理由

六 当該候補者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を当該株式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その旨

イ 過去に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子会社の業務執行者又は役員（業務執行者であるものを除く。ハ及びホ2）において同じ。）であったことがあること。

ロ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ロ及びホ（1）において同じ。）であり、又は過去十年間に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であったことがあ

는 때에는 타인에 있어서의 지위와 책임

④ 제1항의 경우 후보자가 사외감사 후보자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주식회사가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사외감사 후보자인 뜻
2. 후보자를 사외감사 후보자로 한 이유
3. 후보자가 현재 주식회사의 사외감사(사외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후보자가 마지막으로 선임된 후 재임중에 주식회사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사실 그 밖에 부정한 업무집행이 행하여진 사실(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 및 그 사실의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후보자가 한 행위 및 당해 사실의 발생 후의 대응으로서 한 행위의 개요
4. 후보자가 과거 5년간 다른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취임하고 있었던 경우 그 재임중에 다른 주식회사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사실 기타 부정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을 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사실(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하고 후보자가 다른 주식회사에서 사외이사(사외임원에 한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또는 감사이었던 때에는 당해 사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한 행위 및 당해 사실의 발생 후에 대응책으로서 한 행위의 개요를 포함한다)
5. 후보자가 과거에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가 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자인 때에는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후보자라도 사외감사로서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식회사가 판단한 이유
6. 후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뜻
 - 가. 과거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집행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자인 자는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 (2)에서 같다)이었던 적이 있는 것
 - 나.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자연인인 것에 한한다. 나목과 마목 (1)에서 같다)이거나 또는 지난 10년간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이었던 적이 있는 것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ること。

ハ 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の業務執行者若しくは役員であり、又は過去十年間に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を除く。)の業務執行者若しくは役員であったことがあること。

ニ 当該株式会社又は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から多額の金銭その他の財産(これらの者の監査役としての報酬等を除く。)を受ける予定があり、又は過去二年間に受けていたこと。

ホ 次に掲げる者の配偶者、三親等以内の親族その他これに準ずる者であること(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

1)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

2) 当該株式会社又は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の業務執行者又は役員

ヘ 過去二年間に合併等により他の株式会社がその事業に関して有する権利義務を当該株式会社が承継又は譲受けを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合併等の直前に当該株式会社の社外監査役でなく、かつ、当該他の株式会社の業務執行者であったこと。

七 当該候補者が現に当該株式会社の監査役であるときは、監査役に就任してからの年数

八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記載についての当該候補者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

第77条 会計監査人の選任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会計監査人の選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事項

イ 候補者が公認会計士である場合 その氏名、事務所の所在場所、生年月日及び略歴

ロ 候補者が監査法人である場合 その名称、主たる事務所の所在場所及び沿革

二 就任の承諾を得ていないときは、その旨

- 다.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의 업무집행자 또는 임원이거나 또는 과거 10년간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당해 회사의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업무집행자 혹은 임원이었던 적이 있는 것
- 라.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전 그 밖의 재산(이러한 자의 감사로서의 보수등은 제외한다)을 받을 예정이 있거나 또는 과거 2년간 받고 있었던 것
- 마. 다음의 자의 배우자, 3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인 것(중요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 1) 주식회사의 모회사등
 - 2)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의 업무집행자 또는 임원
- 바. 과거 2년간 합병 등에 의하여 다른 주식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소유하는 권리의무를 주식회사가 승계 또는 양수를 한 경우에 합병 등의 직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아니면서 다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자이었던 것
- 7. 후보자가 현재 주식회사의 감사인 때에는 감사로 취임하고 난 뒤의 연수
- 8. 전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재에 관하여 후보자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내용

제77조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의안

이사가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하는 사항
 - 가. 후보가 공인회계사인 경우 : 그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생년월일 및 약력
 - 나. 후보자가 감사법인인 경우 :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혁
- 2. 취임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뜻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三 監査役(監査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会、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が当該候補者を会計監査人の候補者とした理由
- 四 法第三百四十五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会計監査人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 五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契約の内容の概要
- 六 候補者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補償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補償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補償契約の内容の概要
- 七 候補者を被保険者とする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又は当該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する予定があるときは、その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の内容の概要
- 八 当該候補者が現に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その停止の期間を経過しない者であるときは、当該処分に係る事項
- 九 当該候補者が過去二年間に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た者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処分に係る事項のうち、当該株式会社が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ることが適切であるものと判断した事項
- 十 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候補者が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ものから多額の金銭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これらの者から受ける会計監査人(法以外の法令の規定によるこれ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としての報酬等及び公認会計士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業務の対価を除く。)を受ける予定があるとき又は過去二年間に受けていたときは、その内容
 - イ 当該株式会社に親会社等がある場合 当該株式会社、当該親会社等又は当該親会社等の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を除く。)若しくは関連会社(当該親会社等が会社でない場合におけるその関連会社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
 - ロ 当該株式会社に親会社等がない場合 当該株式会社又は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若しくは関連会社

3. 감사(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후보자를 회계감사인의 후보자로 한 이유
4. 법 제345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내용의 개요
5. 후보자와 주식회사간에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때에는 그 계약의 개요
6. 후보자와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계약의 개요
7. 후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 또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 있는 때에는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의 개요
8. 후보자가 현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때에는 해당 처분에 관련된 사항
9. 후보자가 과거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던 자인 경우 해당 처분과 관련된 사항 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항
10.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후보자가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것에서 거액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러한 자들로부터 받는 회계감사인(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의 보수 등 및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항의 업무의 대가는 제외한다)을 받을 예정이 있는 때 또는 과거 2년간 받고 있었던 때에는 그 내용
 - 가. 주식회사에 모회사 등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 모회사 등 또는 모회사 등의 자회사 등(주식회사를 제외한다) 혹은 관련회사(모회사 등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련회사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주식회사에 모회사 등이 없는 경우;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자회사 혹은 관련회사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3目 役員の解任等

第78条 取締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取締役(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第一号において同じ。)の解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取締役の氏名
- 二 解任の理由
- 三 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四項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会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第78条の2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氏名
- 二 解任の理由
- 三 法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第79条 会計参与の解任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会計参与の解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会計参与の氏名又は名称
- 二 解任の理由
- 三 法第三百四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会計参与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第80条 監査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監査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

제3목 임원의 해임 등

제78조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

이사가 이사(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 제1호에서 같다)의 해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사의 성명
2. 해임의 이유
3.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법 제342조의2 제4항의 감사등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개요

제78조의2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

이사가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성명
2. 해임의 이유
3. 법 제342조의2 제1항의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개요

제79조 회계참여의 해임에 관한 의안

이사가 회계참여의 해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참여의 성명 또는 명칭
2. 해임의 이유
3. 법 제345조 제1항에 의한 회계참여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내용의 개요

제80조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

이사가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監査役の氏名
- 二 解任の理由
- 三 法第三百四十五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役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第81条 会計監査人の解任又は不再任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会計監査人の解任又は不再任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 二 監査役(監査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会、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が議案の内容を決定した理由
- 三 法第三百四十五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会計監査人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第4目 役員の報酬等

第82条 取締役の報酬等に関する議案

1 取締役が取締役(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以下この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同じ。)の報酬等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法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の算定の基準
- 二 議案が既に定められている法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変更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変更の理由
- 三 議案が二以上の取締役についての定めであるときは、当該定めに係る取締役の員数
- 四 議案が退職慰労金に関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退職する各取締役の略歴
- 五 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三百六十一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会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성명
2. 해임의 이유
3. 법 제34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의한 감사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내용의 개요

제81조 회계감사인의 해임 또는 부재임에 관한 의안

이사가 회계감사인의 해임 또는 부재임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감사(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결정한 이유
3. 법 제345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내용의 개요

제4목 임원의 보수등

제82조 이사의 보수등에 관한 의안

① 이사가 이사(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보수 등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36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산정기준
2. 의안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법 제36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변경이유
3. 의안이 2이상의 이사에 관한 정함인 때에는 그 정함에 관련된 이사의 원수
4. 의안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것인 때에는 퇴직하는 각 이사의 약력
5. 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법 제361조 제6항의 감사등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개요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要

2 前項第四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議案が一定の基準に従い退職慰労金の額を決定することを取締役、監査役その他の第三者に一任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当該一定の基準の内容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各株主が当該基準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3 第一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株式会社が公開会社であり、かつ、取締役の一部が社外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ものを除き、社外役員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第一項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る事項のうち社外取締役に関するものは、社外取締役以外の取締役と区別して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82条の2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報酬等に関する議案

1 取締役が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報酬等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法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事項の算定の基準
- 二 議案が既に定められている法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事項を変更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変更の理由
- 三 議案が二以上の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についての定めであるときは、当該定めに係る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員数
- 四 議案が退職慰労金に関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退職する各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略歴
- 五 法第三百六十一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2 前項第四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議案が一定の基準に従い退職慰労金の額を決定することを取締役その他の第三者に一任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当該一定の基準の内容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各株主が当該基準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② 전항 제4호의 경우 의안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금액의 결정을 이사, 감사 그 밖의 제3자에게 일임하는 것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일정한 기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주주가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주식회사가 공개회사이면서 이사의 일부가 사외이사(감사 등위원은 제외하고 사외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사외이사에 관한 것은 사외이사 이외의 이사와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의안

① 이사가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36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산정 기준
2. 의안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법 제36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을 하는 것인 때에는 변경 이유
3. 의안이 두 이상의 감사등위원인 이사에 관한 정함인 때에는 당해 정함에 관련된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수
4. 의안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것인 때에는 퇴직하는 각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약력
5. 법 제361조 제5항에 의한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개요

② 전항 제4호의 경우에 의안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이사, 그 밖에 제3자에게 일임하는 것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일정기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주주가 그 기준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83条 会計参与の報酬等に関する議案

1 取締役が会計参与の報酬等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法第三百七十九条第一項 に規定する事項の算定の基準
- 二 議案が既に定められている法第三百七十九条第一項 に規定する事項を変更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変更の理由
- 三 議案が二以上の会計参与についての定めであるときは、当該定めに係る会計参与の員数
- 四 議案が退職慰労金に関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退職する各会計参与の略歴
- 五 法第三百七十九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る会計参与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2 前項第四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議案が一定の基準に従い退職慰労金の額を決定することを取締役、監査役その他の第三者に一任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当該一定の基準の内容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各株主が当該基準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84条 監査役の報酬等に関する議案

1 取締役が監査役の報酬等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法第三百八十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事項の算定の基準
- 二 議案が既に定められている法第三百八十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事項を変更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変更の理由
- 三 議案が二以上の監査役についての定めであるときは、当該定めに係る監査役の員数
- 四 議案が退職慰労金に関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退職する各監査役の略歴
- 五 法第三百八十七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る監査役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2 前項第四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議案が一定の基準に従い退職慰労金の額を決定することを取締役、監査役その他の第三者に一任するものであ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当該一定の基準の内容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83조 회계참여의 보수등에 관한 의안

① 이사가 회계참여의 보수등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379조 제1항의 사항의 산정기준
2. 의안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법 제379조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변경이유
3. 의안이 2이상의 회계참여에 관한 정함인 때에는 그 정함에 관련된 회계참여의 원수
4. 의안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것인 때에는 퇴직하는 각 회계참여의 약력
5. 법 제379조 제3항에 의한 회계참여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내용의 개요

② 전항 제4호의 경우 의안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금액의 결정을 이사, 감사 그 밖의 제3자에게 일임하는 것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일정한 기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주주가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감사의 보수등에 관한 의안

① 이사가 감사의 보수등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387조 제1항의 사항의 산정기준
2. 의안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법 제387조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변경이유
3. 의안이 2이상의 감사에 관한 정함인 때에는 그 정함에 관련된 감사의 원수
4. 의안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것인 때에는 퇴직한 각 감사의 약력
5. 법 제387조 제3항에 의한 감사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내용의 개요

② 전항 제4호의 경우 의안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금액의 결정을 이사, 감사 그 밖의 제3자에게 일임하는 것인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일정한 기준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주주가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い。ただし、各株主が当該基準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適切な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84条の2 責任免除を受けた役員等に対し退職慰労金等を与える議案等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取締役が法第四百二十五条第四項（法第四百二十六条第八項及び第四百二十七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承認の決議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責任を免除し、又は責任を負わないとされた役員等が得る第百十四条各号に規定する額及び当該役員等に与える第百十五条各号に規定するものの内容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法第四百二十五条第一項 に規定する決議に基づき役員等の責任を免除した場合
- 二 法第四百二十六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き役員等の責任を免除した場合
- 三 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によって同項に規定する限度を超える部分について同項に規定する非業務執行取締役等が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わないとされた場合

第5目 計算関係書類の承認

第85条

取締役が計算関係書類の承認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とき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法第三百九十八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会計監査人の意見がある場合 その意見の内容
- 二 株式会社が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取締役会の意見があるとき 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2 책임면제를 받은 임원등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주는 의안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가 법 제425조 제4항 (법 제426조 제8항 및 제4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 결의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된 임원등이 얻는 제114조 각 호의 금액 및 임원 등에게 주는 제115조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25조 제1항의 결의에 따라 임원등의 책임을 면제한 경우
2. 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임원등의 책임을 면제한 경우
3.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에 의하여 동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동항의 비업무집행이사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목 계산관계서류의 승인

제85조

이사가 계산관계서류의 승인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398조 제1항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이 의견이 있는 경우 : 의견내용
2. 주식회사가 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의견이 있는 때 : 의견내용의 개요

第5目の2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

第85条の2

取締役が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を行う理由
- 二 法第一百七十一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事項の内容
- 三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 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三十三条の二第一項 各号(第四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第5目の3 株式の併合

第85条の3

取締役が株式の併合(法第百八十二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株式の併合をいう。第九十三条第一項第五号ロにおいて同じ。)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株式の併合を行う理由
- 二 法第百八十条第二項 各号に掲げる事項の内容
- 三 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 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三十三条の九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第6目 合併契約等の承認

第86条 吸収合併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吸収合併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吸収合併を行う理由
- 二 吸収合併契約の内容の概要
- 三 当該株式会社が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 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百八十二条第一項 各号(第五号及び第六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제5목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제85조의2

이사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을 하는 이유
2. 법 제17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내용
3.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일에 제33조의2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개요

제5목의3 주식의 병합

제85조의3

이사가 주식병합(법 제182조의2 제1항의 주식 병합을 말한다. 제93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같다)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병합을 하는 이유
2. 법 제18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내용
3. 법 제28조 제1항의 결정일에 제33조의9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개요

제6목 합병계약 등의 승인

제86조 흡수합병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

이사가 흡수합병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흡수합병을 하는 이유
2. 흡수합병계약 내용의 개요
3.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에 제182조 제1항 각호(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의 개요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四 当該株式会社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百九十一条各号（第六号及び第七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第87条 吸収分割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吸収分割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吸収分割を行う理由
- 二 吸収分割契約の内容の概要
- 三 当該株式会社が吸収分割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百八十三条各号（第二号、第六号及び第七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 四 当該株式会社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百九十二条各号（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第88条 株式交換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株式交換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株式交換を行う理由
- 二 株式交換契約の内容の概要
- 三 当該株式会社が株式交換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百八十四条第一項各号（第五号及び第六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 四 当該株式会社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百九十三条各号（第五号及び第六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第89条 新設合併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新設合併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에 제191조 각호(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의 개요

제87조 흡수분할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

이사가 흡수분할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흡수분할을 하는 이유
2. 흡수분할계약 내용의 개요
3. 주식회사가 흡수분할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에 제183조 각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의 개요
4. 주식회사가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에 제192조 각호(제2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의 개요

제88조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

이사가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을 하는 이유
2. 주식교환계약 내용의 개요
3.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인 경우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에 제184조 제1항 각호(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의 개요
4. 주식회사가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에 제193조 각호(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의 개요

제89조 신설합병계약 승인에 관한 의안

이사가 신설합병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一 当該新設合併を行う理由
- 二 新設合併契約の内容の概要
- 三 当該株式会社が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二百四条各号（第六号及び第七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 四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取締役となる者（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となる者を除く。）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
- 五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の三に規定する事項
- 六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会計参与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会計参与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五条に規定する事項
- 七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ときは、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監査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
- 八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会計監査人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七条に規定する事項

第90条 新設分割計画の承認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新設分割計画の承認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新設分割を行う理由
- 二 新設分割計画の内容の概要
- 三 当該株式会社が新設分割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二百五条各号（第七号及び第八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第91条 株式移転計画の承認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株式移転計画の承認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

1. 신설합병을 하는 이유
2. 신설합병계약 내용의 개요
3. 주식회사가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에 제204조 각호(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의 개요
4.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이사가 되는 자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감사등 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인 이사가 되는 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제74조의 사항
5.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때에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인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제74조의3의 사항
6.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회계참여설치회사인 때에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회계참여가 되는 자에 관한 제75조의 사항
7.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감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제76조의 사항
8.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때에는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이 되는 자에 관한 제77조의 사항

제90조 신설분할계획의 승인에 관한 의안

이사가 신설분할계획의 승인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설분할을 하는 이유
2. 신설분할계획 내용의 개요
3. 주식회사가 신설분할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에 제205조 각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의 개요

제91조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에 관한 의안

이사가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株式移転を行う理由
- 二 株式移転計画の内容の概要
- 三 当該株式会社が株式移転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二百六条各号（第五号及び第六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 四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取締役となる者（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となる者を除く。）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
- 五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となる者につ
- 六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会計参与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会計参与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五条に規定する事項
- 七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監査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
- 八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会計監査人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七条に規定する事項

第91条の2

株式交付計画の承認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株式交付計画の承認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株式交付を行う理由
- 二 株式交付計画の内容の概要
- 三 当該株式会社が株式交付親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の決定をした日における第二百十三条の二各号（第六号及び第七号を除く。）に掲げる事項があるときは、当該事項の内容の概要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이전을 하는 이유
2. 주식이전계획 내용의 개요
3. 주식회사가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인 경우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에 제206조 각호(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의 개요
4.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이사가 되는 자(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감사등위원인 이사가 되는 자는 제외한다.)에 관한 제74조의 사항
5.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때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감사등위원인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제74조의3의 사항
6.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회계참여설치회사인 때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회계참여가 되는 자에 관한 제75조의 사항
7.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감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제76조의 사항
8.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가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때에는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회계감사인인 되는 자에 관한 제77조의 사항

제91조의2 주식교부계획의 승인에 관한 의안

이사가 주식교부계획의 승인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참고 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부를 하는 이유
2. 주식교부계획의 개요
3. 주식회사가 주식교부모회사인 경우에 법 제298조 제1항의 결정을 한 날의 제213조의2 각호(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항의 개요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92条 事業譲渡等に係る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

取締役が事業譲渡等に係る契約の承認に関す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事業譲渡等を行う理由
- 二 当該事業譲渡等に係る契約の内容の概要
- 三 当該契約に基づき当該株式会社が受け取る対価又は契約の相手方に交付する対価の算定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の概要

第7目 株主提案の場合における記載事項

第93条

1 議案が株主の提出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事項が株主総会参考書類にその全部を記載することが適切でない程度の多数の文字、記号その他のものをもって構成されている場合（株式会社がその全部を記載することが適切であるものとして定めた分量を超える場合を含む。）にあっては、当該事項の概要）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議案が株主の提出に係るものである旨
- 二 議案に対する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取締役会）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
- 三 株主が法第三百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際して提案の理由（当該提案の理由が明らかに虚偽である場合又は専ら人の名誉を侵害し、若しくは侮辱する目的によるものと認められる場合における当該提案の理由を除く。）を株式会社に對して通知したときは、その理由
- 四 議案が次のイからホまでに掲げる者の選任に関する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株主が法第三百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際して当該イからホまでに定める事項（当該事項が明らかに虚偽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を除く。）を株式会社に對して通知したときは、その内容
- イ 取締役（株式会社が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
- ロ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第七十四条の三に規定する事項

제92조 사업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

이사가 사업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승인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양도등을 하는 이유
2. 사업양도등에 관한 계약내용의 개요
3.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받는 대가 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대가 산정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의 개요

제7목 주주제안의 경우 기재사항

제93조

① 의안이 주주가 제출한 것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이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그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정도로 많은 문자, 기호 그 밖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주식회사가 그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정한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사항의 개요)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의안이 주주가 제출한 것인 뜻
2. 의안에 관하여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내용
3. 주주가 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청구시 제안의 이유(제안의 이유가 명백히 허위인 경우 또는 오로지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모욕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안의 이유는 제외한다)를 주식회사에 대하여 통지한 때에는 그 이유
4. 의안이 다음의 가목에서 마목의 자의 선임에 관한 것인 경우에 주주가 법 제305조 제1항의 청구시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사항(당해 사항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 당해 사항은 제외한다)을 주식회사에 통지한 때에는 그 내용

가. 이사(주식회사가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 : 제74조의 사항

나. 감사등위원인 이사 : 제74조의3의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ハ 会計参与 第七十五条に規定する事項
- ニ 監査役 第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
- ホ 会計監査人 第七十七条に規定する事項
- 五 議案が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事項に関する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株主が法第三百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際して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事項(当該事項が明らかに虚偽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を除く。)を株式会社に對して通知したときは、その内容
 - イ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第八十五条の二に規定する事項
 - ロ 株式の併合第八十五条の三に規定する事項
- 2 二以上の株主から同一の趣旨の議案が提出されてい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その議案及びこれに対する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取締役会)の意見の内容は、各別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ただし、二以上の株主から同一の趣旨の提案があった旨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二以上の株主から同一の趣旨の提案の理由が提出されてい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その提案の理由は、各別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8目 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の特則

第94条

- 1 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次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係る情報を、当該株主総会に係る招集通知を発出する時から当該株主総会の日から三箇月が経過する日までの間、継続して電磁的方法により株主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第二百二十二条第一項第一号ロに掲げる方法のうち、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された自動公衆送信装置(公衆の用に供する電気通信回線に接続することにより、その記録媒体のうち自動公衆送信の用に供する部分に記録され、又は当該装置に入力される情報を自動公衆送信する機能を有する装置をいう。以下同じ。)を使用する方法によって行われるものに限る。第三項において同じ。)をと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当該事項を記載した株主総会参考書類を株主に対して提供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この項の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限る
- 一 議案

다. 회계참여 : 제75조의 사항

라. 감사 : 제76조의 사항

마. 회계감사인의 경우 제77조의 사항

5. 의안이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 주주가 법 제305조 제1항의 청구시 가목 또는 나목의 사항(당해 사항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당해 사항은 제외한다)을 주식회사에 통지 한 때에는 그 내용

가.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 제85조의2의 사항

나. 주식의 병합: 제85조의3의 사항

- ② 2이상의 주주로부터 같은 뜻의 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그 의안 및 이에 대한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의 내용은 각별히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2이상의 주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이 있었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2이상의 주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의 이유가 제출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는 그 제안의 이유는 각별히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목 주주총회참고서류의 기재의 특칙

제94조

- ①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다음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는 때부터 주주총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주주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제2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 중 인터넷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공중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함으로써 그 기록매체 중 자동공중송신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기록되거나 또는 당해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공중송신하는 기능을 보유한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에 한한다. 제3항에서 같다)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은 그 사항을 기재한 주주총회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항의 조치를 취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다.

1. 의안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二 第百三十三条第三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を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ることと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
- 三 次項の規定により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
- 四 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前各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この項の措置をとること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が異議を述べ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
- 2 前項の場合には、株主に対して提供する株主総会参考書類に、同項の措置をとるために使用する自動公衆送信装置のうち当該措置をとるための用に供する部分を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識別するための文字、記号その他の符号又はこれらの結合であって、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がそ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入力することによって当該情報の内容を閲覧し、当該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当該情報を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規定は、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係る情報についても、電磁的方法により株主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をとるこ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第3款 種類株主総会

第95条

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について準用する。

- 一 第六十三条(第一号を除く。)法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百九十八条第一項第五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
- 二 第六十四条 法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百九十八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
- 三 第六十五条及び前款 種類株主総会の株主総会参考書類
- 四 第六十六条 種類株主総会の議決権行使書面
- 五 第六十七条 法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株主
- 六 第六十九条 法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十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
- 七 第七十条 法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十二条第一項に

2. 제133조 제3항 제1호의 사항을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항
3. 다음 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4.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전 각호의 것은 제외한다)에 관해 이 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익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 그 사항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제공하는 주주총회참고서류에 동항이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공중송신장치 중 해당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인터넷에서 식별하기 위한 문자, 기호 그 밖의 부호 또는 이것들의 결합으로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전자계산기에 입력함으로써 정보의 내용을 열람하고 전자계산기에 갖춰진 파일에 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주가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관 종류주주총회

제95조

다음 각호의 규정은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1. 제63조(제1호는 제외한다) :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8조 제1항 제5호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제64조 :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8조 제2항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3. 제65조 및 전관 : 종류주주총회의 주주총회참고서류
4. 제66조 : 종류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서면
5. 제67조 :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08조 제1항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주
6. 제69조 :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1조 제1항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때
7. 제70조 :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2조 제1항의 시행규칙에서 정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

八 第七十一条 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十四条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

九 第七十二条 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議事録の作成

第四款 電子提供措置

第95条の2 電子提供措置

法第三百二十五条の二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第二百二十二条第一項第一号ロに掲げる方法のうち、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された自動公衆送信装置を使用するものによる措置とする。

第95条の3 電子提供措置をとる場合における招集通知の記載事項

1 法第三百二十五条の四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電子提供措置をとっているときは、電子提供措置をとるために使用する自動公衆送信装置のうち当該電子提供措置をとるための用に供する部分を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識別するための文字、記号その他の符号又はこれらの結合であって、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がそ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入力することによって当該情報の内容を閲覧し、当該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当該情報を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その他の当該者が当該情報の内容を閲覧し、当該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当該情報を記録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二 法第三百二十五条の三第三項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項の手続であって、金融商品取引法施行令(昭和四十年政令第三百二十一号)第十四条の十二の規定により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して公衆の縦覧に供されるものを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識別するための文字、記号その他の符号又はこれらの結合であって、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がそ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入力することによって当該情報の内容を閲覧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その他の当該者が当該情報の内容を閲覧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하는 때

8. 제71조 :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4조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9. 제72조 :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의사록의 작성

제4관 전자제공조치

제95조의2 전자제공조치

법 제325조의2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2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 중 인터넷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한 조치로 한다.

제95조의3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경우 소집통지기재사항

- ① 법 제325조의4 제2항 제3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고 있는 때에는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공중송신장치 중 전자제공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을 인터넷에서 식별하기 위한 문자, 기호 그 밖의 부호 또는 이것들의 결합으로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입력함으로써 그 정보의 내용을 열람하고,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해당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것 그 외의 해당자가 정보의 내용을 열람하고, 해당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325조의3 제3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절차로서 금융상품거래법시행령 제14조의 12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의 종람에 제공되는 것을 인터넷에서 식별하기 위한 문자, 기호 그 밖의 부호 또는 이것들의 결합으로서 정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입력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 그 밖의 해당자가 해당 정보의 내용을 열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2 法第三百二十五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法第三百二十五条の四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前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とする。

第95条の4 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事項

1 法第三百二十五条の五第三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次に掲げるものを除く。)

イ 議案

ロ 株主総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イ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に記載しないこと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が異議を述べ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

二 事業報告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次に掲げるものを除く。)

イ 第二百十条第一項第四号、第五号、第七号及び第八号、第二百一十一条第一号から第六号の三まで、第二百一十一条の二、第二百二十五条並びに第二百六条第七号から第七号の四までに掲げる事項

ロ 事業報告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イ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に記載しないこと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が異議を述べ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

三 計算書類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株主資本等変動計算書又は個別注記表に係るものに限る。)

四 連結計算書類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会社計算規則第六十一条第一号ハの連結株主資本等変動計算書若しくは同号ニの連結注記表に係るもの又は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に限る。)

2 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の全部又は一部を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に記載しないときは、取締役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株主(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の交付を受ける株主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て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前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 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が、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に記載された事項(事業報告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に限る。)が監査報告を作成するに際して監査をした事業報告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の一部である旨を株主に対して通知すべきことを取

② 법 325조의 7에서 준용하는 법 325조의 4 제2항 제3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항 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95조의4**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법 제325조의5 제3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의안

나.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가목의 것은 제외한다)에 관해 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항

2. 사업보고서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사항(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2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 제121조 제1호 내지 제6호의3, 제121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7호 내지 제7호의4의 사항

나. 사업보고서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사항(가목의 것은 제외한다)에 관해 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항

3. 계산서류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사항(주주자본등변동계산서 또는 개별주기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연결계산서류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사항(회사계산규칙 제61조 제1호 다목의 연결주주자본등변동계산서 혹은 동 라목의 연결주기표에 관한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는 해당 각호의 사항을 주주(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을 교부받는 주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항 제2호의 사항: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에 기재된 사항(사업보고서에 기재되거나 기록된 사항에 한한다)이 감사보고서 작성시에 감사를 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사항의 일부인 취지를 주주에게 통지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한 때에는 그 뜻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締役に請求したときは、その旨

- 二 前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 監査役、会計監査人、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が、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に記載された事項(計算書類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に限る。)が監査報告又は会計監査報告を作成するに際して監査をした計算書類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の一部である旨を株主に対して通知すべきことを取締役等に請求したときは、その旨
- 三 前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 監査役、会計監査人、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が、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に記載された事項(連結計算書類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に限る。)が監査報告又は会計監査報告を作成するに際して監査をした連結計算書類に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事項の一部である旨を株主に対して通知すべきことを取締役等に請求したときは、その旨

第2節 会社役員の選任

第96条 補欠の会社役員の選任

- 1 法第三百二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補欠の会社役員(執行役を除き、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若しくはそれ以外の取締役又は会計参与。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選任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法第三百二十九条第三項に規定する決議により補欠の会社役員を選任す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も併せて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候補者が補欠の会社役員である旨
 - 二 当該候補者を補欠の社外取締役として選任するときは、その旨
 - 三 当該候補者を補欠の社外監査役として選任するときは、その旨
 - 四 当該候補者を一人又は二人以上の特定の会社役員の補欠の会社役員として選任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特定の会社役員の氏名(会計参与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氏名又は名称)
 - 五 同一の会社役員(二以上の会社役員の補欠として選任し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二以上の会社役員)につき二人以上の補欠の会社役員を選任するときは、当該補欠の会社役員相互間の優先順位
 - 六 補欠の会社役員について、就任前にその選任の取消しを行う場合があるとき

2. 전항 제3호의 사항: 감사, 회계감사인,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에 기재된 사항(계산서류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사항에 한한다)이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시에 감사를 한 계산서류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사항의 일부인 취지를 주주에게 통지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한 때에는 그 뜻
3. 전항 제4호의 사항: 감사, 회계감사인,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에 기재된 사항(연결계산서류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사항에 한한다)이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시에 감사한 연결계산서류에 기재되거나 또는 기록된 사항의 일부인 취지를 주주에게 통지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한 때에는 그 뜻

제2절 회사임원의 선임

제96조 보결 회사임원의 선임

- ① 법 제329조 제3항에 의한 보결회사임원(집행임원을 제외하고, 감사등위원 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혹은 그 밖에 이사 또는 회계참여.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임에 관하여는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법 제329조 제3항의 결의에 따라 보결회사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도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보결회사임원이라는 뜻
 2. 후보자를 보결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때에는 그 뜻
 3. 후보자를 보결사외감사로 선임하는 때에는 그 뜻
 4. 후보자를 1인 또는 2인 이상의 특정한 회사임원의 보결회사임원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그 뜻 및 특정한 회사임원의 성명(회계참여인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5. 같은 회사임원(2이상의 회사임원의 보결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회사임원)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보결회사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보결 회사임원 상호간의 우선순위
 6. 보결회사임원에 관하여 취임 전에 그 선임의 취소를 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は、その旨及び取消しを行うための手続

3 補欠の会社役員の選任に係る決議が効力を有する期間は、定款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決議後最初に開催する定時株主総会の開始の時までとする。ただし、株主総会（当該補欠の会社役員を法第百八条第一項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に従い種類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選任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種類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その期間を短縮することを妨げない。

第97条 累積投票による取締役の選任

1 法第三百四十二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法務省令で定めるべき事項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法第三百四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は、取締役(株主総会の議長が存する場合にあっては議長、取締役及び議長が存し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請求をした株主)は、同項の株主総会における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選任の決議に先立ち、法第三百四十二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り取締役を選任すること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第三百四十二条第四項の場合において、投票の同数を得た者が二人以上存することにより同条第一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取締役の数の取締役について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から順次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する事ができないときは、当該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取締役の数以下の数であつて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から順次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する事ができる数の範囲内で、投票の最多数を得た者から順次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する。

4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法第三百四十二条第一項の株主総会において選任する取締役の数から前項の規定により取締役に選任されたものとされた者の数を減じて得た数の取締役は、同条第三項及び第四項に規定するところによらないで、株主総会の決議により選任する。

그 뜻 및 취소를 하기 위한 절차

③ 보결회사임원의 선임에 관한 결의가 효력을 갖는 기간은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의 후 처음에 개최하는 정기주주총회의 개시시 까지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보결회사임원을 법 제108조 제1항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에 따라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7조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① 법 제342조 제5항에 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342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사(주주총회의 의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 이사 및 의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주주)는 동항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임 결의에 앞서, 법 제34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2조 제4항의 경우 투표의 동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 있어 동조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수의 이사에 관하여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의 수 이하의 수로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수의 범위 내에서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법 제342조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의 수에서 전항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한 자의 수를 감하고 얻은 수의 이사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第3節 取締役

第98条 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 法第三百四十八条第三項第四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は、当該株式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体制とする。

一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の職務の執行に係る情報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体制

二 当該株式会社の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三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の職務の執行が効率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四 当該株式会社の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五 次に掲げる体制その他の当該株式会社並びにその親会社及び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における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イ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ハ及びニにおいて「取締役等」という。)の職務の執行に係る事項の当該株式会社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ロ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ハ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等の職務の執行が効率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ニ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等及び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2 取締役が二人以上ある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に規定する体制には、業務の決定が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を含むものとする。

3 監査役設置会社以外の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に規定する体制には、取締役が株主に報告すべき事項の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を含むものとする。

4 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に規定する体制には、次に掲げる体制を含むものとする。

제3절 이사

제98조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① 법 제348조의 제3항 제4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제는 주식회사의 다음의 체제를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2. 주식회사의 손실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체제
3. 주식회사의 이사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4. 주식회사의 사용인의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5. 다음의 체제 그 밖에 주식회사,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에서의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가.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자, 그 밖에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 자(다목 및 라목에서 “이사 등”이라 한다)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주식회사에 대한 보고에 관한 체제
 - 나.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손실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외의 체제
 - 다.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이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라.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등 및 사용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② 이사가 2인 이상 있는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전항의 체제에는 업무결정의 적정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감사설치회사 이외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체제에는 이사가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의 보고를 위한 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④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 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체제에는 다음의 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一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がその職務を補助すべき使用人を置くことを求めた場合における当該使用人に関する事項
- 二 前号の使用人の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取締役からの独立性に関する事項
- 三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の第一号の使用人に対する指示の実効性の確保に関する事項
- 四 次に掲げる体制その他の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 イ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取締役及び会計参与並びに使用人が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
 - ロ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及び使用人又はこれらの者から報告を受けた者が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
- 五 前号の報告をした者が当該報告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不利な取扱いを受けない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六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の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の前払又は償還の手続その他の当該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又は債務の処理に係る方針に関する事項
- 七 その他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の監査が実効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第98条の2

取締役の報酬等のうち株式会社の募集株式について定めるべき事項

法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号の募集株式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一定の事由が生ずるまで当該募集株式を他人に譲り渡さないことを取締役 に約させ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事由の概要
- 二 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当該募集株式を当該株式会社に無償で譲り渡すことを取締役 に約させ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事由の概要
- 三 前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取締役に対して当該募集株式を割り当てる条件

1. 감사설치회사의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할 사용인을 둘 것을 요구할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인에 관한 사항
2. 전호 사용인의 감사설치회사의 이사로 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3.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의 제1호의 사용인에 대한 지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다음의 체제, 그 외의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에 관한 체제
 - 가. 감사설치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및 사용인이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체제
 - 나. 감사설치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 할 자, 그 밖에 이러한 자에 상당하는 자 및 사용인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가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체제
5. 전호의 보고를 한 자가 당해 보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체제
6.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선급 또는 환급절차 기타 직무집행에 관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채무의 처리에 관련된 방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제98조의2**이사의 보수 등 중 주식회사의 모집주식에 관해 정해야 할 사항**

법 제361조 제1항 제3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호의 모집주식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모집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이사와 약정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일정한 사유의 개요
2.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조건으로 모집주식을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이사와 약정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일정한 사유의 개요
3. 전 2호의 사항 외에 이사에게 모집주식을 배정하는 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の概要

第98条の3	取締役の報酬等のうち株式会社の募集新株予約権について定めるべき事項

法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号の募集新株予約権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同条第三項の場合には、同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並びに同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事項)
- 二 一定の資格を有する者が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資格の内容の概要
- 三 前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当該募集新株予約権の行使の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の概要
- 四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
- 五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の内容の概要
- 六 取締役に対して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割り当てる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の概要

第98条の4	取締役の報酬等のうち株式等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について定めるべき事項

1 法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五号イ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号イの募集株式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一定の事由が生ずるまで当該募集株式を他人に譲り渡さないことを取締役に約させ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事由の概要
- 二 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当該募集株式を当該株式会社に無償で譲り渡すことを取締役に約させ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事由の概要
- 三 前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取締役に対して当該募集株式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を交付する条件又は取締役に対して当該募集株式を割り当てる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の概要

2 法第三百六十一条第一項第五号ロ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号

조건의 개요

제98조의3

이사의 보수 등 중 주식회사의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해 정해야 할 사항

법 제361조 제1항 제4호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동호의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동조 제3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동조 제3항 각호의 사항)
2.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모집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일정 자격의 개요
3. 전 2호의 사항 외에 모집신주예약권의 행사의 조건을 정하는 때에는 그 조건의 개요
4. 법 제236조 제1항 제6호의 사항
5. 법 제236조 제1항 제7호의 사항의 개요
6. 이사에게 모집신주예약권을 배정하는 조건을 정할 때에는 그 조건의 개요

제98조의4

이사의 보수등 중 주식등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금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 제36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호 가목의 모집주식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모집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이사와 약정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일정한 사유의 개요
2.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조건으로 모집주식을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이사와 약정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일정한 사유의 개요
3. 전 2호의 사항 외에 이사에게 모집주식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을 교부하는 조건 또는 이사에게 모집주식을 배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때에는 그 조건의 개요

② 법 제361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동호 나목의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口の募集新株予約権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同条第三項の場合には、同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並びに同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事項)
- 二 一定の資格を有する者が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資格の内容の概要
- 三 前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当該募集新株予約権の行使の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の概要
- 四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
- 五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の内容の概要
- 六 取締役に対して当該募集新株予約権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を交付する条件又は取締役に対して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割り当てる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の概要

第98条の5 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についての決定に関する方針

法第三百六十一条第七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個人別の報酬等(次号に規定する業績連動報酬等及び第三号に規定する非金銭報酬等のいずれでもないものに限る。)の額又はその算定方法の決定に関する方針
- 二 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等のうち、利益の状況を示す指標、株式の市場価格の状況を示す指標その他の当該株式会社又はその関係会社(会社計算規則第二条第三項第二十五号に規定する関係会社をいう。)の業績を示す指標(以下この号及び第百二十一条第五号の二において「業績指標」という。)を基礎としてその額又は数が算定される報酬等(以下この条並びに第百二十一条第四号及び第五号の二において「業績連動報酬等」という。)がある場合には、当該業績連動報酬等に係る業績指標の内容及び当該業績連動報酬等の額又は数の算定方法の決定に関する方針
- 三 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等のうち、金銭でないもの(募集株式又は募集新株予約権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を取締役の報酬等とする場合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동조 제3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동조 제3항 각호의 사항)
2.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모집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일정한 자격의 내용의 개요
3. 전 2호의 사항 외에 모집신주예약권의 행사 조건을 정하는 때에는 그 조건의 개요
4. 법 제236조 제1항 제6호의 사항
5. 법 제236조 제1항 제7호의 사항의 내용 개요
6. 이사에게 해당 모집신주예약권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을 교부하는 조건 또는 이사에게 모집신주예약권을 배정하는 조건을 정할 때에는 그 조건의 개요

제98조의5 이사의 개인별 보수 등의 내용 결정에 관한 방침

법 제361조 제7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개인별 보수 등(다음 호의 업적연동보수 등 및 제3호의 비금전보수 등의 어느 것도 아닌 것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방침
2. 이사의 개인별 보수 등 중 이익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주식의 시장가격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그 밖의 주식회사 또는 그 관계회사(회사계산규칙 제2조 제3항 제25호의 관계회사를 말한다)의 업적을 나타내는 지표(이하 이 호 및 제121조 제5호의2에서 '업적지표'라 한다)를 기초로 금액 또는 수가 산정되는 보수 등(이하 이조 및 제121조 제4호 및 제5호의 2에서 '업적연동보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적연동보수 등의 금액 또는 수의 산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방침
3. 이사의 개인별 보수 등 중 금전이 아닌 것(모집주식 또는 모집신주예약권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을 이사의 보수 등으로 하는 경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における当該募集株式又は募集新株予約権を含む。以下この条並びに第二百二十一条第四号及び第五号の三において「非金銭報酬等」という。)がある場合には、当該非金銭報酬等の内容及び当該非金銭報酬等の額若しくは数又はその算定方法の決定に関する方針

- 四 第一号の報酬等の額、業績連動報酬等の額又は非金銭報酬等の額の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等の額に対する割合の決定に関する方針
- 五 取締役に対し報酬等を与える時期又は条件の決定に関する方針
- 六 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についての決定の全部又は一部を取締役その他の第三者に委任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委任を受ける者の氏名又は当該株式会社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 ロ イの者に委任する権限の内容
 - ハ イの者によりロの権限が適切に行使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講ず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内容
- 七 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についての決定の方法(前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
- 八 前各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についての決定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4節 取締役会

第99条 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に際して取締役会が定めるべき事項

- 1 法第三百六十二条第四項第五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二以上の募集(法第六百七十六条の募集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係る法第六百七十六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を委任するときは、その旨
 - 二 募集社債の総額の上限(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各募集に係る募集社債の総額の上限の合計額)
 - 三 募集社債の利率の上限その他の利率に関する事項の要綱
 - 四 募集社債の払込金額(法第六百七十六条第九号に規定する払込金額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総額の最低金額その他の払込金額に関する

우의 모집주식 또는 모집신주예약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 및 제121조 제 4호 및 제5호의 3에서 '비금전보수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비금전보수 등의 내용 및 비금전보수 등의 금액이나 수 또는 그 산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방침

4. 제1호의 보수 등의 금액, 업적연동보수 등의 금액 또는 비금전보수 등의 금액의 이사 개인별 보수 등의 금액에 대한 비율의 결정에 관한 방침
 5. 이사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시기 또는 조건의 결정에 관한 방침
 6. 이사의 개인별 보수 등의 내용에 대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 그 밖의 제3자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
 - 가. 위임을 받는 자의 성명 또는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 나. 가목의 자에게 위임할 권한의 내용
 - 다. 가목의 자에 의해 나목의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때에는 그 내용
 7. 이사의 개인별 보수 등의 내용에 대한 결정 방법(전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8 전 각호의 사항 외에 이사의 개인별 보수 등의 내용에 대한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절 이사회

제99조 사채를 인수하는 자의 모집시 이사회가 정하여야 할 사항

- ① 법 제362조 제4항 제5호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2이상의 모집(법 제676조의 모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법 제676조 각호의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는 때에는 그 뜻
 2. 모집사채의 총액의 상한(전호의 경우에는 각 모집에 관한 모집사채의 총액의 상한의 합계액)
 3. 모집사채의 이율의 상한 그 밖의 이율에 관한 사항의 요강
 4. 모집사채의 납입금액(법 제676조 제9호의 납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총액의 최저금액 그 밖의 납입금액에 관한 사항의 요강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事項の要綱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信託社債(当該信託社債について信託財産に属する財産のみをもってその履行の責任を負うものに限る。)の募集に係る法第六百七十六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を委任する場合には、法第三百六十二条第四項第五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当該決定を委任する旨とする。

第100条 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 法第三百六十二条第四項第六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は、当該株式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体制とする。

一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の職務の執行に係る情報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体制

二 当該株式会社の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三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の職務の執行が効率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四 当該株式会社の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五 次に掲げる体制その他の当該株式会社並びにその親会社及び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における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イ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ハ及びニにおいて「取締役等」という。)の職務の執行に係る事項の当該株式会社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ロ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ハ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等の職務の執行が効率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ニ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等及び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2 監査役設置会社以外の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に規定する体制には、取締役が株主に報告すべき事項の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を含むものとする。

3 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に規定する体制に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채(신탁사채에 관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만으로 이행책임을 지는 것에 한한다)의 모집에 관한 법 제676조 각호의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362조 제4항 제5호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결정을 위임하는 뜻을 말한다.

제100조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① 법 제362조 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제는 주식회사의 다음의 체제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2. 주식회사의 손실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체제
3. 주식회사의 이사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4. 주식회사의 사용인의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5. 다음의 체제 그 밖의 주식회사,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이루어지는 기업집단에서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가.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 할 자, 그 밖에 이러한 자에 상당하는 자(다목 및 라목의 “이사 등”라 한다)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주식회사에 대한 보고에 관한 체제
 - 나.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손실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체제
 - 다.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등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라.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등 및 사용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② 감사설치회사 이외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전항의 체제에는 이사가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의 보고를 위한 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③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체제는 다음 체제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は、次に掲げる体制を含むものとする。

- 一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がその職務を補助すべき使用人を置くことを求めた場合における当該使用人に関する事項
- 二 前号の使用人の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取締役からの独立性に関する事項
- 三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の第一号の使用人に対する指示の実効性の確保に関する事項
- 四 次に掲げる体制その他の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 イ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取締役及び会計参与並びに使用人が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
 - ロ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 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及び使用人又はこれらの者から報告を受けた者が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
- 五 前号の報告をした者が当該報告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不利な取扱いを受けない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六 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の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の前払又は償還の手続その他の当該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又は債務の処理に係る方針に関する事項
- 七 その他当該監査役設置会社の監査役の監査が実効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第101条 取締役会の議事録

- 1 法第三百六十九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る取締役会の議事録の作成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取締役会の議事録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取締役会の議事録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取締役会が開催された日時及び場所(当該場所に存しない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執行役、会計参与、監査役、会計監査人又は株主が取締役会に出席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出席の方法を含む。)

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 감사설치회사의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하여야 할 사용인을 두는 것을 요구한 경우 당해 사용인에 관한 사항
2. 전호의 사용인이 감사설치회사의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3.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의 제1호의 사용인에 대한 지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다음의 체제, 그 밖에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에 관한 체제

가. 감사설치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및 사용인이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체제

나. 감사설치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 할 자, 그 밖에 이러한 자에 상당하는 자 및 사용인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가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체제

5. 전호의 보고를 한 자가 보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체제
6.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선급 또는 환급 절차 기타 당해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채무의 처리에 관련된 방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설치회사의 감사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제101조 이사회회의 의사록

- ① 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한 이사회회의사록작성에 관하여는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이사회회의 의사록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회의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사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당해 장소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등 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외의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감사, 회계감사인 또는 주주가 이사회에 출석을 한 경우의 당해 출석방법을 포함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二 取締役会が法第三百七十三条第二項 の取締役会であるときは、その旨
- 三 取締役会が次に掲げるいずれかのもの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旨
 - イ 法第三百六十六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取締役の請求を受けて招集されたもの
 - ロ 法第三百六十六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り取締役が招集したもの
 - ハ 法第三百六十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株主の請求を受けて招集されたもの
 - ニ 法第三百六十七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六十六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り株主が招集したもの
 - ホ 法第三百八十三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監査役の請求を受けて招集されたもの
 - ヘ 法第三百八十三条第三項 の規定により監査役が招集したもの
 - ト 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四の規定により監査等委員会が選定した監査等委員が招集したもの
 - チ 法第四百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指名委員会等の委員の中から選定された者が招集したもの
 - ト 法第四百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委員の中から選定された者が招集したもの
 - リ 法第四百七条第二項 前段の規定による執行役の請求を受けて招集されたもの
 - ヌ 法第四百七条第二項 後段の規定により執行役が招集したもの
- 四 取締役会の議事の経過の要領及びその結果
- 五 決議を要する事項について特別の利害関係を有する取締役があるときは、当該取締役の氏名
- 六 次に掲げる規定により取締役会において述べられた意見又は発言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又は発言の内容の概要
 - イ 法第三百六十五条第二項 (法第四百十九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ロ 法第三百六十七条第四項
 - ハ 法第三百七十六条第一項
 - ニ 法第三百八十二条
 - ホ 法第三百八十三条第一項

2. 이사회가 법 제373조 제2항의 이사회인 때에는 그 뜻
3. 이사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뜻
 - 가. 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한 이사의 청구에 의해 소집된 것
 - 나. 법 제36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가 소집한 것
 - 다. 법 제367조 제1항에 의한 주주의 청구에 의해 소집된 것
 - 라. 법 제36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66조 제3항에 의하여 주주가 소집한 것
 - 마. 법 제383조 제2항에 의한 감사의 청구에 의해 소집된 것
 - 바. 법 제383조 제3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한 것
 - 사. 법 제399조의4에 따라 감사등위원회가 선정한 감사등위원이 소집한 것
 - 아. 법 제417조 제1항에 의하여 지명위원회등의 위원 중에서 선정된자가 소집한 것
 - 자. 법 제41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선정된 자가 소집한 것
 - 차. 법 제417조 제2항 전단에 의한 집행임원의 청구에 의해 소집된 것
 - 카. 법 제417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집행임원이 소집한 것
4. 이사회의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
5.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의 성명
6.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진술된 의견 또는 발언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또는 발언내용의 개요
 - 가. 법 제365조 제2항(법 제419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법 제367조 제4항
 - 다. 법 제376조 제1항
 - 라. 법 제382조
 - 마. 법 제383조 제1항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ヘ 法第三百九十九条の四

ト 法第四百六条

チ 法第四百三十条の二第四項

七 取締役会に出席した執行役、会計参与、会計監査人又は株主の氏名又は名称

八 取締役会の議長が存するときは、議長の氏名

4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取締役会の議事録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とする。

一 法第三百七十条の規定により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事項の内容

ロ イの事項の提案をした取締役の氏名

ハ 取締役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

ニ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の氏名

二 法第三百七十二条第一項（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取締役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取締役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事項の内容

ロ 取締役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日

ハ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の氏名

第5節 会計参与

第102条 会計参与報告の内容

法第三百七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会計参与報告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会計参与が職務を行うにつき会計参与設置会社と合意した事項のうち主なもの

二 計算関係書類のうち、取締役又は執行役と会計参与が共同して作成したものの種類

三 会計方針（会社計算規則第二条第三項第六十二号に規定する会計方針をいう。）に関する次に掲げる事項（重要性の乏しいものを除く。）

바. 법제399조의4

사. 법 제406조

아. 법 제430조의 2 제4항

7. 이사회에 출석한 집행임원, 회계참여, 회계감사인,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8. 이사회 의장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성명

④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은 당해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법 제370조에 의하여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경우 다음의 사항

가.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사항의 내용

나. 가목의 사항의 제안을 한 이사의 성명

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날

라. 의사록의 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사의 성명

2. 법 제372조 제1항(동조 제3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이사회에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경우 다음의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사항의 내용

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가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날

다. 의사록의 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사의 성명

제5절 회계참여

제102조 회계참여보고서의 내용

법 제374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회계참여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회계참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회계참여설치회사와 합의한 사항 중 주된 사항
2. 계산관계서류 중 이사 또는 집행임원과 회계참여가 공동으로 작성한 서류의 종류
3. 회계방침(회사계산규칙 제2조 제3항 제62호의 방침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중요성이 부족한 것은 제외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イ 資産の評価基準及び評価方法
 - ロ 固定資産の減価償却の方法
 - ハ 引当金の計上基準
 - ニ 収益及び費用の計上基準
 - ホ その他計算関係書類の作成のための基本となる重要な事項
- 四 計算関係書類の作成に用いた資料の種類その他計算関係書類の作成の過程及び方法
- 五 前号に規定する資料が次に掲げる事由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理由
- イ 当該資料が著しく遅滞して作成されたとき。
 - ロ 当該資料の重要な事項について虚偽の記載がされていたとき。
- 六 計算関係書類の作成に必要な資料が作成されていなかったとき又は適切に保存されていなかった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理由
- 七 会計参与が計算関係書類の作成のために行った報告の徴収及び調査の結果
- 八 会計参与が計算関係書類の作成に際して取締役又は執行役と協議した主な事項

第103条 計算書類等の備置き

- 1 法第三百七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会計参与が同項各号に掲げるものを備え置く場所(以下この条において「会計参与報告等備置場所」という。)を定める場合に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会計参与は、当該会計参与である公認会計士若しくは監査法人又は税理士若しくは税理士法人の事務所(会計参与が税理士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七号)第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税理士又は税理士法人の補助者として当該税理士の税理士事務所に勤務し、又は当該税理士法人に所属し、同項に規定する業務に従事する者であるときは、その勤務する税理士事務所又は当該税理士法人の事務所)の場所の中から会計参与報告等備置場所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3 会計参与は、会計参与報告等備置場所として会計参与設置会社の本店又は支店と異なる場所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 4 会計参与は、会計参与報告等備置場所を定めた場合には、遅滞なく、会計参与設置会社に対して、会計参与報告等備置場所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가. 자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 다. 충당금의 계상기준
- 라. 수익 및 비용의 계상기준
- 바. 그 밖에 계산관계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
- 4. 계산관계서류의 작성에 이용한 자료의 종류 그 밖에 계산관계서류의 작성
과정 및 방법
- 5. 전호의 자료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이유

- 가. 자료가 현저하게 지체되어 작성된 때
- 나. 자료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가 있는 때
- 6. 계산관계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적절하게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 및 이유
- 7. 회계참여가 계산관계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한 보고의 징수 및 조사의 결과
- 8. 회계참여가 계산관계서류의 작성시 이사 또는 집행임원과 협의한 주된 사항

제103조 계산서류등의 비치

- ① 법 제378조 제1항에 의하여 회계참여가 동항 각호의 것을 비치하여 두는 장
소(이하 이 조에서 “회계참여보고서등비치장소”라고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회계참여는 회계참여인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세무사 혹은 세무법인의 사
무소(회계참여가 세무사법(1951년 법률 제 237호)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세
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보조자로서 당해 세무사의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거나
당해 세무사법인에 소속되고, 동항의 업무종사자인 때에는 그 종사하는 세무
사사무소 또는 소속 세무사법인의 사무소) 중에서 회계참여보고등비치장소를
정하여야한다.
- ③ 회계참여는 회계참여보고서등비치장소로서 회계참여설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과 다른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④ 회계참여는 회계참여보고서등비치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계참
여설치회사에 대하여 회계참여보고서등비치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104条 計算書類の閲覧

法第三百七十八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とは、会計参与である公認会計士若しくは監査法人又は税理士若しくは税理士法人の業務時間外である場合とする。

第6節 監査役

第105条 監査報告の作成

1 法第三百八十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監査役は、その職務を適切に遂行するため、次に掲げる者との意思疎通を図り、情報の収集及び監査の環境の整備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取締役又は取締役会は、監査役の職務の執行のための必要な体制の整備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及び使用人
- 二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 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及び使用人
- 三 その他監査役が適切に職務を遂行するに当たり意思疎通を図るべき者

3 前項の規定は、監査役が公正不偏の態度及び独立の立場を保持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おそれのある関係の創設及び維持を認める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4 監査役は、その職務の遂行に当たり、必要に応じ、当該株式会社の他の監査役、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及び子会社の監査役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者との意思疎通及び情報の交換を図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6条 監査役の調査の対象

法第三百八十四条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電磁的記録その他の資料とする。

제104조 계산서류의 열람

법 제378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참여인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인의 업무시간 외인 경우를 말한다.

제6절 감사

제105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381조 제1항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감사는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와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정보수집 및 감사의 환경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이사회는 감사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및 사용인
2.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행하는 자 그 밖에 이러한 자에 상당하는 자 및 사용인
3. 그 밖에 감사가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려면 당연히 의사소통을 도모하여야 할 자
- ③ 전항은 감사가 공정한 태도 및 독립된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관계를 창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감사는 직무수행시 필요에 따라 주식회사의 다른 감사, 주식회사의 모회사 및 자회사의 감사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6조 감사의 조사의 대상

법 제384조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란 전자적 기록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107条 監査報告の作成

1 法第三百八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監査役は、その職務を適切に遂行するため、次に掲げる者との意思疎通を図り、情報の収集及び監査の環境の整備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取締役又は取締役会は、監査役の職務の執行のための必要な体制の整備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及び使用人

二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及び使用人

三 その他監査役が適切に職務を遂行するに当たり意思疎通を図るべき者

3 前項の規定は、監査役が公正不偏の態度及び独立の立場を保持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おそれのある関係の創設及び維持を認める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4 監査役は、その職務の遂行に当たり、必要に応じ、当該株式会社の他の監査役、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及び子会社の監査役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者との意思疎通及び情報の交換を図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8条 監査の範囲が限定されている監査役の調査の対象

法第三百八十九条第三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計算関係書類

二 次に掲げる議案が株主総会に提出される場合における当該議案

イ 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取得に関する議案（当該取得に際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係る部分に限る。）

ロ 剰余金の配当に関する議案（剰余金の配当に際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係る部分に限る。）

ハ 法第四百四十七条第一項の資本金の額の減少に関する議案

ニ 法第四百四十八条第一項の準備金の額の減少に関する議案

ホ 法第四百五十条第一項の資本金の額の増加に関する議案

제107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 ① 법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감사는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와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정보 수집 및 감사의 환경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이사회는 감사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체제의 정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및 사용인
 2.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법 제 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자 그 밖에 이러한 자에 상당하는 자 및 사용인
 3. 그 밖에 감사가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한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할 자
- ③ 전항의 규정은 감사가 공정한 태도 및 독립된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관계를 창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감사는 그 직무 수행시 필요에 따라 주식회사의 다른 감사, 주식회사의 모회사 및 자회사의 감사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8조 감사의 범위가 한정된 감사의 조사의 대상

법 제389조 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산관계서류
2. 다음의 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된 경우 그 의안
 - 가.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의안(취득시 교부하는 금전등의 합계액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 나.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의안(잉여금의 배당시 교부하는 금전등의 합계액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 다. 법 제447조 제1항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의안
 - 라. 법 제448조 제1항의 준비금 감소에 관한 의안
 - 마. 법 제450조 제1항의 자본금 증가에 관한 의안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ヘ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六号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ト 法第四百五十二条 に規定する剰余金の処分に関する議案
- 三 次に掲げる事項を含む議案が株主総会に提出され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
 - イ 法百九十九条第一項第五号 の増加する資本金及び資本準備金に関する事項
 - ロ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五号 の増加する資本金及び資本準備金に関する事項
 - ハ 法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二号 イ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ニ 法第七百五十三条第一項第六号 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ホ 法第七百五十八条第四号 イ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ヘ 法第七百六十三条第六号 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ト 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 イ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チ 法第七百七十三条第一項第五号 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リ 法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三号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ヌ 法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八号イの資本金及び準備金の額に関する事項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これらに準ずるもの

第7節 監査役会

第109条

- 1 法第三百九十三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監査役会の議事録の作成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監査役会の議事録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監査役会の議事録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監査役会が開催された日時及び場所 (当該場所に存しない監査役、取締役、会計参与又は会計監査人が監査役会に出席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出席の方法を含む。)

- 바. 법 제763조 제1항 제6호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사. 법 제452조의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의안
3.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된 경우 그 사항
 가. 법 제199조 제1항 제5호의 증가하는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36조 제1항 제5호의 증가하는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법 제7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라. 법 제753조 제1항 제6호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마. 법 제758조 제4호 가목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바. 법 제763조 제6호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사. 법 제76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 아. 법 제773조 제1항 제5호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자. 법 제774조의3 제1항 제3호의 자본금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 차. 법 제774조의 3 제1항 제8호 가목의 자본금 및 준비금의 금액에 관한
 사항
4. 전3호 외에 이에 준하는 것

제7절 감사회

제109조

- ① 법 제393조 제2항에 의한 감사회 의사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② 감사회 의사록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감사회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감사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그 장소에 없는 감사, 이사, 회계참여 또는 회계감사인인 감사회에 출석을 한 경우 출석방법을 포함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二 監査役会の議事の経過の要領及びその結果
- 三 次に掲げる規定により監査役会において述べられた意見又は発言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又は発言の内容の概要
 - イ 法第三百五十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法第四百八十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ロ 法第三百七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
 - ハ 法第三百九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
- 四 監査役会に出席した取締役、会計参与又は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 五 監査役会の議長が存するときは、議長の氏名
- 4 法第三百九十五条の規定により監査役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場合には、監査役会の議事録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とする。
 - 一 監査役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事項の内容
 - 二 監査役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日
 - 三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監査役の氏名

第8節 会計監査人

第110条

- 1 法第三百九十六条第一項 後段の規定により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会計監査人は、その職務を適切に遂行するため、次に掲げる者との意思疎通を図り、情報の収集及び監査の環境の整備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会計監査人が公正不偏の態度及び独立の立場を保持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おそれのある関係の創設及び維持を認めるものと解してはならない。
 - 一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及び使用人
 - 二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及び使用人
 - 三 その他会計監査人が適切に職務を遂行するに当たり意思疎通を図るべき者

2. 감사회의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
3.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회에서 진술된 의견 또는 발언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또는 발언내용의 개요
 - 가. 법 제357조 제2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법 제48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법 제375조 제2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
 - 다. 법 제397조 제3항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
4. 감사회에 출석한 이사, 회계참여 또는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5. 감사회의 의장이 있는 때에는 의장의 성명
- ④ 법 제395조에 의하여 감사회에 대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감사회 의사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
 1. 감사회에 대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사항의 내용
 2. 감사회에 대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날
 3. 의사록의 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감사의 성명

제8절 회계감사인

제110조

- ① 법 제396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회계감사인은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와의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수집 및 감사의 환경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인이 공정한 태도 및 독립된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관계를 창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및 사용인
 2.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자 그 밖의 이러한 자에 상당하는 자 및 사용인
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이 적절한 직무수행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할 자

第8節の2 監査等委員会

第110条の2 監査等委員の報告の対象

法第三百九十九条の五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電磁的記録その他の資料とする

第110条の3 監査等委員会の議事録

1 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第三項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会の議事録の作成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監査等委員会の議事録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監査等委員会の議事録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監査等委員会が開催された日時及び場所(当該場所に存しない監査等委員、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ものを除く。)、会計参与又は会計監査人が監査等委員会に出席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出席の方法を含む。)

二 監査等委員会の議事の経過の要領及びその結果

三 決議を要する事項について特別の利害関係を有する監査等委員があるときは、その氏名

四 次に掲げる規定により監査等委員会において述べられた意見又は発言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又は発言の内容の概要

イ 法第三百五十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

ロ 法第三百七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

ハ 法第三百九十七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

五 監査等委員会に出席した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ものを除く。)、会計参与又は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六 監査等委員会の議長が存するときは、議長の氏名

4 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二の規定により監査等委員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場合には、監査等委員会の議事録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とする。

一 監査等委員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事項の内容

제8절의2 감사등위원회

제110조의2 감사등위원의 보고대상

법 제399조의5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전자적 기록, 그 밖의 자료로 한다.

제110조의3 감사등위원회의 의사록

① 법 제399조의10 제3항의 감사등위원회의 회의록작성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감사등위원회의 회의록은 서면 또는 전자적기록으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등위원회의 회의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감사등위원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당해 장소에 존재하지 아니한 감사등위원, 이사(감사등위원인 자는 제외한다), 회계참여 또는 회계감사인이 감사등위원회에 출석 한 경우의 당해 출석방법을 포함한다)
2. 감사등위원회의 의사 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
3.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감사등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4. 다음 규정에 의해 감사등위원회에서 언급된 의견이나 발언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이나 발언내용의 개요
 - 가. 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
 - 나. 법 제375조 제3항에 따라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
 - 다. 법 제397조 제4항에 따라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
5. 감사등위원회에 출석한 이사(감사등위원인 자는 제외한다), 회계참여 또는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6. 감사등위원회의 의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성명

④ 법 제399조의12에 따라 감사등위원회에 보고를 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1. 감사등위원회에 보고를 요하지 않게 된 사항의 내용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二 監査等委員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日
- 三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監査等委員の氏名

第110条の4 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 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一項第一号ロ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会の職務を補助すべき取締役及び使用人に関する事項
 - 二 前号の取締役及び使用人の当該株式会社の他の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からの独立性に関する事項
 - 三 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会の第一号の取締役及び使用人に対する指示の実効性の確保に関する事項
 - 四 次に掲げる体制その他の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会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 イ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及び会計参与並びに使用人が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会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
 - ロ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及び使用人又はこれらの者から報告を受けた者が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会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
 - 五 前号の報告をした者が当該報告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不利な取扱いを受けない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六 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の職務の執行(監査等委員会の職務の執行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生ずる費用の前払又は償還の手続その他の当該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又は債務の処理に係る方針に関する事項
 - 七 その他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会の監査が実効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2 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一項第一号ハ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は、当該株式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体制とする。
- 一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の職務の執行に係る情報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体制

2. 감사등위원회에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날
3.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직무를 행한 감사등위원의 성명

제110조의4 업무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① 법 제399조의1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회의 직무를 보조할 이사 및 사용인에 관한 사항
2. 전호의 이사 및 사용인의 주식회사의 다른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3.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회의 제1호의 이사 및 사용인에 대한 지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다음의 체제, 그 외의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체제

가.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 회계참여 및 사용인이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한 체제

나.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자, 기타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 자 및 사용인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가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한 체제

5. 전호의 보고를 한 자가 당해 보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체제
6.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의 직무집행(감사등위원회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발생된 비용의 선급 또는 환급절차, 그 밖에 당해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채무의 처리에 관련된 방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회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② 법 제399조의13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제는 주식회사의 다음의 체제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二 当該株式会社の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 三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の職務の執行が効率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四 当該株式会社の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五 次に掲げる体制その他の当該株式会社並びにその親会社及び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における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イ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ハ及びニにおいて「取締役等」という。)の職務の執行に係る事項の当該株式会社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 ロ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 ハ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等の職務の執行が効率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ニ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等及び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第110条の5 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に際して取締役会が定めるべき事項

- 1 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四項第五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二以上の募集(法第六百七十六条 の募集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係る法第六百七十六条 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を委任するときは、その旨
 - 二 募集社債の総額の上限(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各募集に係る募集社債の総額の上限の合計額)
 - 三 募集社債の利率の上限その他の利率に関する事項の要綱
 - 四 募集社債の払込金額(法第六百七十六条第九号に規定する払込金額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総額の最低金額その他の払込金額に関する事項の要綱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信託社債(当該信託社債について信託財産に属する財産のみをもってその履行の責任を負うものに限る。)の募集に係る法第六百七十六条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を委任する場合には、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

2. 주식회사의 손실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체제
3.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확보하기 위한 체제
4. 주식회사의 사용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5. 다음의 체제, 그 밖에 주식회사,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의 업무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가.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 할 자, 그 밖에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 자(다목 및 라목에서 “이사 등”이라 한다)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사항의 주식회사에 대한 보고에 관한 체제
 - 나.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손실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체제
 - 다.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등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라.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등과 사용인의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제110조의5 사채인수자 모집시에 이사회가 정해야 할 사항

① 법 제399조의1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2이상의 모집(법 제676조의 모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련된 법 제676조 각 호의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는 때에는 그 뜻
2. 모집사채의 총액상한(전호의 경우에는 각 모집에 관련된 모집사채의 총액상한의 합계액)
3. 모집사채의 금리상한, 그 밖에 이율에 관한 사항의 요강
4. 모집사채의 납입금액(법 제676조 제9호의 납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의 최저금액, 그 밖에 납입금액에 관한 사항의 요강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채(신탁사채에 관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만으로 그 이행책임을 지는 것에 한한다)의 모집에 관련된 법 제67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 제399조의13 제4항 제5호에

三 第四項第五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当該決定を委任する旨とする。

第9節 指名委員会等及び執行役

第111条 執行役等の報酬等のうち株式会社の募集株式について定めるべき事項

法第四百九条第三項第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号の募集株式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一定の事由が生ずるまで当該募集株式を他人に譲り渡さないことを執行役等に約させ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事由
- 二 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当該募集株式を当該株式会社に無償で譲り渡すことを執行役等に約させ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事由
- 三 前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執行役等に対して当該募集株式を割り当てる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

第111条の2 執行役等の報酬等のうち株式会社の募集新株予約権について定めるべき事項

法第四百九条第三項第四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号の募集新株予約権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同条第三項(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場合には、同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並びに同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事項)
- 二 一定の資格を有する者が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資格の内容
- 三 前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当該募集新株予約権の行使の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
- 四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
- 五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の内容
- 六 執行役等に対して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割り当てる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

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당해 결정을 위임하는 취지로 한다.

제9절 지명위원회등 및 집행임원

제111조 집행임원 등의 보수 등 중 주식회사의 모집주식에 관해 정해야 할 사항

법 제409조 제3항 제3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호의 모집주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모집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집행임원 등과 약정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일정한 사유
2.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조건으로 모집주식을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집행임원 등과 약정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일정한 사유
3. 전 2호 외에 집행임원 등에 대하여 모집주식을 배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때에는 그 조건

제111조의2 집행임원 등의 보수 등 중 주식회사의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해 정해야 할 사항

법 제409조 제3항 제4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호의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동조 제3항(동조 제4항에 따라 환독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동조 제3항 각호의 사항)
2.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모집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일정한 자격의 내용
3. 전 2호의 사항 외에 모집신주예약권 행사조건을 정하는 때에는 그 조건
4. 법 제236조 제1항 제6호의 사항
5. 법 제236조 제1항 제7호의 내용
6. 집행임원 등에 대해 모집신주예약권을 배정하는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그

の条件

第111条の3	執行役等の報酬等のうち株式等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について定めるべき事項

1 法第四百九条第三項第五号イ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号イの募集株式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一定の事由が生ずるまで当該募集株式を他人に譲り渡さないことを執行役等に約させ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事由
- 二 一定の事由が生じたことを条件として当該募集株式を当該株式会社に無償で譲り渡すことを執行役等に約させ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事由
- 三 前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執行役等に対して当該募集株式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を交付する条件又は執行役等に対して当該募集株式を割り当てる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

2 法第四百九条第三項第五号ロ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号ロの募集新株予約権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同条第三項(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場合には、同条第一項第一号、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並びに同条第三項各号に掲げる事項)
- 二 一定の資格を有する者が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一定の資格の内容
- 三 前二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当該募集新株予約権の行使の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
- 四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
- 五 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の内容
- 六 執行役等に対して当該募集新株予約権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を交付する条件又は執行役等に対して当該募集新株予約権を割り当てる条件を定めるときは、その条件

조건

제111조의3

집행임원 등의 보수 등 중 주식 등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에 관하여 정해야 할 사항

- ① 법 제409조 제3항 제5호 가목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호 가목의 모집주식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모집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집행임원 등과 약정하는 때에는 그 뜻 및 일정한 사유
 2.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조건으로 모집주식을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집행임원 등과 약정하는 때에는 그 뜻과 일정한 사유
 3. 전 2호의 사항 외에 집행임원 등에게 모집주식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을 교부하는 조건 또는 집행임원 등에게 모집주식을 배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때에는 그 조건
- ② 법 제400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동호 나목의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동조 제3항(동조 제4항에 따라 환독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동조 제3항 각호의 사항)
 2.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모집신주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과 일정한 자격의 내용
 3. 전 2호의 사항 외에 모집신주예약권의 행사 조건을 정하는 때에는 그 조건
 4. 법 제236조 제1항 제6호의 사항
 5. 법 제236조 제1항 제7호의 내용
 6. 집행임원 등에게 모집신주예약권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을 교부하는 조건 또는 집행임원 등에게 모집신주예약권을 배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때에는 그 조건

第111条の4 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

- 1 法第四百十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の作成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指名委員会等が開催された日時及び場所(当該場所に存しない取締役、執行役、会計参与又は会計監査人が指名委員会等に出席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出席の方法を含む。)
 - 二 指名委員会等の議事の経過の要領及びその結果
 - 三 決議を要する事項について特別の利害関係を有する委員があるときは、その氏名
 - 四 指名委員会等が監査委員会である場合において、次に掲げる意見又は発言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又は発言の内容の概要
 - イ 法第三百七十五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監査委員会において述べられた意見又は発言
 - ロ 法第三百九十七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監査委員会において述べられた意見又は発言
 - ハ 法第四百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行うべき監査委員に対する報告が監査委員会において行われた場合における当該報告に係る意見又は発言
 - 五 指名委員会等に出席した取締役(当該指名委員会等の委員であるものを除く。)、執行役、会計参与又は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 六 指名委員会等の議長が存するときは、議長の氏名
- 4 法第四百十四条の規定により指名委員会等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場合には、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とする。
 - 一 指名委員会等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事項の内容
 - 二 指名委員会等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日
 - 三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委員の氏名

제111조의4 지명위원회등의 의사록

① 법 제412조 제3항의 지명위원회등의 의사록작성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② 지명위원회등의 의사록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명위원회등의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지명위원회등이 개최된 일시 및 장소(당해 장소에 존재하지 아니한 이사, 집행임원, 회계참여 또는 회계감사인이 지명위원회등에 출석한 경우의 출석방법을 포함한다)
2. 지명위원회등의 의사경과의 요령과 그 결과
3. 지명위원회등의 회의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지명위원회등이 감사위원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의견 또는 발언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또는 발언내용의 개요

가. 법 제375조 제4항에 따라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진술된 의견이나 발언

나. 법 제397조 제5항에 따라 환독하여 적용하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진술된 의견이나 발언

다. 법 제419조 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할 감사위원에 대한 보고가 감사위원회에서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 당해보고에 관계된 의견 또는 발언

5. 지명위원회등에 출석한 이사(지명위원회등의 위원인 자는 제외한다), 집행임원, 회계참여 또는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6. 지명위원회등의 의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성명

④ 법 제414조에 따라 지명위원회등에 대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명위원회등의 의사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명위원회등에 보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된 사항의 내용
2. 지명위원회등에 보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된 날
3. 의사록 작성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 위원의 성명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第112条 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 法第四百十六條第一項第一号 ロ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当該株式会社の監査委員会の職務を補助すべき取締役及び使用人に関する事項

二 前号の取締役及び使用人の当該株式会社の執行役からの独立性に関する事項

三 当該株式会社の監査委員会の第一号の取締役及び使用人に対する指示の実効性の確保に関する事項

四 次に掲げる体制その他の当該株式会社の監査委員会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イ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監査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執行役及び会計参与並びに使用人が当該株式会社の監査委員会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

ロ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條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及び使用人又はこれらの者から報告を受けた者が当該株式会社の監査委員会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

五 前号の報告をした者が当該報告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不利な取扱いを受けない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六 当該株式会社の監査委員の職務の執行(監査委員会の職務の執行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生ずる費用の前払又は償還の手続その他の当該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又は債務の処理に係る方針に関する事項

七 その他当該株式会社の監査委員会の監査が実効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2 法第四百十六條第一項第一号ホ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は、当該株式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体制とする。

一 当該株式会社の執行役の職務の執行に係る情報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体制

二 当該株式会社の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三 当該株式会社の執行役の職務の執行が効率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四 当該株式会社の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

제112조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① 법 제41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보조 할 이사 및 사용인에 관한 사항
2. 전호의 이사 및 사용인의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3.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제1호의 이사 및 사용인에 대한 지사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다음의 체제, 그 밖에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에 관한 체제
 - 가.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위원인 이사는 제외한다), 집행임원, 회계참여 및 사용인이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체제
 - 나.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회계참여, 감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자, 그 밖에 이러한 자에 상당하는 자 및 사용인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가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체제
5. 전호의 보고를 한 자가 당해 보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체제
6. 주식회사의 감사위원의 직무집행(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선급 또는 환급 절차, 그 밖에 당해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채무의 처리에 관련된 지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② 법 제41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제는 주식회사의 다음의 체제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2. 주식회사의 손실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체제
3.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4. 주식회사의 사용인의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 직무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체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するための体制

五 次に掲げる体制その他の当該株式会社並びにその親会社及び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における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イ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らの者に相当する者(ハ及びニにおいて「取締役等」という。)の職務の執行に係る事項の当該株式会社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ロ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ハ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等の職務の執行が効率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ニ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取締役等及び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第10節 役員等の損害賠償責任

第113条 報酬等の額の算定方法

1 法第四百二十五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は、次に掲げる額の合計額とする。

一 役員等がその在職中に報酬、賞与その他の職務執行の対価(当該役員等が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を兼ね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取締役、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の報酬、賞与その他の職務執行の対価を含む。)として株式会社から受け、又は受けるべき財産上の利益(次号に定めるものを除く。)の額の事業年度(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日を含む事業年度及びその前の各事業年度に限る。)ごとの合計額(当該事業年度の期間が一年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合計額を一年当たりの額に換算した額)のうち最も高い額

イ 法第四百二十五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を行った場合 当該株主総会(株式会社に最終完全親会社等がある場合において、同項の規定により免除しようとする責任が特定責任であるときにあっては、当該株式会社の株主総会)の決議の日

제

5. 다음의 체제, 그 밖에 주식회사,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의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가.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자, 그 밖에 이러한 자에 상당하는 자(다목 및 라목에서 “이사 등”이라 한다)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의 주식회사에 대한 보고에 관한 체제
 - 나.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손실 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외의 체제
 - 다.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라.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이사 등과 사용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제10절 임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13조 보수등의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425조 제1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임원등이 재직중에 보수, 상여 그 밖의 직무집행의 대가(임원등이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고 있는 경우 이사,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의 보수, 상여 그 밖의 직무집행의 대가를 포함한다)로서 주식회사로부터 받거나 받아야 할 재산상이익(다음 호에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사업연도(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목 내지 마목에서 정하는 날을 포함하는 사업연도 및 그 전의 각 사업연도에 한한다)별 합계액(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에는 합계액을 1년분의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중 가장 많은 금액

가. 법 제425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를 한 경우 : 주주총회(주식회사에 최종완전모회사 등이 있는 경우 동향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려고 하는 책임이 특정책임인 때에는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일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ロ 法第四百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に基づいて責任を免除する旨の同意(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決議。ロにおいて同じ。)を行った場合 当該同意のあつた日
 - ハ 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た場合 責任の原因となる事実が生じた日(二以上の日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最も遅い日)
- 二 イに掲げる額をロに掲げる数で除して得た額
- イ 次に掲げる額の合計額
- 1) 当該役員等が当該株式会社から受けた退職慰労金の額
 - 2) 当該役員等が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を兼ねていた場合における当該取締役若しくは執行役としての退職慰労金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としての退職手当のうち当該役員等を兼ねていた期間の職務執行の対価である部分の額
 - 3) 1) 又は 2) に掲げるものの性質を有する財産上の利益の額
- ロ 当該役員等がその職に就いていた年数(当該役員等が次に掲げるものに該当する場合における次に定める数が当該年数を超え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数)
- 1) 代表取締役又は代表執行役 六
 - 2) 代表取締役以外の取締役(業務執行取締役等であるものに限る。)又は代表執行役以外の執行役 四
 - 3) 取締役(1)及び 2)に掲げるものを除く。)、会計参与、監査役又は会計監査人 二

第114条 特に有利な条件で引き受けた職務執行の対価以外の新株予約権

法第四百二十五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算定される額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額とする。

- 一 当該役員等が就任後に新株予約権(当該役員等が職務執行の対価として株式会社から受けたもの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行使した場合 イに掲げる額からロ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零未満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零)に当該新株予約権の行使により当該役員等が交付を受けた当該株式会社の株式の数を乗じて得た額
- イ 当該新株予約権の行使時における当該株式の一株当たりの時価

- 나. 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근거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의 동의(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나목에서 같다)를 한 경우 : 동의가 있었던 날
- 다.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2 이상의 날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느린 날)
2.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
- 가. 다음 금액의 합계액
- 1) 임원등이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위로금의 금액
 - 2) 임원등이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고 있었던 경우 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서 퇴직위로금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퇴직수당 중 임원등을 겸하고 있었던 기간의 직무집행의 대가부분의 금액
 - 3) 1)또는 2)의 성질을 갖는 재산상이익의 금액
- 나. 임원등이 그 직위에 있었던 연수(임원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수가 연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 수)
- 1)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 : 6
 - 2)대표이사 이외의 이사(업무집행이사 등인 자에 한한다) 또는 대표집행임원 이외의 집행임원 : 4
 - 3)이사(1) 및 2)의 자는 제외한다), 회계참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 : 2

제114조 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한 직무집행의 대가 이외의 신주예약권

법 제425조 제1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임원등이 취임후에 신주예약권(임원등이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사한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감하여 얻은 금액(0미만인 경우에는 0)에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하여 임원등이 교부받은 주식회사의 주식의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

가. 신주예약권의 행사시 주식의 1주당 시가

第2編 株式会社

第4章 機関

- ロ 当該新株予約権についての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二号 の価額及び法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三号 の払込金額の合計額の当該新株予約権の目的である株式一株当たりの額
- 二 当該役員等が就任後に新株予約権を譲渡した場合 当該新株予約権の譲渡価額から法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第三号 の払込金額を減じて得た額に当該新株予約権の数に乗じた額

第115条 責任の免除の決議後に受ける退職慰労金等

法第四百二十五条第四項(法第四百二十六条第八項及び第四百二十七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財産上の利益と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退職慰労金
- 二 当該役員等が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又は執行役を兼ねていたときは、当該取締役又は執行役としての退職慰労金
- 三 当該役員等が当該株式会社の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を兼ねていたときは、当該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としての退職手当のうち当該役員等を兼ねていた期間の職務執行の対価である部分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性質を有する財産上の利益

第11節 役員等のために締結される保険契約

第115条の2

法第四百三十条の三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被保険者に保険者との間で保険契約を締結する株式会社を含む保険契約であって、当該株式会社がその業務に関連し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こと又は当該責任の追及に係る請求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当該株式会社に生ずることのある損害を保険者が填補することを主たる目的として締結されるもの
- 二 役員等が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こと又は当該責任の追及に係る請求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当該役員等に生ずることのある損害(役員

나. 신주예약권에 관한 법 제236조 제1항 제2호의 금액 및 법 제238조 제1항 제3호의 납입금액의 합계액의 신주예약권의 목적인 주식 1주당 금액

2. 임원등이 취임후 신주예약권을 양도한 경우 신주예약권의 양도가액에서 법 제238조 제1항 제3호의 납입금액을 감하여 얻은 금액에 당해 신주예약권의 수를 곱한 금액

제115조 책임면제의 결의 후 받는 퇴직위로금 등

법 제425조 제4항(법 제426조 제8항 및 제4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퇴직위로금
2. 임원등이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을 겸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으로서의 퇴직위로금
3. 임원등이 주식회사의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고 있었던 때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의 퇴직수당 중 임원등을 겸하고 있었던 기간의 직무집행의 대가부분
4. 전3호의 성질을 갖는 재산상이익

제11절 임원 등을 위해 체결된 보험계약

제115조의2

법 제430조의3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서 정하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1. 피보험자에 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 보험계약으로서 주식회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또는 해당 책임의 추구에 관한 청구를 받음으로써 주식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는 것
2. 임원 등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또는 책임추구와 관련된 청구를 받음으로써 임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임원 등이 그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等がその職務上の義務に違反し若しくは職務を怠ったことによって第三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こと又は当該責任の追及に係る請求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当該役員等に生ずることのある損害を除く。)を保険者が填補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締結されるもの

第5章 計算等

第1節 計算関係書類

第116条

次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べき事項 (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に係るものを除く。) は、会社計算規則 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法第四百三十二条第一項
- 二 法第四百三十五条第一項 及び第二項
- 三 法第四百三十六条第一項 及び第二項
- 四 法第四百三十七条
- 五 法第四百三十九条
- 六 法第四百四十条第一項 及び第三項
- 七 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項及び第四項
- 八 法第四百四十四条第一項、第四項及び第六項
- 九 法第四百四十五条第四項 から第六項まで
- 十 法第四百四十六条第一号 ホ及び第七号
- 十一 法第四百五十二条
- 十二 法第四百五十九条第二項
- 十三 法第四百六十条第二項
- 十四 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 イ、第五号及び第六号
- 十五 法第四百六十二条第一項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직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 또는 해당 책임추궁과 관련된 청구를 받음으로써 해당 임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제외한다)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

제5장 계산 등

제1절 계산관계서류

제116조

다음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은 회사계산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432조 제1항
2. 법 제435조 제1항 및 제2항
3. 법 제436조 제1항 및 제2항
4. 법 제437조
5. 법 제439조
6. 법 제440조 제1항 및 제3항
7. 법 제44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8. 법 제444조 제1항, 제4항 및 제6항
9. 법 제445조 제4항 내지 제6항
10. 법 제446조 제1호 마목 및 제7호
11. 법 제452조
12. 법 제459조 제2항
13. 법 제460조 제2항
14. 법 제461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5호 및 제6호
15. 법 제462조 제1항

第2節 事業報告

第一款 通則

第117条

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べき事項（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に係るものに限る。）は、当該各号に定める規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ただし、他の法令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法第四百三十五条第二項 次款
- 二 法第四百三十六条第一項 及び第二項 第三款
- 三 法第四百三十七条 第四款

第2款 事業報告等の内容

第1目 通則

第118条

事業報告は、次に掲げる事項をそ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株式会社の状況に関する重要な事項（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並びに連結計算書類の内容となる事項を除く。）
- 二 法第三百四十八条第三項第四号、第三百六十二条第四項第六号、第三百九十九条の十三第一項第一号ロ及びハ並びに第四百十六条第一項第一号ロ及びホに規定する体制の整備についての決定又は決議があるときは、その決定又は決議の内容の概要及び当該体制の運用状況の概要
- 三 株式会社が当該株式会社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を支配する者の在り方に関する基本方針（以下この号において「基本方針」という。）を定めてい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基本方針の内容の概要
 - ロ 次に掲げる取組みの具体的な内容の概要
 - (1) 当該株式会社の財産の有効な活用、適切な企業集団の形成その他の基本方針の実現に資する特別な取組み

제2절 사업보고서

제1관 통칙

제117조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은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35조 제2항 : 다음 관
2. 법 제436조 제1항 및 제2항 : 제3관
3. 법 제437조 : 제4관

제2관 사업보고서등의 내용

제1목 통칙

제118조

사업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상황에 관한 중요한 사항(계산서류, 그 부속명세서 및 연결계산서류의 내용이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48조 제3항 제4호, 제362조 제4항 제6호, 제399조의13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제41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결정 또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 또는 결의내용의 개요 및 당해 체제의 운용 상황의 개요
3. 주식회사가 당해 주식회사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을 지배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이 호에서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
 - 가. 기본방침 내용의 개요
 - 나. 다음 활동(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의 개요
 - 1) 주식회사 재산의 유효한 활용, 적절한 기업집단의 형성 그 밖의 기본방침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특별한 활동(노력)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2) 基本方針に照らして不適切な者によって当該株式会社の財務及び事業の方針の決定が支配され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の取組み

ハ ロの取組みの次に掲げる要件への該当性に関する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の判断及びその理由(当該理由が社外役員の存否に関する事項のみ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を除く。)

(1) 当該取組みが基本方針に沿うものであること。

(2) 当該取組みが当該株式会社の株主の共同の利益を損なうものではないこと。

(3) 当該取組みが当該株式会社の会社役員の地位の維持を目的と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

四 当該株式会社(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その完全親会社等があるものを除く。)に特定完全子会社(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完全子会社等(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三項の規定により当該完全子会社等とみなされるもの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おける当該株式会社のある完全子会社等(株式会社に限る。))の株式の帳簿価額が当該株式会社の当該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の合計額の五分之一(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四項の規定により五分之一を下回る割合を定款で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割合)を超える場合における当該ある完全子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が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特定完全子会社の名称及び住所

ロ 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完全子会社等における当該特定完全子会社の株式の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ける帳簿価額の合計額

ハ 当該株式会社の当該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の合計額

五 当該株式会社とその親会社等との間の取引(当該株式会社と第三者との間の取引で当該株式会社とその親会社等との間の利益が相反するものを含む。)であつて、当該株式会社の当該事業年度に係る個別注記表において会社計算規則第一百十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注記を要するもの(同項 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同項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及び第八号に掲げる事項を省略するものを除

- 2) 기본방침에 비추어 부적절한 자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재무 및 사업방침의 결정이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노력)
- 다. 나목의 활동(노력)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식회사 이사(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판단 및 그 이유(그 이유가 사외임원의 존부에 관한 사항뿐인 경우에는 당해 사항은 제외한다)
- 1) 당해 활동(노력)이 기본방침에 따른 것일 것
 - 2) 당해 활동(노력)이 주식회사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닐 것
 - 3) 당해 활동(노력)이 주식회사의 회사임원의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4. 주식회사(사업연도의 말일에 그 완전모회사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특정완전자회사(사업연도의 말일에 주식회사 및 그 완전자회사등(법 제847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완전자회사등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주식회사의 어떤 완전자회사등(주식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의 장부가액이 주식회사의 사업연도에 관련된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의 5분의 1(법 제847조의3 제4항에 따라 5분의 1을 하회하는 비율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어떤 완전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가. 특정완전자회사의 명칭 및 주소
- 나. 주식회사 및 그 완전자회사등의 특정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사업연도의 말일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다. 주식회사의 사업연도에 관한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에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
5.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등과의 거래(주식회사와 제삼자 간의 거래에서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등과의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주식회사의 사업연도에 관한 개별주기표에 있어서 회사계산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기를 요하는 것(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 호의 사항을 생략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 く。)があるときは、当該取引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取引をするに当たり当該株式会社の利益を害さないように留意した事項(当該事項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その旨)
- ロ 当該取引が当該株式会社の利益を害さないかどうかについての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取締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取締役会。ハにおいて同じ。)の判断及びその理由
- ハ 社外取締役を置く株式会社において、ロの取締役の判断が社外取締役の意見と異なる場合には、その意見

第2目 公開会社における事業報告の内容

第119条 公開会社の特則

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公開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事業報告の内容に含め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株式会社の現況に関する事項
- 二 株式会社の会社役員に関する事項
- 二の二 株式会社の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に関する事項
- 三 株式会社の株式に関する事項
- 四 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等に関する事項

第120条 株式会社の現況に関する事項

1 前条第一号に規定する「株式会社の現況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当該株式会社の事業が二以上の部門に分か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部門別に区別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場合を除き、その部門別に区別された事項)とする。

- 一 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ける主要な事業内容
- 二 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ける主要な営業所及び工場並びに使用人の状況
- 三 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主要な借入先があるときは、その借入先及び借入額
- 四 当該事業年度における事業の経過及びその成果
- 五 当該事業年度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状況(重要なものに限る。)
- イ 資金調達

거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이익을 해하지 않도록 유의한 사항 (당해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

나. 거래가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이사(이사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이하에서 같다)의 판단 및 그 이유

다. 사외이사를 둔 주식회사에서 나목의 이사판단이 사외이사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의견

제2목 공개회사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내용

제119조 공개회사의 특칙

주식회사가 사업연도의 말일에 공개회사인 경우 다음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주식회사의 회사임원에 관한 사항
- 2의2. 주식회사의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3.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항
4.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에 관한 사항

제120조 주식회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① 전조 제1호의 “주식회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 (주식회사의 사업이 2 이상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부문별 구별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문별로 구별된 사항) 을 말한다.

1. 사업연도 말일의 주요한 사업내용
2. 사업연도 말일의 주요한 영업소, 공장 및 사용인의 상황
3. 사업연도의 말일에 주요한 차입처가 있는 때에는 그 차입처 및 차입액
4.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경과 및 그 성과
5.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항에 관한 상황 (중요한 것에 한한다)
 - 가. 자금조달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 ロ 設備投資
 - ハ 事業の譲渡、吸収分割又は新設分割
 - ニ 他の会社 (外国会社を含む。) の事業の譲受け
 - ホ 吸収合併 (会社以外の者との合併 (当該合併後当該株式会社が存続するものに限る。) を含む。) 又は吸収分割による他の法人等の事業に関する権利義務の承継
 - ヘ 他の会社 (外国会社を含む。) の株式その他の持分又は新株予約権等の取得又は処分
- 六 直前三事業年度 (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三事業年度が終了していない株式会社にあっては、成立後の各事業年度) の財産及び損益の状況
- 七 重要な親会社及び子会社の状況 (当該親会社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に当該株式会社の重要な財務及び事業の方針に関する契約等が存在する場合には、その内容の概要を含む。)
- 八 対処すべき課題
- 九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株式会社の現況に関する重要な事項
- 2 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に係る連結計算書類を作成している場合に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から成る企業集団の現況に関する事項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事項に相当する事項が連結計算書類の内容となっているときは、当該事項を事業報告の内容としないことができる。
- 3 第一項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当該事業年度における過年度事項 (当該事業年度より前の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損益計算書又は株主資本等変動計算書に表示すべき事項をいう。) が会計方針の変更その他の正当な理由により当該事業年度より前の事業年度に係る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承認又は報告をしたものと異なっているときは、修正後の過年度事項を反映した事項とすることを妨げない。

第121条 株式会社の会社役員に関する事項

第百十九条第二号に規定する「株式会社の会社役員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ただし、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監査役会設置会社 (公開会社であり、かつ、大会社であるものに限る。) であって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

- 나. 설비투자
- 다. 영업의 양도, 흡수분할 또는 신설분할
- 라. 다른 회사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의 영업의 양수
- 마. 흡수합병 (회사가 아닌 자와의 합병 (합병 후 당해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포함한다) 또는 흡수분할에 의한 다른 법인 등의 사업상 권리의무의 승계
- 바. 다른 회사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의 주식 그 밖의 지분 또는 신주예약권 등의 취득이나 처분
- 6. 직전 3개 사업연도 (사업연도의 말일에 있어서 3개 사업연도가 종료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성립 후 각 사업연도) 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
- 7. 중요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상황(모회사와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의 중요한 재무 및 사업방침에 관한 계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개요를 포함한다)
- 8. 대처하여야 할 과제
- 9. 전 각호 외에 주식회사의 현황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계산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전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항에 상당하는 사항이 연결계산서류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과년도사항 (당해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주주자본등변동계산서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회계방침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또는 보고를 한 것과 다른 때에는 수정 후 과년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제121조 주식회사의 회사임원에 관한 사항

제119조 제2호의 '주식회사의 회사 임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말일에 감사회설치회사(공개회사이면서 대기업인 것에 한한다)로서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에 관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その発行する株式について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又は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ない株式会社にあっては、第六号の二に掲げる事項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一 会社役員(直前の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日の翌日以降に在任していた者に限る。次号、第三号、第八号及び第九号並びに第二百二十八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の氏名(会計参与にあっては、氏名又は名称)

二 会社役員の地位及び担当

三 会社役員(取締役又は監査役に限る。)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は、当該契約の内容の概要(当該契約によって当該会社役員の職務の適正性が損な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内容を含む。)

三の二 会社役員(取締役、監査役又は執行役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補償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会社役員の氏名

ロ 当該補償契約の内容の概要(当該補償契約によって当該会社役員の職務の執行の適正性が損な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内容を含む。)

三の三 当該株式会社が会社役員(取締役、監査役又は執行役に限り、当該事業年度の前事業年度の末日までに退任した者を含む。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に対して補償契約に基づき法第四百三十条の二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費用を補償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において、当該会社役員が同号の職務の執行に関し法令の規定に違反したこと又は責任を負うことを知ったときは、その旨

三の四 当該株式会社が会社役員に対して補償契約に基づき法第四百三十条の二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損失を補償したときは、その旨及び補償した金額

四 当該事業年度に係る会社役員の報酬等について、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事項

イ 会社役員の全部につき取締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っては、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又はそれ以外の取締役。イ及びハにおいて同じ。)、会計参与、監査役又は執行役ごとの報酬等の総額(当該報酬等が業績連動報酬等

해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 감사등위원회설치 회사 또는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6호의2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임원(직전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 의 다음날 이후에 재임하고 있었던 자에 한한다. 다음 호,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28조 제2항에서 같다) 성명(회계참여의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2. 회사임원의 지위 및 담당
3. 회사임원(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과 주식회사 간에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의 개요(계약으로 회사임원의 직무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3의2. 회사임원(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주식회사 간에 보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사항

가. 해당 회사임원의 성명

나. 보상계약의 내용의 개요(보상계약에 따라서 회사임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3의3. 주식회사가 회사임원(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에 한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 말일까지 퇴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에게 보상계약에 기하여 법 제430조의2 제1항 제1호의 비용을 보상한 경우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회사임원이 동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 또는 책임을 지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취지

3의4. 주식회사가 회사임원에 대하여 보상계약에 기하여 법 제430조의2 제1항 제2호의 손실을 보상한 때에는 그 취지 및 보상한 금액

4. 해당 사업연도의 회사임원의 보수 등에 관해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사항

가. 회사임원 전부에 대해 이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 감사등위원인 이사 또는 그 이외의 이사. 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 회계참여, 감사 또는 집행임원별 보수 등의 총액(해당 보수 등이 업적연동보수 등 또는 비금전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又は非金銭報酬等を含む場合には、業績連動報酬等の総額、非金銭報酬等の総額及びそれら以外の報酬等の総額。イ及びハ並びに第二百二十四条第五号イ及びハにおいて同じ。)を掲げることとする場合 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又は執行役ごとの報酬等の総額及び員数

ロ 会社役員の全部につき当該会社役員ごとの報酬等の額(当該報酬等が業績連動報酬等又は非金銭報酬等を含む場合には、業績連動報酬等の額、非金銭報酬等の額及びそれら以外の報酬等の額。ロ及びハ並びに第二百二十四条第五号ロ及びハにおいて同じ。)を掲げることとする場合 当該会社役員ごとの報酬等の額

ハ 会社役員の一部につき当該会社役員ごとの報酬等の額を掲げることとする場合 当該会社役員ごとの報酬等の額並びにその他の会社役員についての取締役、会計参与、監査役又は執行役ごとの報酬等の総額及び員数

五 当該事業年度において受け、又は受ける見込みの額が明らかとなった会社役員の報酬等(前号の規定により当該事業年度に係る事業報告の内容とする報酬等及び当該事業年度前の事業年度に係る事業報告の内容とした報酬等を除く。)について、同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事項

五の二 前二号の会社役員の報酬等の全部又は一部が業績連動報酬等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業績連動報酬等の額又は数の算定の基礎として選定した業績指標の内容及び当該業績指標を選定した理由

ロ 当該業績連動報酬等の額又は数の算定方法

ハ 当該業績連動報酬等の額又は数の算定に用いたイの業績指標に関する実績

五の三 第四号及び第五号の会社役員の報酬等の全部又は一部が非金銭報酬等である場合には、当該非金銭報酬等の内容

五の四 会社役員の報酬等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又は株主総会の決議による定めに関する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定款の定めを設けた日又は当該株主総会の決議の日

ロ 当該定めの内容の概要

ハ 当該定めに係る会社役員の員数

보수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적연동보수 등의 총액, 비금전보수 등의 총액 및 그 외의 보수 등의 총액. 가목 및 다목과 제124조 제5호 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을 정한 경우: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집행임원별 보수 등의 총액 및 인원수

나. 회사임원의 전부에 대해 회사임원별 보수 등의 금액(해당 보수 등이 업적연동보수 등 또는 비금전보수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적연동보수 등의 금액, 비금전보수 등의 금액 및 그 외의 보수 등의 금액. 나목 및 다목과 제124조 제5호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을 정한 경우: 회사임원별 보수 등의 금액

다. 회사임원의 일부에 대해 회사임원별 보수 등의 금액을 정한 경우: 회사임원별 보수 등의 금액과 그 밖의 회사임원에 관한 이사, 회계참여, 감사 또는 집행임원별 보수 등의 총액 및 인원수

5. 해당 사업연도에 받거나 또는 받을 예상금액이 분명해진 회사임원의 보수등(전호에 따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하는 보수등 및 해당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한 보수등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사항

5의2. 전 2호의 회사임원의 보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업적연동보수 등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업적연동보수 등의 금액 또는 수의 산정의 기초로서 선정한 업적지표의 내용 및 해당 업적지표를 선정한 이유

나. 업적연동보수 등의 금액 또는 수의 산정방법

다. 업적연동보수 등의 금액 또는 수의 산정에 이용한 가목의 업적지표에 관한 실적

5의3. 제4호 및 제5호의 회사임원의 보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금전보수 등인 경우에는 해당 비금전보수 등의 내용

5의4. 회사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정관의 정함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정함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정관의 정함을 정한 날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

나. 정함의 내용의 개요

다. 정함에 관련된 회사임원의 수

第2編 株式会社

第6章 事業の譲渡等

六 法第三百六十一条第七項の方針又は法第四百九条第一項の方針を定め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方針の決定の方法

ロ 当該方針の内容の概要

ハ 当該事業年度に係る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き、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執行役等)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が当該方針に沿うものであると取締役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報酬委員会)が判断した理由

六の二 各会社役員の報酬等の額又はその算定方法に係る決定に関する方針(前号の方針を除く。)を定めるときは、当該方針の決定の方法及びその方針の内容の概要

六の三 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取締役会設置会社(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である場合において、取締役会から委任を受けた取締役その他の第三者が当該事業年度に係る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く。)の個人別の報酬等の内容の全部又は一部を決定したときは、その旨及び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委任を受けた者の氏名並びに当該内容を決定した日における当該株式会社における地位及び担当

ロ イの者に委任された権限の内容

ハ イの者にロの権限を委任した理由

ニ イの者によりロの権限が適切に行使さ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講じ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内容

七 辞任した会社役員又は解任された会社役員(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されたものを除く。)が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当該事業年度前の事業年度に係る事業報告の内容としたものを除く。)

イ 当該会社役員の氏名(会計参与にあつては、氏名又は名称)

ロ 法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一項若しくは第四項又は第三百四十五条第一項(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

ハ 法第三百四十二条の二第二項又は第三百四十五条第二項(同条第四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理由があるときは、その理由

6. 법 제361조 제7항의 방침 또는 법 제409조 제1항의 방침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가. 해당 방침의 결정 방법

나. 해당 방침의 내용 개요

다. 해당 사업연도의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를 제외하고,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서는 집행임원 등)의 개인별 보수 등의 내용이 해당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이사회(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에서는 보수위원회)가 판단한 이유

6의2. 각 회사임원의 보수등의 금액 또는 그 산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방침(전호의 방침은 제외한다)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방침의 결정 방법 및 그 방침 내용의 개요

6의3. 주식회사가 사업연도의 말일에 이사회설치회사(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이사 및 그 밖의 제3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를 제외한다.)의 개인별 보수 등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다음의 사항

가. 위임받은 자의 성명과 해당 내용을 결정한 날의 주식회사에서의 지위 및 담당

나. 가목의 자에게 위임된 권한의 내용

다. 가목의 자에게 나목의 권한을 위임한 이유

라. 가목의 자가 나목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임한 회사임원 또는 해임된 회사임원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것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 (해당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내용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가. 해당 회사임원의 성명 (회계참여의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나. 법 제342조의2 제1항, 제4항 또는 제345조 제1항(동조 제4항에서 환독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내용

다. 법 제342조의2 제2항 또는 제345조 제2항(동조 제4항에서 환독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 八 当該事業年度に係る当該株式会社の会社役員(会計参与を除く。)の重要な兼職の状況
- 九 会社役員のうち監査役、監査等委員又は監査委員が財務及び会計に関する相当程度の知見を有している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事実
- 十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事項
 - イ 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 常勤の監査等委員の選定の有無及びその理由
 - ロ 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る場合 常勤の監査委員の選定の有無及びその理由
- 十一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株式会社の会社役員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121条の2 株式会社の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に関する事項

第百十九条第二号の二に規定する「株式会社の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に関する事項」とは、当該株式会社が保険者との間で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当該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の被保険者の範囲
- 二 当該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の内容の概要(被保険者が実質的に保険料を負担し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負担割合、填補の対象とされる保険事故の概要及び当該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によって被保険者である役員等(当該株式会社の役員等に限る。)の職務の執行の適正性が損な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内容を含む。)

第122条 株式会社の株式に関する事項

1 第百十九条第三号に規定する「株式会社の株式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発行済株式(自己株式を除く。)の総数に対するその有する株式の数の割合が高いことにおいて上位となる十名の株主の氏名又は名称、当該株主の有す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含む。)及び当該株主の有する株式に係る当該割合
- 二 当該事業年度中に当該株式会社の会社役員(会社役員であつた者を含む。)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が交付した当該株式会社の株式(職務執行の対価とし

8.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회사 회사임원 (회계참여는 제외한다) 의 중요한 결
직 상황
9. 회사임원 가운데 감사, 감사등위원 또는 감사위원이 재무 및 회계에 관해 상
당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사실
10.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사항
 - 가. 주식회사가 사업연도의 말일에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 : 상근감
사등위원의 선정유무 및 그 이유
 - 나. 주식회사가 사업연도말일에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인 경우 : 상근감사위
원의 선정유무 및 그 이유
11. 전 각호 외에 주식회사의 회사임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1조의2 주식회사의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제119조 제2호의 2의 '주식회사의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주식회사가 보험자와 사이에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의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범위
2.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의 내용의 개요(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담 비율, 보전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개요
및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해 피보험자인 임원 등(주식회사의 임원 등
에 한한다)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제122조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항

① 제119조 제3호의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연도의 말일에 있어서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 있어
서 같다) 총수에 대한 그 소유주식수의 비율이 높은 상위 10명의 주주의 성
명 또는 명칭,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에서는 주식
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포함한다) 및 그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
2. 사업년도 중에 주식회사의 회사임원(회사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
식회사가 교부한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직무집행의 대가로 교부한 것에 한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て交付したものに限り、当該株式会社が会社役員に対して職務執行の対価として募集株式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を交付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金銭の払込みと引換えに当該株式会社の株式を交付したときにおける当該株式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が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者(次に掲げる者であった者を含む。)の区分ごとの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及び株式の交付を受けた者の人数

イ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及び社外役員を除き、執行役を含む。)

ロ 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を除き、社外役員に限る。)

ハ 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

ニ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を含む。)以外の会社役員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株式会社の株式に関する重要な事項

2 当該事業年度に関する定時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者を定めるための法第二百二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基準日を定めた場合において、当該基準日が当該事業年度の末日後の日であるときは、前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当該基準日において発行済株式の総数に対するその有する株式の数の割合が高いことにおいて上位となる十名の株主の氏名又は名称、当該株主の有する株式の数(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を含む。)及び当該株主の有する株式に係る当該割合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当該基準日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23条 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等に関する事項

第百十九条第四号に規定する「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等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の会社役員(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在任している者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等(職務執行の対価として当該株式会社が交付したものに限り、当該株式会社が会社役員に対して職務執行の対価として募集新株予約権と引換えにする払込みに充てるための金銭を交付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金

하고, 주식회사가 회사임원에 대해 직무집행의 대가로 모집주식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전납입과 교환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한 때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자(다음의 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별로 주식의 수(종류주식 발행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의 수) 및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수 <신설 2020. 11. 27.>

가.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 및 사외임원은 제외하고, 집행임원은 포함한다)

나.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감사등위원인 이사는 제외하고, 사외임원에 한한다.)

다.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인 이사

라. 주식회사의 이사(집행임원을 포함) 이외의 회사 임원

3. 전 2호 외에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하기 위한 법 제124조 제1항의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이 사업연도 말일 이후의 일인 때는 전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기준일에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그 소유주식비율이 높은 상위 10명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종류주식발행회사에서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를 포함한다) 및 그 주주가 가진 주식비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123조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에 관한 사항

제119조 제4호의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연도의 말일에 주식회사의 회사임원(사업연도의 말일에 재임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주식회사가 교부한 것에 한하고, 주식회사가 회사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대가로 모집신주예약권과 교환으로 하는 납입에 충당하기 위한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 그 금전의 납입과 교환으로 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교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銭の払込みと引換えに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を交付したときにおける当該新株予約権を含む。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を有しているときは、次に掲げる者の区分ごとの当該新株予約権等の内容の概要及び新株予約権等を有する者の人数

イ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もの及び社外役員を除き、執行役を含む。)

ロ 当該株式会社の社外取締役(監査等委員であるものを除き、社外役員に限る。)

ハ 当該株式会社の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

ニ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執行役を含む。)以外の会社役員

二 当該事業年度中に次に掲げる者に対して当該株式会社が交付した新株予約権等が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者の区分ごとの当該新株予約権等の内容の概要及び交付した者の人数

イ 当該株式会社の使用人(当該株式会社の会社役員を兼ねている者を除く。)

ロ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の役員及び使用人(当該株式会社の会社役員又はイに掲げる者を兼ねている者を除く。)

三 前二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等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124条 社外役員等に関する特則

会社役員のうち社外役員である者が存する場合には、株式会社の会社役員に関する事項には、第二百二十一条に規定する事項のほか、次に掲げる事項を含むものとする。

一 社外役員(直前の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日の翌日以降に在任していた者に限る。次号から第四号までにおいて同じ。)が他の法人等の業務執行者であることが第二百二十一条第八号に定める重要な兼職に該当する場合は、当該株式会社と当該他の法人等との関係

二 社外役員が他の法人等の社外役員その他これに類する者を兼任していることが第二百二十一条第八号に定める重要な兼職に該当する場合は、当該株式会社と当該他の法人等との関係

三 社外役員が次に掲げる者の配偶者、三親等以内の親族その他これに準ずる者であることを当該株式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その事実(重要でないもの

부한 때의 신주예약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다음의 자 별로 신주예약권 등의 내용의 개요 및 신주예약권 등을 소유하는 자의 수

가. 주식회사의 이사(감사등위원인 자 및 외부임원은 제외하고 집행임원은 포함한다)

나.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감사등위원인 자는 제외하고, 사외임원에 한한다)

다. 주식회사의 감사등위원인 이사

라. 주식회사의 이사(집행임원을 포함한다)가 아닌 회사임원

2. 사업연도 중에 다음의 자에게 주식회사가 교부한 신주예약권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자 별로 당해신주예약권등의 내용의 개요 및 교부한 자의 수

가. 주식회사의 사용인 (주식회사의 회사임원을 겸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주식회사의 자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 (주식회사의 회사임원 또는 가목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3. 전2호 외에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4조 사외임원 등에 관한 특칙

회사임원 중 사외임원인 자가 존재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회사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제121조 외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외임원(직전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의 다음날 이후에 재임하고 있었던 자에 한한다. 다음 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이 다른 법인 등의 업무집행자인 것이 제102조 제8호의 중요한 점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다른 법인 등과의 관계
2. 사외임원이 다른 법인 등의 사외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것이 제21조 제8호의 중요한 점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다른 법인 등의 관계
3. 사외임원이 다음의 자의 배우자, 3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인 것을 주식회사가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사실(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を除く。)

イ 当該株式会社の親会社等(自然人であるものに限る。)

ロ 当該株式会社又は当該株式会社の特定関係事業者の業務執行者又は役員(業務執行者であるものを除く。)

四 各社外役員の当該事業年度における主な活動状況(次に掲げる事項を含む。)

イ 取締役会(当該社外役員が次に掲げる者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次に定めるものを含む。ロにおいて同じ。)への出席の状況

1) 監査役会設置会社の社外監査役 監査役会

2)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の監査等委員 監査等委員会

3)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の監査委員 監査委員会

ロ 取締役会における発言の状況

ハ 当該社外役員の意見により当該株式会社の事業の方針又は事業その他の事項に係る決定が変更されたときは、その内容(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

ニ 当該事業年度中に当該株式会社において法令又は定款に違反する事実その他不当な業務の執行(当該社外役員が社外監査役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不正な業務の執行)が行われた事実(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があるときは、各社外役員が当該事実の発生の予防のために行った行為及び当該事実の発生後の対応として行った行為の概要

ホ 当該社外役員が社外取締役であるときは、当該社外役員が果たすことが期待される役割に関して行った職務の概要(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事項を除く。)

五 当該事業年度に係る社外役員の報酬等について、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事項

イ 社外役員の全部につき報酬等の総額を掲げることとする場合 社外役員の報酬等の総額及び員数

ロ 社外役員の全部につき当該社外役員ごとの報酬等の額を掲げることとする場合 当該社外役員ごとの報酬等の額

ハ 社外役員の一部につき当該社外役員ごとの報酬等の額を掲げることとする場合 当該社外役員ごとの報酬等の額並びにその他の社外役員についての報酬等の総額及び員数

六 当該事業年度において受け、又は受ける見込みの額が明らかとなった社外役員の報酬等(前号の規定により当該事業年度に係る事業報告の内容とする報

- 가.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자연인인 자에 한한다)
- 나.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특정관계사업자의 업무집행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자인 자는 제외한다)
- 4. 각 사외임원의 당해 사업연도의 주된 활동상황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 이사회 (사외임원이 다음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목에서 같다) 출석상황
 - 1) 감사회설치회사의 사외감사 : 감사회
 - 2)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감사등위원 : 감사등위원회
 - 3)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감사위원 : 감사위원회
 - 나. 이사회에서의 발언상황
 - 다. 사외임원의 의견에 따라 주식회사의 사업방침 또는 사업 그 밖의 사항의 결정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라.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에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 그 밖에 부당한 업무집행 (사외임원이 사외감사인 경우에는 부정한 업무집행) 이 행해진 사실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이 있는 때에는 각 사외임원이 그 사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 및 그 사실의 발생 후 대응으로서 행한 행위의 개요
 - 마. 사외임원이 사외이사인 때에는 그 사외임원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에 관하여 행한 직무의 개요(가목 내지 라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 5. 당해 사업연도의 사외임원의 보수등에 관하여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사항
 - 가. 사외임원의 전부에 대해 보수등의 총액을 열거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 사외임원의 보수등의 총액 및 임원의 수
 - 나. 사외임원의 전부에 관한 사외임원마다 보수등의 액을 열거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 사외임원마다 보수 등의 액
 - 다. 사외임원의 일부에 관한 사외임원마다 보수등의 액을 열거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 사외임원마다 보수등의 액, 그 밖의 사외임원에 관한 보수등의 총액 및 임원의 수
- 6. 당해 사업연도에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분명해진 사외임원의 보수 등(전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하는 보수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酬等及び当該事業年度前の事業年度に係る事業報告の内容とした報酬等を除く。)について、同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事項

七 社外役員が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ものから当該事業年度において役員としての報酬等を受けているときは、当該報酬等の総額(社外役員であった期間に受けたものに限る。)

イ 当該株式会社に親会社等がある場合 当該親会社等又は当該親会社等の子会社等(当該株式会社を除く。)

ロ 当該株式会社に親会社等がない場合 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

八 社外役員についての前各号に掲げる事項の内容に対して当該社外役員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

第3目 会計参与設置会社における事業報告の内容

第125条

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会計参与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事業報告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会計参与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は、当該契約の内容の概要(当該契約によって当該会計参与の職務の執行の適正性が損な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内容を含む。)

二 会計参与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補償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会計参与の氏名又は名称

ロ 当該補償契約の内容の概要(当該補償契約によって当該会計参与の職務の執行の適正性が損な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内容を含む。)

三 当該株式会社が会計参与(当該事業年度の前事業年度の末日までに退任した者を含む。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に対して補償契約に基づき法第四百三十条の二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費用を補償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において、当該会計参与が同号の職務の執行に関し

등 및 당해 사업년도 전의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한 보수 등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는 사항

7. 사외임원이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것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에서 임원으로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때에는 당해 보수 등의 총액(사외임원이었던 기간에 받았던 보수 등에 한한다)가. 주식회사에 모회사 등이 있는 경우: 모회사 등 또는 당해 모회사 등의 회사 등(주식회사는 제외한다)
나. 주식회사에 모회사 등이 없는 경우: 주식회사의 자회사
8. 사외임원에 관한 전 각호 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사외임원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내용

제3목 회계참여설치회사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내용

제125조

제125조 주식회사가 사업연도의 말일에 회계참여설치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회계참여와 주식회사간에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의 내용의 개요(계약에 의하여 회계참여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2. 회계참여와 주식회사간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회계참여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보상계약의 내용의 개요(보상계약에 따라 회계참여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3. 주식회사가 회계참여(해당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 말일까지 퇴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보상계약에 기하여 법 제430조의2 제1항 제1호의 비용을 보상한 경우 주식회사가 사업연도에 회계참여가 동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 또는 책임을 지는

法令の規定に違反したこと又は責任を負うことを知ったときは、その旨
四 当該株式会社が会計参与に対して補償契約に基づき法第四百三十条の二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損失を補償したときは、その旨及び補償した金額

第4目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における事業内容の報告

第126条

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公開会社でない場合にあっては、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を除く。)を事業報告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 二 当該事業年度に係る各会計監査人の報酬等の額及び当該報酬等について監査役(監査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会、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が法第三百九十九条第一項の同意をした理由
- 三 会計監査人に対して公認会計士法第二条第一項の業務以外の業務(以下この号において「非監査業務」という。)の対価を支払っているときは、その非監査業務の内容
- 四 会計監査人の解任又は不再任の決定の方針
- 五 会計監査人が現に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その停止の期間を経過しない者であるときは、当該処分に係る事項
- 六 計監査人が過去二年間に業務の停止の処分を受けた者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処分に係る事項のうち、当該株式会社が事業報告の内容とすることが適切であるものと判断した事項
- 七 会計監査人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法第四百二十七条第一項の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は、当該契約の内容の概要(当該契約によって当該会計監査人の職務の執行の適正性が損な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内容を含む。)
- 七の二 会計監査人と当該株式会社との間で補償契約を締結してい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것을 안 때에는 그 뜻

4. 주식회사가 회계참여에 대하여 보상계약에 기하여 법 제430조의 제1항 제2호의 손실을 보상한 때에는 그 취지 및 보상한 금액

제4목 회계감사인설치회사에 있어서 사업내용의 보고

제126조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에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경우 다음의 사항(주식회사가 사업연도의 말일에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업연도에 관한 각 회계감사인의 보수 등의 금액 및 당해 보수 등에 관해 감사(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법 제399조 제1항의 동의를 한 이유
3. 회계감사인에게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항의 업무 이외의 업무(이하 이 호에서 “비감사업무”라 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때에는 그 비감사업무의 내용
4. 회계감사인의 해임 또는 부재임 결정의 방침
5. 회계감사인이 현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인 때에는 당해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인이 과거 2년 사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 당해 처분사항 중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항
7. 회계감사인과 주식회사 사이에 법 제427조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계약의 개요(계약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 7의2. 회계감사인과 주식회사 사이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イ 当該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ロ 当該補償契約の内容の概要(当該補償契約によって当該会計監査人の職務の執行の適正性が損なわ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の措置を講じてい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内容を含む。)

七の三 当該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当該事業年度の前事業年度の末日までに退任した者を含む。以下この号及び次号において同じ。))に対して補償契約に基づき法第四百三十条の二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費用を補償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において、当該会計監査人が同号の職務の執行に関し法令の規定に違反したこと又は責任を負うことを知ったときは、その旨

七の四 当該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に対して補償契約に基づき法第四百三十条の二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損失を補償したときは、その旨及び補償した金額

八 株式会社が法第四百四十四条第三項に規定する大会社で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株式会社の会計監査人である公認会計士(公認会計士法第十六条の二第五項に規定する外国公認会計士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又は監査法人に当該株式会社及びその子会社が支払うべき金銭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の合計額(当該事業年度に係る連結損益計算書に計上すべきものに限る。)

ロ 当該株式会社の会計監査人以外の公認会計士又は監査法人(外国におけるこれらの資格に相当する資格を有する者を含む。)が当該株式会社の子会社(重要なものに限る。)の計算関係書類(これ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の監査(法又は金融商品取引法(これらの法律に相当する外国の法令を含む。)の規定によるものに限る。)をしているときは、その事実

九 辞任した会計監査人又は解任された会計監査人(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解任されたものを除く。)が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当該事業年度前の事業年度に係る事業報告の内容としたものを除く。)

イ 当該会計監査人の氏名又は名称

ロ 法第三百四十条第三項の理由があるときは、その理由

ハ 法第三百四十五条第五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

ニ 法第三百四十五条第五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同条第二項の理

- 가.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 나. 보상계약의 개요(보상계약에 의해 회계감사인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 7의3. 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해당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퇴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보상계약에 기하여 법 제430조의2 제1항 제1호의 비용을 보상한 경우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그 회계감사인이 동호의 직무집행에 관해 법령을 위반한 것 또는 책임을 지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뜻
- 7의4. 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보상계약에 기하여 법 제430조의2 제1항 제2호의 손실을 보상한 때에는 그 취지 및 보상한 금액
- 8. 주식회사가 법 제444조 제3항의 대회사인 때에는 다음의 사항

가.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16조의2 제5항의 외국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법인에게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에 한한다)

나.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 이외의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 주식회사의 자회사 (중요한 자회사에 한한다) 계산관계서류 (이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 감사 (법 또는 금융상품거래법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것에 한한다) 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실

- 9. 사임한 회계감사인 또는 해임된 회계감사인 (주주총회결의에 의해서 해임된 자는 제외한다) 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 (당해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내용으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당해 회계감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법 제340조 제3항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

다. 법 제345조 제5항에서 환독하여 준용하는 동조 제1항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의 내용

라. 법 제345조 제5항에서 환독하여 준용하는 동조 제2항의 이유 또는 의견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由又は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理由又は意見
十 法第四百五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定めがあるときは、当該定款の定めにより取締役会に与えられた権限の行使に関する方針

第127条

削除

第5目 事業報告の附属明細書の内容

第128条

- 1 事業報告の附属明細書は、事業報告の内容を補足する重要な事項をその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2 株式会社が当該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公開会社であるときは、他の法人等の業務執行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又は法第五百九十八条第一項の職務を行うべき者その他これに類する者を兼ねることが第百二十一条第八号の重要な兼職に該当する会社役員(会計参与を除く。)についての当該兼職の状況の明細(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を事業報告の附属明細書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他の法人等の事業が当該株式会社の事業と同一の部類の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旨を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当該株式会社とその親会社等との間の取引(当該株式会社と第三者との間の取引で当該株式会社とその親会社等との間の利益が相反するものを含む。)であって、当該株式会社の当該事業年度に係る個別注記表において会社計算規則第百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注記を要するもの(同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同項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及び第八号に掲げる事項を省略するものに限る。)があるときは、当該取引に係る第百十八条第五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事項を事業報告の附属明細書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款 事業報告等の監査

第129条 監査役の監査報告の内容

- 1 監査役は、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を受領し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

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 또는 의견

10. 법 제4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방침

제127조

삭제

제5목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의 내용

제128조

- ①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중요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가 사업연도의 말일에 공개회사인 때에는 다른 법인 등의 업무집행이사, 집행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또는 법 제598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지위를 겸하는 것이 법 제121조 제8호의 중요한 겸직에 해당하는 회사임원(회계참여는 제외한다)에 관한 겸직상황의 명세(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를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인 등의 사업이 주식회사의 사업과 동일한 부류인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③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 등과의 거래(주식회사와 제3자간의 거래에서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 등과 이익이 상반되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주식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개별주기표에서 회사계산규칙 제112조 제1항의 주기를 요하는 것(동항의 단서규정으로 동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생략하는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래에 관한 제118조 제5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을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3관 사업보고서등의 감사

제129조 감사의 감사보고서 내용

- ① 감사는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수령한 때 다음의 사항 (감사회설치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項 (監査役会設置会社の監査役の監査報告にあつては、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を内容とする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監査役の監査 (計算関係書類に係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款において同じ。) の方法及びその内容
- 二 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が法令又は定款に従い当該株式会社の状況を正しく示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意見
- 三 当該株式会社の取締役(当該事業年度中に当該株式会社が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であった場合にあっては、執行役を含む。)の職務の遂行に関し、不正の行為又は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重大な事実があったときは、その事実
- 四 監査のため必要な調査ができなかった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理由
- 五 第一百八条第二号に掲げる事項 (監査の範囲に属さないものを除く。) 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事項の内容が相当で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理由
- 六 第一百八条第三号若しくは第五号に規定する事項が事業報告の内容となっており又は前条第三項に規定する事項が事業報告の附属明細書の内容となっておりとき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意見
- 七 監査報告を作成した日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の監査役は、前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代えて、事業報告を監査する権限が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30条 監査役会の監査報告の内容等

1 監査役会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監査役が作成した監査報告 (以下この条において「監査役監査報告」という。) に基づき、監査役会の監査報告 (以下この条において「監査役会監査報告」という。) 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監査役会監査報告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監査役は、当該事項に係る監査役会監査報告の内容と当該事項に係る当該監査役の監査役監査報告の内容が異なる場合には、当該事項に係る監査役監査報告の内容を監査役会監査報告に付記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監査役及び監査役会の監査の方法及びその内容

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 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감사 (계산관계서류에 관한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방법 및 그 내용
 2.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
 3. 주식회사의 이사(사업연도 중에 주식회사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인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에 관해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
 4.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뜻 및 이유
 5. 제118조 제2호의 사항 (감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뜻 및 이유
 6. 제118조 제3호 혹은 제5호의 사항이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때 또는 전조 제3항의 사항이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견
 7.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날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규정이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는 동항 각 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사업보고서를 감사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0조 감사회의 감사보고서 내용등

- ① 감사회는 전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이하 이 조에서 “감사감사보고서”라 한다) 에 의거하여 감사회의 감사보고서 (이하 이 조에서 “감사회감사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회감사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감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감사회감사보고서의 내용과 감사의 감사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감사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감사회감사보고서에 부기할 수 있다.

1. 감사 및 감사회의 감사방법 및 그 내용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二 前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三 監査役会監査報告を作成した日

3 監査役会が監査役会監査報告を作成する場合には、監査役会は、一回以上、会議を開催する方法又は情報の送受信により同時に意見の交換をすることができる方法により、監査役会監査報告の内容（前項後段の規定による付記の内容を除く。）を審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第130条の2 監査等委員会の監査報告の内容等

1 監査等委員会は、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を受領し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監査等委員は、当該事項に係る監査報告の内容が当該監査等委員の意見と異なる場合には、その意見を監査報告に付記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監査等委員会の監査の方法及びその内容

二 第二百二十九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三 監査報告を作成した日

2 前項に規定する監査報告の内容（同項後段の規定による付記の内容を除く。）は、監査等委員会の決議をもって定め

第131条 監査委員会の監査報告の内容等

1 監査委員会は、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を受領し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監査委員は、当該事項に係る監査報告の内容が当該監査委員の意見と異なる場合には、その意見を監査報告に付記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監査委員会の監査の方法及びその内容

二 第二百二十九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三 監査報告を作成した日

2 前項に規定する監査報告の内容（前項後段の規定による付記の内容を除く。）は、監査委員会の決議をもって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第132条 監査役監査報告等の通知期限

1 特定監査役は、次に掲げる日のいずれか遅い日までに、特定取締役に対し

2.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3. 감사회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날

③ 감사회가 감사회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감사회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 또는 정보의 송수신을 이용하여 동시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감사회감사보고서의 내용(전항 후단에 따른 부기의 내용은 제외한다)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 감사등위원회의 감사보고서의 내용 등

① 감사등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수령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등위원은 당해 사항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등위원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부기할 수 있다.

1. 감사등위원회의 감사방법 및 그 내용

2. 제12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3. 감사보고서의 작성일

② 전항의 감사보고서의 내용(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기내용은 제외한다)은 감사등위원회의 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31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내용 등

① 감사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수령한 때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당해 사항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부기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방법 및 그 내용

2. 제12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3.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날

② 전항의 감사보고서의 내용(동항 후단에 의한 부기의 내용은 제외한다)은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제132조 감사감사보고서 등의 통지기한

① 특정감사는 다음의 날 중 늦은 날까지 특정이사에게 감사보고서(감사회설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て、監査報告(監査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第百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監査役会の監査報告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内容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事業報告を受領した日から四週間を経過した日

二 事業報告の附属明細書を受領した日から一週間を経過した日

三 特定取締役及び特定監査役の間で合意した日

2 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については、特定取締役が前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受けた日に、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の監査を受けたものとする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特定監査役が第一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すべき日までに同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しない場合には、当該通知をすべき日に、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については、監査役(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の監査を受けたものとみなす

4 第一項及び第二項に規定する「特定取締役」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をいう。

一 第一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者を定めた場合 当該通知を受ける者と定められた者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の作成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取締役又は執行役

5 第一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特定監査役」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する。

一 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み、監査役会設置会社を除く。)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者

イ 二以上の監査役が存す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すべき監査役を定めたとき 当該通知をすべき監査役として定められた監査役

ロ 二以上の監査役が存する場合において、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すべき監査役を定めていないとき 全ての監査役

치회사의 경우에는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감사회감사보고서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4주년을 경과한 날
 2.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주년을 경과한 날
 3. 특정이사 및 특정감사 사이에 합의한 날
- ②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경우에는 특정이사가 전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에 감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동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날에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관해서는 감사(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특정이사”란 다음 각호마다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의 통지를 받을 자를 정한 경우 : 당해 통지를 받을 자로 정해진 자
 2. 전호 이외의 경우 :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에 관련된 직무를 행한 이사 또는 집행임원
- ⑤ 제1항 및 제3항의 “특정감사”란 다음 각호의 주식회사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설치회사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하고 감사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 :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자
 - 가. 2 이상의 감사가 존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감사를 정한 때 : 당해 통지를 하여야 하는 감사로 정해진 감사
 - 나. 2 이상의 감사가 존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감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 : 모든 감사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 ハ 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監査役
- 二 監査役会設置会社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者
 - イ 監査役会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すべき監査役を定めた場合 当該通知をすべき監査役として定められた監査役
 - ロ イ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全ての監査役
- 三 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者
 - イ 監査等委員会が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すべき監査等委員を定めた場合 当該通知をすべき監査等委員として定められた監査等委員
 - ロ イ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監査等委員のうちいずれかの者
- 四 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

第4款 事業報告等の株主への提供

第133条

- 1 法第四百三十七条の規定により株主に対して行う提供事業報告(次の各号に掲げる株式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提供に関しては、この条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株式会社(監査役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を除く。) 事業報告
 - 二 監査役設置会社、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及び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 次に掲げるもの
 - イ 事業報告
 - ロ 事業報告に係る監査役(監査役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役会、監査等委員会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等委員会、指名委員会等設置会社にあつては監査委員会)の監査報告があるときは、当該監査報告(二以上の監査役が存する株式会社(監査役会設置会社を除く。)の各監査役の監査報告の内容(監査報告を作成した日を除く。)が同一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一又は二以上の監査役の監査報告)

- 다. 가목 또는 나목 이외의 경우 : 감사
2. 감사회설치회사 :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하는 자
- 가. 감사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감사를 정한 경우 : 당해 통지를 하여야 하는 감사로 정해진 감사
- 나. 가목 이외의 경우 : 모든 감사
3.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자
- 가. 감사등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하는 감사등위원을 정한 경우 : 당해 통지를 하여야 할 감사등위원으로 정하여진 감사등위원
- 나. 가목의 경우 이외의 경우 : 감사등위원 중의 어느 위원
4.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목

제4관 사업보고서등의 주주에의 제공

제133조

- ① 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행한 제공사업보고서(다음 각호의 주식회사의 구분에 따라 당해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식회사(감사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는 제외한다) : 사업보고서
2. 감사설치회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및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 다음의 서류
- 가. 사업보고서
- 나. 사업보고서에 관한 감사(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등위원회,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가 있을 때에는 당해 감사보고서(2 이상의 감사가 존재하는 주식회사(감사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의 각 감사의 감사보고서의 내용(감사보고서의 작성일은 제외한다)이 동일한 경우에는 1 또는 2 이상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第2編 株式会社

第5章 計算等

ハ 前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監査を受けたものとみなされたときは、その旨を記載又は記録をし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

2 定時株主総会の招集通知(法第二百九十九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を次の各号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う場合には、提供事業報告は、当該各号に定める方法により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書面の提供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方法

イ 提供事業報告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 当該書面に記載された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提供

ロ 提供事業報告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 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提供

二 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方法

イ 提供事業報告が書面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 当該書面に記載された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

ロ 提供事業報告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 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

3 事業報告に表示すべき事項(次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係る情報を、定時株主総会に係る招集通知を発出する時から定時株主総会の日から三箇月が経過する日までの間、継続して電磁的方法により株主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第二百二十二条第一項第一号ロに掲げる方法のうち、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された自動公衆送信装置を使用する方法によって行われるものに限る。第七項において同じ。)をと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事項につき同項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方法により株主に対して提供し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この項の措置をと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限る。

一 第一百二十条第一項第四号、第五号、第七号及び第八号、第二百一十一条第一号、第二号及び第三号の二から第六号の三まで、第二百一十一条の二、第二百五条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並びに第二百二十六条第七号の二から第七号の四までに掲げる事項

다. 전조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 때에는 그 뜻을 기재 또는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

②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법 제29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행한 경우에는 제공사업보고서는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제공 :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서 규정하는 방법

가. 제공사업보고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 당해 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공

나. 제공사업보고서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 당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공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 :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서 규정하는 방법

가. 제공사업보고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 당해 서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

나. 제공사업보고서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 당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

③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다음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제2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 중 인터넷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한한다. 제7항에서 같다)를 취한 경우 전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당해 사항에 관해 동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항의 조치를 취하는 취지의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제12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 제121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2 내지 제6호의3, 제121조의2, 제125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126조 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의 사항

第2編 株式会社
第6章 事業の譲渡等

二 事業報告に表示すべき事項(前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つきこの項の措置をとること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が異議を述べ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項

4 前項の場合には、取締役は、同項の措置をとるために使用する自動公衆送信装置のうち当該措置をとるための用に供する部分を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識別するための文字、記号その他の符号又はこれらの結合であって、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がそ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入力することによって当該情報の内容を閲覧し、当該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当該情報を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株主に対して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第三項の規定により事業報告に表示した事項の一部が株主に対して第二項各号に定める方法により提供し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にお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が、現に株主に対して提供される事業報告が監査報告を作成するに際して監査をした事業報告の一部であることを株主に対して通知すべき旨を取締役に請求したときは、取締役は、その旨を株主に対して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取締役は、事業報告の内容とすべき事項について、定時株主総会の招集通知を発出した日から定時株主総会の前日までの間に修正をすべき事情が生じた場合における修正後の事項を株主に周知させる方法を、当該招集通知と併せて通知することができる。

7 第三項の規定は、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に係る情報についても、電磁的方法により株主が提供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状態に置く措置をとるこ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第6章 事業の譲渡等

第134条 総資産額

1 法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二号の二イ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算定基準日(同項第二号又は第二号の二に規定する譲渡に係る契約を締結した日(当該契約により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と異なる時(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後から当該譲渡の効力が生ずる時の直前までの間の時に限る。))を定

2.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전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의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

④ 전항의 경우 이사는 동항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공중송신장치 중 당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을 인터넷에서 식별하기 위한 문자, 기호 그 밖의 부호 또는 이러한 결합으로서 정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입력함으로써 정보의 내용을 열람하고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표시한 사항의 일부가 주주에게 제2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주주에게 제공되는 사업보고서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에 감사를 한 사업보고서의 일부임을 주주에게 통지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 수정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수정 후의 사항을 주주에게 주지시키는 방법을 소집통지와 아울러 통지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가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사업양도 등

제134조 총자산액

① 법 제46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산정기준일(동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당해 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때(계약을 체결한 날 후부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한다)를 정

第2編 株式会社

第6章 事業の譲渡等

めた場合にあつては、当該時)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おける第一号から第八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九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をもって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一 資本金の額

二 資本準備金の額

三 利益準備金の額

四 法第四百四十六条 に規定する剰余金の額

五 最終事業年度 (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 の期間 (当該期間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末日が最も遅い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株式会社の成立の日。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における評価・換算差額等に係る額

六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七 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

八 最終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負債の部に計上した額

九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吸収合併、吸収分割による他の会社の事業に係る権利義務の承継又は他の会社(外国会社を含む。)の事業の全部の譲受けをしたときは、これらの行為により承継又は譲受けをした負債の額

十 自己株式及び自己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の合計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算定基準日において法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第二号又は第二号の二に規定する譲渡をする株式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同項第二号及び第二号の二イ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をもって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第135条 純資産額

1 法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第五号 ロ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算定基準日 (同号 に規定する取得に係る契約を締結した日 (当該契約により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と異なる時 (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後から当該取得の効力が生ずる時の直前までの間の時に限る。)) 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当該時) 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における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

한 경우에는 그 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1호 내지 제8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제9호의 금액을 빼고 얻은 금액을 주식회사의 총 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자본금의 액
2. 자본준비금의 액
3. 이익준비금의 액
4. 법 제446조의 잉여금의 액
5. 최근 사업연도(법 제4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당해 기간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말일이 가장 늦은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말일(최근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성립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환산차액 등의 금액

6.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7. 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8. 최종 사업연도의 말일에 부채의 부에 계상한 금액
 9. 최종 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흡수합병, 흡수분할에 의한 다른 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다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때에는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승계 또는 양수한 부채의 금액
 10. 자기주식 및 자기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에 법 제46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양도를 한 주식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동항 제2호 및 제2호의2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법 제4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에 계상한 금액을 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5조 순자산액

① 법 제467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산정기준일(동호의 취득계약을 체결한 날(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때(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부터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의 직전까지에 한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1호 내지 제6호 금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제7호의 금액을 감하여 얻은 금액(그 액이

第2編 株式会社

第6章 事業の譲渡等

計額から第七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 (当該額が五百万円を下回る場合にあっては、五百万円) をもって株式会社の純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資本金の額
- 二 資本準備金の額
- 三 利益準備金の額
- 四 法第四百四十六条 に規定する剰余金の額
- 五 最終事業年度 (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 の期間 (当該期間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末日が最も遅いもの)。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会社の成立の日) における評価・換算差額等に係る額

- 六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 七 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
- 八 自己株式及び自己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の合計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算定基準日において法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第五号 に規定する取得をする株式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同号 ロ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から負債の部に計上した額を減じて得た額 (当該額が五百万円を下回る場合にあっては、五百万円) をもって株式会社の純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第136条 特別支配会社

1 法第四百六十八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法人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四百六十八条第一項 に規定する他の会社がその持分の全部を有する法人 (株式会社を除く。)
- 二 法第四百六十八条第一項 に規定する他の会社及び特定完全子法人 (当該他の会社が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株式会社及び前号に掲げる法人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又は特定完全子法人がその持分の全部を有する法人

2 前項第二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に掲げる法人は、同号に規定する

5백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엔)으로써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자본금의 액
2. 자본준비금의 액
3. 이익준비금의 액
4. 법 제446조의 잉여금의 액
5. 최근 사업연도 (법 제4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당해 기간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말일이 가장 늦은 것)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말일 (최근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성립일)의 평가·환산차액 등의 금액

6.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7. 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8. 자기주식 및 자기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에 법 제467조 제1항 제5호의 취득을 한 주식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동호 나목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4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한 금액으로부터 부채의 부에 계상한 금액을 감하여 얻은 가액 (그 액이 5백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엔)으로써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36조 특별지배회사

① 법 제468조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68조 제1항의 다른 회사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는 법인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2. 법 제468조 제1항의 다른 회사 및 특정완전자법인 (당해 다른 회사가 발행 주식전부를 보유하는 주식회사 및 전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완전자법인이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는 법인

② 전항 제2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호의 법인은 동호의 특정완전자법인으로

特定完全子法人とみなす。

第137条 純資産額

1 法第四百六十八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算定基準日 (法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 に規定する譲受けに係る契約を締結した日 (当該契約により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と異なる時 (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後から当該譲受けの効力が生ずる時の直前までの間の時に限る。) 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当該時) 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における第一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七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 (当該額が五百万円を下回る場合にあつては、五百万円) をもって株式会社の純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一 資本金の額

二 資本準備金の額

三 利益準備金の額

四 法第四百四十六条 に規定する剰余金の額

五 最終事業年度 (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場合にあつては、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 の期間 (当該期間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つては、その末日が最も遅いもの)。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株式会社の成立の日) における評価・換算差額等に係る額

六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七 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

八 自己株式及び自己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の合計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算定基準日において法第四百六十七条第一項第三号 に規定する譲受けをする株式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法第四百六十八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から負債の部に計上した額を減じて得た額 (当該額が五百万円を下回る場合にあつては、五百万円) をもって株式会社の純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본다.

제137조 순자산액

① 법 제468조 제2항 제2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산정기준일 (법 제467조 제1항 제3호의 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때 (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부터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의 직전까지에 한한다) 를 정한 경우에는 그 때)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제1호 내지 제6호 금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제7호의 금액을 감하여 얻은 금액 (그 액이 5백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엔) 으로서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자본금의 액
2. 자본준비금의 액
3. 이익준비금의 액
4. 법 제446조 의 잉여금의 액
5. 최근 사업연도 (법 제4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당해 기간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말일이 가장 늦은 것)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말일 (최근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성립일) 의 평가·환산차액 등의 금액

6.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7. 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8. 자기주식 및 자기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에 법 제467조 제1항 제3호의 양수를 한 주식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468조 제2항 제2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4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한 금액으로부터 부채의 부에 계상한 금액을 감하여 얻은 금액 (그 액이 5백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엔) 으로서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7章 解散

第138条 事業譲渡等につき株主総会の承認を要する場合

法第四百六十八条第三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数は、次に掲げる数のいずれか小さい数とする。

- 一 特定株式 (法第四百六十八条第三項 に規定する行為に係る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内容とする株式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の総数に二分の一 (当該株主総会の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当該特定株式の議決権の総数の一定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一定の割合) を乗じて得た数に三分の一 (当該株主総会の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当該株主総会に出席した当該特定株主 (特定株式の株主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の有する議決権の総数の一定の割合以上の多数が賛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一から当該一定の割合を減じて得た割合) を乗じて得た数に一を加えた数
- 二 法第四百六十八条第三項 に規定する行為に係る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一定の数以上の特定株主の賛成を要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特定株主の総数から株式会社に対して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数を減じて得た数が当該一定の数未満となるときにおける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有する特定株式の数
- 三 法第四百六十八条第三項 に規定する行為に係る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前二号の定款の定め以外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全部が同項 に規定する株主総会において反対したとすれば当該決議が成立しないときは、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有する特定株式の数
- 四 定款で定めた数

第7章 解散

第139条

- 1 法第四百七十二条第一項 の届出 (以下この条において単に「届出」という。) は、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38조 사업양도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법 제468조 제3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수 중 작은 수를 말한다.

1. 특정주식 (법 제468조 제3항의 행위에 관련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총수에 2분의 1 (주주총회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정주식 의결권 총수 중 일정한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비율) 을 곱하여 얻은 수에 3분의 1 (주주총회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한 특정주주 (특정주식의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가진 의결권 총수 중 일정한 비율 이상의 다수가 찬성하여야 한다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에서 그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은 비율) 을 곱하여 얻은 수에 1을 더한 수
2. 법 제468조 제3항의 행위에 관한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정한 수 이상의 특정주주의 찬성을 요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특정주주의 총수로부터 주식회사에 당해 행위에 반대하는 뜻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의 수를 감하여 얻은 수가 당해 일정한 수 미만이 되는 때에 당해 행위에 반대하는 뜻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가 가진 특정주식의 수
3. 법 제468조 제3항의 행위에 관한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전2호의 정관 규정 이외의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에 반대하는 뜻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의 전부가 동향의 주주총회에서 반대를 할 경우 그 결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에 반대하는 뜻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가 가진 특정주식의 수
4. 정관에서 정한 수

제7장 해산

제139조

① 법 제472조 제1항의 신고 (이하 이 조에서 단순히 “신고”라 한다) 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2 前項の書面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株式会社の代表者又は代理人
が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該株式会社の商号及び本店並びに代表者の氏名及び住所

二 代理人によって届出をするときは、その氏名及び住所

三 まだ事業を廃止していない旨

四 届出の年月日

五 登記所の表示

3 代理人によって届出をするには、第一項の書面にその権限を証する書面を添
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又は前項の書面に押印すべき株式会社の代表者の印鑑は、商業登記
法 (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二十五号) 第二十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提出したも
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法第四百七十二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に
係る書面を提出して届出を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第8章 清算

第1節 総則

第140条 清算株式会社の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 法第四百八十二条第三項第四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は、次に
掲げる体制とする。

一 清算人の職務の執行に係る情報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体制

二 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三 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2 清算人が二人以上ある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に規定する体制
には、業務の決定が適正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を含むものと
する。

3 監査役設置会社以外の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に規定する体
制には、清算人が株主に報告すべき事項の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を含むものと
する。

② 전항의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상호, 본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4. 신고의 년월일
5. 등기소의 표시

③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하려면 제1항의 서면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전항의 서면에 날인하여야 하는 주식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1963년 법률 제125호)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인감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472조 제2항의 통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청산

제1절 총칙

제140조 청산주식회사의 업무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① 법 제482조 제3항 제4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제이란 다음의 체제를 말한다.

1. 청산인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2. 손실 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체제
3. 사용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

②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전항의 체제에는 업무결정을 적정하게 행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설치회사가 아닌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제1항의 체제에는 청산인이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를 위한 체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4 監査役設置会社 (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清算株式会社を含む。) 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に規定する体制には、次に掲げる体制を含むものとする。

- 一 監査役がその職務を補助すべき使用人を置くことを求めた場合における当該使用人に関する体制
- 二 前号の使用人の清算人からの独立性に関する事項
- 三 監査役の第一号の使用人に対する指示の実効性の確保に関する事項
- 四 清算人及び使用人が監査役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その他の監査役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 五 前号の報告をした者が当該報告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不利な取扱いを受けない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六 監査役の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の前払又は償還の手続その他の当該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又は債務の処理に係る方針に関する事項
- 七 その他監査役の監査が実効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第141条 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に際して清算人会が定めるべき事項

法第四百八十九条第六項第五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二以上の募集 (法第六百七十六条 の募集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に係る法第六百七十六条 各号に掲げる事項の決定を委任するときは、その旨
- 二 募集社債の総額の上限 (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各募集に係る募集社債の総額の上限の合計額)
- 三 募集社債の利率の上限その他の利率に関する事項の要綱
- 四 募集社債の払込金額 (法第六百七十六条第九号 に規定する払込金額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の総額の最低金額その他の払込金額に関する事項の要綱

第142条 清算人会設置会社の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 1 法第四百八十九条第六項第六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体制は、次に掲

④ 감사설치회사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청산주식회사를 포함한다) 인 경우 제1항의 체제에는 다음의 체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하여야 하는 사용인을 둘 것을 요구한 경우 당해 사용인에 관한 체제
2. 전호 사용인의 청산인으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제1호의 사용인에 대한 지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청산인 및 사용인이 감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체제 그 밖의 감사에게의 보고에 관한 체제
5. 전호의 보고를 한 자가 당해 보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체제
6. 감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선급 또는 환급절차, 그 밖에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채무의 처리에 관련된 방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제141조 사채를 인수할 자의 모집시 청산인회가 정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489조 제6항 제5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2 이상의 모집 (법 제676조의 모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관한 법 제676조 각호 사항의 결정을 위임하는 때에는 그 뜻
2. 모집사채 총액의 상한 (전호의 경우에는 각 모집의 모집사채 총액의 상한 합계액)
3. 모집사채 이율의 상한 그 밖의 이율에 관한 사항의 요강
4. 모집사채 납입금액 (법 제676조 제9호의 납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의 최저금액 그 밖의 납입금액에 관한 사항의 요강

제142조 청산인회설치회사의 업무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① 법 제489조 제6항 제6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제란 다음의 체제를 말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げる体制とする。

一 清算人の職務の執行に係る情報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体制

二 損失の危険の管理に関する規程その他の体制

三 使用人の職務の執行が法令及び定款に適合す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2 監査役設置会社以外の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前項に規定する体制には、清算人が株主に報告すべき事項の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を含むものとする。

3 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清算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場合には、第一項に規定する体制には、次に掲げる体制を含むものとする。

一 監査役がその職務を補助すべき使用人を置くことを求めた場合における当該使用人に関する体制

二 前号の使用人の清算人からの独立性に関する事項

三 監査役の第一号の使用人に対する指示の実効性の確保に関する事項

四 清算人及び使用人が監査役に報告をするための体制その他の監査役への報告に関する体制

五 前号の報告をした者が当該報告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不利な取扱いを受けない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六 監査役 of 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の前払又は償還の手続その他の当該職務の執行について生ずる費用又は債務の処理に係る方針に関する事項

七 その他監査役の監査が実効的に行われること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第143条 清算人会の議事録

1 法第四百九十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六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清算人会の議事録の作成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清算人会の議事録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清算人会の議事録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清算人会が開催された日時及び場所（当該場所に存しない清算人、監査役又は株主が清算人会に出席を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出席の方法を含む。）

二 清算人会が次に掲げるいずれかのもの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旨

한다.

1. 청산인의 직무집행에 관련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2. 손실 위험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의 체제
3. 사용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체제
- ② 감사설치회사가 아닌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전항의 체제에는 청산인이 주주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를 위한 체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청산주식회사를 포함한다) 인 경우 제1항의 체제에는 다음의 체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하여야 하는 사용인을 둘 것을 요구한 경우 당해 사용인에 관한 체제
2. 전호 사용인의 청산인으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제1호의 사용인에 대한 지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청산인 및 사용인이 감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체제 그 밖의 감사에게의 보고에 관한 체제
5. 전호의 보고를 한 자가 당해 보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체제
6. 감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선급 또는 환급절차, 그 밖에 직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채무의 처리에 관련된 방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제143조 청산인회의 의사록

- ① 법 제49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이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청산인회의 의사록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청산인회의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청산인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아니한 청산인, 감사 또는 주주가 청산인회에 출석을 한 경우에 있어서 출석 방법을 포함한다)
 2. 청산인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뜻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 イ 法第四百九十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清算人の請求を受けて招集されたもの
- ロ 法第四百九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清算人が招集したもの
- ハ 法第四百九十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六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株主の請求を受けて招集されたもの
- ニ 法第四百九十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六十七条第三項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法第四百九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株主が招集したもの
- ホ 法第三百八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監査役の請求を受けて招集されたもの
- ヘ 法第三百八十三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監査役が招集したもの
- 三 清算人会の議事の経過の要領及びその結果
- 四 決議を要する事項について特別の利害関係を有する清算人があるときは、その氏名
- 五 次に掲げる規定により清算人会において述べられた意見又は発言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又は発言の内容の概要
 - イ 法第三百八十二条
 - ロ 法第三百八十三条第一項
 - ハ 法第四百八十九条第八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六十五条第二項
 - ニ 法第四百九十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六十七条第四項
- 六 清算人会に出席した監査役又は株主の氏名又は名称
- 七 清算人会の議長が存するときは、議長の氏名
- 4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清算会の議事録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四百九十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七十条の規定により清算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 次に掲げる事項
 - イ 清算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事項の内容
 - ロ イの事項の提案をした清算人の氏名
 - ハ 清算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
 - ニ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清算人の氏名
 - 二 法第四百九十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三百七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清算人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場合 次に掲げる事項
 - イ 清算人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事項の内容

- 가. 법 제4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의 청구를 받아 소집된 경우
 - 나. 법 제4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소집한 경우
 - 다. 법 제490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청구를 받아 소집된 경우
 - 라. 법 제490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67조 제3항에서 환독하여 준용하는 법 제4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소집한 경우
 - 마. 법 제3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청구를 받아 소집된 경우
 - 바. 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한 경우
3. 청산인회 의사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
 4.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청산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5.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회에서 진술된 의견이나 발언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또는 발언 내용의 개요
 - 가. 법 제382조
 - 나. 법 제383조 제1항
 - 다. 법 제489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65조 제2항
 - 라. 법 제490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67조 제4항
 6. 청산인회에 출석한 감사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7. 청산인회의 의장이 존재하는 때에는 의장의 성명
- ④ 다음 각호의 경우 청산인회의 의사록은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49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경우 : 다음의 사항
 - 가. 청산인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사항의 내용
 - 나. 가목 사항의 제안을 한 청산인의 성명
 - 다. 청산인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날
 - 라. 의사록의 작성에 관련된 직무를 행한 청산인의 성명
 2. 법 제490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회에서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경우 : 다음의 사항
 - 가. 청산인회에서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사항의 내용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 ロ 清算人会への報告を要しないものとされた日
- ハ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清算人の氏名

第144条 財産目録

- 1 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財産目録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前項の財産目録に計上すべき財産については、その処分価格を付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を除き、法第四百七十五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における処分価格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清算株式会社の会計帳簿については、財産目録に付された価格を取得価額とみなす。
- 3 第一項の財産目録は、次に掲げる部に区分して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部は、その内容を示す適当な名称を付した項目に細分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資産
 - 二 負債
 - 三 正味資産

第145条 清算開始時の貸借対照表

- 1 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貸借対照表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前項の貸借対照表は、財産目録に基づき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の貸借対照表は、次に掲げる部に区分して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部は、その内容を示す適当な名称を付した項目に細分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資産
 - 二 負債
 - 三 純資産
- 4 処分価格を付することが困難な資産がある場合には、第一項の貸借対照表には、当該資産に係る財産評価の方針を注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나. 청산인회에의 보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날
다. 의사록의 작성에 관련된 직무를 행한 청산인의 성명

제144조 재산목록

- ① 법 제4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 관하여는 이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전항의 재산목록에 제상하여야 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처분가격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5조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의 처분가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관하여는 재산목록에 부여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재산목록은 다음의 부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부는 그 내용을 표시함에 적당한 명칭을 부여한 항목으로 세분할 수 있다.
 - 1. 자산
 - 2. 부채
 - 3. 순자산

제145조 청산개시시의 대차대조표

- ① 법 제492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에 관하여는 이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전항의 대차대조표는 재산목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대차대조표는 다음의 부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부는 그 내용을 표시함에 적당한 명칭을 부여한 항목으로 세분할 수 있다.
 - 1. 자산
 - 2. 부채
 - 3. 순자산
- ④ 처분가격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대차대조표에는 당해 자산의 재산평가 방침을 주기하여야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第146条 各清算事務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

- 1 法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貸借対照表は、各清算事務年度に係る会計帳簿に基づき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貸借対照表について準用する。
- 3 法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貸借対照表の附属明細書は、貸借対照表の内容を補足する重要な事項をそ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7条 各清算事務年度に係る事務報告

- 1 法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事務報告は、清算に関する事務の執行の状況に係る重要な事項をそ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法第四百九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事務報告の附属明細書は、事務報告の内容を補足する重要な事項をその内容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清算株式会社の監査役は、同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代えて、これらの事項を監査する権限が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8条 清算株式会社の監査報告

- 1 法第四百九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監査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2 清算株式会社の監査役は、各清算事務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及び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を受領し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監査役会設置会社の監査役の監査報告にあっては、第一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監査役の監査の方法及びその内容
 - 二 各清算事務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及びその附属明細書が当該清算株式会社の財産の状況を全ての重要な点において適正に表示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意見
 - 三 各清算事務年度に係る事務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が法令又は定款に従い当該清算株式会社の状況を正しく示しているかどうかについての意見

제146조 각 청산사무연도의 대차대조표

- ① 법 제4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는 각 청산사무연도의 회계장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전조 제3항은 전항의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법 제4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는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보충하는 중요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147조 각 청산사무연도의 사업보고서

- ① 법 제4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는 청산의 사무집행 상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중요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이 있는 청산주식회사의 감사는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이러한 사항을 감사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8조 청산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 ① 법 제495조 제1항의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청산주식회사의 감사는 각 청산사무연도의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수령한 때 다음의 사항 (감사회설치회사의 감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감사 방법 및 그 내용
 2. 각 청산사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가 청산주식회사의 재산상태를 모든 중요한 점에 있어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
 3. 각 청산사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청산주식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四 清算人の職務の遂行に関し、不正の行為又は法令若しくは定款に違反する重大な事実があったときは、その事実

五 監査のため必要な調査ができなかったときは、その旨及びその理由

六 監査報告を作成した日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清算株式会社の監査役は、同項第三号及び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代えて、これらの事項を監査する権限が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清算株式会社の監査役会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清算株式会社の監査役が作成した監査報告に基づき、監査役会の監査報告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清算株式会社の監査役会の監査報告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監査役及び監査役会の監査の方法及びその内容

二 第二項第二号から第五号までに掲げる事項

三 監査報告を作成した日

6 特定監査役は、第四百四十六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及び前条第一項の事務報告の全部を受領した日から四週間を経過した日（特定清算人（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及び特定監査役の間で合意した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日）までに、特定清算人に対して、監査報告（監査役会設置会社にあっては、第四項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監査役会の監査報告に限る。）の内容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この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る者を定めた場合 当該通知を受ける者として定められた者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第四百四十六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及び前条第一項の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の作成に関する職務を行った清算人

7 第四百四十六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及び前条第一項の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については、特定清算人が前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受けた日に、監査役の監査を受けたものとする。

8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特定監査役が第六項の規定により通知をすべき日

4. 청산인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증대한 사실이 있었던 때에는 그 사실
5.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뜻 및 이유
6.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날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청산주식회사의 감사는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이러한 사항을 감사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청산주식회사의 감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주식회사의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의거하여 감사회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청산주식회사의 감사회의 감사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감사 및 감사회의 감사 방법 및 그 내용
2.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3.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날

⑥ 특정감사는 제14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및 전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전부를 수령한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날 (특정청산인 (다음 각호마다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특정감사간에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 까지 특정청산인에게 감사보고서 (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감사회의 감사보고서에 한한다) 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이 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자를 정한 경우 : 당해 통지를 받는 자로 정해진 자
2. 전호 이외의 경우 : 제14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전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에 관련된 직무를 행한 청산인

⑦ 제14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전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관하여는 특정청산인이 전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받은 날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⑧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가 제6항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감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までに同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しない場合には、当該通知をすべき日に、第百四十六条第一項の貸借対照表及び前条第一項の事務報告並びにこれらの附属明細書については、監査役の監査を受けたものとみなす。

9 第六項及び前項に規定する「特定監査役」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清算株式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者とする。

- 一 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清算株式会社を含み、監査役会設置会社を除く。）次の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からハまでに定める者
 - イ 二以上の監査役が存する場合において、第六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すべき監査役を定めたとき 当該通知をすべき監査役として定められた監査役
 - ロ 二以上の監査役が存する場合において、第六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すべき監査役を定めていないとき 全ての監査役
 - ハ 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監査役
- 二 監査役会設置会社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者
 - イ 監査役会が第六項の規定による監査報告の内容の通知をすべき監査役を定めた場合 当該通知をすべき監査役として定められた監査役
 - ロ イ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全ての監査役

第149条 金銭分配請求権が行使される場合における残余財産の価格

1 法第五百五条第三項第一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をもって同号に規定する残余財産の価格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法第五百五条第一項第一号の期間の末日（以下この項において「行使期限日」という。）における当該残余財産を取引する市場における最終の価格（当該行使期限日に売買取引がない場合又は当該行使期限日が当該市場の休業日に当た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後最初になされた売買取引の成立価格）
- 二 行使期限日において当該残余財産が公開買付け等の対象であるときは、当該行使期限日における当該公開買付け等に係る契約における当該残余財産の価格

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날에 제146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 전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제6항 및 전항의 “특정감사”란 다음 각호의 청산주식회사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설치회사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 규정이 있는 청산주식회사를 포함하고 감사회설치회사는 제외한다) : 다음 가목 내지 다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자
 - 가. 2 이상의 감사가 존재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감사를 정한 때 : 당해 통지를 하여야 하는 감사로 정해진 감사
 - 나. 2 이상의 감사가 존재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감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 : 모든 감사
 - 다. 가목 또는 나목 이외의 경우 : 감사
2. 감사회설치회사 :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 정한 자
 - 가. 감사회가 제6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감사를 정한 경우 : 당해 통지를 하여야 하는 감사로 정해진 감사
 - 나. 가목 이외의 경우 : 모든 감사

제149조 금전분배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의 잔여재산 가격

① 법 제505조 제3항 제1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가격 중 높은 가격을 동호의 잔여재산 가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505조 제1항 제1호의 기간 말일 (이하 이 항에서 “행사기한일”이라 한다) 에 잔여재산을 거래하는 시장의 최종가격 (행사기한일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행사기한일이 시장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후 최초 매매거래의 성립가격)
2. 행사기한일에 잔여재산이 공개매수등의 대상인 때에는 행사기한일에 공개매수 등의 계약에 있어서의 잔여재산의 가격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2 法第五百六条の規定により法第五百五条第三項 後段の規定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前項第一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法第五百五条第一項第一号 の期間の末日」とあるのは、「残余財産の分配をする日」とする。

第150条 決算報告

1 法第五百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決算報告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適切な項目に細分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債権の取立て、資産の処分その他の行為によって得た収入の額
- 二 債務の弁済、清算に係る費用の支払その他の行為による費用の額
- 三 残余財産の額（支払税額がある場合には、その税額及び当該税額を控除した後の財産の額）
- 四 一株当たりの分配額（種類株式発行会社にあつては、各種類の株式一株当たりの分配額）

2 前項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注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残余財産の分配を完了した日
- 二 残余財産の全部又は一部が金銭以外の財産である場合には、当該財産の種類及び価額

第151条 清算株式会社が自己の株式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法第五百九条第三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 一 当該清算株式会社が有する他の法人等の株式（持分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つき当該他の法人等が行う剰余金の配当又は残余財産の分配（これら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により当該清算株式会社の株式の交付を受ける場合
- 二 当該清算株式会社が有する他の法人等の株式につき当該他の法人等が行う次に掲げる行為に際して当該株式と引換えに当該清算株式会社の株式の交付を受ける場合

② 법 제506조에 따라 법 제505조 제3항 후단의 예에 따르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전항 제1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호 중 “법 제505조 제1항 제1호의 기간 말일”은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는 날”로 한다.

제150조 결산보고서

① 법 제5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결산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적절한 항목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채권의 추심, 자산의 처분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수입의 금액
2. 채무변제, 청산비용의 지급 그 밖의 행위에 따른 비용의 액
3. 잔여재산의 액 (지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및 세액을 공제한 후 재산의 액)
4. 1주 당 분배액 (종류주식발행회사에서는 각 종류주식 1주 당 분배액)

② 전항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주기하여야 한다.

1. 잔여재산의 분배를 완료한 날
2.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가액

제151조 청산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509조 제3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청산주식회사가 가진 다른 법인 등의 주식 (지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관하여 당해 다른 법인 등이 행한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이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에 따라 청산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2. 청산주식회사가 가진 다른 법인 등의 주식에 관하여 당해 다른 법인 등이 행한 다음의 행위시 당해 주식과 교환하여 청산주식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 イ 組織変更
- ロ 合併
- ハ 株式交換 (法以外の法令 (外国の法令を含む。)) に基づく株式交換に相当する行為を含む。)
- ニ 取得条項付株式 (これに相当する株式を含む。) の取得
- ホ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 (これに相当する株式を含む。) の取得
- 三 当該清算株式会社が有する他の法人等の新株予約権等を当該他の法人等が当該新株予約権等の定めに基づき取得することと引換えに当該清算株式会社の株式の交付をする場合
- 四 当該清算株式会社が法第七百八十五条第五項 又は第八百六条第五項 (これらの規定を株式会社について他の法令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に規定する株式買取請求 (合併に際して行使されるものに限る。) に応じて当該清算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場合
- 五 当該清算株式会社が法第一百六条第五項、第八十二条の四第四項、第四百六十九条第五項、第七百八十五条第五項、第七百九十七条第五項、第八百六条第五項又は第八百六条の六第五項(これらの規定を株式会社について他の法令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株式買取請求(清算株式会社となる前にした行為に際して行使されたものに限る。)に応じて当該清算株式会社の株式を取得する場合
- 六 当該清算株式会社が清算株式会社となる前に法第九十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当該請求に係る同条第二項 の株式を取得する場合

第2節 特別清算

第152条 総資産額

法第五百三十六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イ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を総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 가. 조직변경
- 나. 합병
- 다. 주식교환 (법 이외의 법령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에 의거한 주식교환에 상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라. 취득조항부주식 (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의 취득
- 마.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이에 상당하는 주식을 포함한다) 의 취득
- 3. 청산주식회사가 가진 다른 법인등의 신주예약권등을 당해 다른 법인등이 신주예약권등의 정함에 의거하여 취득하는 것과 교환하여 청산주식회사 주식의 교부를 하는 경우
- 4. 청산주식회사가 법 제785조 제5항 또는 제806조 제5항 (이러한 규정을 주식회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주식매수청구 (합병시 행사되는 것에 한한다) 에 응하여 청산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5. 청산주식회사가 법 제116조 제5항, 제182조의4 제4항, 제469조 제5항, 제785조 제5항 제797조 제5항, 제806조 제5항 또는 816조의6 제5항 (이러한 규정을 주식회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식매수청구(청산주식회사로 되기 전에 한 행위로 인하여 행사된 것에 한한다)에 응하여 청산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6. 청산주식회사가 청산주식회사로 되기 전에 법 제192조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 당해 청구에 관련된 동조 제2항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2절 특별청산

제152조 총자산액

법 제5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법 제4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에 계상한 금액을 총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第153条 債権者集会の招集の決定事項

1 法第五百四十八条第一項第四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次条の規定により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 (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項を除く。)

二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の期限 (債権者集会 (法第二編第九章第二節第八款 の規定の適用のある債権者の集会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 の日時以前の時であって、法第五百四十九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発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以後の時に限る。)

三 一の協定債権者が同一の議案につき法第五百五十六条第一項 (法第五百四十八条第一項第三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法第五百五十六条第一項 又は第五百五十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重複して議決権を行使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同一の議案に対する議決権の行使の内容が異なるものであるときにおける当該協定債権者の議決権の行使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ときは、その事項

四 第五百五十五条第一項第三号の取扱いを定めるときは、その取扱いの内容

五 社債取得者が法第七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より当該会社の社債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社債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イ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の期限 (債権者集会の日時以前の時であって、法第五百四十九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発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以後の時に限る。)

ロ 法第五百四十九条第二項 の承諾をした協定債権者の請求があった時に当該協定債権者に対して法第五百五十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 (同項 に規定する議決権行使書面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 の交付 (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同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 を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債取得者が取得した社債が社債券を発行する定めが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法第六百九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一 社債取得者が社債券を提示して請求をした場合

二 社債取得者が法第七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より当該会社の社

제153조 채권자집회 소집의 결정사항

① 법 제548조 제1항 제4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동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기한 (채권자집회 (법 제2편 제9장 제2절 제8관의 적용이 있는 채권자집회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일시 이전의 때로서 법 제549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때에 한한다)
3. 1인의 협정채권자가 동일한 의안에 관하여 법 제556조 제1항 (법 제548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정하였던 경우에는 법 제556조 제1항 또는 제5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동일한 의안에 의결권행사 내용이 다른 것인 때의 협정채권자의 의결권행사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4. 제155조 제1항 제3호의 취급을 정한 때에는 그 취급의 내용

5. 사채취득자가 법 제179조 제3항의 청구에 의해 회사사채를 취득한 자인 경우에 사채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기한 (채권자집회 일시 이전의 때로서 법 제549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때에 한한다)

나. 법 제549조 제2항의 승낙을 한 협정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당해 협정채권자에게 법 제550조 제1항의 의결권행사서면 (동항의 의결권행사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을 교부 (교부에 갈음하여 행한 동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 하는 것으로 한 때에는 그 뜻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채취득자가 취득한 사채가 사채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 제69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한다.

1. 사채취득자가 사채권을 제시하고 청구를 한 경우
2. 사채취득자가 법 제179조 제3항의 청구에 따라 회사사채를 취득한 자인 경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債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社債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第154条 債権者集会参考書類

- 1 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債権者集会参考書類の交付を受けるべき協定債権者が有する協定債権について法第五百四十八条第二項 又は第三項 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事項
 - 二 議案
- 2 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協定債権者の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参考となると認め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 3 同一の債権者集会に関して協定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 (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限る。) のうち、他の書面に記載している事項又は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これらの事項は、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
- 4 同一の債権者集会に関して協定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招集通知 (法第五百四十九条第一項 又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 の内容とすべき事項のうち、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記載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招集通知の内容と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155条 議決権行使書面

- 1 法第五百五十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交付すべき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又は法第五百五十一条第一項 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べき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各議案についての同意の有無 (棄権の欄を設ける場合にあっては、棄権を含む。) を記載する欄
 - 二 第五百五十三条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当該事項
 - 三 第五百五十三条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第一号の欄に記載がない議決権行使書面が招集者 (法第五百四十八条第一項 に規定する招集者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に提出された場合における各議案についての賛成、反対又は棄権のいずれかの意思の表示があったものとする取扱いの内容

우에 사채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제154조 채권자집회참고서류

- ① 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집회참고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 협정채권자가 가진 협정채권에 관하여 법 제54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
 2. 의안
- ② 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는 전항에 정한 사항 외에 협정채권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협정채권자에게 제공한 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제1항 제2호의 사항에 한한다) 중 다른 서면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은 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동일한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협정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소집통지(법 제5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 중 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은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의결권행사서면

- ① 법 제550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법 제55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각 의안에 관한 동의 여부(기권란을 만든 경우에는 기권을 포함한다)를 기재하는 란
 2. 제153조 제3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3. 제153조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제1호의 란에 기재가 없는 의결권행사서면이 소집자(법 제548조 제1항의 소집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된 경우에 각 의안에 관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어느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한다는 내용

第2編 株式会社

第8章 清算

四 議決権の行使の期限

五 議決権を行使すべき協定債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当該協定債権者につ

いて法第五百四十八条第二項 又は第三項 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事項

2 第五百三十三条第五号ロ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招集者は、法第五百四十九条第二項 の承諾をした協定債権者の請求があった時に、当該協定債権者に対して、法第五百五十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 (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同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 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同一の債権者集会に関して協定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招集通知の内容とすべき事項のうち、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招集通知の内容と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同一の債権者集会に関して協定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 (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限る。) のうち、招集通知の内容と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156条 書面による議決権行使の期限

法第五百五十六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第五百三十三条第二号の行使の期限とする。

第157条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行使の期限

法第五百五十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第五百三十三条第五号イの行使の期限とする。

第158条 債権者集会の議事録

1 法第五百六十一条 の規定による債権者集会の議事録の作成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債権者集会の議事録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債権者集会の議事録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4. 의결권행사의 기한

5.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협정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당해 협정채권자에 관하여 법 제54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

② 제153조 제5호 나목의 사항을 정한 경우 소집자는 법 제549조 제2항의 승낙을 한 협정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당해 협정채권자에게 법 제55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서면을 교부(교부에 갈음하여 행한 동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협정채권자에게 제공한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은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채권자집회에 관하여 협정채권자에게 제공한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한한다) 중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 사항은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기한

법 제556조 제2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제153조 제2호의 행사 기한을 말한다.

제157조 정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기한) 법 제557조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제153조 제5호 가목의 행사 기한을 말한다.

제158조 채권자집회의 의사록

① 법 제561조에 따른 채권자집회 의사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第3編 持分会社

第1章 計算等

- 一 債権者集会が開催された日時及び場所
- 二 債権者集会の議事の経過の要領及びその結果
- 三 法第五百五十九条の規定により債権者集会において述べられた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 四 法第五百六十二条の規定により債権者集会に対する報告及び意見の陳述がされたときは、その報告及び意見の内容の概要
- 五 債権者集会に出席した清算人の氏名
- 六 債権者集会の議長が存するときは、議長の氏名
- 七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者の氏名又は名称

第3編 持分会社

第1章 計算等

第159条

次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べき事項は、会社計算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法第六百十五条第一項
- 二 法第六百十七条第一項 及び第二項
- 三 法第六百二十条第二項
- 四 法第六百二十三条第一項
- 五 法第六百二十六条第四項第四号
- 六 法第六百三十一条第一項
- 七 法第六百三十五条第二項、第三項及び第五項

1. 채권자집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
2. 채권자집회의 의사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
3. 법 제5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진술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내용의 개요
4. 법 제5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집회에 보고 및 의견의 진술이 있었던 때에는 그 보고 및 의견 내용의 개요
5. 채권자집회에 출석한 청산인의 성명
6. 채권자집회의 의장이 존재하는 때에는 의장의 성명
7. 의사록의 작성에 관련된 직무를 행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3편 지분 회사

제1장 계산등

제159조

다음 시행규칙의 사항은 회사의 계산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615조 제1항
2. 법 제617조 제1항 및 제2항
3. 법 제620조 제2항
4. 법 제623조 제1항
5. 법 제626조 제4항 제4호
6. 법 제631조 제1항
7. 법 제635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第2章 清算

第160条 財産目録

1 法第六百五十八条第一項又は第六百六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財産目録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前項の財産目録に計上すべき財産については、その処分価格を付することが困難な場合を除き、法第六百四十四条各号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こととなった日における処分価格を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清算持分会社の会計帳簿については、財産目録に付された価格を取得価額とみなす。

3 第一項の財産目録は、次に掲げる部に区分して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部は、その内容を示す適当な名称を付した項目に細分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資産
- 二 負債
- 三 正味資産

第161条 清算開始時の貸借対照表

1 法第六百五十八条第一項又は第六百六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作成すべき貸借対照表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前項の貸借対照表は、財産目録に基づき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一項の貸借対照表は、次に掲げる部に区分して表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部は、その内容を示す適当な名称を付した項目に細分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資産
- 二 負債
- 三 純資産

4 処分価格を付することが困難な資産がある場合には、第一項の貸借対照表には、当該資産に係る財産評価の方針を注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2장 청산

제160조 재산목록

- ① 법 제658조 제1항, 제66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재산목록은 본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전항의 재산목록에 계상하여야 할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가격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644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의 처분가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지분회사의 회계장부에 관하여는 재산목록에 부여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재산목록은 다음의 부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의 부는 그 내용을 표시하는 적당한 명칭을 붙인 항목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자산
 2. 부채
 3. 정미자산

제161조 청산개시시의 대차대조표

- ① 법 제658조 제1항, 제66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대차대조표는 본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전항의 대차대조표는 재산목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대차대조표는 다음의 부에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의 부는 그 내용을 표시하는 적당한 명칭을 붙인 항목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자산
 2. 부채
 3. 순자산
- ④ 처분가격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차대조표에 당해 자산에 관한 재산평가의 방침을 주기하여야 한다.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第162条 募集事項

法第六百七十六条第十二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数回に分けて募集社債と引換えに金銭の払込みをさせるときは、その旨及び各払込みの期日における払込金額（法第六百七十六条第九号 に規定する払込金額をいう。）
- 二 他の会社と合同して募集社債を発行するとき、その旨及び各会社の負担部分
- 三 募集社債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に代えて金銭以外の財産を給付する旨の契約を締結するとき、その契約の内容
- 四 法第七百二条 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において法に規定する社債管理者の権限以外の権限を定めるときは、その権限の内容
- 五 法第七百十一条第二項本文（法第七百十四条の七において読み替え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とき、同項本文に規定する事由
- 六 法第七百十四条の二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において法第七百十四条の四第二項各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権限の全部若しくは一部又は法に規定する社債管理補助者の権限以外の権限を定めるときは、その権限の内容
- 七 法第七百十四条の二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における法第七百十四条の四第四項の規定による報告又は同項に規定する措置に係る定めの内容
- 八 募集社債が信託社債であ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信託社債についての信託を特定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第163条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

法第六百七十七条第一項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社債管理者を定めたときは、その名称及び住所
- 二 社債管理補助者を定めたときは、そ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제4편 사채

제1장 총칙

제162조 모집사항

법 제676조 제1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회에 나누어 모집사채와 교환으로 금전의 납입을 시키는 때에는 그 뜻 및 각 납입기일의 납입금액 (법 제676조 제9호의 납입금액을 말한다)
2. 다른 회사와 합동으로 모집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그 뜻 및 각 회사의 부담부분
3. 모집사채와 교환으로 하는 금전 납입에 대신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을 급부하는 뜻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
4. 법 제70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법에 규정하는 사채관리자의 권한 이외의 권한을 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내용
5. 법 제711조 제2항 본문(법 제714조의7에서 환독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때에는 동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714조의2의 위탁계약에서 법 제714조의4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할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 또는 법에서 규정하는 사채관리보조자의 권한 이외의 권한을 정할 때에는 그 권한의 내용
7. 법 제714조의2의 위탁계약에서의 법 제714조의 4 제4항의 보고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관련된 정함의 내용
8. 모집사채가 신탁사채인 때에는 그 뜻 및 그 신탁사채에 관한 신탁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3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법 제677조 제1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관리자를 정한 때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사채관리보조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三 社債原簿管理人を定めたときは、そ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第164条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する通知を要しない場合

法第六百七十七条第四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であって、会社が同条第一項 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同項 各号に掲げる事項を提供している場合とする。

- 一 当該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 の規定に基づき目論見書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場合
- 二 当該会社が外国の法令に基づき目論見書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いる場合
- 三 長期信用銀行法 (昭和二十七年法律第百八十七号) 第十一条第四項 の規定に基づく公告により同項 各号の事項を提供している場合
- 四 株式会社商工組合中央金庫法 (平成十九年法律第七十四号) 第三十六条第三項 の規定に基づく公告により同項 各号の事項を提供している場合

第165条 社債の種類

法第六百八十一条第一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社債の利率
- 二 社債の償還の方法及び期限
- 三 利息支払の方法及び期限
- 四 社債券を発行するときは、その旨
- 五 社債権者が法第六百九十八条 の規定による請求の全部又は一部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六 社債管理者を定め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七 社債管理者が社債権者集会の決議によらずに法第七百六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八 社債管理補助者を定め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 九 他の会社と合同して募集社債を発行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各会社の負担部分
- 十 社債管理者を定めたときは、その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第七百二条の規定

3. 사채원부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164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77조 제4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로서 회사가 동조 제1항의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동항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
2. 회사가 외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서면 기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3. 장기신용은행법 (1952년 법률 제187호) 제11조 제4항의 공고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4. 주식회사상공조합중앙금고법 (2007년 법률 제74호) 제36조 제3항의 공고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제165조 사채의 종류

법 제681조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의 이율
2. 사채상환 방법 및 기한
3.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뜻
5. 사채권자가 법 제698조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6. 사채관리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
7. 사채관리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 제706조 제1항 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때에는 그 뜻
8. 사채관리보조자를 정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뜻
9. 다른 회사와 합동하여 모집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그 뜻 및 각 회사의 부담 부분
10. 사채관리자를 정한 때에는 그 명칭과 주소 및 법 제720조의 규정에 의한

第4編 社債

第1章 総則

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の内容

十一 社債管理補助者を定めたときは、そ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第七百十四条の二の規定による委託に係る契約の内容

十二 社債原簿管理人を定めたときは、そ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十三 社債が担保付社債であるときは、担保付社債信託法(明治三十八年法律第五十二号)第十九条第一項第一号、第十一号及び第十三号に掲げる事項

十四 社債が信託社債であるときは、当該信託社債についての信託を特定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第166条 社債原簿記載事項

法第六百八十一条第七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募集社債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に代えて金銭以外の財産の給付があったときは、その財産の価額及び給付の日
- 二 社債権者が募集社債と引換えにする金銭の払込みをする債務と会社に対する債権とを相殺したときは、その債権の額及び相殺をした日

第167条 閲覧権者

法第六百八十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社債権者その他の社債発行会社の債権者及び社債発行会社の株主又は社員とする。

第168条 社債原簿記載事項の記載等の請求

1 法第六百九十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とする。

- 一 社債取得者が、社債権者として社債原簿に記載若しくは記録がされた者又はその一般承継人に対して当該社債取得者の取得した社債に係る法第六百九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確定判決を得た場合において、当該確定判決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二 社債取得者が前号の確定判決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ものの内容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위탁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

11. 사채관리보조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 제714조의 2의 위탁계약의 내용
12. 사채원부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3. 사채가 담보부사채인 때에는 「담보부사채신탁법」(1905년 법률 제52호) 제1 제1항제1호, 제11호 및 제13호의 사항
14. 사채가 신탁사채인 때에는 해당 신탁사채에 관한 신탁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6조 사채원부 기재사항

법 제681조 제7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사채와 교환으로 하는 금전의 납입에 대신하여 금전 이외의 재산의 급부가 있었던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 및 급부일
2. 사채권자가 모집사채와 교환으로 하는 금전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제한 때에는 그 채권액 및 상제한 날

제167조 열람권자

법 제684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사채권자 그 밖의 사채발행 회사의 채권자 및 사채발행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을 말한다.

제168조 사채원부 기재사항의 기재등의 청구

① 법 제691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채취득자가 사채권자로서 사채원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에 대하여 사채취득자의 취득한 사채에 관한 법 제691조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2. 사채취득자가 제1호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第4編 社債

第2章 社債管理者

- 三 社債取得者が一般承継により当該会社の社債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一般承継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四 社債取得者が当該会社の社債を競売により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競売により取得したことを証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請求をしたとき。
 - 五 社債取得者が法第七百七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より当該会社の社債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社債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社債取得者が取得した社債が社債券を発行する定めが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法第六百九十一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社債取得者が社債券を提示して請求をした場合とする。
- 一 社債取得者が社債券を提示して請求をした場合
 - 二 社債取得者が法第七百七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より当該会社の社債を取得した者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社債取得者が請求をしたとき。

第2章 社債管理者等

第169条 社債管理者を設置することを要しない場合

法第七百二条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ある種類 (法第六百八十一条第一号 に規定する種類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の社債の総額を当該種類の各社債の金額の最低額で除して得た数が五十を下回る場合とする。

第170条 社債管理者の資格

法第七百三条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 一 担保付社債信託法第三条 の免許を受けた者
- 二 株式会社商工組合中央金庫
- 三 農業協同組合法第十条第一項第二号 及び第三号 の事業を併せ行う農業協同組合又は農業協同組合連合会
- 四 信用協同組合又は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第九条の九第一項第一号 の事業を行う協同組合連合会
- 五 信用金庫又は信用金庫連合会

3. 사채취득자가 일반승계에 의하여 회사의 사채를 취득한 자인 경우에 그 일반승계를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4. 사채취득자가 회사의 사채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인 경우에 그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 청구를 한 때
 5. 사채취득자가 법 제179조 제3항의 청구에 의해 회사사채를 취득한 자인 경우에 사채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채취득자가 취득한 사채가 사채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 제691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채취득자가 사채권을 제시하여 청구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채취득자가 사채권을 제시하고 청구를 한 경우
 2. 사채취득자가 법 제179조 제3항의 청구에 따라 회사사채를 취득한 자인 경우에 사채취득자가 청구를 한 때

제2장 사채관리자 등

제169조 사채관리자를 설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702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어느 종류 (법 제681조 제1호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사채의 총액을 그 종류의 각 사채금액의 최저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가 50 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제170조 사채관리자의 자격

법 제703조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담보부사채신탁법 제3조의 면허를 취득한 자
2. 주식회사상공조합중앙금고
3.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합하여 행하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
4. 신용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제9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행하는 협동조합연합회
5. 신용금고 또는 신용금고연합회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六 労働金庫連合会

七 長期信用銀行法第二条 に規定する長期信用銀行

八 保険業法第二条第二項 に規定する保険会社

九 農林中央金庫

第171条 特別の関係

1 法第七百十条第二項第二号 (法第七百十二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特別の関係は、次に掲げる関係とする。

一 法人の総社員又は総株主の議決権の百分の五十を超える議決権を有する者 (以下この条において「支配社員」という。) と当該法人 (以下この条において「被支配法人」という。) との関係

二 被支配法人とその支配社員の他の被支配法人との関係

2 支配社員とその被支配法人が合わせて他の法人の総社員又は総株主の議決権の百分の五十を超える議決権を有する場合には、当該他の法人も、当該支配社員の被支配法人とみなして前項の規定を適用する。

第171条の2 社債管理補助者の資格

法第七百十四条の三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者は、次に掲げる者とする。

一 弁護士

二 弁護士法人

第3章 社債権者集会

第172条 社債権者集会の招集の決定事項

法第七百十九条第四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次条の規定により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

二 書面による議決権の行使の期限 (社債権者集会の日時以前の時であって、法第七百二十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発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以後の時に限る。)

6. 노동금고연합회
7. 장기신용은행법 제2조의 장기신용은행
8. 보험업법 제2조 제2항의 보험회사
9. 농림중앙금고

제171조 특별 관계

- ① 법 제710조 제2항 제2호(법 제712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특별 관계란 다음의 관계를 말한다.
1. 법인의 총 사원 또는 총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사원”이라고 한다)와 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지배법인”이라고 한다)의 관계
 2. 피지배법인과 지배사원의 다른 피지배법인과와의 관계
- ② 지배사원과 피지배법인이 합하여 다른 법인의 총 사원 또는 총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도 지배사원의 피지배법인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1조의2 사채관리보조자의 자격

- 법 제714조의3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변호사
 2. 변호사법인

제3장 사채권자집회

제17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결정사항

- 법 제719조 제4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기한(사채권자집회 일시 이전으로 법 제720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 한한다)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 三 一の社債権者が同一の議案につき法第七百二十六条第一項 (法第七百十九条第三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法第七百二十六条第一項 又は第七百二十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重複して議決権を行使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同一の議案に対する議決権の行使の内容が異なるものであるときにおける当該社債権者の議決権の行使の取扱い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ときは、その事項
- 四 第七百七十四条第一項第三号の取扱いを定めるときは、その取扱いの内容
- 五 法第七百十九条第三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の行使の期限 (社債権者集会の日時以前の時であつて、法第七百二十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発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以後の時に限る。)
- ロ 法第七百二十条第二項 の承諾をした社債権者の請求があつた時に当該社債権者に対して法第七百二十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 (同項 に規定する議決権行使書面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の交付 (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同条第二項 の規定による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 をする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

第173条 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

- 1 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議案及び提案の理由
- 二 議案が代表社債権者の選任に関する議案で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イ 候補者の氏名又は名称
- ロ 候補者の略歴又は沿革
- ハ 候補者が社債発行会社、社債管理者又は社債管理補助者と特別の利害関係があるときは、その事実の概要
- 2 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社債権者の議決権の行使について参考となると認める事項を記載することができる。
- 3 同一の社債権者集会に関して社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記載すべき事項のうち、他の書面に記載している事項又は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これらの事項は、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

3. 1인의 사채권자가 동일한 의안에 관하여 법 제726조 제1항(법 제719조 제3호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법 제726조 제1항 또는 제7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동일한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 내용이 다른 것인 때의 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4. 제174조 제1항 제3호의 취급을 정한 때에는 그 취급 내용
5. 법 제719조 제3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 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기한(사채권자집회 실시 이전으로 법 제720조 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2주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 한한다)
 - 나. 법 제720조 제2항의 승낙을 한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그 사채권자에 대하여 법 제721조 제1항의 의결권행사서면(동항의 의결권행사서면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부(당해 교부에 같음하여 행하는 동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를 하기로 한 때에는 그 뜻

제173조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

- ①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의안 및 제안의 이유
 2. 의안이 대표사채권자의 선임에 관한 의안인 때에는 다음의 사항
 - 가. 후보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나. 후보자의 약력 또는 연혁
 - 다. 후보자가 사채발행회사, 사채관리자 또는 사채관리보조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의 개요
- ②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는 전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참고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사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사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다른 서면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은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4 同一の社債権者集会に関して社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招集通知(法第七百二十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の内容とすべき事項のうち、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記載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招集通知の内容とすることを要しない。

第174条 議決権行使書面

1 第七百七十四条 法第七百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すべき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又は法第七百二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により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すべき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各議案についての賛否(棄権の欄を設ける場合にあっては、棄権を含む。)を記載する欄

二 第七百七十二条第三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当該事項

三 第七百七十二条第四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第一号の欄に記載がない議決権行使書面が招集者(法第七百十九条に規定する招集者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提出された場合における各議案についての賛成、反対又は棄権のいずれかの意思の表示があったものとする取扱いの内容

四 議決権の行使の期限

五 議決権を行使すべき社債権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議決権の額

2 第七百七十二条第五号ロ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場合には、招集者は、法第七百二十条第二項の承諾をした社債権者の請求があった時に、当該社債権者に対して、法第七百二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の交付(当該交付に代えて行う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を含む。)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同一の社債権者集会に関して社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限る。)のうち、招集通知の内容と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社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同一の社債権者集会に関して社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招集通知の内容とすべき事項のうち、議決権行使書面に記載している事項がある場合には、当該事項は、社債権者に対して提供する招集通知の内容とすることを要しない。

④ 동일한 사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사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소집통지 (법 제7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 중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은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4조 의결권행사서면

① 법 제721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또는 법 제72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각 의안에 관한 찬부 (기권란을 둔 경우에는 기권을 포함한다) 를 기재하는 란
 2. 제172조 제3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3. 제172조 제4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제1호의 란에 기재가 없는 의결권행사서면이 소집자 (법 제719조의 소집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된 경우의 각 의안에 관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중 어느 하나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취급의 내용
 4. 의결권행사 기한
 5.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가액
- ② 제172조 제5호 나목의 사항을 정한 경우에 소집자는 법 제720조 제2항의 승낙을 한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었던 때에 그 사채권자에게 법 제7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서면의 교부(교부에 갈음하여 행하는 동조 제2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포함한다) 를 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사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사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한한다) 중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은 사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동일한 사채권자집회에 관하여 사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 중 의결권행사서면에 기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은 사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소집통지의 내용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第4編 社債

第3章 社債権者集会

第175条 書面による議決権行使の期限

法第七百二十六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第百七十二条第二号の行使の期限とする。

第176条 電磁的方法による議決権行使の期限

法第七百二十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は、第百七十二条第五号イの行使の期限とする。

第177条 社債権者集会の議事録

1 法第七百三十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社債権者集会の議事録の作成については、この条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社債権者集会の議事録は、書面又は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社債権者集会の議事録は、次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社債権者集会が開催された日時及び場所

二 社債権者集会の議事の経過の要領及びその結果

三 法第七百二十九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社債権者集会において述べられた意見があるときは、その意見の内容の概要

四 社債権者集会に出席した社債発行会社の代表者又は社債管理者の氏名又は名称

五 社債権者集会に出席した社債管理者の代表者若しくは代理人の氏名又は社債管理補助者若しくはその代表者若しくは代理人の氏名

六 社債権者集会の議長が存するときは、議長の氏名

七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者の氏名又は名称

4 法第七百三十五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社債権者集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場合には、社債権者集会の議事録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を内容とするものとする。

一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事項の内容

二 前号の事項の提案をした者の氏名又は名称

三 社債権者集会の決議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日

제17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기한

법 제726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제172조 제2호의 행사 기한을 말한다.

제176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기한

법 제727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란 제172조 제5호 가목의 행사 기한을 말한다.

제177조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

① 법 제731조 제1항의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된 일시 및 장소
2. 사채권자집회의 의사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
3. 법 제7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집회에서 진술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내용의 개요
4.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한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 사채관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5.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한 사채관리자의 대표자 혹은 대리인의 성명 또는 사채관리보조자 혹은 그 대표자 혹은 대리인의 성명
6. 사채권자집회의 의장이 존재하는 때에는 의장의 성명
7. 의사록 작성에 관한 직무를 행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④ 법 제735조의2 제1항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사항의 내용
2. 전호의 사항을 제안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날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吸収分割契約及び新設分割計画

四 議事録の作成に係る職務を行った者の氏名又は名称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
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吸収分割契約及び新設分割計画

第1節 吸収分割契約

第178条

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 イ及び第七百六十条第七号 イ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イに掲げる額からロ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がハに掲げる額よりも小さい場合における吸収分割に際して吸収分割株式会社が吸収分割承継会社から取得した金銭等であつて、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 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 の定めに従い取得対価 (法第七百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取得対価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又は配当財産として交付する承継会社株式等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株式又は吸収分割承継持分会社の持分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以外の金銭等
- イ 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 イ若しくはロ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 イ若しくはロに掲げる行為により吸収分割株式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 (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 イ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 イに掲げる行為 (次号において「特定株式取得」という。) 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取得対価として交付する吸収分割株式会社の株式を除く。) の合計額
- ロ イに規定する金銭等のうち承継会社株式等の価額の合計額
- ハ イに規定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二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
- 二 特定株式取得をする場合における取得対価として交付する吸収分割株式会社の株式

4. 의사록 작성에 관한 직무를 행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1장 흡수분할계약 및 신설분할계획

제1절 흡수분할계약

제178조

법 제758조 제8호 가목 및 제760조 제7호 가목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 다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흡
수분할시 흡수분할주식회사가 흡수분할승계회사로부터 취득한 금전 등으로
서 법 제758조 제8호 또는 제760조 제7호의 정함에 따라 취득대가 (법 제
171조 제1항 제1호의 취득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재산으로 교부하는 승계회사주식 등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흡
수분할승계지분회사의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외의 금전 등

가. 법 제758조 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은 제760조 제7호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에 의하여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법 제758
조 제8호 가목 또는 제760조 제7호 나목의 행위 (다음 호에서 “특정주식
취득”이라고 한다) 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대가로 교부하는 흡수분할주식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나. 가목의 금전 등 중 승계회사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

다. 가목의 금전 등의 합계액에 20분의 1을 곱한 금액

2. 특정주식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대가로 교부하는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주식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吸収分割契約及び新設分割計画

第2節 新設分割計画

第179条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イ及び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イ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イに掲げる額からロ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がハに掲げる額よりも小さい場合における新設分割に際して新設分割株式会社が新設分割設立会社から取得した金銭等であつて、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 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の定めに従い取得対価(法第七十一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取得対価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又は配当財産として交付する設立会社株式等(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株式又は新設分割設立持分会社の持分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以外の金銭等
- イ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イ若しくはロ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 イ若しくはロに掲げる行為により新設分割株式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イ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イに掲げる行為(次号において「特定株式取得」という。)をする場合にあっては、取得対価として交付する新設分割株式会社の株式を除く。)の合計額
- ロ イに規定する金銭等のうち設立会社株式等の価額の合計額
- ハ イに規定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二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
- 二 特定株式取得をする場合における取得対価として交付する新設分割株式会社の株式

第一章の二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譲渡しの申込み

第179条の2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

- 1 法第七百七十四条の四第一項第三号(法第七百七十四条の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交付対価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
 - 二 株式交付親会社の計算書類等に関する事項

제2절 신설분할 계획

제179조

법 제76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및 제765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 다목의 금액보다 작은 경우의 신설분할시 신설분할주식회사가 신설분할설립회사로부터 취득한 금전 등으로서 법 제76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765조 제1항 제8호의 정함에 따라 취득대가(법 제171조 제1항 제1호의 취득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배당재산으로 교부하는 설립회사주식 등(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신설분할설립지분회사의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외의 금전 등

가. 법 제76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또는 나목, 제765조 제1항 제8호 가목 혹은 나목의 행위에 따라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법 제76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또는 제765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행위(다음 호에서 “특정주식취득”이라고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대가로 교부하는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나. 가목의 금전 등 중 설립회사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

다. 가목의 금전 등의 합계액에 20분의 1을 곱한 금액

2. 특정주식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대가로서 교부하는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주식

제1장의2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양도신청

제179조의2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① 법 제774조의4 제1항 제3호(법 제774조의9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교부대가에 관해 참고가 될 사항
2. 주식교부모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吸収分割契約及び新設分割計画

2 この条において「交付対価」とは、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の譲渡人に対して当該株式、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の対価として交付する金銭等をいう。

3 第一項 第一号に規定する「交付対価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これに準ずる事項(これらの事項の全部又は一部を通知しないことにつき法第七百七十四条の四第一項(法第七百七十四条の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の同意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同意があったものを除く。)とする。

一 交付対価として交付する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に関する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株式交付親会社の定款の定め

ロ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交付対価の換価の方法に関する事項

(1) 交付対価を取引する市場

(2) 交付対価の取引の媒介、取次ぎ又は代理を行う者

(3) 交付対価の譲渡その他の処分に制限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

ハ 交付対価に市場価格があるときは、その価格に関する事項

ニ 株式交付親会社の過去五年間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各事業年度(次に掲げる事業年度を除く。)に係る貸借対照表の内容

(1) 最終事業年度

(2)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内容につき、法令の規定に基づく公告(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の措置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を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3)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内容につき、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二 交付対価の一部が法人等の株式、持分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を除く。)で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当該事項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表示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項(氏名又は名称を除く。)を日本語で表示した事項)

イ 当該法人等の定款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定め

ロ 当該法人等が会社でないときは、次に掲げる権利に相当する権利その他の

② 이 조의 ‘교부대가’란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시에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인에게 그 주식,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대가로 교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교부대가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러한 사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지하지 않는 것에 관해 법 제774조의4 제1항(법 제774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가 있었던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교부대가로서 교부하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주식교부모회사의 정관 규정

나. 다음의 사항 그 밖의 교부대가의 환가방법에 관한 사항

1) 교부대가를 거래하는 시장

2) 교부대가에 관한 거래의 매매,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자

3) 교부대가의 양도 그 밖의 처분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다. 교부대가의 시장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관한 사항

라. 주식교부모회사의 과거 5년간 그 말일이 도래한 각 사업연도(다음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에 관한 대차대조표의 내용

1) 최종사업연도

2) 특정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내용에 관해 법령에 기한 공고(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에 상당한 것을 포함한다)를 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연도

3) 특정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내용에 관해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사업연도

2. 교부대가의 일부가 법인 등의 주식, 지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인 때는 다음의 사항(해당 사항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성명 또는 명칭 제외한다)을 일본어로 표시한 것)

가. 해당 법인 등의 정관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에 관한 정함

나. 해당 법인 등이 회사가 아닌 때에는 다음의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 그 밖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吸収分割契約及び新設分割計画

交付対価に係る権利(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

- (1) 剰余金の配当を受ける権利
- (2) 残余財産の分配を受ける権利
- (3) 株主総会における議決権
- (4) 合併その他の行為がされる場合において、自己の有す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権利
- (5) 定款その他の資料(当該資料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を請求する権利

ハ 当該法人等が、その株主、社員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者(以下この号、第百八十二条第四項第二号及び第百八十四条第四項第二号において「株主等」という。)に対し、日本語以外の言語を使用して情報の提供を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言語

ニ 株式交付が効力を生ずる日に当該法人等の株主総会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開催があるものと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法人等の株主等が有すると見込まれる議決権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権利の総数

ホ 当該法人等について登記(当該法人等が外国の法令に準拠して設立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法第九百三十三条第一項の外国会社の登記又は外国法人の登記及び夫婦財産契約の登記に関する法律第二条の外国法人の登記に限る。)がされていない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1) 当該法人等を代表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2) 当該法人等の役員((1)の者を除く。)の氏名又は名称

ヘ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当該法人等が会社以外のもの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最終事業年度に相当するもの。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計算書類(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当該法人等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当該計算書類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監査委員会、会計監査人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監査報告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の概要を含む。)

ト 次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次に定める事項

- (1) 当該法人等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に係る

의 교부대가에 관한 권리(중요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 1)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
- 2)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 4) 합병 그 밖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청구할 권리
- 5) 정관 그 밖의 자료(해당 자료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권리

다. 법인 등이 그 주주, 사원 그 밖에 이들에 상당하는 자(이하 이 호, 제182조 제4항 제2호 및 제184조 제4항 제2호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에게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

라. 주식교부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법인 등의 주주총회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의 개최가 있는 것으로 한 경우의 해당 법인 등의 주주 등이 소유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결권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권리의 총수

마. 법인 등에 관한 등기(법인 등이 외국 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것인 경우에는 법 제933조 제1항의 외국회사등기 또는 외국법인등기 및 부부재산계약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국법인의 등기에 한한다)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 1) 법인 등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법인 등의 임원((1)인 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바.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법인 등이 회사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최종사업연도에 상당하는 것.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계산서류(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성립한 날의 대차대조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해당 계산서류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에 관해 감사, 감사등위원회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인 그 밖에 이들에 상당하는 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그 밖에 이것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의 개요를 포함한다)

사. 다음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 사항

- 1) 법인 등이 주식회사인 경우: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사업보고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1章 吸収分割契約及び新設分割計画

事業報告の内容(当該事業報告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の内容を含む。)

- (2) 当該法人等が株式会社以外のものである場合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に係る第百十八条各号及び第百十九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相当する事項の内容の概要(当該事項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監査委員会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の概要を含む。)

チ 当該法人等の過去五年間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各事業年度(次に掲げる事業年度を除く。)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

(1) 最終事業年度

(2)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につき、法令の規定に基づく公告(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の措置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を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3)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につき、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リ 前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ヌ 交付対価が自己株式の取得、持分の払戻し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方法により払戻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手続に関する事項

三 交付対価の一部が株式交付親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ときは、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四 交付対価の一部が法人等の社債、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株式交付親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を除く。)であ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当該事項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表示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項(氏名又は名称を除く。)を日本語で表示した事項)

イ 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ロ 第二号イ及びホからチまでに掲げる事項

五 交付対価の一部が株式交付親会社その他の法人等の株式、持分、社債、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及び金銭以外の財産であるときは、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서의 내용(사업보고서에 관해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 2) 법인 등이 주식회사 이외의 것인 경우: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제108조 각호 및 제119조 각호에 상당하는 사항의 내용의 개요(해당 사항에 대해서 감사, 감사등위원회, 감사위원회 그 밖에 이들에 상당하는 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그 밖에 이것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의 개요를 포함한다)
 - 아. 법인 등의 과거 5년간 그 말일이 도래한 각 사업연도(다음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에 관한 대차대조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
 - 1) 최종사업연도
 - 2) 특정 사업연도에 관한 대차대조표 그 밖에 이것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에 관해 법령에 기한 공고(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연도
 - 3) 특정 사업연도에 관한 대차대조표 그 밖에 이것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에 관해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 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연도
 - 자. 전 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 차. 교부대가가 자기주식의 취득, 지분의 환급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절차에 관한 사항
3. 교부대가의 일부가 주식교부모회사의 사채,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인 때에는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4. 교부대가의 일부가 법인 등의 사채,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주식교부모회사의 사채,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는 제외한다)일 때는 다음의 사항(해당 사항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성명 또는 명칭은 제외한다)을 일본어로 표시한 사항)
 - 가.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 나. 제2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사항
5. 교부대가의 일부가 주식교부모회사 기타 법인 등의 주식, 지분, 사채,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그 밖에 이것에 준하는 것 및 금전 이외의 재산인 때에는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手続

4 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株式交付親会社の計算書類等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付親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の内容
- 二 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付親会社の成立の日。次号において同じ。)後の日を臨時決算日(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 三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第179条の3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する通知を要しない場合

法第七百七十四条の四(法第七百七十四条の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第四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場合は、次に掲げる場合であって、株式交付親会社が法第七百七十四条の四第一項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提供している場合とする。

- 一 当該株式交付親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の規定に基づき目論見書に記載すべき事項を電磁的方法により提供している場合
- 二 当該株式交付親会社が外国の法令に基づき目論見書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書面その他の資料を提供している場合

第2章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手続

第180条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七百七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法第七百七十四条第一項第七号及び第八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と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 二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当該組織変

④ 제1항 제2호의 '주식교부모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계산서류 등(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의 내용
2. 최종사업연도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성립일. 다음 호에서 같다)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둘 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로 하는 임시계산서류 등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임시계산서류 등의 내용
3.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에 회사재산의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제179조의3 신청자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774조의4(법 제774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제4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서 주식교부모회사가 법 제774조의4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식교부모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에 기하여 투자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2. 주식교부모회사가 외국의 법령에 기하여 투자설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는 서면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제2장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절차

제180조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775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법 제74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그 조직변경을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2章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の手続

更をする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三 組織変更後持分会社の債務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四 法第七百七十五条第二項 に規定する組織変更計画備置開始日後、前三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181条 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

法第七百七十九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における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とする。

一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又はその要旨につき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が法第四百四十条第一項 又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る公告をしている場合 次に掲げるもの

イ 官報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官報の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ロ 時事に関する事項を掲載する日刊新聞紙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日刊新聞紙の名称、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ハ 電子公告により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八号イに掲げる事項

二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につき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が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に規定する措置を執っている場合 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六号に掲げる事項二十七号 に掲げる事項

三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が法第四百四十条第四項 に規定する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最終事業年度に係る有価証券報告書を提出しているとき その旨

四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が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七号) 第二十八条の規定により法第四百四十条の規定が適用されないものである場合 その旨

五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につき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 その旨

六 組織変更をする株式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 その旨

七 前各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会社計算規則第六編第二章 の規定による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要旨の内容

하는 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3. 조직변경후지분회사의 채무이행의 전망에 관한 사항
4. 법 제775조 제2항의 조직변경계획비치개시일 후, 전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후 그 사항

제181조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법 제779조 제2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항의 공고일 또는 최고일 중 빠른 날에 있어서의 다음 각 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또는 그 요지에 관하여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가 법 제44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사항
 - 가. 관보로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관보의 일자 및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면
 - 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일간신문지의 명칭, 일자 및 당해 공고가 게재되고 있는 면
 - 다. 전자공고에 의해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법 제911조 제3항 제28호 가목의 사항
2.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가 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법 제911조 제3항 제26호의 사항
3.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가 법 제440조 제4항의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종사업연도의 유가증권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때 : 그 뜻
4.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가 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법률 제87호) 제28조에 의하여 법 제44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 그 뜻
5.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 그 뜻
6.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 그 뜻
7. 전 각호의 경우 이외의 경우 : 회사계산규칙 제6편 제2장에 의한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요지 내용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第182条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事前開示事項

1 法第七百八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項に規定する消滅株式会社等が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合併対価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 二 合併対価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
- 三 吸収合併に係る新株予約権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
- 四 計算書類等に関する事項
- 五 吸収合併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吸収合併存続会社の債務（法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吸収合併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債権者に対して負担する債務に限る。）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 六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法第七百八十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後、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2 この条において「合併対価」とは、吸収合併存続会社が吸収合併に際して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に対してその株式に代えて交付する金銭等をいう。

3 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合併対価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法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事項又は法第七百五十一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当該定め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定めがないこと）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とする。

- 一 合併対価の総数又は総額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 二 合併対価として当該種類の財産を選択した理由
- 三 吸収合併存続会社と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とが共通支配下関係（会社計算規則第二条第三項第三十六号に規定する共通支配下関係をいう。以下この号及び第百八十四条において同じ。）にあるときは、当該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株主（当該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と共通支配下関係にある株主を除く。）の利益を害さないように留意した事項（当該事項がない場合にあって

제3장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흡수분할주식회사 및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절차

제182조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① 법 제782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항의 소멸주식회사등이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합병대가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합병대가에 관하여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
3. 흡수합병에 관한 신주예약권의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4. 계산서류등에 관한 사항
5.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 이후 흡수합병존속회사의 채무(법 제789조 제1항에 의하여 흡수합병에 대하여 이익을 진술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한다)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6. 흡수합병계약등 비치개시일(법 제782조 제2항에서 흡수합병계약등 비치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후 전 각 호의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후의 사항

② 이 조에서 “합병대가”라는 것은 흡수합병존속회사가 흡수합병 시에 흡수합병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식에 대신하여 교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대가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 그 밖의 법 제7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또는 법 제75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함이 없는 것)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합병대가의 총수 또는 총액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합병대가로서 그 종류의 재산을 선택한 이유
3. 흡수합병존속회사와 흡수합병소멸회사가 공통지배하 관계(회사계산규칙 제2조 제3항 제36호의 공통지배하 관계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84조에서 같다)에 있는 때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주주(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와 공통지배하 관계에 있는 주주는 제외한다)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 사항(당해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は、その旨)

4 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合併対価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その他これに準ずる事項(法第七百八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これらの事項の全部又は一部の記載又は記録をしないことにつき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総株主の同意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同意があったものを除く。)とする。

一 合併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吸収合併存続会社の株式又は持分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吸収合併存続会社の定款の定め

ロ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合併対価の換価の方法に関する事項

(1) 合併対価を取引する市場

(2) 合併対価の取引の媒介、取次ぎ又は代理を行う者

(3) 合併対価の譲渡その他の処分に制限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

ハ 合併対価に市場価格があるときは、その価格に関する事項

二 吸収合併存続会社の過去五年間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各事業年度(次に掲げる事業年度を除く。)に係る貸借対照表の内容

(1) 最終事業年度

(2)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内容につき、法令の規定に基づく公告(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の措置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を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3)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内容につき、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二 合併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法人等の株式、持分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吸収合併存続会社の株式又は持分を除く。)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事項(当該事項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表示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項(氏名又は名称を除く。)を日本語で表示した事項)

イ 当該法人等の定款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定め

ロ 当該法人等が会社でないときは、次に掲げる権利に相当する権利その他の合併対価に係る権利(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

(1) 剰余金の配当を受ける権利

④ 제1항 제2호에서 “합병대가에 관하여 참고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마다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법 제782조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이러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었던 것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1.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흡수합병존속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인 경우 : 다음의 사항

가. 흡수합병존속회사의 정관의 정함

나. 다음의 사항 그 밖의 합병대가의 환가 방법에 관한 사항

1) 합병대가를 거래하는 시장

2) 합병대가의 거래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자

3) 합병대가의 양도 그 밖의 처분에 제한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다. 합병대가에 시장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관한 사항

라. 흡수합병존속회사의 과거 5년간 그 말일이 도래한 각 사업연도 (다음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의 대차대조표의 내용

1) 최종사업연도

2) 어느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내용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공고 (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

3) 어느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내용에 관하여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

2.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 등의 주식, 지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흡수합병존속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은 제외한다)인 경우 : 다음의 사항(당해 사항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성명 또는 명칭은 제외한다) 을 일본어로 표시한 사항)

가. 법인 등의 정관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것의 정함

나. 법인 등이 회사가 아닌 때에는 다음의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 그 밖의 합병대가에 관한 권리(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1)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 (2) 残余財産の分配を受ける権利
 - (3) 株主総会における議決権
 - (4) 合併その他の行為がされる場合において、自己の有す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権利
 - (5) 定款その他の資料 (当該資料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表示したもの) の閲覧又は謄写を請求する権利
- ハ 当該法人等が、そのその株主等に対し、日本語以外の言語を使用して情報の提供を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言語

ニ 吸収合併が効力を生ずる日に当該法人等の株主総会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開催があるものと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法人等の株主等有すると見込まれる議決権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権利の総数

ホ 当該法人等について登記(当該法人等が外国の法令に準拠して設立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法第九百三十三条第一項 の外国会社の登記又は外国法人の登記及び夫婦財産契約の登記に関する法律第二条の外国法人の登記に限る。)がされていない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 (1) 当該法人等を代表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 (2) 当該法人等の役員 ((1) に掲げる者を除く。) の氏名又は名称
- ヘ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当該法人等が会社以外の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終事業年度に相当するもの。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計算書類(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法人等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当該計算書類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監査委員会、会計監査人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の概要を含む。)

ト 次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次に定める事項

- (1) 当該法人等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に係る事業報告の内容(当該事業報告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の内容を含む。)
- (2) 当該法人等が株式会社以外のものである場合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

- 2)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
 -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 4) 합병 그 밖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기가 가지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
 - 5) 정관 그 밖의 자료 (자료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권리
- 다. 법인등이 그 주주, 사원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자 (이하 이 호 및 제184조에서 “주주등”이라고 한다)에게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언어
- 라.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 그 법인등의 주주총회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것의 개최가 있는 것으로 한 경우 그 법인등의 주주등이 가진다고 예상되는 의결권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권리의 총수
- 마. 법인 등에 관하여 등기(법인 등이 외국법령에 준거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법 제933조 제1항의 외국회사의 등기 또는 외국법인의 등기 및 부부재산계약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국법인의 등기에 한한다)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 1) 법인등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 2) 법인등의 임원((1)의 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 바.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법인 등이 회사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최종사업연도에 상당하는 것.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계산서류(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설립일의 대차대조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계산서류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에 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인 그 외에 이에 상당하는 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의 개요를 포함한다)
- 사. 다음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
- 1) 법인 등이 주식회사인 경우 :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내용(사업보고서에 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 2) 법인 등이 주식회사 이외의 자인 경우 :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에 관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年度に係る第百十八条各号及び第百十九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相当する事項の内容の概要(当該事項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監査委員会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監査報告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の概要を含む。)

チ 当該法人等の過去五年間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各事業年度(次に掲げる事業年度を除く。)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

(1) 最終事業年度

(2)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につき、法令の規定に基づく公告(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の措置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を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3)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につき、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リ 前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ヌ 合併対価が自己株式の取得、持分の払戻し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方法により払戻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手続に関する事項

三 合併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吸収合併存続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場合 第一号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事項

四 合併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法人等の社債、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吸収合併存続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を除く。)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事項(当該事項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表示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項(氏名又は名称を除く。)を日本語で表示した事項)

イ 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ロ 第二号イ及びホからチまでに掲げる事項

五 合併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吸収合併存続会社その他の法人等の株式、持分、社債、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及び金銭以外の財産である場合 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5 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吸収合併に係る新株予約権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とする。

한 제118조 각 호 및 제119조 각 호의 사항에 상당하는 사항의 내용의 개요(당해 사항에 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의 개요를 포함한다)

아. 법인등의 과거 5년간에 그 말일이 도래한 각 사업연도 (다음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의 대차대조표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

1) 최종사업연도

2) 어느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공고 (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를 하고 있는 경우의 그 사업연도

3) 어느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에 대하여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

자. 전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차. 합병대가가 자기주식의 취득, 지분의 환급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절차에 관한 사항

3.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흡수합병존속회사의 사채,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인 경우 : 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사항

4.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등의 사채,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흡수합병존속회사의 사채,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는 제외한다) 인 경우 : 다음의 사항 (당해 사항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성명 또는 명칭은 제외한다) 을 일본어로 표시한 사항)

가.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나. 제2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사항

5.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흡수합병존속회사 그 밖의 법인등의 주식, 지분, 사채,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및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 :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⑤ 제1항 제3호에서 “흡수합병에 관한 신주예약권의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一 吸収合併存続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四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二 吸収合併存続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五十一条第一項第五号及び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6 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計算書類等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吸収合併存続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合併存続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の内容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合併存続会社の成立の日。ハにおいて同じ。）後の日を臨時決算日（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ハ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合併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二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清算株式会社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合併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第183条 吸収分割株式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七百八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項に規定

1. 흡수합병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 법 제74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2. 흡수합병존속회사가 지분회사인 경우 : 법 제75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⑥ 제1항 제4호에서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합병존속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최종사업연도의 계산서류등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합병존속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의 내용
- 나.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합병존속회사의 성립일. 다목에 있어서 같다)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 (2 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 로 하는 임시계산서류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임시계산서류 등의 내용
- 다.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2.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청산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 나.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제183조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782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항의 소멸주식회사등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する消滅株式会社等が吸収分割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定め(当該定め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定めがないこと)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イ 吸収分割承継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五十八条第四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ロ 吸収分割承継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六十条第四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二 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イ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イ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法第四百七十一条第一項の決議が行われているときは、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

ロ 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ロ又は第七百六十条第七号ロ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法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の決議が行われているときは、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

三 吸収分割株式会社が法第七百八十七条第三項第二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吸収分割承継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法第七百五十八条第五号及び第六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当該新株予約権に係る事項に限る。)

四 吸収分割承継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分割承継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の内容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分割承継会社の成立の日。ハにおいて同じ。)後の日を臨時決算日(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ハ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分割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

이 흡수분할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정함(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함이 없다는 점)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가. 흡수분할승계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 법 제758조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나. 흡수분할승계회사가 지분회사인 경우 : 법 제760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2. 법 제758조 제8호 또는 제760조 제7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58조 제8호 가목 또는 제760조 제7호 가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171조 제1항의 결의를 한 때에는 동항 각호의 사항
나. 법 제758조 제8호 나목 또는 제760조 제7호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454조 제1항의 결의를 한 때에는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흡수분할주식회사가 법 제78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흡수분할승계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 제758조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신주예약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4. 흡수분할승계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계산서류등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분할승계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의 내용
나.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분할승계회사의 성립일. 다목에서 같다)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 (2 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 로 하는 임시계산서류등이 있는 때에는 그 임시계산서류등의 내용
다.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 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五 吸収分割株式会社(清算株式会社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吸収分割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分割株式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分割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吸収分割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吸収分割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六 吸収分割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吸収分割株式会社の債務及び吸収分割承継会社の債務(吸収分割株式会社が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承継会社に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七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分割が効力を生ずる日までの間に、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184条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事前開示事項

1 法第七百八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項に規定する消滅株式会社等が株式交換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交換対価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二 交換対価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

三 株式交換に係る新株予約権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

四 計算書類等に関する事項

五 法第七百八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株式交換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債権者があるときは、株式交換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債務(当該債権者に対して負担する債務に限る。)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六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株式交換が効力を生ずる日までの間に、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5. 흡수분할주식회사 (청산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흡수분할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 나. 흡수분할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6.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 이후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채무 및 흡수분할승계회사의 채무 (흡수분할주식회사가 흡수분할에 의하여 흡수분할승계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 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7.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전 각 호의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후의 사항

제184조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사전공시사항

① 법 제782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항의 소멸주식회사등이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환대가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교환대가에 관하여 참고되어야 할 사항
3. 주식교환에 관한 신주예약권의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4. 계산서류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789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교환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이후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채무(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한다)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6. 흡수합병계약자등비치개시일 후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까지 전 각호의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후의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2 この条において「交換対価」とは、株式交換完全親会社が株式交換に際して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その株式に代えて交付する金銭等をいう。

3 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交換対価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 及び第三号 に掲げる事項又は法第七百七十条第一項第二号 から第四号 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当該定め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定めがないこと) 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とする。

一 交換対価の総数又は総額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二 交換対価として当該種類の財産を選択した理由

三 株式交換完全親会社と株式交換完全子会社とが共通支配下関係にあるときは、当該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 (当該株式交換完全子会社と共通支配下関係にある株主を除く。) の利益を害さないように留意した事項 (当該事項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その旨)

4 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交換対価について参考となるべき事項」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その他これに準ずる事項 (法第七百八十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これらの事項の全部又は一部の記載又は記録をしないことにつき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総株主の同意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同意があったものを除く。) とする。

一 交換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株式又は持分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定款の定め

ロ 次に掲げる事項その他の交換対価の換価の方法に関する事項

(1) 交換対価を取引する市場

(2) 交換対価の取引の媒介、取次ぎ又は代理を行う者

(3) 交換対価の譲渡その他の処分に制限があるときは、その内容

ハ 交換対価に市場価格があるときは、その価格に関する事項

ニ 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過去五年間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各事業年度 (次に掲げる事業年度を除く。) に係る貸借対照表の内容

(1) 最終事業年度

(2)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内容につき、法令の規定に基づく公告 (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 の措置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 をしている場

② 이 조에서 “교환대가”란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주식교환 시에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식에 대신하여 교부하는 금전등을 말한다.

③ 제1항 제1호에서 “교환대가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 그 밖의 법 제7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또는 법 제77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함이 없는 것)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교환대가의 총수 또는 총액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교환대가로서 그 종류의 재산을 선택한 이유
3. 주식교환완전모회사와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공통지배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주식교환완전자회사와 공통지배하 관계에 있는 주주는 제외한다)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 사항(그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

④ 제1항 제2호에서 “교환대가에 관하여 참고 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마다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법 제782조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이러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었던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교환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인 경우 : 다음의 사항

가.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정관의 정함

나. 다음의 사항 그 밖의 교환대가의 환가 방법에 관한 사항

- 1) 교환대가를 거래하는 시장
- 2) 교환대가의 거래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자
- 3) 교환대가의 양도 그 밖의 처분에 제한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다. 교환대가에 시장가격이 있는 때에는 가격에 관한 사항

라.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과거 5년간 그 말일이 도래한 각 사업연도(다음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대차대조표의 내용

- 1) 최종사업연도
- 2) 어느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내용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공고(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 (3)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内容につき、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二 交換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法人等の株式、持分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株式又は持分を除く。)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事項(当該事項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表示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項(氏名又は名称を除く。)を日本語で表示した事項)

イ 当該法人等の定款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定め

ロ 当該法人等が会社でないときは、次に掲げる権利に相当する権利その他の交換対価に係る権利(重要でないものを除く。)の内容

(1) 剰余金の配当を受ける権利

(2) 残余財産の分配を受ける権利

(3) 株主総会における議決権

(4) 合併その他の行為がされる場合において、自己の有する株式を公正な価格で買い取ることを請求する権利

(5) 定款その他の資料(当該資料が電磁的記録をもって作成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表示したもの)の閲覧又は謄写を請求する権利

ハ 当該法人等がその株主等に対し、日本語以外の言語を使用して情報の提供を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言語

ニ 株式交換が効力を生ずる日に当該法人等の株主総会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開催があるものと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法人等の株主等有すると見込まれる議決権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権利の総数

ホ 当該法人等について登記(当該法人等が外国の法令に準拠して設立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法第九百三十三条第一項の外国会社の登記又は非訟事件手続法第二百一条の外国法人の登記に限る。)がされていない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1) 当該法人等を代表する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

(2) 当該法人等の役員((1)の者を除く。)の氏名又は名称

ヘ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当該法人等が会社以外のものである場合に

사업연도

- 3) 어느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내용에 관하여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
2. 교환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 등의 주식, 지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은 제외한다)인 경우 : 다음의 사항(그 사항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성명 또는 명칭은 제외한다)을 일본어로 표시한 사항)
 - 가. 법인등의 정관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것의 정함
 - 나. 법인등이 회사가 아닌 때에는 다음의 권리에 상당하는 권리 그 밖의 교환 대가에 관한 권리(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내용
 - 1) 잉여금배당을 받을 권리
 - 2)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 3) 주주총회의 의결권
 - 4) 합병 그 밖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기가 가지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 5) 정관 그 밖의 자료(그 자료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권리
 - 다. 법인등이 그 주주 등에 일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기로 한 때에는 그 언어
 - 라.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에 법인등의 주주총회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것의 개최가 있는 것으로 한 경우 그 법인등의 주주등이 가진다고 예상되는 의결권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권리의 총수
 - 마. 법인등에 관하여 등기(법인등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법 제933조 제1항의 외국회사의 등기 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외국법인의 등기에 한한다)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 1) 법인등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 2) 법인등의 임원 ((1)의 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 바.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법인 등이 회사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최종사업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あつては、最終事業年度に相当するもの。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計算書類(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当該法人等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当該計算書類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監査委員会、会計監査人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監査報告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の概要を含む。)

ト 次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次に定める事項

- (1) 当該法人等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に係る事業報告の内容(当該事業報告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又は監査委員会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監査報告の内容を含む。)
- (2) 当該法人等が株式会社以外のものである場合 当該法人等の最終事業年度に係る第百十八条各号及び第百十九条各号に掲げる事項に相当する事項の内容の概要(当該事項について監査役、監査等委員会、監査委員会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ものの監査を受けている場合にあつては、監査報告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の概要を含む。)

チ 当該法人等の過去五年間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各事業年度(次に掲げる事業年度を除く。)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

- (1) 最終事業年度
- (2)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につき、法令の規定に基づく公告(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の措置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を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 (3) ある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の内容につき、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有価証券報告書を内閣総理大臣に提出し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事業年度

リ 前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ヌ 交換対価が自己株式の取得、持分の払戻しその他これらに相当する方法により払戻し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手続に関する事項

三 交換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である場合 第一号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事項

四 交換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法人等の社債、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社債、新株予約権又は

연도에 상당하는 것.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계산서류(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계산서류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에 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인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의 개요를 포함한다)

사. 다음의 경우마다 다음에서 정한 사항

- 1) 법인 등이 주식회사인 경우 :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사업보고서의 내용(사업보고서에 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 2) 법인 등이 주식회사 이외의 자인 경우 : 법인 등의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제118조 각 호 및 제119조 각 호의 사항에 상당하는 사항의 내용의 개요(당해 사항에 관하여 감사, 감사등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이와 상당하는 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의 개요를 포함한다)

아. 법인등의 과거 5년간 그 말일이 도래한 각 사업연도 (다음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의 대차대조표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

- 1) 최종사업연도
- 2) 어느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공고 (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
- 3) 어느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것의 내용에 관하여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유가증권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연도

자. 전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차. 교환대가가 자기주식의 취득, 지분의 환급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때에는 그 절차에 관한 사항

3. 교환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사채,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인 경우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사항
4. 교환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등의 사채,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사채, 신주예약권 또는 신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新株予約権付社債を除く。)である場合 次に掲げる事項 (当該事項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表示されてい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項 (氏名又は名称を除く。)を日本語で表示した事項)

イ 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ロ 第二号イ及びホからチまでに掲げる事項

五 交換対価の全部又は一部が株式交換完全親会社その他の法人等の株式、持分、社債、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もの及び金銭以外の財産である場合 第一号ロ及びハに掲げる事項

5 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株式交換に係る新株予約権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と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法第七百八十七条第三項第三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場合 (株式交換完全親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に限る。)における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四号及び第五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 (当該新株予約権に係る事項に限る。)とする。

6 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計算書類等に関する事項」と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株式交換完全親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の内容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換完全親会社の成立の日。ハにおいて同じ。)後の日を臨時決算日 (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ハ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株式交換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二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

주예약권부사채는 제외한다) 인 경우 : 다음의 사항 (그 사항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성명 또는 명칭은 제외한다) 을 일본어로 표시한 사항)

가.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나. 제2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사항

5. 교환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식교환완전모회사 그 밖의 법인등의 주식, 지분, 사채, 신주예약권, 신주예약권부사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및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 :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

⑤ 제1항 제3호의 “주식교환에 관한 신주예약권의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이란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법 제787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 한한다)의 법 제76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신주예약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말한다.

⑥ 제1항 제4호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식교환완전모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최종사업연도의 계산서류등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의 내용

나.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모회사의 성립일. 다목에 있어서 같다)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 (2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 로 하는 임시계산서류등이 있는 때에는 그 임시계산서류등의 내용

다.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 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2. 주식교환완전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株式交換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第185条 持分等

法第七百八十三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権利の移転又は行使に債務者その他第三者の承諾を要するもの (持分会社の持分及び譲渡制限株式を除く。) とする。

第186条 譲渡制限株式等

法第七百八十三条第三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株式会社の取得条項付株式 (当該取得条項付株式に係る法第百八条第二項第六号 ロの他の株式の種類が当該各号に定める株式会社の譲渡制限株式であるものに限る。) 又は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 (当該取得条項付新株予約権に係る法第二百三十六条第一項第七号 この株式が当該各号に定める株式会社の譲渡制限株式であるものに限る。) とする。

- 一 吸収合併をする場合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
- 二 株式交換をする場合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
- 三 新設合併をする場合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
- 四 株式移転をする場合 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

第187条 総資産の額

1 法第七百八十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算定基準日 (吸収分割契約を締結した日 (当該吸収分割契約により当該吸収分割契約を締結した日と異なる時 (当該吸収分割契約を締結した日後から当該吸収分割の効力が生ずる時の直前までの間の時に限る。)) 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時) 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における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十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をもって吸収分割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에는 그 내용(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 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나. 주식교환완전자회의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제185조 지분등

법 제783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권리의 이전 또는 행사에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지분회사의 지분 및 양도제한주식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86조 양도제한주식등

법 제783조 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의 취득조항부주식(취득조항부주식에 관한 법 제108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다른 주식의 종류가 각 호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의 양도제한주식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취득조항부신주예약권에 관한 법 제236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주식)이 각호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의 양도제한주식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2.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
3.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 :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
4.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 : 주식이전설립완전자회사

제187조 총자산액

① 법 제7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결산기준일(흡수분할계약을 체결한 날(흡수분할계약에 의하여 흡수분할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때(흡수분할계약 체결일 후부터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시의 직전까지에 한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1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0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 一 資本金の額
 - 二 資本準備金の額
 - 三 利益準備金の額
 - 四 法第四百四十六条 に規定する剰余金の額
 - 五 最終事業年度 (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 の期間 (当該期間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末日が最も遅い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分割株式会社の成立の日。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における評価・換算差額等に係る額
 - 六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 七 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
 - 八 最終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負債の部に計上した額
 - 九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吸収合併、吸収分割による他の会社の事業に係る権利義務の承継又は他の会社 (外国会社を含む。) の事業の全部の譲受けをしたときは、これらの行為により承継又は譲受けをした負債の額
 - 十 自己株式及び自己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の合計額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算定基準日において吸収分割株式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法第七百八十四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をもって吸収分割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第188条 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

法第七百八十九条第二項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における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又はその要旨につき公告対象会社 (法第七百八十九条第二項第三号 の株式会社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が法第四百四十条第一項 又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る公告をしている場合 次に掲げるもの
- イ 官報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官報の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 ロ 時事に関する事項を掲載する日刊新聞紙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日

1. 자본금의 액
 2. 자본준비금의 액
 3. 이익준비금의 액
 4. 법 제446조의 잉여금의 액
 5. 최종사업연도(법 제4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이 기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말일이 가장 늦은 기간).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성립일.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평가·환산차액 등에 관한 금액
 6.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7. 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8. 최종사업연도 말일에 부채의 부에 계상한 금액
 9.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흡수합병, 흡수분할에 의한 다른 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다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때에는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승계 또는 양수한 부채의 금액
 10. 자기주식 및 자기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산기준일에 흡수분할주식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에 법 제78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법 제492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에 계상한 금액을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88조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법 제789조 제2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항에 의한 공고일 또는 최고일 중 빠른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또는 그 요지에 관하여 공고 대상 회사(법 제789조 제2항 제3호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44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사항
 - 가. 관보에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관보의 일자 및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면
 - 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일간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3章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吸収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手続

- 刊新聞紙の名称、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 ハ 電子公告により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八号イに掲げる事項
- 二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につき公告対象会社が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に規定する措置をとっている場合 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六号に掲げる事項
- 三 公告対象会社が法第四百四十条第四項 に規定する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最終事業年度に係る有価証券報告書を提出しているとき その旨
- 四 公告対象会社が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第二十八条の規定により法第四百四十条 の規定が適用されないものである場合 その旨
- 五 公告対象会社につき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 その旨
- 六 公告対象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 その旨
- 七 前各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会社計算規則第六編第二章 の規定による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要旨の内容

第189条 吸収分割株式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七百九十一条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吸収分割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吸収分割株式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法第七百八十四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ロ 法第七百八十五条 、第七百八十七条及び第七百八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三 吸収分割承継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法第七百九十六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ロ 法第七百九十七条の規定及び法第七百九十九条(法第八百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四 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承継会社が吸収分割株式会社から承継した重要な権利義務に関する事項
- 五 法第九百二十三条 の変更の登記をした日

- 신문의 명칭, 일자 및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면
- 다.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911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사항
2.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공고대상회사가 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법 제911조 제3항 제26호의 사항
 3. 공고대상회사가 법 제440조 제4항의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종사업연도의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때 : 그 뜻
 4. 공고대상회사가 회사법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법 제44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 그 뜻
 5. 공고대상회사의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 그 뜻
 6. 공고대상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 그 뜻
 7.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회사계산규칙 제6편 제2장에 의한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요지의 내용

제189조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791조 제1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
2. 흡수분할주식회사에서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784조의2에 의한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 나. 법 제785조, 제787조 및 제789조에 의한 절차의 경과
3. 흡수분할승계회사에서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796조의2에 의한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 나. 법 제797조 및 법 제799조(법 제8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절차의 경과
4. 흡수분할로 흡수분할승계회사가 흡수분할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한 중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923조의 변경등기를 한 날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吸収分割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190条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七百九十一条第一項第二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株式交換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法第七百八十四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ロ 法第七百八十五条、第七百八十七条及び第七百八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三 株式交換完全親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法第七百九十六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ロ 法第七百九十七条の規定及び法第七百九十九条（法第八百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四 株式交換により株式交換完全親会社に移転した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式の数（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株式交換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 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第191条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七百九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項 に規定する存続株式会社等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法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二号 及び第三号 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当該定め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定めがないこと）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 二 法第七百四十九条第一項第四号 及び第五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

6. 전 각호 외에 흡수분할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0조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791조 제1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
2. 주식교환완전자회사에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84조의2에 의한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나. 법 제785조, 제787조 및 제789조에 의한 절차의 경과
3. 주식교환완전모회사에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96조의2에 의한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나. 법 제797조 및 법 제799조(법 제8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절차의 경과
4. 주식교환으로 주식교환완전모회사로 이전한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5. 전 각 호 외에 주식교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장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절차

제191조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794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항의 존속주식회사등이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4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함이 없다는 것)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74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정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め (全部の新株予約権の新株予約権者に対して交付する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の数及び金銭の額を零とする旨の定めを除く。) 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三 吸収合併消滅会社 (清算株式会社及び清算持分会社を除く。) 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合併消滅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の内容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合併消滅会社の成立の日。ハにおいて同じ。) 後の日を臨時決算日 (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 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ハ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 (法第七百九十四条第二項 に規定する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後吸収合併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四 吸収合併消滅会社 (清算株式会社又は清算持分会社に限る。) が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 又は第六百五十八条第一項 若しくは第六百六十九条第一項 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

五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成立の日) 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合併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六 吸収合併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債務 (法第七百九十九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吸収合併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4장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절차

함(전부의 신주예약권의 신주예약권자에게 교부하는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수 및 금액을 0으로 하는 뜻의 정함은 제외한다)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3.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청산주식회사 및 청산지분회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최종사업연도의 계산서류등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의 내용

나.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성립일. 다목에서 같다)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 (2 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로 하는 임시계산서류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임시계산서류 등의 내용

다.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법 제794조 제2항의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4.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청산주식회사 또는 청산지분회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492조 제1항, 제658조 제1항, 제66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5.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나.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6.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채무 (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여 흡수합병에 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채권자에 부담하는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できる債権者に対して負担する債務に限る。) 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七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合併が効力を生ずる日までの間に、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192条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七百九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項 に規定する存続株式会社等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法第七百五十八条第四号 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当該定め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定めがないこと) 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二 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 イ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法第一百一十一条第一項 の決議が行われているときは、同項 各号に掲げる事項

ロ 法第七百五十八条第八号 ロ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法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 の決議が行われているときは、同項第一号 及び第二号 に掲げる事項

三 法第七百五十八条第五号 及び第六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め 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四 吸収分割会社 (清算株式会社及び清算持分会社を除く。) 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分割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の内容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分割会社の成立の日。ハにおいて同じ。) 後の日を臨時決算日 (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 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ハ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分割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五 吸収分割会社 (清算株式会社又は清算持分会社に限る。) が法第四百九十二

채무에 한한다)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7.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전 각 호의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후의 사항

제192조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794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항의 준속주식회사 등이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58조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함이 없다는 것)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758조 제8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758조 제8호 가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171조 제1항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동항 각호의 사항
 - 나. 법 제758조 제8호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454조 제1항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법 제758조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4. 흡수분할회사 (청산주식회사 및 청산지분회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최종사업연도의 계산서류등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분할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의 내용
 - 나.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분할회사의 성립일. 다목에서 같다)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 (2 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로 하는 임시계산서류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임시계산서류 등의 내용
 - 다.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5. 흡수분할회사 (청산주식회사 또는 청산지분회사는 제외한다)가 법 제492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条第一項 又は第六百五十八条第一項 若しくは第六百六十九条第一項 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

六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成立の日) 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分割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七 吸収分割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債務 (法第七百九十九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吸収分割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債権者に対して負担する債務に限る。) 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八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吸収分割が効力を生ずる日までの間に、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193条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七百九十四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項 に規定する存続株式会社等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 及び第三号 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当該定め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定めがないこと) 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二 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四号 及び第五号 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当該事項について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

三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の内容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成立の日。ハにおいて同じ。) 後の日を臨時決算日 (二以上の臨

조 제1항, 제658조 제1항, 제66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6. 흡분할승계주식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나.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7.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 이후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채무 (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여 흡수분할에 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한한다)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8.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전 각호의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후의 사항

제193조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794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항의 준속주식회사 등이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정함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정함이 없다는 것)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76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3. 주식교환완전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최종사업연도의 계산서류등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의 내용

나.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성립일. 다목에서 같다)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 (2 이상의 임시결산일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 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ハ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株式交換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四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成立の日) 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株式交換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五 法第七百九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株式交換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債権者があるときは、株式交換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債務 (当該債権者に対して負担する債務に限る。) 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六 吸収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株式交換が効力を生ずる日までの間に、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194条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

法第七百九十四条第三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が第三号に掲げる額よりも小さい場合における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の定めに従い交付する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以外の金銭等とする。

一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合計額

二 前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うち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の価額の合計額

三 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二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

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 로 하는 임시계산서류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임시계산서류 등의 내용

다.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4.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나.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5. 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교환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 이후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채무 (채권자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한다) 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6. 흡수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까지 전 각호의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후의 사항

제194조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법 제794조 제3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제3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법 제7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정함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 이외의 금전을 말한다.

1.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 교부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
2. 전 호의 금전등 중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의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의 금전등의 합계액에 2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第195条 資産の額等

1 法第七百九十五条第二項第一号 に規定する債務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額は、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とする。

一 吸収合併又は吸収分割の直後に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貸借対照表の作成があったものと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貸借対照表の負債の部に計上すべき額から法第七百九十五条第二項第二号 の株式等 (社債 (吸収合併又は吸収分割の直前に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有していた社債を除く。) に限る。) につき会計帳簿に付すべき額を減じて得た額

二 吸収合併又は吸収分割の直前に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貸借対照表の作成があったものと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貸借対照表の負債の部に計上すべき額

2 法第七百九十五条第二項第一号 に規定する資産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額は、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とする。

一 吸収合併又は吸収分割の直後に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貸借対照表の作成があったものと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すべき額

二 吸収合併又は吸収分割の直前に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貸借対照表の作成があったものと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すべき額から法第七百九十五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金銭等 (同号 の株式等のうち吸収合併又は吸収分割の直前に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又は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有していた社債を含む。) の帳簿価額を減じて得た額

3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が連結配当規制適用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吸収合併消滅会社が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子会社であるときは、法第七百九十五条第二項第一号 に規定する資産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額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とする。

一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同項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

二 前項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同項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

4 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連結配当規制適用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吸収分割会社が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子会社である

제195조 자산액 등

- ① 법 제795조 제2항 제1호에서 채무액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흡수합병 또는 흡수분할 직후에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것으로 하는 경우 그 대차대조표의 부채의 부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법 제795조 제2항 제2호의 주식등 (사채 (흡수합병 또는 흡수분할 직후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채는 제외한다) 에 한한다) 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금액을 뺀 금액
 2. 흡수합병 또는 흡수분할 직전에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것으로 하는 경우 그 대차대조표의 부채의 부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
- ② 법 제795조 제2항 제1호의 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흡수합병 또는 흡수분할 직후에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것으로 하는 경우 그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
 2. 흡수합병 또는 흡수분할 직전에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것으로 하는 경우 그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법제795조 제2항 제2호의 금전등 (동호의 주식등 중 흡수합병 또는 흡수분할의 직후에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또는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채를 포함한다) 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가 연결배당규제적용회사인 경우 흡수합병소멸회사가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때에는 법 제795조 제2항 제1호의 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2. 전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연결배당규제적용회사인 경우 흡수분할회사가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때에는 법 제795조 제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ときは、法第七百九十五条第二項第一号 に規定する資産の額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額は、次に掲げる額のうちいずれか高い額とする。

一 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同項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

二 第二項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同項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

5 法第七百九十五条第二項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額は、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三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とする。

一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が株式交換により取得する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式につき会計帳簿に付すべき額

二 会社計算規則第十一条 の規定により計上したのれんの額

三 会社計算規則第十二条 の規定により計上する負債の額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が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 (連結配当規制適用会社に限る。) の子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零)

第196条 純資産の額

法第七百九十六条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算定基準日(吸収合併契約、吸収分割契約又は株式交換契約を締結した日(当該契約により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と異なる時(当該契約を締結した日後から当該吸収合併、吸収分割又は株式交換の効力が生ずる時の直前までの間の時に限る。))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時)をいう。))における第一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八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当該額が五百万円を下回る場合にあっては、五百万円)をもって存続株式会社等(法第七百九十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存続株式会社等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純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一 資本金の額

二 資本準備金の額

三 利益準備金の額

四 法第四百四十六条 に規定する剰余金の額

五 最終事業年度 (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 の期間 (当該期間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末日が最も遅いもの)) 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存続株式会社等の成立の日) における評価・換算差額等に係る額

2항 제1호의 자산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2. 제2항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 ⑤ 법 제795조 제2항 제3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금액
2. 회사계산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
3. 회사계산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계상하는 부채의 액 (주식교환완전자회사가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 (연결배당규제적용회사에 한한다) 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0)

제196조 순자산액

법 제796조 제2항 제2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결산기준일(흡수합병계약, 흡수분할계약 또는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날(해당 계약에 의해 해당 계약을 체결한 날과 다른 때(해당 계약의 체결일 이후부터 해당 흡수합병, 흡수분할 또는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 직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때)를 말한다)에 있어서의 제1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서 제8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5백만엔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5백만엔)을 존속주식회사 등(법 제794조 제1항의 존속주식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순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자본금의 액
2. 자본준비금의 액
3. 이익준비금의 액
4. 법 제446조의 잉여금의 액
5. 최종사업연도(법 제4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 (이 기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말일이 가장 늦은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주식회사등의 성립일) 의 평가·환산차액 등에 관한 금액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 六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 七 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
- 八 自己株式及び自己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の合計額

第197条 株式の数

法第七百九十六条第三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数は、次に掲げる数のうちいずれか小さい数とする。

- 一 特定株式(法第七百九十六条第三項に規定する行為に係る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内容とする株式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総数に二分の一(当該株主総会の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当該特定株式の議決権の総数の一定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一定の割合)を乗じて得た数に三分の一(当該株主総会の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当該株主総会に出席した当該特定株主(特定株式の株主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有する議決権の総数の一定の割合以上の多数が賛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一から当該一定の割合を減じて得た割合)を乗じて得た数に一を加えた数
- 二 法第七百九十六条第三項に規定する行為に係る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一定の数以上の特定株主の賛成を要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特定株主の総数から株式会社に対して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数を減じて得た数が当該一定の数未満となるときにおける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有する特定株式の数
- 三 法第七百九十六条第三項に規定する行為に係る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前二号の定款の定め以外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全部が同項に規定する株主総会において反対したとすれば当該決議が成立しないときは、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有する特定株式の数
- 四 定款で定めた数

第198条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

法第七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第一号

6.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7. 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8. 자기주식 및 자기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197조 주식의 수

법 제79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는 다음의 수 중 작은 수로 한다.

1. 특정주식(법 제796조 제3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수에 2분의 1(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특정주식의 의결권의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주가 출석하여야 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비율)을 곱한 수에 3분의 1(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한 특정주주(특정주식의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가지는 의결권의 총수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다수가 찬성하여야 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1에서 일정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하여 얻은 수에 1을 더한 수
2. 법 제796조 제3항의 행위에 관한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특정주주의 찬성을 요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특정주주의 총수에서 주식회사에 그 행위에 반대하는 뜻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의 수를 뺀 수가 일정한 수 미만인 되는 때의 그 행위에 반대하는 뜻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가 가지는 특정주식의 수
3. 법 제796조 제3항의 행위에 관한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전2호의 정관의 정함 이외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행위에 반대하는 뜻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의 전부가 동향의 주주총회에서 반대했다면 그 결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행위에 반대하는 뜻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가 가지는 특정주식의 수
4. 정관으로 정한 수

제198조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법 제799조 제1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が第三号に掲げる額よりも小さい場合における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 及び第三号 の定めに従い交付する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以外の金銭等とする。

- 一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合計額
- 二 前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うち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の価額の合計額
- 三 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二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

第199条 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

法第七百九十九条第二項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 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における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又はその要旨につき公告対象会社（法第七百九十九条第二項第三号 の株式会社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法第四百四十条第一項 又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る公告をしている場合 次に掲げるもの
 - イ 官報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官報の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 ロ 時事に関する事項を掲載する日刊新聞紙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日刊新聞紙の名称、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 ハ 電子公告により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八号イに掲げる事項
- 二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につき公告対象会社が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に規定する措置を執っている場合 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六号に掲げる事項
- 三 公告対象会社が法第四百四十条第四項 に規定する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最終事業年度に係る有価証券報告書を提出しているとき その旨
- 四 公告対象会社が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第二十八条の規定により法第四百四十条 の規定が適用されないものである場合 その旨
- 五 公告対象会社につき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 その旨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제3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법 제7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정함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 이외의 금전등을 말한다.

1.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등의 합계액
2. 전호의 금전등 중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의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의 금전등의 합계액에 2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199조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법 제799조 제2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항에 의한 공고일 또는 동항에 의한 최고일 중 빠른 날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또는 그 요지에 관하여 공고대상회사(법 제799조 제2항 제3호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44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사항

가. 관보에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관보의 일자 및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면

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일간신문의 명칭, 일자 및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면

다.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법 제911조 제3항 제8호가목의 사항

2.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공고대상회사가 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법 제911조 제3항 제26호의 사항

3. 공고대상회사가 법 제440조 제4항의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종사업연도의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때 : 그 뜻

4. 공고대상회사가 회사법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법 제44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 그 뜻

5. 공고대상회사의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 그 뜻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六 公告対象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 その旨

七 前各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会社計算規則第六編第二章の規定による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要旨の内容

第200条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八百一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吸収合併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吸収合併消滅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法第七百八十四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ロ 法第七百八十五条及び第七百八十七条の規定並びに法第七百八十九条(法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三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法第七百九十六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ロ 法第七百九十七条及び第七百九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四 吸収合併により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が吸収合併消滅会社から承継した重要な権利義務に関する事項
- 五 法第七百八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が備え置い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記載又は記録がされた事項(吸収合併契約の内容を除く。)
- 六 法第九百二十一条の変更の登記をした日
-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吸収合併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201条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八百一条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吸収分割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吸収分割合同会社における法第七百九十三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七百八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三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4장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절차

6. 공고대상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 그 뜻
7. 전 각 호 이외의 경우 : 회사계산규칙 제6편 제2장에 의한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요지의 내용

제200조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801조 제1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
2. 흡수합병소멸회사에서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784조의2에 의한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 나. 법 제785조 및 제787조 및 법 제789조(법 제79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절차의 경과
3.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에서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796조의2에 의한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 나. 법 제797조 및 제799조에 의한 절차의 경과
4. 흡수합병으로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가 흡수합병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중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법 제782조 제1항에 의하여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가 비치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기재 또는 기록이 된 사항 (흡수합병계약의 내용은 제외한다)
6. 법 제921조의 변경등기를 한 날
7. 전 각호 외에 흡수합병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1조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801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
2. 흡수분할합동회사에서 법 제79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89조에 의한 절차의 경과
3.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에서 다음의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4章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及び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手続

- イ 法第七百九十六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ロ 法第七百九十七条及び第七百九十九条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四 吸収分割により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が吸収分割合同会社から承継した重要な権利義務に関する事項
- 五 法第九百二十三条の変更の登記をした日
-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吸収分割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202条 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

法第八百一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四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が第三号に掲げる額よりも小さい場合における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の定めに従い交付する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以外の金銭等とする。

- 一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合計額
- 二 前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うち株式交換完全親株式会社の株式の価額の合計額
- 三 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二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

第203条 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持分に準ずるもの

法第八百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七百九十九条第一項第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が第三号に掲げる額よりも小さい場合における法第七百六十八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の定めに従い交付する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持分以外の金銭等とする。

- 一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合計額
- 二 前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うち株式交換完全親合同会社の持分の価額の合計額
- 三 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二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

- 가. 법 제796조의2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 나. 법 제797조 및 제799조의 절차의 경과
- 4. 흡수분할로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가 흡수분할합동회사로부터 승계한 중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6. 법 제923조의 변경등기를 한 날
- 7. 전 각호 외에 흡수분할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02조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법 제801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4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제3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법 제7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정함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 이외의 금전을 말한다.

- 1.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
- 2. 전호의 금전등 중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
- 3. 제1호의 금전등의 합계액에 2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203조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의 지분에 준하는 것**

법 제80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99조 제1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제3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법 제76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정함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의 주식 이외의 금전을 말한다.

- 1.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
- 2. 전 호의 금전등 중 주식교환완전모합동회사의 주식 가액의 합계액
- 3. 제1호의 금전등의 합계액에 20분의 1을 곱하여 얻은 금액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第5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 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第204条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八百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項に規定する消滅株式会社等が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定め
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イ 新設合併設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五十三条第一項第六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ロ 新設合併設立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五十五条第一項第四号、第六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二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全部又は一部が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定め
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

イ 新設合併設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五十三条第一項第十号及び第十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ロ 新設合併設立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五十五条第一項第八号及び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三 他の新設合併消滅会社（清算株式会社及び清算持分会社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他の新設合併消滅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の内容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他の新設合併消滅会社の成立の日）後の日を臨時決算日（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ハ 他の新設合併消滅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他の新設合併消滅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

제5장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신설분할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절차

제204조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803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항의 소멸주식회사등이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 가. 신설합병설립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 법 제753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 나. 신설합병설립회사가 지분회사인 경우 : 법 제755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2.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때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 가. 신설합병설립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 법 제753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 나. 신설합병설립회사가 지분회사인 경우 : 법 제755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3. 다른 신설합병소멸회사 (청산주식회사 및 청산지분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최종사업연도의 계산서류등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신설합병소멸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의 내용
 - 나.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신설합병소멸회사의 성립일. 다목에서 같다)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 (2 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 로 하는 임시계산서류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임시계산서류 등의 내용
 - 다. 다른 신설합병소멸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신설합병소멸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 (法第八百三条第二項 に規定する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をい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同じ。) 後新設合併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四 他の新設合併消滅会社 (清算株式会社又は清算持分会社に限る。) が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 又は第六百五十八条第一項 若しくは第六百六十九条第一項 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

五 当該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 (清算株式会社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成立の日) 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 (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新設合併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当該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当該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六 新設合併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新設合併設立会社の債務 (他の新設合併消滅会社から承継する債務を除く。) 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七 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205条 新設分割株式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八百三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項 に規定する消滅株式会社等が新設分割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次の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イ又はロに定める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

イ 新設分割設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六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ロ 新設分割設立会社が持分会社である場合 法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三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신설분할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절차

한 때에는 그 내용 (신설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법 제803조 제2항의 신설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후 신설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4. 다른 신설합병소멸회사 (청산주식회사 또는 청산지분회사는 제외한다) 가 법 제492조 제1항, 제658조 제1항, 제66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청산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신설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 나.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6. 신설합병의 효력발생일 이후 신설합병설립회사의 채무 (다른 신설합병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채무는 제외한다) 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7. 신설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전 각호의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후의 사항

제205조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803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항의 소멸주식회사가 등이 신설분할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의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라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 가. 신설분할설립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 법 제763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 나. 신설분할설립회사가 지분회사인 경우 : 법 제765조 제1항 제3호, 제6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号、第六号及び第七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

二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

イ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イ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イ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法第七十一条第一項の決議が行われているときは、同項 各号に掲げる事項

ロ 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二号ロ又は第七百六十五条第一項第八号ロに掲げる行為をする場合において、法第四百五十四条第一項の決議が行われているときは、同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事項

三 新設分割株式会社の全部又は一部が法第八百八条第三項第二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場合において、新設分割設立会社が株式会社であるときは、法第七百六十三条第一項第十号及び第十一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との相当性に関する事項(当該新株予約権に係る事項に限る。)

四 他の新設分割会社(清算株式会社及び清算持分会社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他の新設分割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の内容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他の新設分割会社の成立の日)後の日を臨時決算日(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ハ 他の新設分割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他の新設分割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新設分割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五 他の新設分割会社(清算株式会社又は清算持分会社に限る。)が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 又は第六百五十八条第一項 若しくは第六百六十九条第一項 若しく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

六 当該新設分割株式会社(清算株式会社を除く。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

호 및 제7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

2. 법 제763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765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63조 제1항 제12호 가목 또는 제765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171조 제1항의 결의를 한 때에는 동항 각호의 사항

나. 법 제763조 제1항 제12호의 나목 또는 제765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제454조 제1항의 결의를 한 때에는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80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신설분할설립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 제763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신주예약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4. 다른 신설분할회사 (청산주식회사 및 청산지분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최종사업연도의 계산서류등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신설분할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의 내용

나.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신설분할회사의 성립일)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 (2 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로 하는 임시계산서류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임시계산서류 등의 내용

다. 다른 신설분할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신설분할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신설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신설분할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5. 다른 신설분할회사 (청산주식회사 또는 청산지분회사는 제외한다) 가 법 제492조 제1항, 제658조 제1항, 제66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6. 신설분할주식회사 (청산주식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 관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ついで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新設分割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設分割株式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新設分割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 ロ 当該新設分割株式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当該新設分割株式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 七 新設分割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当該新設分割株式会社の債務及び新設分割設立会社の債務（当該新設分割株式会社が新設分割により新設分割設立会社に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 八 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新設分割が効力を生ずる日までの間に、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206条 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八百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同項に規定する消滅株式会社等が株式移転完全子会社である場合に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法第七百七十三條第一項第五号 から第八号 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
- 二 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全部又は一部が法第八百八条第三項第三号に定める新株予約権を発行している場合には、法第七百七十三條第一項第九号及び第十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当該新株予約権に係る事項に限る。）
- 三 他の株式移転完全子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他の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の内容
 -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他の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成立の日）後の日を臨時決算日（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最も遅いもの）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한 다음의 사항

- 가. 신설분할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신설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흡수합병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 나. 신설분할주식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 7. 신설분할의 효력발생일 이후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채무 및 신설분할설립회사의 채무 (신설분할주식회사가 신설분할로 신설분할설립회사에 승계하게 하는 것에 한한다) 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 8. 신설합병계약등비치개시일 후 신설분할의 효력발생일까지 전 각호의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후의 사항

제206조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803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항의 소멸주식회사등이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773조 제1항 제5호 내지 8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 2.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80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는 신주예약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773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신주예약권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 3.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 최종사업연도의 계산서류등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의 내용
 - 나.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성립일) 후의 날을 임시결산일 (2 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 로 하는 임시계산서류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임시계산서류 등의 내용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ハ 他の株式移転完全子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他の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株式移転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四 当該株式移転完全子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株式移転完全子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当該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株式移転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つ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当該株式移転完全子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当該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五 法第八百十条の規定により株式移転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債権者があるときは、株式移転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債務（他の株式移転完全子会社から承継する債務を除き、当該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債権者に対して負担する債務に限る。）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六 新設合併契約等備置開始日後株式移転が効力を生ずる日までの間に、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207条 総資産の額

1 法第八百五条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算定基準日（新設分割計画を作成した日（当該新設分割計画により当該新設分割計画を作成した日と異なる時（当該新設分割計画を作成した日以後から当該新設分割の効力が生ずる時の直前までの間の時に限る。）を定めた場合にあつては、当該時）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おける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十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をもって新設分割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다.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신설합병계약등 비치개시일 후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4. 주식이전완전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주식이전완전자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성립일) 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신설합병계약등 비치개시일 후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일까지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최종사업연도 말일 후에 발생한 사항의 내용에 한한다)

나. 주식이전완전자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때에는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5. 법 제810조에 의하여 주식이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일 이후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채무(다른 주식이전완전자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채무를 제외하고,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한다)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6. 신설합병계약등 비치개시일 후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일까지 전 각호의 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후의 사항

제207조 총자산액

① 법 제805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결산기준일(신설분할계획을 작성한 날(신설분할계획에 의하여 신설분할계획을 작성한 날과 다른 때(신설분할계획의 작성일 이후부터 신설분할의 효력발생시 직전까지의 때에 한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1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0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 一 資本金の額
 - 二 資本準備金の額
 - 三 利益準備金の額
 - 四 法第四百四十六条 に規定する剰余金の額
 - 五 最終事業年度 (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 の期間 (当該期間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末日が最も遅い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の末日 (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新設分割株式会社の成立の日。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における評価・換算差額等に係る額
 - 六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 七 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
 - 八 最終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負債の部に計上した額
 - 九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吸収合併、吸収分割による他の会社の事業に係る権利義務の承継又は他の会社 (外国会社を含む。) の事業の全部の譲受けをしたときは、これらの行為により承継又は譲受けをした負債の額
 - 十 自己株式及び自己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の合計額
-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算定基準日において新設分割株式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法第八百五条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をもって新設分割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第208条 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

法第八百十条第二項第三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同項 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 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における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又はその要旨につき公告対象会社 (法第八百十条第二項第三号 の株式会社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が法第四百四十条第一項 又は第二項 の規定による公告をしている場合 次に掲げるもの
 - イ 官報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官報の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1. 자본금의 액
 2. 자본준비금의 액
 3. 이익준비금의 액
 4. 법 제446조의 잉여금의 액
 5. 최종사업연도(법 제4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이 기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말일이 가장 늦은 기간).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성립일.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평가·환산차액 등에 관한 금액
 6.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7. 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8. 최종사업연도의 말일에 부채의 부에 계상한 금액
 9. 최종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흡수합병, 흡수분할에 의한 다른 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의 승계 또는 다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때에는 이러한 행위들에 의해 승계 또는 양수한 부채의 금액
 10. 자기주식 및 자기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결산기준일에 신설분할주식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805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492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한 금액을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총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08조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법 제810조 제2항 제3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항에 의한 공고일 또는 동항에 의한 최고일 중 빠른 날에 다음 각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또는 그 요지에 관하여 공고 대상 회사(법 제810조 제2항 제3호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44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사항

가. 관보에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관보의 일자 및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면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5章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新設分割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手続

- ロ 時事に関する事項を掲載する日刊新聞紙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日刊新聞紙の名称、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 ハ 電子公告により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八号イに掲げる事項
- 二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につき公告対象会社が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に規定する措置をとっている場合 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六号に掲げる事項
- 三 公告対象会社が法第四百四十条第四項 に規定する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最終事業年度に係る有価証券報告書を提出しているとき その旨
- 四 公告対象会社が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第二十八条の規定により法第四百四十条 の規定が適用されないものである場合 その旨
- 五 公告対象会社につき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 その旨
- 六 公告対象会社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 その旨
- 七 前各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会社計算規則第六編第二章 の規定による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要旨の内容

第209条 新設分割株式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八百十一条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新設分割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法第八百五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三 法第八百六条 及び第八百八条 の規定並びに法第八百十条 (法第八百十三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四 新設分割により新設分割設立会社が新設分割会社から承継した重要な権利義務に関する事項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新設分割に関する重要な事

第210条 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八百十一条第一項第二号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주식교부
제5장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신설분할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절차

- 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지에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일간신문지의 명칭, 일자 및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면
- 다.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있는 때에는 법 제911조 제3항 제28호가목의 사항
2.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공고대상회사가 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 법 제911조 제3항 제26호의 사항
3. 공고대상회사가 법 제440조 제4항의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최종사업연도의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때 : 그 뜻
4. 공고대상회사가 회사법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법 제44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 그 뜻
5. 공고대상회사의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 그 뜻
6. 공고대상회사가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 그 뜻
7. 전 각호 이외의 경우 : 회사계산규칙 제6편 제2장에 의한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의 요지의 내용

제209조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811조 제1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설분할의 효력발생일
2. 법 제805조의2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3. 법 제806조, 제808조 및 법 제810조 (법 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한 절차의 경과
4. 신설분할로 신설분할설립회사가 신설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 중요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5. 전 각호 외에 신설분할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10조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811조 제1항 제2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6章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及び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手続

る事項とする。

- 一 株式移転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法第八百五条の二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三 株式移転により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に移転した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株式の数 (株式移転完全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株式移転に関する重要な事項
-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新設分割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6章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 及び株式移転設立完全親会社の手続

第211条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八百十五条第一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新設合併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法第八百六条 及び第八百八条 の規定並びに法第八百十条 (法第八百十三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三 新設合併により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が新設合併消滅会社から承継した重要な権利義務に関する事項
-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新設合併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212条 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八百十五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新設分割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法第八百十三条第二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八百十条 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三 新設分割により新設分割設立株式会社が新設分割合同会社から承継した重要な権利義務に関する事項

말한다.

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일
2. 법 제805조의2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의 경과
3. 주식이전으로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로 이전한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주식이전완전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수)
4. 전 3호 외에 주식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전 각호 외에 신설분할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장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절차

제211조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815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설합병의 효력발생일
2. 법 제806조, 제808조 및 법 제810조 (법 제81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의한 절차의 경과
3. 신설합병으로 신설합병설립회사가 신설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 중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전3호 외에 신설합병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12조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815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설분할의 효력발생일
2. 법 제81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10조에 의한 절차의 경과
3. 신설분할에 의하여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가 신설분할합동회사로부터 승계한 중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七章 株式交付親会社の手続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新設分割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213条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八百十五条第三項第一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法第八百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が備え置いた書面又は電磁的記録に記載又は記録がされた事項（新設合併契約の内容を除く。）とする。

第七章 株式交付親会社の手続

第213条の2 株式交付親会社の事前開示事項

法第八百十六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法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が同条第二項に定める要件を満たすと株式交付親会社が判断した理由
- 二 法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三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
- 三 法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七号に掲げる事項を定めたときは、同項第八号及び第九号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の定め相当性に関する事項
- 四 株式交付子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を株式交付親会社が知っているときは、当該事項
 - イ 最終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等（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株式交付子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の内容
 - ロ 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株式交付子会社の成立の日。ハにおいて同じ。）後の日を臨時決算日（二以上の臨時決算日がある場合にあつては、最も遅いもの）とする臨時計算書類等があるときは、当該臨時計算書類等の内容
 - ハ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株式交付計画備置開始日（法第八百十六条の二第二項に規定する株式交付計画備置開始日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後株式交付の効力が生ずる日

4. 전3호 외에 신설분할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13조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815조 제2항 제1호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0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가 비치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기재 또는 기록된 사항 (신설합병계약 내용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제7장 주식교부모회사의 절차

제213조의2 주식교부모회사의 사전공시사항

법 제816조의2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74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정함이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식교부모회사가 판단한 이유
2. 법 제774조의3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774조의3 제1항 제7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동항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대한 정함의 상당성에 관한 사항
4. 주식교부자회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주식교부모회사가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사항
 - 가. 최종사업연도의 계산서류 등(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부자회사 성립일의 대차대조표)의 내용
 - 나. 최종사업연도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부자회사의 성립일. 다목에서 같다) 이후의 날을 임시결산일(둘 이상의 임시결산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늦은 날)로 하는 임시계산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계산서류 등의 내용
 - 다. 최종사업연도 말일 이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주식교부계획비치개시일(법 제816조의2 제2항의 주식교부계획비치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후 주식교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七章 株式交付親会社の手続

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五 株式交付親会社についての次に掲げる事項

イ 株式交付親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付親会社の成立の日)後に重要な財産の処分、重大な債務の負担その他の会社財産の状況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事象が生じたときは、その内容(株式交付計画備置開始日後株式交付の効力が生ずる日までの間に新たな最終事業年度が存することとな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新たな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生じた事象の内容に限る。)

ロ 株式交付親会社において最終事業年度がないときは、株式交付親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貸借対照表

六 法第八百十六条の八第一項の規定により株式交付について異議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債権者があるときは、株式交付が効力を生ずる日以後における株式交付親会社の債務(当該債権者に対して負担する債務に限る。)の履行の見込みに関する事項

七 株式交付計画備置開始日後株式交付が効力を生ずる日までの間に、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変更が生じたときは、変更後の当該事項

第213条の3 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

法第八百十六条の二第三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が第三号に掲げる額よりも小さい場合における法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五号、第六号、第八号及び第九号の定めに従い交付する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以外の金銭等とする。

- 一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又は新株予約権付社債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合計額
- 二 前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うち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価額の合計額
- 三 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二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

第213条の4 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等の額

法第八百十六条の三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額は、第一号及び第二号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三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とする。

날 사이에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내용에 한한다)

5. 주식교부모회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주식교부모회사에서 최종사업연도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성립일) 이후에 중요한 재산의 처분, 중대한 채무의 부담 그 밖의 회사재산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주식교부계획비치개시일 이후 주식교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사이에 새로운 최종사업연도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내용에 한한다)

나. 주식교부모회사에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 성립일의 대차대조표

6. 법 제816조의8 제1항에 의해 주식교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주식교부 효력발생일 이후의 주식교부모회사의 채무(해당 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한한다.)의 이행 전망에 관한 사항

7. 주식교부계획비치개시일 이후 주식교부 효력발생일까지의 사이에 전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 후의 사항

제213조의3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법 제816조의2 제3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제3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의 법 제774조의3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정함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 이외의 금전 등을 말한다.

1.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
2. 전호의 금전 등 중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
3. 제1호의 금전 등의 합계액에 20분의 1을 곱한 금액

제213조의4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받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등의 금액

법 제816조의3 제2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七章 株式交付親会社の手続

- 一 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譲り受ける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及び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き会計帳簿に付すべき額
- 二 会社計算規則第十一条の規定により計上したのれんの額
- 三 会社計算規則第十二条の規定により計上する負債の額(株式交付子会社が株式交付親会社(連結配当規制適用会社に限る。)の子会社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零)

第213条の5 純資産の額

法第八百十六条の四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算定基準日(株式交付計画を作成した日(当該株式交付計画により当該計画を作成した日と異なる時(当該株式交付計画を作成した日後から当該株式交付の効力が生ずる時の直前までの間の時に限る。))を定めた場合にあっては、当該時)をいう。)における第一号から第七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八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当該額が五百万円を下回る場合にあっては、五百万円)をもって株式交付親会社の純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資本金の額
- 二 資本準備金の額
- 三 利益準備金の額
- 四 法第四百四十六条に規定する剰余金の額
- 五 最終事業年度(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の期間(当該期間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末日が最も遅いもの))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株式交付親会社の成立の日)における評価・換算差額等に係る額
- 六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 七 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
- 八 自己株式及び自己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の合計額

第213条の6 株式の数

法第八百十六条の四第二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数は、次に掲げる数のうちいずれか小さい数とする。

1. 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에 양수받는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해 회계장부에 부기하여야 하는 금액
2. 회사계산규칙 제11조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금액
3. 회사계산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상하는 부채액(주식교부자회사가 주식교부모회사(연결배당규제 적용회사에 한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213조의5 순자산액

법 제816조의4 제1항 제2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결산기준일(주식교부계획서를 작성한 날(해당 주식교부계획에 따라 그 계획서를 작성한 날과 다른 때(해당 주식교부계획서를 작성한 날 이후부터 그 주식교부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때)를 말한다)의 제1호 내지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8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5백만 엔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5백만 엔)을 주식교부모회사의 순자산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자본금
2. 자본준비금
3. 이익준비금
4. 법 446조의 잉여금
5. 최종사업연도(법 제4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해당 기간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말일이 가장 늦은 것)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을 경우에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성립일)에 있어서의 평가·환산차액 등에 관한 금액
6.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7. 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8. 자기주식 및 자기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213조의6 주식의 수

법 제816조의4 제2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는 다음의 수 중 어느 하나의 작은 수를 말한다.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七章 株式交付親会社の手続

- 一 特定株式(法第八百十六条の四第二項に規定する行為に係る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内容とする株式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総数に二分の一(当該株主総会の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当該特定株式の議決権の総数の一定の割合以上の議決権を有する株主が出席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一定の割合)を乗じて得た数に三分の一(当該株主総会の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当該株主総会に出席した当該特定株主(特定株式の株主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有する議決権の総数の一定の割合以上の多数が賛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あっては、一から当該一定の割合を減じて得た割合)を乗じて得た数に一を加えた数
- 二 法第八百十六条の四第二項に規定する行為に係る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一定の数以上の特定株主の賛成を要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特定株主の総数から株式会社に対して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数を減じて得た数が当該一定の数未満となるときにおける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有する特定株式の数
- 三 法第八百十六条の四第二項に規定する行為に係る決議が成立するための要件として前二号の定款の定め以外の定款の定めが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全部が同項に規定する株主総会において反対したとすれば当該決議が成立しないときは、当該行為に反対する旨の通知をした特定株主の有する特定株式の数
- 四 定款で定めた数

第213条の7 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

法第八百十六条の八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が第三号に掲げる額よりも小さい場合における法第七百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五号、第六号、第八号及び第九号の定めに従い交付する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以外の金銭等とする。

- 一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及び新株予約権付社債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合計額
- 二 前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うち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価額の合計額
- 三 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二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

1. 특정주식(법 제816조의4 제2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총수에 2분의 1(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정주식의 의결권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야 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정 비율)을 곱한 수에 3분의 1(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한 특정주주(특정주식의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소유한 의결권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다수가 찬성해야 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로부터 그 일정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수에 1을 더한 수
2. 법 제816조의4 제2항의 행위에 관한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정수 이상의 특정주주의 찬성을 요하는 취지의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특정주주의 총수에서 주식회사에 대해 해당 행위에 반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의 수를 뺀 수가 일정 수 미만이 될 때에 그 행위에 반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가 소유한 특정주식의 수
3. 법 제816조의4 제2항의 행위에 관한 결의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전 2호의 정관 규정 이외의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에 반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의 전부가 동향의 주주총회에서 반대했다고 하면 해당 결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행위에 반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특정주주가 소유한 특정주식의 수
4. 정관에서 정한 수

제213조의7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법 제816조의8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제3호의 금액보다도 적은 경우의 법 774조의3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정함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 이외의 금전 등을 말한다.

1.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
2. 전호의 금전 등 중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
3. 제1호의 금전 등의 합계액에 20분의 1을 곱한 금액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七章 株式交付親会社の手続

第213条の8 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

法第八百十六條の八第二項第三号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同項の規定による公告の日又は同項の規定による催告の日のいずれか早い日における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ものとする。

一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又はその要旨につき公告対象会社(法第八百十六條の八第二項第三号の株式交付親会社及び株式交付子会社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が法第四百四十條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している場合 次に掲げるもの

イ 官報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官報の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ロ 時事に関する事項を掲載する日刊新聞紙で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当該日刊新聞紙の名称、日付及び当該公告が掲載されている頁

ハ 電子公告により公告をしているときは、法第九百十一條第三項第二十八号イに掲げる事項

二 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につき公告対象会社が法第四百四十條第三項に規定する措置をとっている場合 法第九百十一條第三項第二十六号に掲げる事項

三 公告対象会社が法第四百四十條第四項に規定する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会社が金融商品取引法第二十四條第一項の規定により最終事業年度に係る有価証券報告書を提出しているとき その旨

四 公告対象会社が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第二十八條の規定により法第四百四十條の規定が適用されないものである場合 その旨

五 公告対象会社につき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子会社の最終事業年度の存否を知らない場合を含む。) その旨

六 前各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会社計算規則第六編第二章の規定による最終事業年度に係る貸借対照表の要旨の内容(株式交付子会社の当該貸借対照表の要旨の内容にあつては、株式交付親会社がその内容を知らないときは、その旨)

제213조의8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법 제816조의8 제2항 제3호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동 항의 공고일 또는 최고일 중 빠른 날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또는 그 요지에 관하여 공고대상회사(법 제816조의8 제2항 제3호의 주식교부모회사 및 주식교부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44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사항
 - 가. 관보로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관보의 날짜 및 해당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면
 - 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명칭, 날짜 및 해당 공고가 게재되어 있는 면
 - 다. 전자공고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있는 때에는 법 제911조 제3항 제28호가목의 사항
2. 최종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공고대상회사가 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법 제911조 제3항 제26호의 사항
3. 공고대상회사가 법 제440조 제4항의 주식회사인 경우 해당 주식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때: 그 뜻
4. 공고대상회사가 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법 제44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 그 뜻
5. 공고대상회사에 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자회사의 최종사업연도의 존부를 모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뜻
6. 전 각호 이외의 경우: 회사계산규칙 제6편 제2장에 의한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대차대조표의 요지의 내용(주식교부자회사의 해당 대차대조표의 요지의 내용으로는 주식교부모회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 뜻)

第5編 組織変更、合併、会社分割、株式交換、株式移転及び株式交付

第七章 株式交付親会社の手続

第213条の9 株式交付親会社の事後開示事項

法第八百十六條の十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株式交付が効力を生じた日
- 二 株式交付親会社における次に掲げる事項
 - イ 法第八百十六條の五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手続の経過
 - ロ 法第八百十六條の六及び第八百十六條の八の規定による手続の経過
- 三 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た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の数（株式交付子会社が種類株式発行会社であるときは、株式の種類及び種類ごとの数）
- 四 株式交付に際して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た株式交付子会社の新株予約権の数
- 五 前号の新株予約権が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は、当該新株予約権付社債についての各社債（株式交付親会社が株式交付に際して取得したものに限る。）の金額の合計額
-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株式交付に関する重要な事項

第213条の10 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に準ずるもの

法第八百十六條の十第三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第一号に掲げる額から第二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が第三号に掲げる額よりも小さい場合における法第七百七十四條の三第一項第五号、第六号、第八号及び第九号の定めに従い交付する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以外の金銭等とする。

- 一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新株予約権（新株予約権付社債に付されたものを除く。）及び新株予約権付社債の譲渡人に対して交付する金銭等の合計額
- 二 前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うち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の価額の合計額
- 三 第一号に規定する金銭等の合計額に二十分の一を乗じて得た額

제213조의9 주식교부모회사의 사후공시사항

법 제816조의10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식교부의 효력발생일
2. 주식교부모회사의 다음 사항
 - 가. 법 제816조의5의 청구에 관한 절차의 경과
 - 나. 법 제816조의6 및 제816조의 8의 절차의 경과
3. 주식교부 시에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한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의 수(주식교부자회사가 종류주식발행회사인 때에는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의 수)
4. 주식교부 시에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한 주식교부자회사의 신주예약권의 수
5. 전 호의 신주예약권이 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인 경우에는 신주예약권부사채에 관한 각 사채(주식교부모회사가 주식교부 시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금액의 합계액
6. 전 각호 외에 주식교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13조의10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법 제816조의10 제3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제3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법 제774조의3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 이외의 금전 등을 말한다.

1.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신주예약권(신주예약권부사채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및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
2. 전 호의 금전 등 중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이액의 합계액
3. 제1호의 금전 등의 합계액에 20분의 1을 곱한 금액

第6編 外国会社

第214条 計算書類の公告

外国会社が法第八百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貸借対照表に相当するもの（以下この条において「外国貸借対照表」という。）の公告をする場合には、外国貸借対照表に関する注記（注記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の部分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2 法第八百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外国貸借対照表の要旨とは、外国貸借対照表を次に掲げる項目（当該項目に相当するものを含む。）に区分したものをいう。

一 資産の部

イ 流動資産

ロ 固定資産

ハ その他

二 負債の部

イ 流動負債

ロ 固定負債

ハ その他

三 純資産の部

イ 資本金及び資本剰余金

ロ 利益剰余金

ハ その他

3 外国会社が法第八百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外国貸借対照表の公告又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外国貸借対照表の要旨の公告を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外国貸借対照表が日本語以外の言語で作成されているときは、当該外国会社は、当該公告を日本語をもってすることを要しない。

4 外国貸借対照表が存しない外国会社については、当該外国会社に会社計算規則の規定を適用することとしたならば作成されることとなるものを外国貸借対照表とみなして、前三項の規定を適用する。

第215条 法第八百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措置

法第八百十九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措置は、第二百二十二条第一項第一号ロ

제6편 외국회사

제214조 **계산서류의 공고**

① 외국회사가 법 제819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에 상당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차대조표” 라고 한다) 의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 대차대조표에 관한 주기 (주기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의 부분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법 제819조 제2항의 외국 대차대조표의 요지란 외국 대차대조표를 다음의 항목(당해 항목에 상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부
 - 가. 유동자산
 - 나. 고정자산
 - 다. 그 외
2. 부채의 부
 - 가. 유동부채
 - 나. 고정부채
 - 다. 그 외
3. 순자산의 부
 - 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 나. 이익잉여금
 - 다. 그 외

③ 외국회사가 법 제819조 제1항의 외국 대차대조표의 공고 또는 동조 제2항의 외국 대차대조표의 요지의 공고를 하는 경우 외국 대차대조표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 그 외국회사는 당해 공고를 일본어로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외국 대차대조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회사에 회사회산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면 작성되었을 것을 외국 대차대조표로 보아 전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5조 **법 제819조 제3항의 조치**

법 제819조 제3항의 조치는 제2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방법 중 인터넷에 접

第7編 雑則

第1章 訴訟

に掲げる方法のうち、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された自動公衆送信装置を使用する方法によ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216条 日本にある外国会社の財産についての清算に関する事項

第四百四十条、第四百二十二条から第四百五十五条まで及び第二編第八章第二節の規定は、その性質上許されないものを除き、法第八百二十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四百八十二条第三項第四号、第四百八十九条第六項第六号、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第五百三十六条第一項第二号及び第三号イ、第五百四十八条第一項第四号、第五百五十条第一項、第五百五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五百五十六条第二項、第五百五十七条第一項並びに第五百六十一条の規定により法務省令で定めるべき事項について準用する。

第7編 雑則

第1章 訴訟

第217条 株主による責任追及等の訴えの提起の請求方法

法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提出又は当該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とする。

- 一 被告となるべき者
- 二 請求の趣旨及び請求を特定するのに必要な事実

第218条 訴えを提起しない理由の通知方法

法第八百四十七条第四項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提出又は当該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とする。

- 一 株式会社が行った調査の内容（次号の判断の基礎とした資料を含む。）
- 二 法第八百四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訴えについての前条第一号に掲げる者の責任又は義務の有無についての判断及びその理由

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16조 일본에 있는 외국 회사의 재산에 대한 청산에 관한 사항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45조 및 제2편 제8장 제2절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 제82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82조 제3항 제4호, 제489조 제6항 제6호, 제492조 제1항, 제5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 제548조 제1항 제4호, 제550조 제1항, 제551조 제1항 및 제2항, 제556조 제2항, 제557조 제1항 및 제5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에 준용한다.

제7편 잡 칙

제1장 소송

제217조 주주에 의한 책임추궁등의 소제기의 청구방법

법 제847조 제1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또는 당해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말한다.

1. 피고로 되어야 할 자
2. 청구의 취지 및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

제218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의 통지방법

법 제847조 제4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또는 당해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말한다.

1. 주식회사가 실시한 조사의 내용(다음 호의 판단의 기초로서 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법 제847조 제1항에 의한 청구에 관련된 소송에 관한 전조 제1호의 자의 책임 또는 의무의 유무에 관한 판단 및 그 이유

第7編 雑則

第1章 訴訟

三 前号の者に責任又は義務があると判断した場合において、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いときは、その理由

第218条の2 旧株主による責任追及等の訴えの提起の請求方法

法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及び第三項(同条第四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百十八条の四第二号において同じ。)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提出又は当該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とする。

- 一 被告となるべき者
- 二 請求の趣旨及び請求を特定するのに必要な事実
- 三 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の名称及び住所並びに当該株式交換等完全親会社の株主である旨

第218条の3 完全親会社

1 法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株式会社は、ある株式会社及び当該ある株式会社の完全子会社(当該ある株式会社が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株式会社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又は当該ある株式会社の完全子会社が法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の特定の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ある株式会社とする。

2 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のある株式会社及び当該ある株式会社の完全子会社又は当該ある株式会社の完全子会社が他の株式会社の発行済株式の全部を有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他の株式会社は、完全子会社とみなす。

第218条の4 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が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い理由の通知方法

法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七項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提出又は当該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とする。

- 一 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が行った調査の内容(次号の判断の基礎とした資料を含む。)
- 二 法第八百四十七条の二第一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訴えについての第二百十八条の二第一号に掲げる者の責任又は義務の有無について

3. 전호 자에게 책임 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책임추궁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

제218조의2 주주주에 의한 책임추궁등의 소제기의 청구방법

법 제847조의2 제1항 및 제3항(동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8조의4 제2호에서 같다)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또는 그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으로 한다.

1. 피고가 되는 자
2. 청구의 취지 및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
3.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의 명칭, 주소 및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의 주주인 뜻

제218조의3 완전모회사

- ① 법 제8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어떤 주식회사 및 그 어떤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어떤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어떤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법 제847조의2 제1항의 특정주식회사의 발행주식전부를 소유한 경우에 그 어떤 주식회사로 한다.
- ②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의 어떤 주식회사 및 그 어떤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 또는 그 어떤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다른 주식회사는 완전자회사로 본다.

제218조의4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가 책임추궁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의 통지방법

법 제847조의2 제7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또는 그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으로 한다.

1.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가 한 조사내용(다음 호의 판단의 기초로 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법 제847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청구에 관련된 소에 관한 제218조의2 제1호의 자의 책임 또는 의무의 유무에 관한 판단 및 그 이유

第7編 雑則

第1章 訴訟

の判断及びその理由

- 三 前号の者に責任又は義務があると判断した場合において、責任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いときは、その理由

第218条の5 特定責任追及の訴えの提起の請求方法

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提出又は当該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とする。

- 一 被告となるべき者
- 二 請求の趣旨及び請求を特定するのに必要な事実
- 三 最終完全親会社等の名称及び住所並びに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株主である旨

第218条の6 総資産額

1 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四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同項の日（以下この条において「算定基準日」という。）における株式会社の最終完全親会社等の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額の合計額から第十号に掲げる額を減じて得た額をもって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総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 一 資本金の額
- 二 資本準備金の額
- 三 利益準備金の額
- 四 法第四百四十六条 に規定する剰余金の額
- 五 最終事業年度(法第四百六十一条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場合にあっては、法第四百四十一条第一項第二号の期間(当該期間が二以上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末日が最も遅い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末日(最終事業年度が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の成立の日。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における評価・換算差額等に係る額
- 六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 七 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
- 八 最終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負債の部に計上した額
- 九 最終事業年度の末日後に吸収合併、吸収分割による他の会社の事業に係る権利義務の承継又は他の会社(外国会社を含む。)の事業の全部の譲受けをし

3. 전호의 자에게 책임 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책임추궁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제218조의5 특정책임추궁의 소제기의 청구 방법

법 제847조의3 제1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의 제출 또는 그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으로 한다.

1. 피고가 되는 자
2. 청구의 취지 및 청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
3.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명칭, 주소 및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주주인 뜻

제218조의6 총자산액

① 법 제847조의3 제4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동항의 날(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일”이라고 한다)의 주식회사의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제1호 내지 제9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0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총자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자본금
2. 자본준비금
3. 이익준비금
4. 법 제446조의 잉여금
5. 최종사업연도(법 제4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4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그 기간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말일이 가장 늦은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말일(최종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완전모회사 등의 성립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의 평가·환산차액 등에 관한 금액
6.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7. 신주예약권의 장부가액
8. 최종사업연도의 말일에 부채의 부에 계상한 금액
9. 최종사업연도의 말일 이후에 흡수합병, 흡수분할에 의한 다른 회사의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다른 회사(외국회사 포함한다)의 사업 전부를

第7編 雑則

第2章 登記

たときは、これらの行為により承継又は譲受けをした負債の額

十 自己株式及び自己新株予約権の帳簿価額の合計額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算定基準日において当該最終完全親会社等が清算株式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四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法第四百九十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作成した貸借対照表の資産の部に計上した額をもって株式会社の総資産額とする方法とする。

第218条の7 株式会社が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提起しない理由の通知方法

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八項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提出又は当該事項の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とする。

- 一 株式会社が行った調査の内容(次号の判断の基礎とした資料を含む。)
- 二 法第八百四十七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請求に係る訴えについての第二百十八条の五第一号に掲げる者の責任又は義務の有無についての判断及びその理由
- 三 前号の者に責任又は義務があると判断した場合において、特定責任追及の訴えを提起しないときは、その理由

第219条 完全親会社

削除

第2章 登記

第220条

1 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をするために使用する自動公衆送信装置のうち当該行為をするための用に供する部分を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識別するための文字、記号その他の符号又はこれらの結合であって、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がそ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入力することによって当該情報の内容を閲覧し、当該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当該情報を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六号 法第四百四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措

- 양수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승계 또는 양수한 부채의 금액
10. 자기주식 및 자기신주예약권 장부가액의 합계액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에 최종완전모회사 등이 청산주식회사인 경우 법 제847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은 법 제492조 제1항에 의해 작성한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에 계상한 금액을 주식회사의 총자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8조의7 **주식회사가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의 통지방법**

- 법 제847조의3 제8항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 또는 그 사항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으로 한다.
1. 주식회사가 한 조사의 내용(다음 호의 판단의 기초로 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법 제847조의3 제1항의 청구에 관련된 소에 관한 제218조의5 제1호의 자의 책임 또는 의무의 유무에 관한 판단 및 그 이유
 3. 전호의 자에게 책임 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이유

제219조 **완전모회사**

삭제

제2장 등기

제220조

-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당해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공중송신장치 중 당해 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부분을 인터넷에서 식별하기 위한 문자, 기호 그 밖의 부호 또는 이러한 결합으로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입력함으로써 그 정보의 내용을 열람하고 당해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11조 제3항 제26호 : 법 제440조 제3항의 조치

第7編 雑則
第3章 公告

置

- 二 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八号イ 株式会社が行う電子公告
- 三 法第九百十二条第九号 イ 合名会社が行う電子公告
- 四 法第九百十三条第十一号 イ 合資会社が行う電子公告
- 五 法第九百十四条第十号 イ 合同会社が行う電子公告
- 六 法第九百三十三条第二項第四号 法第八百十九条第三項 に規定する措置
- 七 法第九百三十三条第二項第六号 イ 外国会社が行う電子公告
- 2 法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八号に規定する場合には、同号イに掲げる事項であって、決算公告(法第四百四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の内容である情報の提供を受けるためのものを、当該事項であって決算公告以外の公告の内容である情報の提供を受けるためのものと別に登記することができる。

第3章 公告

第221条

次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べき事項は、電子公告規則(平成十八年法務省令第十四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一 法第九百四十一条
- 二 法第九百四十四条第一項(法第九百四十五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三 法第九百四十六条第二項 から第四項 まで
- 四 法第九百四十七条
- 五 法第九百四十九条第二項
- 六 法第九百五十条
- 七 法第九百五十一条第二項第三号
- 八 法第九百五十五条第一項
- 九 法第九百五十六条第二項
- 十 法第九百五十七条第二項

2. 법 제911조 제3항 제28호 가목 : 주식회사가 행하는 전자공고
3. 법 제912조 제9호 가목 : 합명회사가 행하는 전자공고
4. 법 제913조 제11호 가목 : 합자회사가 행하는 전자공고
5. 법 제914조 제10호 가목 : 합동회사가 행하는 전자공고
6. 법 제933조 제2항 제4호 : 법 제819조 제3항의 조치
7. 법 제933조 제2항 제6호 가목 : 외국회사가 행하는 전자공고
- ② 법 제911조 제3항 제28호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의 사항으로서 결산공고(법 제440조 제1항의 공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인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것을, 당해 사항으로서 결산공고 이외의 공고의 내용인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것과 구별하여 등기 할 수 있다.

제3장 공고

제221조

다음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전자공고 규칙(2006년 시행규칙 제14호)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941조
2. 법 제944조 제1항 (법 제94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946조 제2항 내지 제4항
4. 법 제947조
5. 법 제949조 제2항
6. 법 제950조
7. 법 제951조 제2항 제3호
8. 법 제955조 제1항
9. 법 제956조 제2항
10. 법 제957조 제2항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第1節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第222条 電磁的方法

1 法第二条第三十四号 に規定する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その他の情報通信の技術を利用する方法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方法とする。

一 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のうちイ又はロに掲げるもの

イ 送信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と受信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とを接続する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送信し、受信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する方法

ロ 送信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された情報の内容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の閲覧に供し、当該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当該情報を記録する方法

二 磁気ディスクその他これ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情報を確実に記録しておくことができる物をもって調製するファイルに情報を記録したものを交付する方法

2 前項各号に掲げる方法は、受信者がファイルへの記録を出力することにより書面を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第223条 電子公告を行うための電磁的方法

法第二条第三十四号 に規定する措置であつて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前条第一項第一号ロに掲げる方法のうち、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された自動公衆送信装置を使用するものによる措置とする。

第224条 電磁的記録

法第二十六条第二項 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磁気ディスクその他これ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情報を確実に記録しておくことができる物をもって調製するファイルに情報を記録したものとする。

제4장 전자적 방법 및 전자적 기록등

제1절 전자적 방법 및 전자적 기록등

제222조 전자적 방법

① 법 제2조 제34호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목 또는 나목의 것
 - 가. 송신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와 수신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송신하고 수신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 나. 송신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정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당해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
2.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 정보를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물건으로 제작한 파일에 정보를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

② 전항 각 호의 방법은 수신자가 파일기록을 출력하는 것에 의하여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23조 전자공고를 행하기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2조 제34호의 조치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조 제1항 제1호의 방법 중 인터넷에 접속된 자동공중송신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의한 조치를 말한다.

제224조 전자적 기록

법 제26조 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기디스크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 정보를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물건으로 제작한 파일에 정보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第225条 電子署名

1 次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署名又は記名押印に代わる措置は、電子署名とする。

- 一 法第二十六条第二項
- 二 法第二百二十二条第三項
- 三 法第四百九十九条第三項
- 四 法第二百五十条第三項
- 五 法第二百七十条第三項
- 六 法第三百六十九条第四項(法第四百九十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七 法第三百九十三条第三項
- 八 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第四項
- 九 法第四百十二条第四項
- 十 法第五百七十五条第二項
- 十一 法第六百八十二条第三項
- 十二 法第六百九十五条第三項

2 前項に規定する「電子署名」とは、電磁的記録に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情報について行われる措置であって、次の要件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ものをいう。

- 一 当該情報が当該措置を行った者の作成に係るものであることを示すためのものであること。
- 二 当該情報について改変が行われていないかどうか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こと。

第226条 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表示する方法

次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次に掲げる規定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紙面又は映像面に表示する方法とする。

- 一 法第三十一条第二項第三号
- 二 法第七十四条第七項第二号(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三 法第七十六条第五項(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四 法第八十一条第三項第二号(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五 法第八十二条第三項第二号(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六 法第二百二十五条第二項第二号

제225조 전자서명

① 다음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갈음하는 조치란 전자서명을 말한다.

1. 법 제26조 제2항
2. 법 제122조 제3항
3. 법 제149조 제3항
4. 법 제250조 제3항
5. 법 제270조 제3항
6. 법 제369조 제4항 (법 제49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393조 제3항
8. 법 제399조의10 제4항
9. 법 제412조 제4항
10. 법 제575조 제2항
11. 법 제682조 제3항
12. 법 제695조 제3항

② 전항의 “전자서명”이란 전자적 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행해지는 조치로서 다음 요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정보가 당해 조치를 행한 자가 작성한 것인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일 것
2. 당해 정보에 대하여 개변(改變)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제226조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다음 규정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규정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지면 또는 영상면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1조 제2항 제3항
2. 법 제74조 제7항 제2호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76조 제5항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81조 제3항 제2호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82조 제3항 제2호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법 제125조 제2항 제2호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 七 法第百七十一条の二第二項第三号
- 八 法第百七十三条の二第三項第三号
- 九 法第百七十九条の五第二項第三号
- 十 法第百七十九条の十第三項第三号
- 十一 法第百八十二条の二第二項第三号
- 十二 法第百八十二条の六第三項第三号
- 十三 法第二百三十一条第二項第二号
- 十四 法第二百五十二条第二項第二号
- 十五 法第三百十条第七項第二号（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十六 法第三百十二条第五項（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十七 法第三百十八条第四項第二号（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十八 法第三百十九条第三項第二号（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十九 法第三百七十一条第二項第二号（法第四百九十条第五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二十 法第三百七十四条第二項第二号
- 二十一 法第三百七十八条第二項第三号
- 二十二 法第三百八十九条第四項第二号
- 二十三 法第三百九十四条第二項第二号（同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二十四 法第三百九十六条第二項第二号
- 二十五 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一第二項第二号（同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二十六 法第四百十三条第二項第二号
- 二十七 法第四百三十三条第一項第二号
- 二十八 法第四百四十二条第三項第三号
- 二十九 法第四百九十六条第二項第三号
- 三十 法第六百十八条第一項第二号

7. 법 제 171조의2 제2항 제3호
8. 법 제 173조의2 제3항 제3호
9. 법 제 179조의5 제2항 제3호
10. 법 제 179조의10 제3항 제3호
11. 법 제 182조의2 제2항 제3호
12. 법 제 182조의6 제3항 제3호
13. 법 제231조 제2항 제2호
14. 법 제252조 제2항 제2호
15. 법 제310조 제7항 제2호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 법 제312조 제5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법 제318조 제4항 제2호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법 제319조 제3항 제2호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법 제371조 제2항 제2호 (법 제49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법 제374조 제2항 제2호
21. 법 제378조 제2항 제3호
22. 법 제389조 제4항 제2호
23. 법 제394조 제2항 제2호
24. 법 제396조 제2항 제2호
25. 법 제399조의11 제2항 제2호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법 제413조 제2항 제2호
27. 법 제433조 제1항 제2호
28. 법 제442조 제3항 제3호
29. 법 제496조 제2항 제3호
30. 법 제618조 제1항 제2호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三十一 法第六百八十四条第二項第二号

三十二 法第七百三十一条第三項第二号

三十三 法第七百三十五条の二第三項第二号

三十四 法第七百七十五条第三項第三号

三十五 法第七百八十二条第三項第三号

三十六 法第七百九十一条第三項第三号(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三十七 法第七百九十四条第三項第三号

三十八 法第八百一条第四項第三号(同条第五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三十九 法第八百三条第三項第三号

四十 法第八百十一条第三項第三号(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四十一 法第八百十五条第四項第三号(同条第五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四十二 法第八百十六条の二第三項第三号

四十三 法第八百十六条の十第三項第三号

第227条 電磁的記録の備置きに関する特則

次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会社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を電気通信回線で接続した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であつて、当該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された情報の内容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会社の支店において使用され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当該情報を記録するものによる措置とする。

一 法第三十一条第四項

二 法第三百十八条第三項(法第三百二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三 法第四百四十二条第二項

第228条 検査役が提供する電磁的記録

次に掲げる規定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ものは、商業登記規則(昭和三十九年法務省令第二十三号)第三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磁気ディスク(電磁的

31. 법 제684조 제2항 제2호
32. 법 제731조 제3항 제2호
33. 법 제735조의2 제3항 제2호
34. 법 제775조 제3항 제3호
35. 법 제782조 제3항 제3호
36. 법 제791조 제3항 제3호(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7. 법 제794조 제3항 제3호
38. 법 제801조 제4항 제3호(동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9. 법 제803조 제3항 제3호
40. 법 제811조 제3항 제3호(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1. 법 제815조 제4항 제3호(동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2. 법 제816조의2 제3항 제3호
43. 법 제816조의10 제3항 제3호

제227조 전자적 기록의 비치에 관한 특칙

다음 규정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라 한 회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전기통신회선으로 접속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당해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회사의 지점에서 사용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그 정보를 기록하는 것에 의한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1조 제4항
2. 법 제318조 제3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442조 제2항

제228조 검사인이 제공하는 전자적 기록

다음 규정에서 규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라 한 상업등기규칙 (1964년 시행규칙 제23호) 제36조 제1항의 자기디스크(전자적 기록에 한한다) 및 다음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記録に限る。)及び次に掲げる規定により電磁的記録の提供を受ける者が定める電磁的記録とする。

- 一 法第三十三条第四項
- 二 法第二百七条第四項
- 三 法第二百八十四条第四項
- 四 法第三百六条第五項 (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五 法第三百五十八条第五項

第229条 検査役による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の提供

次に掲げる規定 (以下この条において「検査役提供規定」という。)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は、電磁的方法のうち、検査役提供規定により当該検査役提供規定の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の提供を受ける者が定めるものとする。

- 一 法第三十三条第六項
- 二 法第二百七条第六項
- 三 法第二百八十四条第六項
- 四 法第三百六条第七項 (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 五 法第三百五十八条第七項

第230条 会社法施行令に係る電磁的方法

会社法施行令 (平成十七年政令第三百六十四号) 第一条第一項 又は第二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り示すべき電磁的方法の種類及び内容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 一 次に掲げる方法のうち、送信者が使用するもの
 - イ 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のうち次に掲げるもの
 - 1) 送信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と受信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とを接続する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送信し、受信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する方法
 - 2) 送信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された情報の内容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の閲覧に供し、当該情報の提供を受ける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기록의 제공을 받는 자가 정하는 전자적 기록을 말한다.

1. 법 제33조 제4항
2. 법 제207조 제4항
3. 법 제284조 제4항
4. 법 제306조 제5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58조 제5항

제229조 **검사인에 의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제공**

다음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검사인제공규정”이라고 한다) 에서 규정하는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적 방법 중 검사인제공규정에 의하여 당해 검사인제공규정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제공을 받는 자가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3조 제6항
2. 법 제207조 제6항
3. 법 제284조 제6항
4. 법 제306조 제7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58조 제7항

제230조 **회사법 시행령과 관련되는 전자적 방법**

회사법 시행령 (2005년 시행령 제364호) 제1조 제1항 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전자적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다음의 방법 중 송신자가 사용하는 것
 - 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다음의 것
 - 1) 송신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와 수신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송신하고 수신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 2) 송신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정보의 내용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정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그 정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に当該情報を記録する方法

- ロ 磁気ディスクその他これ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情報を確実に記録しておくことができる物をもって調製するファイルに情報を記録したものを交付する方法

二 ファイルへの記録の方式

第2節 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

第231条 定義

この節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は、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百四十九号。以下この節において「電子文書法」という。）において使用する用語の例による。

第232条 保存の指定

電子文書法第三条第一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保存は、次に掲げる保存とする。

- 一 法第七十四条第六項（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保存
- 二 法第七十五条第三項（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法第七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議決権行使書面をいう。）の保存
- 三 法第八十一条第二項（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創立総会の議事録の保存
- 四 法第八十二条第二項（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法第八十二条第一項の書面の保存
- 五 法第七十三條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保存
- 六 法第七十九條の十第二項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保存
- 七 法第八十二条の六第二項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保存
- 八 法第三百十條第六項（法第三百二十五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代理権を証明する書面の保存
- 九 法第三百十一條第三項（法第三百二十五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보를 기록하는 방법

나. 자기디스크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 정보를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물건으로서 조제하는 파일에 정보를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

2. 파일에의 기록의 방식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제231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민간사업자등이 행하는 서면의 보존등에 있어서의 정보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2004년 법률 제149호. 이하 이 절에 있어서 “전자문서법” 이라고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32조 보존의 지정

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의 주무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보존이란 다음의 보존을 말한다.

1. 법 제74조 제6항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보존
2. 법 제75조 제3항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서면 (법 제710조 제1항의 의결권행사서면을 말한다) 의 보존
3. 법 제81조 제2항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의 회의록의 보존
4. 법 제82조 제2항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 제1항의 서면의 보존
5. 법 제1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보존
6. 법 제179조의10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보존
7. 법 제182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보존
8. 법 제310조 제6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보존
9. 법 제311조 제3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法第三百一条第一項 に規定する議決権行使書面をいう。)の保存

十 法第三百十八條第二項 (法第三百二十五條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による株主総会の議事録の保存

十一 法第三百十八條第三項 (法第三百二十五條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株主総会の議事録の写しの保存

十二 法第三百十九條第二項 (法第三百二十五條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法第三百十九條第一項 の書面の保存

十三 法第三百七十一條第一項 (法第四百九十条第五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議事録等の保存

十四 法第三百七十八條第一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その附属明細書又は会計参与報告の保存

十五 法第三百七十八條第一項第二号 の規定による臨時計算書類及び会計参与報告の保存

十六 法第三百九十四條第一項 の規定による監査役会の議事録の保存

十七 法第三百九十九條の十一第一項 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会の議事録の保存

十八 法第四百十三條第一項 の規定による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の保存

十九 法第四百三十二條第二項 の規定による会計帳簿及び資料の保存

二十 法第四百三十五條第四項 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の保存

二十一 法第四百四十二條第一項 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等の保存

二十二 法第四百四十二條第二項 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等の写しの保存

二十三 法第四百九十二條第四項 の規定による財産目録等の保存

二十四 法第四百九十四條第三項 の規定による貸借対照表及びその附属明細書の保存

二十五 法第四百九十六條第一項 の規定による貸借対照表等の保存

二十六 法第五百八條第一項 及び第三項 の規定による帳簿資料の保存

二十七 法第六百十五條第二項 の規定による会計帳簿の保存

二十八 法第六百十七條第四項 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の保存

二十九 法第六百七十二條第一項 、第二項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帳簿資料の

한 의결권행사서면 (법 제301조 제1항의 의결권행사서면을 말한다) 의 보존

10. 법 제318조 제2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의록의 보존
11. 법 제318조 제3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의록의 사본의 보존
12. 법 제319조 제2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법 제319조 제1항의 서면의 보존
13. 법 제371조 제1항 (법 제49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등의 보존
14. 법 제3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 그 부속명세서 또는 회계참여보고서의 보존
15. 법 제3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계산서류 및 회계참여보고서의 보존
16. 법 제3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회의 회의록의 보존
17. 법 제399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등위원회의 의사록의 보존
18. 법 제4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 등의 의사록의 보존
19. 법 제4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및 자료의 보존
20. 법 제4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의 보존
21. 법 제4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등의 보존
22. 법 제4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등의 사본의 보존
23. 법 제49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등의 보존
24. 법 제4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의 보존
25. 법 제4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등의 보존
26. 법 제50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자료의 보존
27. 법 제6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의 보존
28. 법 제6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의 보존
29. 법 제672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자료의 보존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保存

- 三十 法第七百三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社債権者集会の議事録の保存
- 三十一 法第七百三十五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保存
- 三十二 法第七百九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保存
- 三十三 法第八百一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同項各号に定める書面の保存
- 三十四 法第八百十一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保存
- 三十五 法第八百十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同項各号に定める書面の保存
- 三十六 法第八百十六条の十第二項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保存

第233条 保存の方法

1 民間事業者等が電子文書法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前条各号に掲げる保存に代えて当該保存すべき書面に係る電磁的記録の保存を行う場合には、当該書面に記載されている事項をスキャナ（これに準ずる画像読取装置を含む。）により読み取ってできた電磁的記録を民間事業者等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又は磁気ディスクその他これ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事項を確実に記録しておくことができる物をもって調製するファイルにより保存す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2 民間事業者等が前項の規定による電磁的記録の保存を行う場合には、必要に応じ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を出力することにより、直ちに明瞭かつ整然とした形式で、そ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その他の機器に表示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の措置及び書面を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234条 縦覧等の指定

電子文書法第五条第一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縦覧等は、次に掲げる縦覧等とする。

- 一 法第三十一条第二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定款の縦覧等
- 二 法第三十一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縦覧等
- 三 法第七十四条第七項第一号（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代理権を証する書面の縦覧等
- 四 法第七十五条第四項（法第八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

- 30. 법 제7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권자집회의 회의록의 보존
- 31. 법 제735조의2 제2항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보존
- 32. 법 제791조 제2항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보존
- 33. 법 제801조 제3항에 의한 동항 각호에서 정하는 서면의 보존
- 34. 법 제811조 제2항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보존
- 35. 법 제815조 제3항에 의한 동항 각호에서 정하는 서면의 보존
- 36. 법 제816조의10 제2항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보존

제233조 보존의 방법

① 민간사업자등이 전자문서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 조 각 호의 보존에 갈음하여 당해 보존하여야 할 서면을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스캐너 (이에 준하는 화상 독해장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읽어낸 전자적 기록을 민간사업자등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 또는 자기디스크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물건으로 제작한 파일에 보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등이 전항의 전자적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출력함으로써 즉시 명료하고 정연한 형식으로 전자계산기 그 밖의 기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및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4조 열람등의 지정

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의 주무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열람등이란 다음의 열람등을 말한다.

- 1. 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열람등
- 2.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열람등
- 3. 법 제74조 제7항 제1호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열람등
- 4. 법 제75조 제4항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法第七十条第一項 に規定する議決権行使書面をいう。)の縦覧等

五 法第八十一条第三項第一号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創立総会の議事録の縦覧等

六 法第八十一条第四項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創立総会の議事録の縦覧等

七 法第八十二条第三項第一号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法第八十二条第二項 の書面の縦覧等

八 法第八十二条第四項 (法第八十六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法第八十二条第二項 の書面の縦覧等

九 法第二百五十五条第二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株主名簿の縦覧等

十 法第二百五十五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る株主名簿の縦覧等

十一 法第一百七十一条の二第二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 の書面の縦覧等

十二 法第一百七十三条の二第三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同条第二項 の書面の縦覧等

十三 法第一百七十九条の五第二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 の書面の縦覧等

十四 法第一百七十九条の十第三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同条第二項 の書面の縦覧等

十五 法第一百八十二条の二第二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 の書面の縦覧等

十六 法第一百八十二条の六第三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同条第二項 の書面の縦覧等

十七 法第二百三十一条第二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株券喪失登録簿の縦覧等

十八 法第二百五十二条第二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新株予約権原簿の縦覧等

十九 法第二百五十二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る新株予約権原簿の縦覧等

二十 法第三百十条第七項第一号 (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代理権を証する書面の縦覧等

二十一 法第三百十一条第四項 (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議決権行使書面(法第三百一条第一項 に規定する議決

한 의결권행사서면(법 제70조 제1항의 의결권행사서면을 말한다)의 열람등

5.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 회의록의 열람등
6. 법 제81조 제4항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 회의록의 열람등
7. 법 제82조 제3항 제1호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 제2항의 서면의 열람등
8. 법 제82조 제4항 (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 제82조 제2항의 서면의 열람등
9. 법 제1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등
10. 법 제1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열람등
11. 법 제17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종람 등
12. 법 제173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종람 등
13. 법 제179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종람 등
14. 법 제179조의10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종람 등
15. 법 제182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종람 등
16. 법 제182조의6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종람 등
17. 법 제2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실등록부의 열람등
18. 법 제2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예약권원부의 열람등
19. 법 제2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예약권원부의 열람등
20. 법 제310조 제7항 제1호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열람등
21. 법 제311조 제4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서면 (법 제301조 제1항의 의결권행사서면을 말한다)의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 権行使書面をいう。)の縦覧等
- 二十二 法第三百十八条第四項第一号（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株主総会の議事録又はその写しの縦覧等
- 二十三 法第三百十八条第五項（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株主総会の議事録の縦覧等
- 二十四 法第三百十九条第三項第一号（法第三百二十五条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法第三百十九条第二項 の書面の縦覧等
- 二十五 法第三百七十一条第二項第一号（法第四百九十条第五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議事録等の縦覧等
- 二十六 法第三百七十一条第四項（同条第五項（法第四百九十条第五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及び法第四百九十条第五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議事録等の縦覧等
- 二十七 法第三百七十四条第二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の縦覧等
- 二十八 法第三百七十八条第二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及びその附属明細書、会計参与報告並びに臨時計算書類の縦覧等
- 二十九 法第三百八十九条第四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の縦覧等
- 三十 法第三百九十四条第二項第一号（同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監査役会の議事録の縦覧等
- 三十一 法第三百九十九条の十一第二項第一号（同条第三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監査等委員会の議事録の縦覧等
- 三十二 法第四百十三条第二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の縦覧等
- 三十三 法第四百十三条第三項（同条第四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の縦覧等
- 三十四 法第四百三十三条第一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会計帳簿又はこれに関する資料の縦覧等
- 三十五 法第四百四十二条第三項第一号 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等又はその写しの縦覧等
- 三十六 法第四百四十二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等又はその写しの縦

열람등

22. 법 제318조 제4항 제1호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회의록 또는 그 사본의 열람등
23. 법 제318조 제5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회의록의 열람등
24. 법 제319조 제3항 제1호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법 제319조 제2항의 서면의 열람등
25. 법 제371조 제2항 제1호 (법 제49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
다) 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등의 열람등
26. 법 제371조 제4항 (동조 제5항 (법 제49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9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등의 열람등
27. 법 제3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의
열람등
28. 법 제37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 회계
참여보고서 및 임시계산서류의 열람등
29. 법 제3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의
열람등
30. 법 제394조 제2항 제1호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감사회 회의록의 열람등
31. 법 제399조의11 제2항 제1호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감사등위원회의 회의록의 종람 등
32. 법 제4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 등의 회의록의 종람 등
33. 법 제413조 제3항(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 등의 회의록의 종람 등
34. 법 제4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또는 이에 관한 자료의
열람등
35. 법 제4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등 또는 그 사본의 열람등
36. 법 제4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등 또는 그 사본의 열람등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覧等

- 三十七 法第四百九十六条第二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貸借対照表等の縦覧等
- 三十八 法第四百九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貸借対照表等の縦覧等
- 三十九 法第六百十八条第一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の縦覧等
- 四十 法第六百二十五条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の縦覧等
- 四十一 法第六百八十四条第二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社債原簿の縦覧等
- 四十二 法第六百八十四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社債原簿の縦覧等
- 四十三 法第七百三十一条第三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社債権者集会の議事録の縦覧等
- 四十四 法第七百三十五条の二第三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二項の書面の縦覧等
- 四十五 法第七百七十五条第三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縦覧等
- 四十六 法第七百八十二条第三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縦覧等
- 四十七 法第七百九十一条第三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二項の書面の縦覧等
- 四十八 法第七百九十四条第三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縦覧等
- 四十九 法第八百一条第四項第一号(同条第五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同条第三項第一号の書面(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三項第二号の書面、同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三項第三号の書面)の縦覧等
- 五十 法第八百三条第三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縦覧等
- 五十一 法第八百十一条第三項第一号(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同条第二項の書面の縦覧等
- 五十二 法第八百十五条第四項第一号(同条第五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同条第三項第一号の書面(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三項第二号の書面、同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三項第三号の書面)の縦覧等
- 五十三 法第八百十六条の二第三項第一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

- 37. 법 제4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등의 열람등
- 38. 법 제4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등의 열람등
- 39. 법 제6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의 열람등
- 40. 법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의 열람등
- 41. 법 제68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원부의 열람등
- 42. 법 제6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원부의 열람등
- 43. 법 제73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권자집회 회의록의 열람등

- 44. 법 제735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종람 등

- 45. 법 제775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종람 등

- 46. 법 제782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종람 등

- 47. 법 제79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종람 등

- 48. 법 제79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종람 등

- 49. 법 제801조 제4항 제1호(동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한 동조 제3항 제1호의 서면(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2호의 서면,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서면)의 열람 등
- 50. 법 제803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종람 등
- 51. 법 제811조 제3항 제1호(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종람 등
- 52. 법 제815조 제4항 제1호(동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조 제3항 제1호의 서면(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2호의 서면,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서면)의 열람 등
- 53. 법 제816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종람 등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縦覧等

五十四 法第八百十六條の十第三項第一號の規定による同條第二項の書面の縦覧等

第235条 縦覧等の方法

民間事業者等が、電子文書法第五條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前条各号に掲げる縦覧等に代えて当該縦覧等をすべき書面に係る電磁的記録の縦覧等を行う場合は、民間事業者等の事務所に備え置く電子計算機の映像面に当該縦覧等に係る事項を表示する方法又は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ている当該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縦覧等に供す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236条 交付等の指定

電子文書法第六條第一項の主務省令で定める交付等は、次に掲げる交付等とする。

- 一 法第三十一條第二項第二號の規定による定款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 法第三十一條第三項の規定による定款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三 法第三十三條第六項の規定による同條第四項の書面の写しの交付等
- 四 法第一百七十一條の二第二項第二號の規定による同條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五 法第一百七十三條の二第三項第二號の規定による同條第二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六 法第一百七十九條の五第二項第二號の規定による同條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七 法第一百七十九條の十第三項第二號の規定による同條第二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八 法第一百八十二條の二第二項第二號の規定による同條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九 法第一百八十二條の六第三項第二號の規定による同條第二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十 法第二百七條第六項の規定による同條第四項の書面の写しの交付等
- 十一 法第三百六條第七項（法第三百二十五條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54. 법 제816조의10 제3항 제1호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종람 등

제235조 열람등의 방법

민간사업자등이 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조 각 호의 열람등에 갈음하여 당해 열람등을 하여야 할 서면을 전자적 기록으로 열람등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등의 사무소에 비치된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당해 열람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또는 전자적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등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36조 교부등의 지정

전자문서법 제6조 제1항의 주무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교부등이란 다음의 교부등을 말한다.

1. 법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3. 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4항의 서면의 사본의 교부등
4. 법 제171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
5. 법 제173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
6. 법 제179조의5 제2항 제2호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
7. 법 제179조의10 제3항 제2호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
8. 법 제18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
9. 법 제182조의6 제3항 제2호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
10. 법 제20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4항의 서면의 사본의 교부등
11. 법 제306조 제7항 (법 제3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 の規定による法第三百六条第五項の書面の写しの交付等
- 十二 法第三百五十八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同条第五項の書面の写しの交付等
- 十三 法第三百七十八条第二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十四 法第三百七十八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十五 法第四百四十二条第三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等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十六 法第四百四十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計算書類等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十七 法第四百九十六条第二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貸借対照表等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十八 法第四百九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貸借対照表等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十九 法第七百七十五条第三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十 法第七百八十二条第三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十一 法第七百九十一条第三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二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十二 法第七百九十四条第三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十三 法第八百一条第四項第二号（同条第五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同条第三項第一号の書面（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三項第二号の書面、同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あっては同条第三項第三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十四 法第八百三条第三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十五 法第八百十一条第三項第二号（同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

- 의한 법 제306조 제5항의 서면의 사본의 교부등
12. 법 제3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5항의 서면의 사본의 교부등
13. 법 제37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 각 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14. 법 제3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 각 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15. 법 제44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16. 법 제4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류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17. 법 제49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18. 법 제4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등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19. 법 제77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0. 법 제7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1. 법 제79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2. 법 제79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3. 법 제801조 제4항 제2호 (동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3항 제1호의 서면 (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2호의 서면,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서면) 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4. 법 제80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5. 법 제811조 제3항 제2호 (동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 含む。)の規定による同条第二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十六 法第八百十五条第四項第二号(同条第五項及び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同条第三項第一号の書面(同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あつては同条第三項第二号の書面、同条第六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にあつては同条第三項第三号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十七 法第八百十六条の二第三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一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 二十八 法第八百十六条の十第三項第二号の規定による同条第二項の書面の謄本又は抄本の交付等

第237条 交付等の方法

- 1 民間事業者等が、電子文書法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前条各号に掲げる交付等に代えて当該交付等をすべき書面に係る電磁的記録の交付等を行う場合は、次に掲げる方法により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電子情報処理組織を使用する方法のうちイ又はロに掲げるもの
 - イ 民間事業者等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と交付等の相手方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とを接続する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送信し、受信者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する方法
 - ロ 民間事業者等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記録された当該交付等に係る事項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交付等の相手方の閲覧に供し、当該相手方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当該事項を記録する方法(電子文書法第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による交付等を受ける旨の承諾又は受けない旨の申出をする場合にあつては、民間事業者等の使用に係る電子計算機に備えられたファイルにその旨を記録する方法)
 - 二 磁気ディスクその他これ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事項を確実に記録しておくことができる物をもって調製するファイルに当該交付等に係る事項を記録したものを交付する方法
- 2 前項に掲げる方法は、交付等の相手方がファイルへの記録を出力することにより書面を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규정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6. 법 제815조 제4항 제2호 (동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동조 제3항 제1호의 서면 (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2호의 서면,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 제3호의 서면) 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7. 법 제816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한 동조 제1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28. 법 제816조의10 제3항 제2호에 의한 동조 제2항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

제237조 교부등의 방법

- ① 민간사업자등이 전자문서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전조 각 호의 교부등에 갈음하여 당해 교부등을 하여야 할 서면을 전자적 기록으로 교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중 가목 또는 나목의 것
- 가. 민간사업자등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와 교부등의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를 접속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송신하고 수신자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 나. 민간사업자등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된 교부등에 관련된 사항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교부등의 상대방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그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 (전자문서법 제6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교부등을 받는 뜻의 승낙 또는 받지 아니하는 뜻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등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구비된 파일에 그 뜻을 기록하는 방법)
2. 자기디스크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들 수 있는 물건으로 제작하는 파일에 당해 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을 교부하는 방법
- ② 전항의 방법은 교부등의 상대방이 파일에의 기록을 출력하는 것에 의하여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第7編 雑則

第4章 電磁的方法及び電磁的記録等

第238条 交付等の承諾

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令(平成十七年政令第八号)第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示すべき方法の種類及び内容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 一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方法のうち民間事業者等が使用するもの
- 二 ファイルへの記録の方式

제238조 교부등의 승낙

민간사업자등이 행하는 서면의 보존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시행령 제8호)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방법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1. 전조 제1항의 방법 중 민간사업자등이 사용하는 것
2. 파일에의 기록의 방식

附則

附 則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第2条 子会社に関する経過措置

1 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旧株式会社（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以下「会社法整備法」という。）第四十七条に規定する旧株式会社をいう。以下同じ。）の取締役であるもの（会社法整備法第六十四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商法（明治三十二年法律第四十八号。以下「旧商法」という。）第百八十八条第二項第七号ノ二に規定する者（執行役を除く。）に限る。）は、第五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条又は第四条の規定により社外取締役に該当しないものであっても、この省令の施行後最初に開催され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の間は、社外取締役であるものとみなす。

2 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会社法整備法第五十二条に規定する旧大会社及び会社法整備法施行の際現に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経過措置を定める政令第八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旧株式会社の監査役であるもの（会社法整備法第一条第八号の規定による廃止前の株式会社の監査等に関する商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九年法律第二十二号）第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に限る。）は、第五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五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第三条又は第四条の規定により社外監査役に該当しないものであっても、この省令の施行後最初に開催される定時株主総会の終結の時までの間は、社外監査役であるものとみなす。

3 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旧株式会社の監査役であるものであって、旧子会社（旧商法第二百十一条ノ二第一項に規定するその株式会社又は有限会社に相当する株式会社（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これらの株式会社とみなされるものを含む。）をいう。）以外の子会社の取締役若しくは執行役又は支配人その他の使用人（以下この条において「子会社取締役等」という。）を兼ねているものは、第三条又は第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監査役の任期が終了するまでの間は、この省令の施行の日以後も当該子会社取締役等を兼ねることができる。

부 칙 초(抄)

제1조 시행기일

이 시행규칙은 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시행규칙의 시행시 현재 구주식회사(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이하 “회사법정비법”이라고 한다)제47조의 구주식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사인 자(회사법정비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상법(1899년 법률 제48호. 이하 “구상법”이라고 한다)제188조 제2항 제7호의 라목의 자(집행임원은 제외한다)에 한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이 시행규칙의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는 사외이사인 것으로 본다.

② 이 시행규칙의 시행시 현재 회사법정비법 제52조의 구대회사 및 회사법정비법 시행시 현재 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를 정한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구주식회사의 감사인 자(회사법정비법 제1조 제8호에 의한 폐지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등에 관한 상법특례에 관한 법률(1974년 법률 제22호)제18조 제1항의 자에 한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독하여 적용하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이 시행규칙의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의 사외감사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시행규칙의 시행시 현재 구주식회사의 감사인 자로 구자회사(구상법 제211조의 2 제1항의 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상당하는 주식회사(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주식회사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이외의 자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또는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이사등”이라고 한다)을 겸하고 있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기까지는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에도 당해 자회사 이사등을 겸할 수 있다.

附則

4 前項の規定は、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旧有限会社（会社法整備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旧有限会社をいう。）の監査役であるものについて準用する。

5 社外取締役及び社外監査役についての第三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当該他の会社等」とあるのは、「当該他の会社等（法第二条第十五号イ及びロ並びに第十六号イ及びロに規定する子会社並びに法第四百七十八条第七項第一号及び第二号に規定する子会社のうち、この省令の施行前のものについては、旧子会社（附則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旧子会社をいう。）」とする。

6 株主総会において議決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者を定めるための旧商法第二百二十四条ノ三第一項の一定の日が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株主総会についての第六十七条第一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子会社」とあるのは、「旧子会社（附則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旧子会社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とする。

第3条 株式等に関する経過措置

1 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七十九号）附則第九条第二項後段に規定する株式会社についての第三十四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条中「千」とあるのは、「千（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七十九号）附則第九条第二項後段に規定する株式会社（当該株式会社の発行する全部の種類の株式についての単元株式数が千以下のものを除く。）にあつては、同項前段の規定により定めたものとみなされた数（法の施行後単元株式数を変更する場合にあつては、千））」とする。

2 第三十一条第二号、第三十二条第二号ロ、第三十六条第二号、第三十七条第二号及び第五十八条第二号の規定は、当分の間、適用しない。

第4条 旧商法の規定に基づく株主総会の議案の提案に関する経過措置

1 取締役が次の各号に掲げる議案を提出する場合には、株主総会参考書類には、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会社法整備法第九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た旧商法第二百四十五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に関する議案 当該行為を必要とする理由、当該行為に関する契約書の内容及び最近の事業年度の損益の状況

- ④ 전항의 규정은 이 시행규칙의 시행시 현재 구유한회사(회사법정비법 제2조 제1항의 구유한회사를 말한다)의 감사인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⑤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에 관한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당해 다른 회사 등”은 “당해 다른 회사 등(법 제2조 제15호 가목, 나목 및 제16호 가목, 나목의 자회사 및 법 제478조 제7항 제1호, 제2호의 자회사 중 이 시행규칙의 시행 전의 것에 관하여는 구자회사(부칙 제2조 제3항의 구자회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 ⑥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하기 위한 구상법 제224조의3 제1항의 일정한 날이 시행규칙의 시행일 전인 경우 당해 주주총회에 관한 제6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자회사”는 “구자회사(부칙 제2조 제3항의 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로 본다.

제3조 주식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시행규칙의 시행시 현재 상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2001년 법률 제79호)부칙 제9조 제2항 후단의 주식회사에 관한 제3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조 중 “천”은 “천(상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2001년 법률 제79호)부칙 제9조 제2항 후단의 주식회사(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모든 종류주식에 관한 단위주식수가 천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동항 전단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는 수(법의 시행후 단위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천))”으로 본다.
- ② 제31조 제2호, 제32조 제2호 나목, 제36조 제2호, 제37조 제2호 및 제58조 제2호의 규정은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구상법의 규정에 의거한 주주총회의 의안의 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사가 다음 각호의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주주총회 참고서류에는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사법정비법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구상법 제245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에 관한 의안 : 당해 행위를 필요로 하는 이유, 당해 행위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및 최근 사업연도의 손익의 상황

附則

- 二 会社法整備法第九十九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た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の承認に関する議案 次のイ及びロに掲げる株式会社の区分に応じ、当該イ及びロに定める事項
 - イ 大株式会社及びみなし大株式会社 取締役会及び会計監査人の意見並びに監査役会の意見 (各監査役の意見の付記を含む。) の内容の概要
 - ロ イに掲げる株式会社以外の株式会社 取締役会及び監査役の意見の内容の概要
- 三 会社法整備法第九十九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た利益の処分又は損失の処理に関する議案 議案の作成の方針
- 四 会社法整備法第二百五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た合併契約書 (旧商法第四百九条に規定する合併契約書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の承認に関する議案の場合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合併契約書に係る合併を必要とする理由
 - ロ 旧商法第四百八条ノ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ものの内容
 - ハ 当該合併契約書に旧商法第四百九条第一号の規定により定款の変更の規定を記載したときは、その変更の理由
 - ニ 当該合併契約書に旧商法第四百九条第八号の規定により取締役の氏名を記載したときは、当該取締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
 - ホ 当該合併契約書に旧商法第四百九条第八号の規定により監査役の氏名を記載したときは、当該監査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
- 五 会社法整備法第二百五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た合併契約書 (旧商法第四百十条に規定する合併契約書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の承認に関する議案の場合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合併契約書に係る合併を必要とする理由
 - ロ 旧商法第四百八条ノ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ものの内容
 - ハ 当該合併契約書に旧商法第四百十条第六号の規定により取締役の氏名を記載したときは、当該取締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
 - ニ 当該合併契約書に旧商法第四百十条第六号の規定により監査役の氏名を記載したときは、当該監査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
 - ホ 当該合併契約書に係る合併により設立される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の会計監査人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七条に規定する事項

2. 회사법정비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승인에 관한 의안: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주식회사의 구분에 따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사항
 - 가. 대주식회사 및 간주 대주식회사: 이사회 및 회계감사인 의견 및 감사회의 의견(각 감사의 의견의 부기를 포함한다)의 내용의 개요
 - 나. 가목의 주식회사 이외의 주식회사: 이사회 및 감사의 의견의 내용의 개요
3. 회사법정비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이익의 처분 또는 손실의 처리에 관한 의안: 의안의 작성의 방침
4. 회사법정비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합병계약서(구상법 제409조의 합병계약서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승인에 관한 의안의 경우: 다음의 사항
 - 가. 합병계약서에 관련된 합병을 필요로 하는 이유
 - 나. 구상법 제408조의2 제1항 각호의 것의 내용
 - 다. 합병계약서에 구상법 제40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의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그 변경의 이유
 - 라. 합병계약서에 구상법 제40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성명을 기재한 때에는 당해 이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4조의 사항
 - 마. 합병계약서에 구상법 제40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성명을 기재한 때에는 당해 감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6조의 사항
5. 회사법정비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합병계약서(구상법 제410조의 합병계약서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승인에 관한 의안의 경우: 다음의 사항
 - 가. 합병계약서에 관련된 합병을 필요로 하는 이유
 - 나. 구상법 제408조의2 제1항 각호의 것의 내용
 - 다. 합병계약서에 구상법 제41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성명을 기재한 때에는 당해 이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4조의 사항
 - 라. 합병계약서에 구상법 제41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성명을 기재한 때에는 당해 감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6조의 사항
 - 마. 합병계약서에 관련된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 설치회사인 때에는 당해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되는 자에 관한 제77조의 사항

附則

六 会社法整備法第百五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た分割契約書の承認に関する議案の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分割契約書に係る分割を必要とする理由

ロ 旧商法第三百七十四条ノ十八第一項各号に掲げるものの内容 (旧商法第三百七十四条ノ十七第二項第五号に掲げる事項にあつては、当該分割契約書に係る分割によって營業を承継する会社が承継する營業の内容及び主要な権利義務)

ハ 当該分割契約書に旧商法第三百七十四条ノ十七第二項第一号の規定により定款の変更の規定を記載したときは、その変更の理由

ニ 当該分割契約書に旧商法第三百七十四条ノ十七第二項第十一号の規定により取締役の氏名を記載したときは、当該取締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

ホ 当該分割契約書に旧商法第三百七十四条ノ十七第二項第十一号の規定により監査役の氏名を記載したときは、当該監査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

七 会社法整備法第百五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た分割計画書の承認に関する議案の場合 次に掲げる事項

イ 当該分割計画書に係る分割を必要とする理由

ロ 旧商法第三百七十四条ノ二第一項各号に掲げるものの内容 (旧商法第三百七十四条第二項第五号に掲げる事項にあつては、当該分割計画書に係る分割によって設立する会社が承継する營業の内容及び承継する主要な権利義務)

ハ 当該分割計画書に係る分割により設立される株式会社の取締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

ニ 当該分割計画書に係る分割により設立される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 (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 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の監査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

ホ 当該分割計画書に係る分割により設立される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の会計監査人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七条に規定する事項

6. 회사법정비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분할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의안의 경우 : 다음의 사항

가. 분할계약서에 관련된 분할을 필요로 하는 이유

나. 구상법 제374조의18 제1항 각호 것의 내용(구상법 제374조의17 제2항 제5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분할계약서에 관련된 분할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하는 회사가 승계하는 영업의 내용 및 주요한 권리의무)

다. 분할계약서에 구상법 제374조의1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의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그 변경의 이유

라. 분할계약서에 구상법 제374조의17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성명을 기재한 때에는 당해 이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4조의 사항

마. 분할계약서에 구상법 제374조의17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성명을 기재한 때에는 당해 감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6조의 사항

7. 회사법정비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분할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의안의 경우 : 다음의 사항

가. 분할계획서에 관련된 분할을 필요로 하는 이유

나. 구상법 제374조의2 제1항 각호 것의 내용(구상법 제374조 제2항 제5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분할계획서에 관련된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가 승계하는 영업의 내용 및 승계하는 주요한 권리의무)

다. 분할계획서에 관련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이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4조의 사항

라. 분할계획서에 관련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의 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그 주식회사의 감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6조의 사항

마. 분할계획서에 관련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 설치회사인 때에는 그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되는 자에 관한 제77조의 사항

附則

- 八 会社法整備法第百五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た株式交換契約書の承認に関する議案の場合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株式交換契約書に係る株式交換を必要とする理由
 - ロ 旧商法第三百五十四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ものの内容
 - ハ 当該株式交換契約書に旧商法第三百五十三条第二項第一号の規定により定款の変更の規定を記載したときは、その変更の理由
- 九 会社法整備法第百五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た株式移転に係る事項の承認に関する議案の場合 次に掲げる事項
- イ 当該株式移転を必要とする理由
 - ロ 旧商法第三百六十六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ものの内容
 - ハ 当該株式移転により設立される株式会社の取締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四条に規定する事項
 - ニ 当該株式移転により設立される株式会社が監査役設置会社（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株式会社を含む。）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の監査役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
 - ホ 当該株式移転により設立される株式会社が会計監査人設置会社であるときは、当該株式会社の会計監査人となる者についての第七十七条に規定する事項
- 2 前項の規定は、種類株主総会の株主総会参考書類について準用する。
- 3 第百三十三条第六項の規定は、会社法整備法第二十七条第二項又は第九十九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ものとされた営業報告書を定時株主総会に提出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5条 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等に関する経過措置

- 1 次に掲げる規定（これらの規定を第九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は、この省令の施行後最初に開催する株主総会に係る株主総会参考書類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 一 第七十四条第三項及び第四項
 - 二 第七十五条第四号
 - 三 第七十六条第三項及び第四項

8. 회사법정비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에 관한 의안의 경우 : 다음의 사항
- 가. 주식교환계약서에 관련된 주식교환을 필요로 하는 이유
 - 나. 구상법 제354조 제1항 각호의 것의 내용
 - 다. 주식교환계약서에 구상법 제35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의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그 변경의 이유
9. 회사법정비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주식이전에 관련된 사항의 승인에 관한 의안의 경우 : 다음의 사항
- 가. 당해 주식이전을 필요로 하는 이유
 - 나. 구상법 제366조 제1항 각호의 것의 내용
 - 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이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4조의 사항
 - 라.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가 감사설치회사(감사의 감사의 범위를 회계에 관한 것에 한정하는 뜻의 정관의 정함이 있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인 때에는 그 주식회사의 감사로 되는 자에 관한 제76조의 사항
 - 마.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가 회계감사인설치회사인 때에는 그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되는 자에 관한 제77조의 사항

② 전항의 규정은 종류주주총회의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33조 제6항은 회사법정비법 제27조 제2항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기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의 규정(이러한 규정을 제95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시행규칙의 시행후 최초로 개최하는 주주총회의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4조 제3항 및 제4항
2. 제75조 제4호
3. 제76조 제3항 및 제4항

附則

四 第七十七条第五号から第七号まで

五 第八十二条第三項

2 前項の株主総会参考書類に係る第八十九条及び第九十一条 (これらの規定を第九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並びに前条第一項第四号、第五号、第六号、第七号及び第九号 (これらの規定を同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第七十四条」とあるのは「第七十四条第一項及び第二項」と、「第七十五条」とあるのは「第七十五条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と、「第七十六条」とあるのは「第七十六条第一項及び第二項」と、「第七十七条」とあるのは「第七十七条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とする。

3 第一項の株主総会参考書類に係る第九十三条第一項 (第九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九十三条第一項中「超える場合」とあるのは、「超える場合 (四百字を超える場合を含む。)」とする。

第6条 事業報告に関する経過措置

1 次に掲げる規定は、この省令の施行後最初に到来する事業年度の末日に係る事業報告であって、この省令の施行後最初に開催する株主総会において報告すべきもの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一 第百十八条第二号

二 第百二十一条第七号及び第八号

三 第百二十四条

四 第百二十五条

五 第百二十六条第三号から第七号まで

六 第百二十七条

2 前項の事業年度の末日において委員会設置会社である場合における前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次に」とあるのは、「第二号から第六号までに」とする。

第7条 旧商法の規定に基づき付与した新株予約権に関する経過措置

取締役又は監査役が旧商法第二百八十条ノ二十一第一項の決議に基づき発行

4. 제77조 제5호로 내지 제7호

5. 제82조 제3항

② 전항의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관한 제89조 및 제91조(이러한 규정을 제9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전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이러한 규정을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 중 “제74조”는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5조”는 “제75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제76조”는 “제76조 제1항 및 제2항”로 “제77조”는 “제77조 제1호 내지 제4호”로 본다.

③ 제1항의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관한 제93조 제1(제9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93조 제1항 중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경우(4백자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본다.

제6조 사업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의 규정은 이 시행규칙의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의 사업보고서로 이 시행규칙의 시행후 최초로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할 것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18조 제2호

2. 제121조 제7호 및 제8호

3. 제124조

4. 제125조

5. 제126조 제3호 내지 제7호

6. 제127조

② 전항의 사업연도의 말일에 위원회설치회사인 경우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다음에”는 “제2호 내지 제6호”로 본다.

제7조 구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한 신주예약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사 또는 감사가 구상법 제280조의21 제1항의 결의에 의거하여 발행을 받

附 則

を受けた旧商法第二百八十条ノ十九第一項の権利がある場合における第百十三條及び第百十四條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当該権利（当該取締役又は監査役が職務執行の対価として株式会社から受けたものに限る。）を同条第一号に規定する新株予約権とみなす。

第8条 旧商法第二百十一条ノ三第一項第二号の規定により取得した自己株式に関する経過措置

当該事業年度中に旧商法第二百十一条ノ三第一項の決議により買い受けた当該株式会社の株式（同項第一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取得した株式を除く。）がある場合には、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を、第百二十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事項に含むものとする。

第9条 削除

附 則(平成一八年三月二九日法務省令第二八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附則第二条及び第三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一八年四月一四日法務省令第四九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一八年一二月一五日法務省令第八四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은 구상법 제280조의19 제1항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권리(이사 또는 감사가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것에 한한다)를 동조 제1호의 신주예약권으로 본다.

제8조 구상법 제211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당해 사업연도 중 구상법 제211조의3 제1항의 결의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회사의 주식(동항 제1호에 언급한 경우에 있어 취득한 주식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122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삭제

부 칙(2006년 3월 29일 시행규칙 제28호) 초(抄)

제1조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년 4월 14일 시행규칙 제49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년 12월 15일 시행규칙 제84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附 則(平成一八年一二月二二日法務省令第八七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平成十九年一月二十日から施行する。

第3条 創立総会等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省令の施行の日 (以下「施行日」という。) 前に創立総会若しくは種類創立総会、株主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債権者集会又は社債権者集会の招集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創立総会若しくは種類創立総会、株主総会若しくは種類株主総会、債権者集会又は社債権者集会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4条 事業報告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係る事業報告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平成一九年四月二五日法務省令第三〇号)

- 1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平成十九年五月一日から施行する。
- 2 (吸収合併及び株式交換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省令の施行の日前に吸収合併契約又は株式交換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吸収合併又は株式交換に係る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又は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事項及び法第七百八十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の記載又は記録事項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平成一九年七月四日法務省令第三八号)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信託法 (平成十八年法律第百八号) 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부 칙(2006년 12월 22일 시행규칙 제87호) 초(抄)

제1조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창립총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이하 “시행일” 이라고 한다)전에 창립총회 또는 종류창립총회,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 채권자집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그 창립총회 또는 종류창립총회,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 채권자집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사업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그 말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중 최종 사업보고서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년 4월 25일 시행규칙 제30호)

- ①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흡수합병 및 주식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 전에 흡수합병계약 또는 주식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흡수합병 또는 주식교환에 관련된 흡수합병 소멸주식회사 또는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및 법 제782조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의 기재 또는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년 7월 4일 시행규칙 제38호)

제1조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신탁법(2006년 법률 제108호) 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第2条 登記アドレス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省令の施行の際現に存する次に掲げるものに記載された事項（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九百十一条第三項第二十九号イに掲げる事項その他これに相当す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の電子公告規則第三条及び第五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一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六年法律第百九十八号）第二十五条第一項の委託者指図型投資信託約款
- 二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第四十九条の四第一項の委託者非指図型投資信託約款
- 三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第五十八条第二項の外国投資信託の信託約款又はこれに類する書類
- 四 資産の流動化に関する法律（平成十年法律第百五号）第二条第十四項に規定する資産信託流動化計画

附 則(平成一九年七月四日法務省令第三九号)

この省令は、証券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八年法律第六十五号）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二〇年三月一九日法務省令第一二号)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平成二十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第2条 事業報告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省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係る事業報告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3条 組織変更計画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組織変更計画が作成された場合における組織変更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제2조 등기 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시행시 현재 존재하는 다음의 것에 기재된 사항(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제911조 제3항 제29호 가목의 사항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전자공고규칙 제3조 및 제5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1.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1951년 법률 제198호)제25조 제1항의 위탁자지시형 투자신탁 약관
2.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 제1항의 위탁자비지시형 투자신탁 약관
3.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의 외국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또는 이에 유사한 서류
4.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05호) 제2조 제14항의 자산신탁유동화계획

부 칙(2007년 7월 4일 시행규칙 제39호)

이 시행규칙은 증권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6년 법률 제65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3월 19일 시행규칙 제12호)

제1조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2008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이하 “시행일” 이라고 한다)전에 그 말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중 최종의 사업보고서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조직변경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조직변경계획이 작성된 경우조직변경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 則

第4条 計算書類等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開始した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及び事業報告の附属明細書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5条 株式交換等に際しての計算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株式交換契約が締結された場合又は株式移転計画が作成された場合における株式交換又は株式移転に際しての計算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平成二〇年九月二九日法務省令第五三号)

この省令は、株式会社商工組合中央金庫法 (平成十九年法律第七十四号) 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二〇年十一月二八日法務省令第六七号)

この省令は、一般社団法人及び一般財団法人に関する法律及び公益社団法人及び公益財団法人の認定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平成十八年法律第五十号) の施行の日 (平成二十年十二月一日) 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二〇年十一月二八日法務省令第六八号)

この省令は、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二十年法律第六十五号) 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二一年三月一六日法務省令第五号)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제4조 계산서류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계산서류 및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주식교환등 시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주식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는 주식이전계획이 작성된 경우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시의 계산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8년 9월 29일 시행규칙 제53호)

이 시행규칙은 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법(2007년 법률 제74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11월 28일 시행규칙 제67호)

이 시행규칙은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2006년 법률 제50호)의 시행일(2008년 1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년 11월 28일 시행규칙 제68호)

이 시행규칙은 금융상품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8년 법률 제65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년 3월 16일 시행규칙 제5호)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附 則(平成二十一年三月二七日法務省令第七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平成二十一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第2条 議案の追加の請求の時期に関する経過措置

この省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会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百六十条第二項の通知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当該通知に係る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法務省令で定める時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3条 単元株式数に関する経過措置

- 1 施行日前に定められた単元株式数に関する定款の定めは、なお効力を有する。
- 2 会社法施行規則附則第三条第一項の適用を受ける株式会社が施行日以後に単元株式数を変更する場合における同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法の施行後単元株式数を変更する場合にあっては、千)」とあるのは、「(法の施行後単元株式数を変更する場合にあっては、千及び発行済株式総数の二百分の一に当たる数)」とする。

第4条 創立総会参考書類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招集の手続が開始された創立総会に係る創立総会参考書類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5条 株主総会参考書類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以後にその末日が到来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初のものに係る定時株主総会より前に開催される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係る株主総会参考書類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6条 事業報告等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係る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부 칙(2009년 3월 27일 시행규칙 제7호)(초(抄))

제1조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안의 추가의 청구의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전에 회사법(2005년 법률 제 86호)제160조 제2항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통지에 관한 동조 제3항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때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단원주식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일 전에 정해진 단원주식수에 관한 정관의 정함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② 회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가 시행일 이후에 단원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 동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중 “(법의 시행후 단원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천)”은 “(법의 시행후 단원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천 및 발행된 주식 총수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로 본다.

제4조 창립총회 참고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소집의 절차가 개시된 창립총회의 창립총회 참고서류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후에 그 말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중 최초의 정기주주총회 보다 이전에 개최된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의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사업보고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그 말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중 최종의 사업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 則

第7条 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関する経過措置

施行日前に招集の手続が開始された社債権者集会に係る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平成二一年一二月一一日法務省令第四六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二二年九月三〇日法務省令第三三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二三年三月三一日法務省令第六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第4条 会社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

前条による改正後の会社法施行規則第百二条(第三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は、平成二十三年四月一日以後に開始する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及び連結計算書類についての会計参与報告について適用し、同日前に開始する事業年度に係る計算書類及び連結計算書類についての会計参与報告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平成二三年一一月一六日法務省令第三三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一条の規定(会社法施行規則第四条第一号の改正規定に限る。)は、資本市場及び金融業の基盤強化のため

제7조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소집의 절차가 개시된 사채권자집회의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9년 12월 11일 시행규칙 제46호)(초(抄))

제1조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년 9월 30일 시행규칙 제33호)(초(抄))

제1조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년 3월 31일 시행규칙 제6호)(초(抄))

제1조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회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전조에 의한 개정 후 회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3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2011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계산서류 및 연결 계산서류에 관한 회계참여보고서에 관하여 적용하고 동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계산서류 및 연결계산서류에 관한 회계참여보고서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1년 11월 16일 시행규칙 제33호)(초(抄))

제1조 시행 기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회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 한한다)은 자본시장 및 금융업의 기반강화를 위한

附 則

の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平成二十三年法律第四十九号) 附則第一条第二号に掲げる規定の施行の日 (平成二十三年十一月二十四日) から施行する。

第2条 会社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

1 第一条の規定 (会社法施行規則第四条第一号の改正規定を除く。次項において同じ。) による改正後の会社法施行規則 (以下「新会社法施行規則」という。) の規定は、平成二十五年四月一日以後に開始する事業年度の初日から適用し、同月一日前に開始する事業年度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ただし、平成二十三年四月一日以後に開始する事業年度の初日 (同月一日からこの省令の施行の日の前日までに開始した事業年度については、この省令の施行の日) から、新会社法施行規則の規定を適用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会社法施行規則 (以下「旧会社法施行規則」という。) 第四条の規定により子会社に該当しないものとされた特別目的会社を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新会社法施行規則の規定を適用することにより連結の範囲に含めた事業年度 (平成二十三年四月一日からこの省令の施行の日の前日までに開始した事業年度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 に係る計算書類及び連結計算書類は、当該特別目的会社が当該事業年度の初日に子会社であったと仮定して作成することができる。

3 旧会社法施行規則第四条の規定により子会社に該当しないものとされた特別目的会社を初めて連結の範囲に含めた事業年度における当該連結の範囲の変更は、会計方針 (会社計算規則第二条第三項第五十八号に規定する会計方針をいう。) の変更とみなして、会社計算規則第百二条の二第一項 (第三号並びに第四号イ及びハを除く。) の規定を適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中「次に掲げる事項 (重要性の乏しいものを除く。)」とあるのは、「次に掲げる事項及び当該事業年度の期首における利益剰余金に対する影響額 (これらのうち重要性の乏しいものを除く。)」とする。

附 則 (平成24年12月28日法務省令第47号)

この省令は、非訟事件手続法及び家事事件手続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

금융상품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1년 법률 제49호)부칙 제1조 제2호의 규정의 시행일(2011년 11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사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1조의 규정(회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의한 개정 후 회사법 시행규칙(이하 “신회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적용하고 동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2011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동월 1일로부터 이 규칙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신회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 회사법 시행규칙(이하 “구회사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특별목적회사를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회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연결의 범위에 포함한 사업연도(2011년 4월 1일로부터 이 규칙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계산서류 및 연결계산서류는 당해 특별목적회사가 그 사업연도의 초일에 자회사였다고 가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구회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 특별목적회사를 최초로 연결 범위에 포함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연결의 범위의 변경은 회계방침(회사계산규칙 제2조 제3항 제58호의 회계방침을 말한다)의 변경으로 보아 회사계산규칙 제102조의2 제1항(제3호와 제4호 가목 및 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다음의 사항(중요성이 부족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사항 및 당해 사업연도의 기수에 있어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영향액(이 중 중요성이 부족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부 칙 (2012년 12월 28일 시행규칙47호)

이 시행규칙은 비송사건절차법 및 가사사건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附則

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の日(平成二十五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27年2月6日法務省令第6号) 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会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の日(平成二十七年五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略

二 第一条中会社法施行規則第一百三条第二項の改正規定 平成二十七年四月一日

第2条 会社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

1 この省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招集の手続が開始された創立総会又は種類創立総会に係る創立総会参考書類の記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施行日以後にその末日が到来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初のものに係る定時株主総会より前に開催される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係る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については、第一条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会社法施行規則(以下「新会社法施行規則」という。)第七十四条第三項、第七十六条第三項及び第七十七条第八号(これらの規定を新会社法施行規則第九十五条第三号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3 前項の株主総会参考書類に係る新会社法施行規則第七十四条の三第三項(新会社法施行規則第九十五条第三号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他の者」とあるのは「他の会社」と、「子会社等」とあるのは「子会社」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項第一号の規定は、適用しない。

4 第二項の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に係る特定関係事業者については、新会社法施行規則第二条第三項第十九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5 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施行日前に招集の手続が開始された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係る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

정비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년 2월 6일 시행규칙 제6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조 중 회사법시행규칙 제103조 제2항의 개정규정 : 2015년 4월 1일

제2조 회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이하“시행일”이라 한다)전에 소집절차가 개시된 창립총회 또는 종류창립총회에 관한 창립총회참고서류 기재에 관하여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② 시행일 이후에 그 말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중 첫 정기주주총회 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주주총회참고서류의 기재에 관해서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회사법시행규칙(이하“신회사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76조 제3항 및 제77조 제8호(이러한 규정을 신회사법시행규칙 제95조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상관없이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③ 전항의 주주총회참고서류에 관한 신회사법시행규칙 제74조의3 제3항(신회사법시행규칙 제95조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다른 자”는 “다른 회사”로, “자회사등”은 “자회사”로 한다. 이 경우 동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의 주주총회참고서류 기재에 관련된 특정관계사업자에 관해서는 신회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19호의 규정에 상관없이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⑤ 전3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시행일 전에 소집절차가 개시된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주주총회참고서류 기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 則

る。

6 施行日前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係る株式会社の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の記載又は記録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ただし、施行日以後に監査役の監査を受ける事業報告については、新会社法施行規則第二百二十四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を適用する。

7 施行日以後にその末日が到来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初のものに係る株式会社の事業報告に係る新会社法施行規則第一百八条第二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運用状況」とあるのは、「運用状況(会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十六年法律第九十号)の施行の日以後のものに限る。)」とする。

8 前項の事業報告及びその附属明細書に係る新会社法施行規則第一百八条第五号及び第二百二十八条第三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らの規定中「含む」とあるのは、「含み、会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十六年法律第九十号)の施行の日以後にされたものに限る」とする。

附 則（平成27年12月28日法務省令第六一号）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平成二十八年三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28年1月8日法務省令第1号）抄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第2条 会社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

1 この省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招集の手続が開始された創立総会、種類創立総会、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係る創立総会参考書類又は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施行日前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係る株式会社の事業報告の記載又は記録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⑥ 시행일 전에 말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중 최종 것에 관한 주식회사사업보고 및 그 부속명세서의 기재 또는 기록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단지 시행일 이후에 감사의 감사를 받는 사업보고에 관해서는 신회사법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시행일 이후에 그 말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중 최초 것에 관한 주식회사사업보고에 관련된 신회사법시행규칙 제118조 제2호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호 중 “운용상황”은“운용상황(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90호)의 시행일 이후의 것에 한한다)”로 한다.

⑧ 전항의 사업보고 및 그 부속명세서에 관한 신회사법시행규칙 제118조 제5호 및 제28조 제3항의 규정적용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 중“포함한다”는“포함하며,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90호)의 시행일 이후에 된 것에 한한다”로 한다.

부 칙 (2015년 12월 28일 시행규칙 제61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년 1월 8일 시행규칙 제1호) 초(抄)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이하“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소집절차가 개시된 창립총회, 종류창립총회,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창립총회참고서류 또는 주주총회참고서류기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시행일 전에 그 말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중 최종의 것에 관한 회사사업보고 기재 또는 기록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

附 則（令和二年一月二七日法務省令第五二号）

第1条 施行期日

この省令は、会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元年法律第七十号。以下この条及び次条第十三項において「会社法改正法」という。）の施行の日（令和三年三月一日。以下「施行日」という。）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一条第二表に係る改正規定〔中略〕は、会社法改正法附則第一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規定の施行の日（次条第四項及び第五項において「一部施行日」という。）から施行する。

第2条 会社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

1 施行日前に招集の手続が開始された創立総会又は種類創立総会に係る創立総会参考書類の記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施行日前に会社法（以下「法」という。）第七十一条第一項の株主総会の決議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に係る法第七十一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の記載又は記録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3 施行日前に法第八十条第二項の株主総会（株式の併合をするために種類株主総会の決議を要する場合にあっては、当該種類株主総会を含む。）の決議が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株式の併合に係る法第八十二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書面又は電磁的記録の記載又は記録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4 一部施行日前に法第九十九条第二項に規定する募集事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募集に応じて募集株式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5 一部施行日前に法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募集事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募集に応じて募集新株予約権の引受けの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6 第一条の規定（同条第一表に係る改正規定に限る。）による改正後の会社法施行規則（以下「新会社法施行規則」という。）第七十四条第一項第五号及び第六号、第七十四条の三第一項第七号及び第八号、第七十五条第五号及び第六号、第七十六条第一項第七号及び第八号並びに第七十七条第六号及び第七号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る補償契約及び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について

부 칙 (2020년 11월 27일 시행규칙 제52호)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9년 법률 제70호.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3항에서 ‘회사법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2021년 3월 1일. 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제2표와 관련된 개정 규정 [중략]은 회사법 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시행일(다음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일부시행일’이라 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시행일 이전에 소집절차가 개시된 창립총회 또는 종류창립총회에 관한 창립총회 참고서류의 기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② 시행일 이전에 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1조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그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 제171조의2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의 기재 또는 기록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③ 시행일 이전에 법 제180조 제2항의 주주총회(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그 주식병합에 관한 법 제182조의2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의 기재 또는 기록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④ 일부 시행일 이전에 법 제199조 제2항의 모집사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의 그 모집에 응하여 모집주식의 인수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⑤ 일부 시행일 이전에 법 제238조 제1항의 모집 사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의 그 모집에 응하여 모집신주예약권의 인수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 ⑥ 제1조(동조 제1표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에 의한 개정 후의 회사법시행규칙(이하 ‘신회사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74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제75조 제5호 및 제6호, 제7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와 제77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보상계약 및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에 적용한다.

附則

適用する。

7 施行日以後にその末日が到来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初のものに係る定時株主総会より前に開催される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係る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については、新会社法施行規則第七十四条第三項第三号並びに第四項第七号ロ及びハ、第七十四条の二、第七十四条の三第三項第三号並びに第四項第七号ロ及びハ並びに第七十六条第三項第三号並びに第四項第六号ロ及びハ(これらの規定を会社法施行規則第九十五条第三号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8 前項の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に係る社外役員及び社外取締役候補者については、新会社法施行規則第二条第三項第五号及び第七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9 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施行日前に招集の手続が開始された株主総会又は種類株主総会に係る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10 新会社法施行規則第一百十九条第二号の二、第二百一十一条第三号の二から第三号の四まで、第二百一十一条の二、第二百五条第二号から第四号まで及び第二百二十六条第七号の二から第七号の四まで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締結された補償契約及び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について適用する。

11 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施行日前にその末日が到来した事業年度のうち最終のものに係る株式会社の事業報告の記載又は記録及び施行日以後にその末日が到来する事業年度のうち最初のものに係る株式会社の事業報告における第一条(同条第一表に係る改正規定に限る。)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会社法施行規則第二百二十四条第二項の理由の記載又は記録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12 前項の事業報告の記載又は記録に係る社外役員については、新会社法施行規則第二条第三項第五号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13 施行日前に会社法改正法による改正前の法第六百七十六条に規定する事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募集社債及び施行日前に法第二百三十八条第一項に規定する募集事項の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その新株予約権付社債の発行の手続については、新会社法施行規則第六十二条及び第六十三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なお従前の例による。

⑦ 시행일 이후에 말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중 최초의 정기주주총회보다 이전에 개최된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기재는 신회사법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7호 나목 및 다목,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3항 제3호, 제4항 제7호 나목 및 다목, 제76조 제3항 제3호, 제4항 제6호 나목 및 다목(이들 규정을 회사법시행규칙 제85조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⑧ 전항의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기재에 관한 사외임원 및 사외이사후보자는 신회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5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⑨ 전 3항 이외에 시행일 전에 소집절차가 개시된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와 관련된 주주총회 참고서류의 기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⑩ 신회사법시행규칙 제119조 제2호의2, 제121조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4, 제121조의2, 제125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26조 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는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보상계약 및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에 적용한다.

⑪ 전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시행일 전에 말일이 도래한 사업연도 중 최종의 것에 관한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의 기재 또는 기록 및 시행일 이후에 말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중 최초의 것에 관한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에서의 제1조(동조 제1표와 관련된 개정규정에 한한다)에 의한 개정 전 회사법시행규칙 제124조 제2항의 이유의 기재 또는 기록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⑫ 전항의 사업보고서의 기재 또는 기록에 관한 사외임원은 신회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⑬ 시행일 전에 회사법개정법에 의한 개정 전의 법 제676조의 사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의 그 모집사채 및 시행일 전에 법 제238조 제1항의 모집사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의 그 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절차는 신회사법시행규칙 제162조 및 제1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附則

14 施行日前に招集の手続が開始された社債権者集会に係る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及び議決権行使書面の記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 ⑭ 시행일 전에 소집절차가 개시된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 및 의결권행사서면의 기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판 역자 해제

본서는 2018년에 출판한 일본회사법(역서)의 두 번째 개정판(제3판)이다. 2005년 일본회사법이 단행법으로 제정된 이래 2014년에 1차 개정이 있었고, 2019년에 2차 개정이 있었다. 본서는 2019년에 개정된 부분을 번역하여 기존의 개정판에 추가한 것이다. 이하 2019년에 단행된 회사법 개정의 경위와 내용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I. 개정 경위와 개정 내용의 개요

1. 개정 경위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9년 법률 제70호. 이하 개정법) 및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2019년 법률 제71호. 이하 정비법)이 2019년 12월 4일을 국회를 통과하고 동년 12월 11일에 공포되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 자료의 전자제공제도와 회사지점 소재지 등기제도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규칙도 2020년 11월 27일 공포되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에 관한 부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제1차 개정 시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 제90호) 부칙 제25조에서 “개정법 시행 후 2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사외이사의 선임 상황 기타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에 관해 검토를 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 등 소요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주로 주주총회의 운영과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일본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일본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일본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개정 내용의 개요

개정법은 2014년 제1차 개정에 이은 제2차 개정으로서 그 내용은 비교적 광범위 하지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의 운영과 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개정

- ①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제도 창설
- ② 과도한 수의 주주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

(2)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개정

- ① 임원보수제도의 개선
- ② 회사보상제도의 도입
- ③ 임원등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의 신설

(3) 사외이사 등 이사 관련 제도의 개선

- ①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 집행의 위탁
-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 ③ 성년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 및 피보좌인(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이사결격사유조항 삭제

(4) 공시·등기제도의 개선

- ① 전부취득조항부주식의 취득, 주식병합 시의 사전공시사항 확대
- ② 신주예약권에 관한 등기사항 개선
- ③ 회사지점소재지 등기제도 폐지

(5) 실무에서 제도도입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

- ① 사채관리보조자제도의 창설
- ② 주식교부제도의 신설
- ③ 의결권행사서면의 열람청구제도 개선
- ④ 임원책임소송에서 화해의 경우 감사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의 신설

II. 개정 내용

1. 주주총회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개정

(1) 주주총회 자료의 전자제공제도의 창설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제도란 주주총회 참고서류 등(주주총회자료)을 자사 홈페이지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주주에게 그 웹사이트의 주소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주주총회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25조의 2~제325조의7 등).

개정 전에는 주주총회자료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주의 개별 동의를 얻어야 했고, 그 결과 이용율이 저조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는 주주의 개별 동의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자료를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인쇄나 우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이용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자료의 웹사이트 게재일에 관해서도 주주총회 3주 전 또는 소집 통지발송일 중 빠른 날로 하여(제325조의3 제1항), 주주총회 자료를 소집통지 발송일인 주주총회 2주 전보다 1주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주주총회 자료의 공개가 소집통지 발송일보다 1주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주는 종래보다 조기에 주주총회 자료를 제공받고 의안 등에 관해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주를 위하여 서면교부 청구제도를 마련하여,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325조의 5 1항). 그리고 정비법에서는 전자등록주식(진체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 제도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사채, 주식 등의 진체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2 제1항).

(2) 과도한 수의 주주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

최근 일본에서는 1명의 주주가 100개 이상의 의안에 관해 주주제안을 하는 등 주주제안권이 남용적으로 행사되는 예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 심의 시간이 특정 주주가 제안한 의안에 과도하게 할애되고, 의안 검토나 소집 통지의 인쇄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주주총회의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주주가 동일 주주총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의안의 수를 10개로 제한하고 10개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05조 제4항, 제5항). 이 제한은 의안제안에 한정되고, 의제제안이나 주주총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정동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개의 의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원(이사, 회계참여, 감사,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제안의 경우에는 임원의 종류나 후보자의 수에 관계 없이 하나의 의안으로 간주하고(제305조 제1항 제1호, 제2호), 회계감사인의 부재임명 제안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수에 관계 없이 하나의 의안으로 본다(제305조 제1항 제3호). 정관변경 제안의 경우에도 다른 결의가 이루어지면 결의의 내용이 서로 모순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하나의 의안으로 간주한다(제305조 제4

항 제4호). 그리고 10개의 의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안 주주가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의안에 관해 우선순위를 매긴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판단한다(제305조 제5항).

2. 이사 등 임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개정

(1) 임원보수제도의 개선

개정 전에는 이사 등 임원(이하 ‘이사’라 한다)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구법 제361조 제1항), 구체적인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무에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에 관해 정하고 이사 개인별 보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이는 보수총액만 주주가 결정하면 그 범위에서 이사 개인별 보수를 이사회가 결정 하더라도 보수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사 보수를 이사와 주주간의 이익상반의 문제로 봐왔던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이사 보수를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업적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으로 보는 업적연동형 보수제도가 확산되면서 이사 개인별 보수의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여 보수의 결정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에 연동하여 보수를 적절하고 원활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보수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사가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재산상의 이익, 즉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제361조 제1항). 이때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할 사항(제361조 제1항)은. ① 금전 보수(확정액 보수)의 경우에는 그 금액(제1호), ②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전보수(불확정액 보수)의 경우에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제2호), ③ 주식 보수의 경우에는 부여하는 주식수의 상한(제3호), ④ 신주예약권(스톡옵션)의 경우에는 부여하는 신주예약권수의 상한(제4호), ⑤ 신주인수권 및 신주예

약권의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보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행사로 인수하게 되는 주식수와 신주예약권수의 상한(제5호), ⑥ 사택과 같은 비금전 보수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사항에 관해 그것이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361조 제4항).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개인별 보수 내용에 관해서도 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사 개인별 보수의 내용에 관한 결정 방침(보수결정방침)을 정하여야 한다(제361조 제7항). 보수결정방침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주총회 결의 사항, 이사회 결의로 보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사항, 업적연동보수에 관한 사항, 보수로서 회사가 교부한 주식 또는 신주예약권(이른바 equity 보수)에 관한 사항, 보수 종류별의 총액에 관한 사항 등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회사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4호 ~ 제6의3호). 특히 보수결정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보수에 관한 실무의 변화나 발전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회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수의 종류(고정보수, 업적연동형보수 등), 업적연동형 보수의 경우 이용하는 업적지표 등의 내용이나 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등이다(제98조의5).

(2) 회사보상제도의 도입

회사보상제도란 이사 등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임원과 한 약정에 따라 사전에 혹은 사후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회사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회사보상을 둘러싸고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회사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나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회사보상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임원으로 영입하고, 임원이 직무집행에 따르는 책임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직무집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써 그 의의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보상 범위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면 모랄해저드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보상계약에 관해 정의 규정을 두고 회사가 임원과 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이사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사회 비설치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그 보상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상계약은 ① 임원 등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받거나 또는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방어비용), ② 임원 등이 그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입게 된 손실(화해의 경우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430조의2 제1항). 그런데 임원이 제3자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입게 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보상을 인정하게 되면 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임원의 임무해태 책임의 감면에 관한 규제(제424조~제427조)를 잠탈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처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방어비용)의 대해서는 보상을 인정한다(제430조의2 제1항 제1호). 보상계약 체결 후에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그 보상계약에 따라 임원에 대해 보상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보상계약에 의해 업무집행의 적정성이 훼손되고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상이 가능한 비용이나 손실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먼저,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의 손실이나 방어비용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없다. ① 보상비용 중 통상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제430조의2 제1항 제1호), ②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실 중 회사가 이를 보상하면 임원이 회사에 대해 임무해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제430조의2 제2항 제2호), ③ 임원이 직무집행에 관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경우(제430조의2 제2항 제3호)이다. 또한 ④ 회사가 보상계약에 따라 임원에게 방어비용을 보상한 경우이더라도 해당 임원이 자기나 제3자의 부정

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를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는 해당 임원에 대해 방어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30조의2 제3항). 이러한 제한의 준수를 전제로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규제는 보상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제430조의2 제6항, 제7항)

그리고,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을 한 이사 및 그 보상을 받은 이사(지명위원회등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는 지체 없이 해당 보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제430조의2 제4항, 제5항), 공개회사는 보상계약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제435조 제2항)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회사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2호, 제123조 제3호의2~제3호의4).

(3) 임원등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의 신설

임원 등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 즉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이란 주식회사가 보험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중에서 임원 등이 그 직무집행에 관해 책임을 지거나 또는 책임을 추궁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전하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제430조의3 제1항). 실무상은 D&O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이라 한다. 이 보험은 일본에서는 이미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회사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해서도 해석상 확립된 원칙이 없다.

D&O보험에 대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임원으로 확보하고 책임 부담에 따른 임원의 소극적인 업무집행(업무집행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서의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으로, 배상 범위에 따라서는 업무집행의 적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회사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것은 이사와 회사 간에 이익상반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동 보험이 적절하게 체결·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등에 관해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D&O보험은 보상계약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보상계약에서는 임원 등

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은 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D&O보험에서는 보험자(손해보험회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보상계약은 회사와 임원 간에 체결되는 데 반해, D&D 보험에서는 보험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므로 불합리한 계약 내용은 보험자에 의해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D&O보험에서는 임원 등이 법령위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되는 것이 통상이다. 그래서 회사법은 D&O보험에서는 보상계약과는 달리 계약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임원 등이 부담하게 되는 방어비용 외에도 제3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D&O보험은 회사의 보험료 부담으로 임원이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므로 이익상반의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고, 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원 등의 모랄해저드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개정법은 회사가 D&O보험을 체결하려면 이사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이사회 비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30조의3 제1항, 제399조의13 제5항 제13호, 제416조 제4항 제15호 참조). 이러한 제한의 준수를 전제로 이익상반 거래에 대한 규제는 보상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 보험계약에 관한 일정한 사항은 사업보고서(435조 2항)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회사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2호의2, 제121조의2).

3. 이사 관련 제도의 개선

(1)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의 위탁

MBO 거래에서처럼 주주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 있거나 모자회사 간의 거래처럼 자회사의 이사가 지배주주인 모회사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MBO 경우에는 피매수회사 측에서, 모자회사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자회사 측에서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교섭을 하는 등 업무에 간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이사는 사외이사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법에서는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 있거나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사회 의 결의로 해당 업무의 집행을 사외이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384조의2 제1항, 제2항), 사외이사가 업무집행이사의 지휘명령 하에 위탁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가 위탁된 업무를 집행하더라도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제384조의2 제3항).

(2)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

개정법에서는 감사회 설치회사(공개회사이면서 대회사에 한함)이면서 금융상품거래법 상의 유가증권보고서 제출회사에 한해 사외이사의 선임의 의무화하였다(제327조의2). 이는 2019년 7월 현재 동경증권거래소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비율이 98.4%(제1부 시장의 경우에는 99.9%)에 이르는 등 이미 사외이사 선임이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정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3) 성년피후견인 등에 관한 이사결격사유조항 삭제

성년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과 피보좌인(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이사 등의 결격사유조항(구법 제331조 제1항 제2호)을 삭제하여 성년피후견인 등도 이사 등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년후견제도와 보좌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성년피후견인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이 성년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에 대신하여 취임승낙을 함으로써, 피보좌인의 경우에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좌인이 취임승낙을 하거나 또는 민법 제876조의4 제1항의 대리권을 얻은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동의를 얻어 취임승낙을 함으로써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1조의2 제1항~제3항).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이사가 된 성년피후견인 등이 이사의 자격에서 행한 행위는 행위능력제한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제331조의2 제4항).

4. 주식교부제도의 신설

주식교부제이란 주식회사(주식교부 모회사, 제774조의3 제1항 제1호)가 다른 주식회사(주식교부 자회사, 동호)를 그 자회사로 하기 위하여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해당 주식양도인에게 해당 주식의 대가로서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2호의2). 여기서 자회사는 형식기준에 따른 자회사(의결권의 50% 초과 여부로 판단, 회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를 의미하고 실질기준에 의한 자회사(동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는 포함하지 않는다(동규칙 제4조의2).

주식교부는 A회사(주식교부 모회사)가 B회사(주식교부 자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A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 B회사를 자회사로 만드는 조직재편제도이다(제2조 제32호의2, 제774조의2~제774조의11, 제816조의2~제816조의10 등). 주식교부는 A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B회사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B회사 주식'전부'를 취득하는 주식교환과 다르다. 따라서 주식교환을 하게 되면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데 반해, 주식교부의 경우에는 B회사는 단순 자회사가 된다. 그런 점에서 주식교부는 부분적 주식교환이라 한다.

개정 전에는 기존 회사 간에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는 주식교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교환의 방법은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할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단순 모자회사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현물출자의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C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D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D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그 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C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의 경우에는 ① 원칙적으로 감사인의 조사(제207조)가 필요하고 ② 현물출자 재산인 주식에 대한 평가 여하에 따라 이사의 부족액 전보책임(제212조, 제213조)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실무에 있어서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았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식교부제도를 신설하여 현물출자이면 적용될 ①과 ②를 면제함으로써 조직재편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식교부는 주식교부 자회사 주주에 의한 현물출자가 아니라 조직 재편행위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 것이 특징인데,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회사(주식교부 모회사)는 주식교부계획을 작성하고(제774조의2, 제774조의3)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816조의3, 제309조 2항 제12호). 이 계획에서는 A 회사가 B회사(주식교부 자회사)의 주주로부터 취득할 주식 수의 하한을 정하여야 하고(제774조의3 제1항 제2호), 이 하한은 주식교부의 결과 B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수로 해야 한다(동조 제2항). 응모 주식수가 이 하한에 미달할 경우에는 주식교부 절차는 중단된다. 주식교부의 대가의 적어도 일부는 반드시 A회사의 주식이어야 한다(동조 제1항 제3호.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재산이어도 상관없다. 동항 제5호). 주식 이외의 대가를 주식교부의 대가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보호 절차가 필요하다(제816조의8). 다만 A회사가 교부하는 주식에 1주당 순자산액을 곱한 금액 등이 B회사의 순자산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다(제816조의4 제1항). 주식교부에 반대하는 A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제816조의6 제1항)

한편, B회사의 경우는 주식교환과는 달리 주식교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단편적 조직재편), 따라서 B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필요 없고, B회사의 주주가 개별적으로 A회사와 주식교부에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A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게 된다. 이 경우 A회사는 B회사 주주에게 주식교부계획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제774조의4 제1항), 주식교부에 응모(합의)한 자 중 어느 응모자로부터 몇 주의 주식을 취득하는가는 A회사의 재량이다(제774조의5). 배정을 받은 응모자는 주식교부의 효력발생일에 그 주식을 A회사에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효력발생일에 A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교부에 응모하지 않은 주주는 주식교부가 완료되어 B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가 된 후에도 계속 B회사의 주주로 남게 된다.

5. 사채 제도의 개선

(1) 사채관리보조자제도의 창설

사채관리보조자제도란 사채발행회사가 사채관리 업무를 수행할 사채관리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채관리자보다 권한, 의무 및 책임이 제한된 사채관리보조자를 선정하여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동법 714조의 2~714조의 7, 717조 3항, 737조 1항 등).

사채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원리금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관리 업무를 수행할 사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제702조 본문). 다만 ① 사채의 금액이 1억엔 이상인 경우와 ② 사채권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사채의 총액을 사채의 최저금액으로 나눈 수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다(제702조 단서, 회사법시행규칙 169조). 실무에서는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비설치채)가 사채관리자를 두는 경우(설치채)보다 훨씬 많다(2020년 발행 사채 중 설치채는 약 20% 정도이었음). 이 경우에는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의 지급사무 등을 행하는 자(재무대리인)를 임의로 두는 예가 많지만, 재무대리인은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사채권자에 대한 선관의무나 충실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채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관리자보다 권한이나 책임이 제한된 사채관리보조자를 선정하여 그자에게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채관리보조자는 사채발행회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사채권자를 위해 사채관리의 보조를 위탁받은 자이고(제714조의 2) 사채권자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채권자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효과는 사채권자에게 미친다. 사채관리보조자의 자격은 사채관리자의 자격자(은행, 신탁회사 등)나 변호사, 변호사법인이어야 한다(제714조의 3, 회사법 시행규칙 제171조의 2). 다만 사채관리보조자의 선정은 회사의 재량이고, 특히 담보부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의 수탁자가 사채를 관리하므로 사채관리보조자를 둘 수 없다. 사채관리보조자는 사채권자에 대해 공평·성실의무와 선관의무를 지고(제714조

의7, 제704조), 사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도 지고 있다(제714조의4 제4항). 이러한 의무나 사채권집회 결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사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14조의7, 제710조 제1항).

사채관리보조자는 사채관리를 위한 보조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권한은 사채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사채권자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사채권자를 위하여 법적 도산 절차에 참가, 강제집행·담보권실행 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 및 청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신고의 권한을 갖는다(제714조의4 제1항). 이러한 법정 권한 이외에 위탁계약을 통해 사채관리보조자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채관리보조자는 사채관리자와는 달리 이익상반 상황에서의 특별 법정책임에 관한 규정(제71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고, 그 권한이나 재량도 매우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정되는 자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채관리자처럼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가할 필요성이 적고, 사채관리보조자에 대해 사채관리자에 준하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게 되면 비용 증가로 이어져 동 제도의 이용 자체를 어렵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사채권자집회 제도의 개선

가. 결의 및 법원의 인가의 생략

사채발행회사, 사채관리자, 사채관리보조자,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목적인 사항에 관해(사채관리보조자의 경우에는 제714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711조 제1항의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에 관하여) 제안을 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권자 전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동意的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제안을 가결하는 취지의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제735조의2 제1항), 이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관해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였다(동조 4항). 사채권자 전원의 동意的 있는 이상 법원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더라도 사채권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나. 사채의 면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사채의 전부에 관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제706조 제1항 제1호)을 신설하였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사항에는 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제739조 제1항), 자본감소·합병 등에 대한 이익(제740조 제1항) 등 ① 법정 사항 이외에, ② 사채권자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 개정은 ②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채의 원리금의 감면을 사채권자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 그 밖의 개정 사항

(1) 의결권행사서면의 열람 청구

개정법에서는 의결권행사서면의 열람·등사의 청구에 관해 주주명부의 경우와 동일한 규제를 하기로 하였다(제311조 제4항, 제5항). 즉 주주가 열람 등의 청구를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는 한편, 회사가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문화하였다.

개정 전에는 의결권행사서면의 열람의 청구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의결권행사서면에 주주의 성명 및 의결권 수는 물론이고 주주명부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주소까지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주주명부의 열람을 청구하는 대신에 의결권행사서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개정은 규제 차익으로 인해 특정 제도가 다른 제도를 대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임원책임소송에서 회사가 화해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

회사가 임원(이사(감사등위원 및 감사위원은 제외), 집행임원, 청산인 및 이러한 자이었던 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주주대표소송 외에 회사가 원고가 되어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도 포함)에서 화해를 하려면 감사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각 감사,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각 감사등위원, 지명위원

회등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각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제849조의2). 동료 의식으로 인하여 임원이 회사에 불리한 화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공시·등기제도의 개선

① 신주예약권에 관한 등기제도를 개정하여 모집신주예약권에 관해 모집사항으로서 모집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한 경우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모집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을 등기하면 족한 것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시까지 모집신주예약권의 납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산정방법을 등기하도록 하였다(제911조 제3항 제12호 바목).

② 상법등기의 전자화에 의해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점소재지 등기제도는 폐지하였다(제930조~제932조 삭제).

③ 주식병합,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의해 1주에 미치지 못하는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해 사전 공시사항을 확대하였다(회사법 시행규칙 제33조의9 제1호 나목, 제33조의2 제2항 제4호). 단주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보다 충실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판 역사 해제

본서는 2014년에 출판한 일본회사법(역서)을 개정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2005년 회사법을 제정하였다.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회사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2014년이 처음인데, 본서는 개정된 부분을 번역하여 기존의 회사법(역서)에 추가한 것이다. 이하 2014년에 단행된 회사법 개정의 배경 및 내용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1. 개정 배경

일본에서는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4년 법률90호, 이하 개정법) 및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91호, 이하 정비법)이 2014년 6월 20일 국회를 통과하고 동년 6월 27일 공포되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은 회사법시행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개정이고, 개정내용도 광범위하다.

개정법은 국내의 투자가의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일본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법제의 개선 및 모자회사에 관한 규제의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2. 기업지배구조법제의 개선

(1) 이사회 감독기능강화

이사의 업무집행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사외이사를 두지 않은 상장회사등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

유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제327조의2).

기관설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감사회설치회사와 위원회설치회사(개정후의 명칭은 지명위원회등설치회사) 이외에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를 새롭게 도입 하였으며(2조11호의2),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① 주식회사의 모회사 등의 관계자 및 형제회사의 업무집행자나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근친자는 사외이사 또는 사외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②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요건 중 이른바 과거요건을 합리화하여 취임 전 당해 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서 사용인 등으로 업무집행자의 지휘명령계통에 있었던 자이더라도 10년을 경과하면 사외이사, 사외감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 제15호, 제16호). 개정 전에는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주식회사나 그 자회사의 사용인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자는 사외이사나 사외감사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사 및 감사의 책임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업무집행을 하지 않는 이사 및 감사는 사외이사 혹은 사외감사가 아니어도 회사와 책임한 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27조 제1항).

(2) 회계감사인의 선해임등에 관한 의안내용의 결정

개정 전에는 감사 또는 감사회는 회계감사인의 선해임 의안에 대해 동의권 및 제안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회가 회계감사인의 선해임등에 관한 의안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제344조).

(3) 모집주식발행 등에 의한 지배주주변동에 관한 공시

지배주주의 변동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모집주식의 인수인이 모집주식의 발행 등에 의해 공개회사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당해 인수인(특정인수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② 총주주의 의결권의 10분의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반대하는 때

에는 특징인수인에 대한 모집주식의 배정 등에 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6조의2).

모집주식의 발행 시 출자이행을 가장한 경우에는 출자이행을 가장한 모집주식 인수인 및 출자이행가장에 관여한 이사 등은 회사에 가장된 납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13조의2, 제213조의3).

그리고 신주예약권무상배정제도를 이용한 자금조달(right offering)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주예약권무상배정 통지제도를 개선하였다(제279조 제2항, 제3항).

3. 모회사에 관한 법제의 정비

(1) 모회사주주의 보호 등

지주회사형태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는 완전자회사의 기업가치가 그 완전모회사인 지주회사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점을 고려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완전모회사주주가 완전자회사이사등에 대해 책임추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47조의3).

또한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법무성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특히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해서는 개정법에서는 회사법 본체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제362조 제4항 제6호 등). 이는 기업집단의 업무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모회사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주주가 주식교환등에 의해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주식교환 등에 의해 완전모회사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주주는 일정한 요건 하에 원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이사등에 대해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47조의2).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주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76조 제1항 제2호의2).

(2) 소수주주퇴출(Cash-Out)

기동적인 cash-out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총주주의 의결권의 10분의 9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특별지배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다른 주주 전원에게 대해 보유주식 전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제197조 이하).

또한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경우 동주식의 취득(제171조)은 실무상 cash-out수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재편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주에게 정보공시를 하기 위하여 사전공시절차(제171조의2)와 사후공시절차(제173조의2)를 마련하는 한편 주주에게는 유지청구권(제171조의3)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많은 단수가 발생하는 주식병합의 경우 단주주식의 주주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주식병합에 관하여 사전공시절차(제182조의2) 및 사후공시절차(제182조의6)를 마련하여 정보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주에게는 유지청구권(제182조의3),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제182조의4)을 인정하였다.

(3) 조직재편시 주식매수청구등

주식매수청구의 철회제한(개정전 785조 제6항 등 참조)을 보다 실효화하기 위하여 정비법에서는 "사채, 주식등 진체(振替)에 관한 법률"(이하 진체법)을 개정하여 매수구좌제도를 신설하고 주주가 진체주식(등록주식)에 관해 주식매수청구를 하려고 하는 때는 매수구좌를 진체구좌(등록구좌)로 하는 진체신청(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비법에 의한 개정진체법 제155조 등).

또한 흡수분할주식회사,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등의 경우 개정 전에는 매수청구주식의 대금지급시에 매수의 효력이 발생하였지만(개정전 제786조 제5항, 제798조 제5항 등) 개정법에서는 조직재편등의 효력발생일에 매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제786조 제6항, 제798조

제6항 등).

연6분의 이자(제786조 제4항등)를 노린 주식매수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식매수청구주주에 대해 주식가격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가 공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이른바 가지급제도를 마련하였다(동조 제5항등).

그리고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등에서 간이조직재편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등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797조 제1항 단서등).

(4) 조직재편등의 유지청구

유지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조직재편의 경우에도 약식조직재편을 제외하고는 당해 조직재편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주주는 그 사업재편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784조의2 등).

(5) 회사분할등에 있어서 채권자보호

이른바 사해적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승계회사등에 승계되지 않는 채무의 채권자(잔존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회사가 잔존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분할을 한 경우에는 잔존채권자는 승계회사등에 대하여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59조 제4항 등).

그 외 분할회사가 알고 있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회사분할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최고를 받지 못한 자는 원칙적으로 분할계약 등의 내용에 관계없이 분할회사 및 승계회사등의 쌍방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59조 제2항, 제3항 등).

4. 기타

개정법에서는 이상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① 주주명부 열람청구 거절사유 중에서 청구자가 주식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등을 삭제하였고(개정전 제125조 제3항 제3호 참조), ② 감사의 감사범위를 회계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는 그 사실을 등기하여야 하며(제911조 제3항 제17호 가목), ③ 공개회사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행가능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제180조 제2항 제4호, 제3항 등).

역자 해제

일본회사법의 연혁

여기 번역한 것은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하고 동년 7월 26일에 공포되어 2006년 5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일본회사법전이다. 이 현행회사법전은 1899년 시행된 이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수차례 개정을 거친 상법전의 회사편(제2편)을 근간으로 유한회사법과 상법특례법을 단일법전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 일련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일본회사법전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때 일본상법을 의용한 적이 있던 우리나라 회사법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일본회사법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상법 회사편의 제정경위 및 시행이후의 개정경과에 대해서 개관한 후 현재 진행 중인 회사법개정은 논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역자해제에 갈음하고자 한다.

I. 상법전의 편찬: 1899년(明治32년) 신상법의 제정

일본에서 최초로 회사에 대한 일반법규로서 제정된 것은 1890년(明治23년)에 독일인 헤르만 레슬러(Hermann Roesler)가 기초한 초안을 바탕으로 제정된 구상법전이다. 이 구상법전의 1편 제6장이 회사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 시기는 일본경제체제가 봉건경제에서 자본주의경제로 옮겨가고 있던 시기이었고, 1897년(明治30년)에는 관영의 야하다(八幡)제철소가 설립될 정도로 공업화도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을 배경으로 모든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회사법으로서 제정된 것이 구상법전이다.

구상법전은 회사의 종류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사원전원의 책임이 유한책임이라는 점에서 후술의 신상법전과 다르다) 및 주식회사의 3종류만 인정하고 회사의 설립에는 면허주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법에 대해서는 일본고유

의 관습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브와소나드가 기초한 민법전과의 조화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 시행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구상법전 중 회사에 관한 규정만 별도로 어음 및 파산에 관한 부분과 함께 1893년(명치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구상법전은 이처럼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정부가 법전조사회에 명하여 초안을 마련한 상법수정안이 제13차 제국의회를 통과하고 1899년(명치32년) 6월16일부터 구상법전에 갈음하여 시행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상법전이다.

이 신상법전 제2편이 회사법인데, 독일 상법을 참고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독일법계에 속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주식회사 외에 주식합자회사를 인정하고 회사의 설립에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등 내용적으로 상당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 후 1911년 개정을 시초로 빈번하게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도 일본에서는 이 상법전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상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면적인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항상 주식회사법이었고, 그런 점에서 회사법의 개정사는 주식회사법의 개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회사법을 중심으로 중요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개관하기로 한다.

II. 제1기 상법개정

1. 1911년(명치44년) 개정

신상법전 시행후 10년을 경과하면서 점차 신상법전의 불비와 결점이 부각되고, 특히 러일전쟁(1904년~1905년)후 포말(泡沫)기업의 난립과 중요기업의 도산을 배경으로 상법전 특히 주식회사법의 불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1908년에 설치된 법률취조위원회가 발기인, 이사, 감사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책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개정안이 1911년 제국국회를 통과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주

로 독일법을 참고로 한 것으로서 이 개정을 계기로 일본회사법의 독일법계 색채는 한층 더 농후해졌다.

2. 1938년(소화13년) 개정

일본경제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당시의 회사법으로는 경제계의 수요에 제대로 부응할 수가 없었다. 특히 1927년(소화2년) 금융공황과 함께 산업독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38년에 대대적으로 회사법을 개정하는 수정안이 제국국회를 통과하고 194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대규모 개정이었는데 회사법의 조문수는 거의 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법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하고 특히 영미법에 유래하는 각종 제도도 도입하였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주주총회의 권한 확대, 이사의 권한제약 및 이사의 민사·형사책임의 강화, 기업금융방법의 확충(무의결권 주식, 전환주식, 전환사채의 도입), 계산규정의 개선, 회사에 대한 법원의 관여 확대, 특별청산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38년에는 독일의 유한회사법을 모델로 한 유한회사법이 제정되었고, 194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요컨대 일본회사법, 특히 주식회사법은 1899년에 제정된 후, 1911년 개정에 의해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주식회사법”으로서 형식을 갖춘 뒤, 1938년 개정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Ⅲ. 제2기 상법개정

제2기 상법개정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의 상법개정을 말한다. 이 시기의 상법개정의 특징은 회사법의 미국화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회사법은 원래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사회 및 경제의 미국화와 함께 회사법도 영미법,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1950년 개정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1. 1950년(소화25년) 상법개정

1950년(소화25년) 상법개정에서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수권자본제도를 참고로 일정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액면주식제도도 이 개정에서 도입하였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능기관이었던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대신에 이사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감독은 이사회가 하고 업무집행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이사회제도의 도입과 함께 감사의 권한은 회계감사로 제한하였다.

이사의 권한확대에 대응하여 주주의 권한도 강화하였는데, 주주대표소송권,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해임청구권, 회사해산청구권 등이 주주권으로 새로이 인정되었다. 주주의 투자자로서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주식양도제한을 금지하고(주식양도 절대자유의 원칙) 합병등에 반대하는 주주를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유무 또는 제한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주인수권의 경우는 1955년 개정에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은 갖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2. 1962년(소화37년), 1963년(소화38년) 및 1966년(소화41년) 상법개정

1962년 개정에서는 계산규정의 대개정이 이루어졌고 회계학의 성과를 도입하여 기간손익계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1963년에는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및 부속명세서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이 규칙에 의해 계산서류의 기재방법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1966년 개정에서는 1950년 개정법상의 주식양도 절대자유 원칙을 폐지하여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승인을 요하는 취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기명주권 양도시 배서제도의 폐지, 주권불소지제도의 도입, 의결권불통일행사제도의 채택이 있었다.

3. 1974년(소화49년) 상법개정

일본은 1960년대 이후부터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는데, 이 고도성장기를 이끌었던 것은 설비투자이었다. 그런데 설비투자의 과잉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그 과정에서 도산기업의 대부분이 분식결산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1965년의 산요(山陽)특수철강의 분식회계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사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74년 개정에서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1950년 개정에서 감사로부터 박탈하였던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권한”을 감사에게 다시 부여하는 한편, “주식회사 감사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회사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회계감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소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권한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에 국한하고, 회계감사인의 선임은 회사의 자율에 맡겼다.

IV. 제3기 상법개정

제3기 상법개정은 197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상법개정을 말한다. 일본상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회사편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개진되었고, 그리하여 법무성은 1974년 상법개정 직후에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기업불상사가 잇따르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상법개정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개정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개정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른바 버블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1. 1981년(소화56년) 상법개정

1981년 개정은 대규모 개정이었는데, 이 개정에서는 이사의 자각을 통해 이사회가 제대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이사회의 감독권한을 명문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감사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회사의 경우 감사는 2인 이상 두되 그 중 1인은 반드시 상근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회계감사인인 그때까지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회계감사인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이다.

또한 이사에 대한 주주총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설명청구권 및 주주제안권을 도입하였다. 주주의 의사를 직접 총회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면투표제도, 총회꾼의 근절을 위한 회사의 계산으로 총회꾼에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권의 강화와 함께 극단적으로 영세한 주주를 배제하기 위하여 신설회사의 한주의 최저금액을 5만엔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존 회사에 대해서는 단위주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회사의 주주총회 실상을 고려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심의와 같은 전문적·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제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적정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계산서류는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불필요한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회사간 주식의 상호보유를 규제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취득을 금지하고,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B회사는 그 소유하는 A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1990년(평성2년), 1993년(평성5년) 및 1994년(평성6년) 상법개정

(1) 1990년 개정에서는 주식회사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자본금제도(주식회사 1000만엔)를 도입되었고, 주식회사 중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정하였다.

(2) 1993년 개정은 미일구조문제협약에서 제기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긴급개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시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목적가액을 95만엔(2003년 민소비용법개정에 의해 160만엔)으로 간주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수수료를 청구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200엔(2003년 개정후에는 13,000엔)으로 하는 한편, 대표소송에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주의 장부열람청구권의 지주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종래는 10분의1 이상)으로 인하였다. ②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종래는 2년), 대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제도를 도입하여 감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반드시 사외감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③ 사채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단행되어, 사채발행규제한도의 폐지, 사채관리회사제도의 도입,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및 의무의 법정,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관해서도 소오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3) 1994년 개정에서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로서 다음의 경우, 즉 이사 또는 감사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정기총회결의에 기하여 주식을 임의소각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제한회사가 주식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하여, 주식의 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3. 1997년(평성9년), 1999년(평성11년) 및 2000년(평성12년) 상법 개정

(1) 1997년 개정에서는 의원입법의 형태로 이사 및 사임인에 대한 인센티브 보수제도로써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고, 또 공개회사의 경우 이사회결의에 기한 주식의 임의소각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주식의 소각절차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1년6월 개정으로 폐지)). 종래부터 현안이었던 합

병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대기업의 총회꾼에 대한 이익공여사건을 계기로 이익공여에 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2) 1997년 독점금지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지배가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9년 개정에서는 완전모회사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를 창설하고,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관한 정보 수집권을 정비하는 한편, 금융자산에 관해 시가회계를 도입하였다.

(3) 2000년 개정에서는 회사분할제도를 창설하는 외에 간이합병이나 간이주식교환 등과 같은 취지로 영업전부의 양수에 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절차를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스톡옵션제도를 개선하고 자회사계산에 의한 이익공여를 금지하였다.

V. 제4기 상법개정

제4기 상법개정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05년 회사법제정전까지의 상법개정을 말한다. 이 시기의 상법개정의 특징은 크게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199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붕괴이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일본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매년 대규모의 개정이 긴급입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제도간의 부정합이 발생하고 이는 2005년 회사법제정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IT기술의 발전을 회사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는데, 2001년 11월 개정 및 2004년 개정이 대표적이다.

1. 2001년(평성13년) 상법개정

2001년 개정에서는 상법이외에도 특별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1) “단기사채등의 진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주권보관진체법도 개정되었다.

(2) 6월 개정(의원입법) ①자기주식법제의 발본적인 개정이 단행되어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에 관한 목적·수량·보유기간규제가 폐지되고(이른바 금고주의 해금), 주식소각특별법이 폐지되었다. ②주식단위에 관한 법제가 개정되어 법에 의한 단위의 강제의 철폐(순자산규제의 폐지등), 단위주제도의 폐지, 단위주제도의 창설, 단수주와 단주제도의 개정, 액면주식의 폐지, 법정준비금제도의 개정, 공모증자절차의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3) 11월 개정 ①주식양도제한회사의 경우 수권주식수에 대한 제한폐지, 신주의 유리발행결의의 유효기간 등 신주발행규제의 개정, ②종류주식의 정관 기재 사항의 완화, 의결권제한주식의 도입, 강제전환조항부주식의 도입 등 종류주식에 관한 개정, ③신주예약권에 관한 법제정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개정포함), ④회사관계의 각종 서류의 전자화를 허용하는 법제정비(공고의 전자화는 유예), 그리고 ⑤대차대조표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개를 허용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4) 12월 개정(의원입법) ①감사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대회사의 경우 사외감사에 대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감사의 반수이상을 사외감사로 하도록 하는 등 감사제도를 강화하였다. ②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일정의 요건과 한도 하에 경감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③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소송상의 화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정이 단행되었다.

2. 2002년(평성14년) 상법개정

2002년 개정에서도 2001년 개정에 이어 상법개정과 함께 특별법의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 졌다.

(1) 상법의 경우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식관계 ① 종류주주에 의한 이사·감사의 선임·해임제도의 신설(주식양도제한회사에 국한), ② 주권실효제도의 창설, ③소채불명주주의 주식매각제도의 창설, ④ 단주등의 매수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 2) 기관관계 ①주주총회·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요건의 완화, ②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소집절차의 생략, 총회개최의 생략, 주식양도제한회

사에서의 소집기간의 단축), ③주주제안권의 행사기간의 단축 등, ④위원회등설치회사제도의 도입(대회사), ⑤중요재산위원회제도의 도입(대회사), ⑥간주대회사제도의 도입이 있었다.

3) 계산관계 ①재산평가규정의 시행규칙에의 위임, ②연결계산서류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4) 그 외 ①현물출자등의 목적재산의 가격증명제도의 도입, ②자본감소·법정준비금감소절차의 합리화, ③외국회사규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다.

(2) “단기사채등의 진체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법률의 명칭도 “사채등의 진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진체의 대상이 일반 사채·국채 등으로 확대되었다.

3. 2003년(평성15년) 상법개정

(1) 의원입법의 형태로,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또한 중간배당한도액규제와 관련하여 최종 결산기후에 자본 또는 법정준비금의 감소가 있었던 때에는 자본감소차익 또는 법정준비금 감소 차익은 중간배당한도액에 포함되는 취지의 개정이 있었다.

(2)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재판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민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4조 제2항의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의 소에 관한 소송목적의 가액”이 95만에서 160만엔으로 개정되고, 또한 동법의 별표1·1항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주주대표소송 제기시 수수료는 13,000엔이 되었다.

(3) 담보물권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사용인의 선취특권의 상법상의 규정(제295조)[개정전]이 삭제되어 민법으로 통합되고, 상법 제294조의2가 동법 제295조[2005년 개정전]로 조문번호의 변경이 있었다.

4. 2004년(평성16년) 상법개정

(1) “전자공고제도의 도입을 위한 상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다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①전자공고제도의 창설, ②회사채권자 보호절차의 간소화, ③ 일부 공고의무의 폐지.

(2) “주주등의 거래에 관한 결제의 합리화를 위한 사채등의 진체에 관한 법률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다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① 상법상 주권불발행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사채등의 진체에 관한 법률”이 “사채, 주식등의 진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주식에 관해서도 종래의 보관진체제도에 같음하여 (무권면화를 전제로 한) 진체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진체제도의 이용회사는 정관으로 반드시 주권불발행을 정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주식회사도 정관으로 정하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②주식양도제한회사는 주주로부터의 청구가 없는 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③ 그 밖에 모든 주식회사에 대해 주주명부폐쇄제도를 폐지하여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기준일제도로 일원화하였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납입기일 당일로 하는 등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3) “민사관계절차의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공시최고, 제권판결제도가 개정되었다(“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에 신제도로서 정비함).

VI. 2005년(평성17년) 회사법제정

2002년부터 법제심의회 회사법부회에서 정력적으로 추진해왔던 ‘일본회사법제의 현대화’ 작업의 성과물인 회사법이 2005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6일에 공포되어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합병등의 대가유연화부분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2003년 10월 21일 법제심의회 회사법부회가 발표한 “회사법제 현

대화에 관한 요강시안”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2005년 2월9일 법제심의회 총회에서 확정된 “회사법제의 현대화에 관한 요강” 및 “특별청산등의 재검토에 관한 요강”에 기한 것이지만 중의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다.

그리고 회사법의 제정에 맞추어 경과조치를 정하는 한편 관련법률 326개를 개정하는 “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05년 12월 14일에는 “회사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1. 입법취지

회사법의 입법취지는 첫째, 회사법제의 현대어화와 단일화이다. 즉 상법전 중 회사편,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 등 회사관련법제의 용어를 현대어인 히라가나 구어체로 바꿈과 동시에 이러한 법률을 단일법전(회사법)으로 일원화하여 알기 쉽게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회사법제 내용의 현대화이다. 즉 현대어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한편, 1998년 이후 긴급입법형태로 계속된 개정에 의해 발행한 각종 제도간의 불균형과 부정합을 시정하고, 최근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실무계 등에서 제기한 개정요망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내용

회사법은 내용은 크게 다음의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이용자 관점에서 법률의 재검토, 즉 중소기업이나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자의 니즈 등을 고려하여 회사법제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로는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단일 회사 유형(주식회사)으로 통합, ② 설립시의 출자액 규제의 철폐(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③ 사후설립규제의 개정(검사인조사의 철폐 등)을 들 수 있다.

(2) 조직재편행위나 자금조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 방법을 합리화하는 한편, 이사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데, 구체적인

로는 ① 조직재편행위에 관한 제도의 정비(흡수합병 등의 경우에 있어서 대가의 유연화, 간이조직재편행위의 요건완화, 약식조직재편행위의 신설), ② 주식·신주예약권·사채제도의 개선(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의 현물출자에 관해 검사인의 조사면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의 명확화, 단주제도의 폐지, 신주예약권의 취득대가로서 주식교부 허용,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권한 수권허용, 사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의 성립요건의 완화, 사채권불발행제도의 도입등), ③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방법의 정비(주주에 대한 금전등의 분배와 자기주식의 유상취득을 '잉여금의 분배'로서 정리하고 통일적인 재원규제를 마련, 잉여금의 분배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결정을 허용, 위원회설치회사 이외의 주식회사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잉여금배당허용) ④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정비(무과실책임의 수정등 위원회설치회사와 그 이외 주식회사와의 규율의 정합화)를 들 수 있다.

(3) 회사경영의 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는 ① 주주대표소송제도의 합리화(주주교체등의 경우의 원고적격의 계속, 회사의 불제소이유의 통지의무, 남용적 제소의 불허), ②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 의무화(대회사), ③ 회계참여제도의 창설, ④ 회계감사인의 임의설치 범위의 확대등이 있다.

(4) 그 외에도 ① 새로운 회사형태(합동회사)의 창설, ② 특별청산제도 등의 수정(협정의 가결요건의 완화 등, 절차의 신속화·합리화를 위한 재검토), ③ 회사정리제도의 폐지도 중요한 입법사항의 하나이다.

VII. 신회사법의 개정

회사법의 개정을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2005년 회사법이 시행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0년 2월 24일 법제심의회 회사법제부회가 설치되면서(부회장, 이와하라·신사꾸(동경대교수))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약 2년 6개월의 검토를 거쳐 시안의 최종안에 해당하는 요강안이 2012년 8월 1일에 발표되었다.

2005년에 제정된 회사법은 상법 등에 산재해 있던 규정에 관해 형식면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대규모로 행한 개정이었기 때문에 입법상의 불비나 해석상의 문제는 피할 수 없었고, 그런 점에서 후속 개정작업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다만 금번 요강안에서는 다음의 3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첫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의 정비이다. 현행의 감사회설치회사와 위원회설치회사 이외에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가칭)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위원회설치회사제도에 저항감을 갖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특징은 사외이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사에 대한 감사·감독을 강화하려는 점이다.

둘째, 모회사에 관한 규정의 정비이다. 모회사법제의 정비는 회사법제정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데, 요강안에서는 ①모회사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②cash-out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 대한 특별지배주주(90%이상소유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③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철회를 제한하기 위하여 새로운 매수구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④ 합병등 조직재편행위로 인한 주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재편행위유지청구제도를 신설하고, 그리고 ⑤사해적인 회사분할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새로이 도입하기로 하였다.

셋째, 그 이외에 공개매수규제에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과 주주명부열람청구의 거절사유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법무성에서는 요강안에 근거하여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및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번 개정도 법무성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회사법시행규칙도 대폭적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회사법 시행령 국문 색인 (가나다 순)

숫자는 조를 나타냅니다.

[사]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승낙 등 1

[즈]

전자공고조사기관의
등록 및 그 갱신 신청의
수수료의 액 3

전자공고조사기관의
등록의 유효기간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승낙 등 2

회사법 시행령 일본어 색인

숫자는 조를 나타냅니다.

[]

書面に記載すべき事項等の
電磁的方法による提供
の承諾等

1

[]

電子公告調査機関の登録
及びその更新の申請に
係る手数料の額

3

電子公告調査機関の登録の
有効期間

4

電磁的方法による通知の
承諾等

2

회사법 시행규칙 국문 색인 (가나다 순)

숫자는 조를 나타냅니다.

[ㄱ]

1주당 순자산액	2, 25, 33
각 청산사무연도	2, 146, 147, 148
감사	2, 10, 12, 19, 72, 74, 75, 76, 77, 80, 82, 83, 84, 89, 91, 94, 98, 100, 101, 103,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21, 124, 126, 129, 130, 131, 132, 133, 140, 142, 143, 148, 182, 184, 232, 234
감사감사보고서 등의 통지기한	132
감사등위원	2, 10, 16, 18
감사등위원의 보고대상	110의2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의안	82의2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	74의3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	78의2
감사등위원회의 감사보고서의 내용 등	130의2
감사등위원회의 의사록	110의3, 232

감사보고서	2, 105, 107, 129, 131, 132, 133, 147, 148, 182, 183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내용 등	131
감사의 감사보고서 내용	129
감사의 범위가 한정된	
감사의 조사의 대상	108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	10, 76
감사회	109, 130, 132, 133, 148, 232
검사인	5, 43, 59, 228, 229
결산보고서	150
결손	68
계산관계서류	2, 85, 102, 108, 126, 129
계산관계서류의 승인	85
계산서류	2, 103, 104, 118, 120, 181, 182, 183, 184, 188, 191, 192, 193, 199, 204, 205, 206, 208, 214, 232, 234
계산서류등	2, 103, 182, 183, 184, 191, 192, 193, 204, 205, 206, 232, 234, 236
계산서류등의 비치	103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213조의8
공개매수등	2, 6, 30, 31, 32, 36, 37, 38, 43, 50, 51, 52, 149
공고	164, 181, 182, 184, 188, 199, 208, 214, 220
관련회사	2, 77
교부등의 지정	236

교부주식	55의2, 55의3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등의 소제기의 청구방법	218의2
금전등	2, 35, 108, 184, 194, 195, 198, 202, 203

[ㄱ]

누적투표	18, 97
누적투표에 의한 설립시 이사의 선임	18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97

[ㄴ]

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	2, 25, 37
단원주식수	2, 34, 41, 54
대가	2, 30, 77, 92, 113, 114, 115, 123, 126, 178, 179, 182, 184
대상주식	2, 26, 39
대상회사	2, 33의7, 33의8, 188, 199, 208
대상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3의7
대상회사의 사후공시사항	33의8
대차대조표	2, 3, 25, 120, 134, 135, 137, 145, 146, 147, 148, 152, 161, 180, 181, 182, 183, 184, 185, 187, 188, 191, 192, 193, 195, 199, 204, 205, 206, 207, 208, 214, 232, 234, 236
대차대조표등	2, 232, 236

대표이사	2, 113
등기	182, 184, 220
등록주식질권자	2, 47

[口]

매도신주예약권	2, 33의8, 56
매도주식	2, 22, 33의7, 33의8, 35
매도주식등	2, 33의8
매도주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33의6
모집 신주예약권	2
모집사채	2, 99, 141, 162, 165, 166
모집사항의 통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53
모집주식	2, 8, 41
모회사 주식	2
무상배정	2

[비]

발기인의 설명의무	15
발행가능종류주식총수	2, 41, 54
발행가능주식총수	2, 41, 54
발행주식총수	25, 122
법인등	2, 23, 27, 33의2, 151, 182, 184
보결 회사임원의 선임	96
보상계약	2, 74조의3, 75, 76, 77, 121, 125, 126,
보수등	2, 63, 76, 77, 82, 83, 84, 113, 121, 124,

	126
보수등의 금액의 산정방법	113
보존	98, 100, 112, 140, 231, 232, 233, 238
보존의 지정	232
분배가능액	2, 68
[스]	
사업보고서	2, 6, 116, 117, 118, 119, 120, 121, 124, 125, 126, 128, 129, 131, 132, 133, 147, 148, 182, 184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의 내용	5목
사업양도등	2, 63, 92, 138
사외감사	2, 19, 74, 76, 96, 124
사외감사후보자	2
사외이사	2, 19, 74, 82, 84의2, 96, 113, 122
사외이사후보자	2, 74의3
사외임원	2, 74, 76, 82, 118, 123, 124
사외임원 등에 관한 특칙	124
사전공시	180, 182, 183, 184, 191, 192, 193, 204, 205, 206
사채	2, 32, 33, 51, 165, 168, 169, 182, 184, 195
사채관리보조자	165, 173, 177
사채관리보조자의 자격	171조의2
사채관리자	162, 163, 165, 169, 170, 173, 177
사채권자집회	2, 165, 172, 173, 174, 177, 232, 234

사채권자집회 참고서류	2, 172
사채등	2, 32, 33, 51
사채등의 단수	51
사채발행회사	2, 167, 173, 177
사채원부 관리인	2
사채원부 기재사항의 기재등의 청구	168
사채인수자 모집시에 이사회가 정해야 할 사항	110의5
사채취득자	2, 153, 168
사후공시	189, 190, 200, 201, 209, 210, 211, 212, 213
선입	2, 9, 11, 12, 18, 19, 20, 63, 66, 67, 74, 75, 76, 77, 93, 96, 97
설립비용	5
설립시 감사	2, 10, 16
설립시 모집주식	2, 8
설립시 이사	2, 10, 16, 18
설립시 임원등	2, 9, 10, 11
설립시 주주	2, 9, 10, 11, 12, 15, 17
설립시 집행임원	2, 16
설립시 회계감사인	2, 10, 16
설립시 회계참여	2, 10, 16
설립시감사등위원	2, 10, 16, 18, 10, 16, 18
설립시발행주식	2, 5, 8
설명의무	15, 71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의 통지방법	218, 218의4
소집의 결정사항	9, 63, 153
순자산액	2, 25, 33, 33, 137
승인	2, 20, 22, 24, 26, 84의2, 85, 86, 87, 88, 89, 90, 91, 92, 120, 138
시장가격	6, 30, 32, 33, 36, 37, 38, 43, 50, 51, 52, 59, 182, 184
신설분할 설립지분회사	2
신설분할 합동회사	2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	2, 179, 212
신설분할설립회사	2, 179, 205, 209
신설분할주식회사	2, 90, 179, 203, 205, 207, 209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205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209
신설분할회사	2, 205, 209, 211
신설분할회사	2, 205
신설합병 설립주식회사	2
신설합병 설립회사	2
신설합병 소멸주식회사	2
신설합병 소멸회사	2
신설합병계약 승인에 관한 의안	89
신주예약권	2, 23, 27, 32, 32, 33, 51, 56, 57, 58, 59, 114, 119, 120, 123, 134, 135, 137, 151, 180, 182, 183, 184, 186, 187, 191, 196, 204, 205, 207, 234

신주예약권 취득자	2
신주예약권등	2, 23, 27, 123, 151
신주예약권매도청구	2, 33의5, 33의7, 33의8, 56
신주예약권부사채권	2, 56, 57
신주예약권에 관한 납입 등의 가장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이사 등	62의2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의 기재 등의 청구	56
신주예약권의 주주에 대하여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반대통지기간의 초일	55의5
신주예약권의 주주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55의4
신탁사채	2, 99, 110의5, 162, 165
신택사채	165

[오]

양도등 승인청구자	2, 26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98, 100, 112
업무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10의4
업무집행이사	2, 113, 128
업무집행이사등	2
업무집행자	2, 74, 75
업적연동보수	98조의5, 121

연결계산서류	2, 118, 120
연결배당규제적용회사	21, 23, 195
열람등의 지정	234
완전모회사	2, 35, 118, 190, 218의3
완전모회사등	2, 118
완전자회사	2, 88, 91, 184, 186, 190, 193, 194, 195, 198, 202, 203, 206, 210, 219
외국회사	2, 23, 27, 74, 120, 134, 182, 184, 187, 207, 214, 220
위원회	2, 5, 111, 124, 128, 131, 132, 133
유가증권	2, 6, 40, 43, 53, 59, 181, 182, 188, 199, 208
은행등	2, 5, 7,
의결권행사서면	9, 11, 17, 63, 66, 95, 153, 155, 172, 174, 232, 234
의사록	16, 17, 72, 95, 101, 109, 110의3, 111, 143, 158, 177, 232
의사록등	2
이사	2, 10, 16, 18, 19, 20, 21, 44, 45, 46, 60, 61, 62, 63, 64, 65,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4의 2 85, 86, 87, 88, 89, 90, 91, 92, 93, 97, 98, 100, 101, 102, 105, 107, 109, 110, 111, 112, 113, 115, 118, 121, 123, 129, 132, 133
이사의 개인별 보수	98조의5
이사의 보수등에 관한 의안	82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	78, 78의2

이사회	3, 20, 21, 44, 45, 46, 62, 85, 93, 99, 101, 105, 107, 113, 118, 124, 126
이사회 의사록	101
이익공여의 책임을 지는 이사 등	21
일본에 있는 외국 회사의 재산에 대한 청산에 관한 사항	216
임시결산일	2, 182, 183, 191, 192, 193, 204, 205, 206
임시계산서류	2, 182, 183, 184, 191, 193, 204, 205, 206, 232, 234
임시계산서류등	2, 183, 184
임원	2, 3, 33의2, 74, 74의3, 76, 84의2, 121, 123, 124, 128, 182, 184
임원등	2, 9, 10, 11, 12, 63, 66, 67, 84의2, 113, 114, 115
임원 등을 위해 체결된 보험계약	11節
임원등배상책임보험계약	2, 74조의3, 75, 76, 77, 119, 121조의2

[ㄷ]

자기 신주예약권	2, 25
자기주식	2, 23, 25, 27, 30, 122, 134, 135, 137, 151, 182, 187, 196, 207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7
자회사 및 모회사	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23
잔여재산	20, 23, 27, 149, 150, 151, 182

재산목록등	2, 23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	2, 27, 151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33의2, 33의3, 63, 5목의2, 85의2, 93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후공시사항	33의3
전자공고	2, 180, 199, 207, 220, 221, 223
전자서명	225
전자적 기록	16, 35, 101, 143, 158, 181, 208, 220, 221, 223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226
전자적 방법	2, 9, 10, 11, 14, 40, 42, 53, 55, 63, 65, 70, 73, 79, 94, 133, 153, 154, 155, 157, 164, 172, 173, 174, 176, 217, 218, 222, 223, 229, 230
전자적 방법	1, 2, 9, 10, 11, 14, 40, 42, 42의3, 53, 55, 55의4, 55의5, 63
전자제공조치	2, 41, 63, 66, 95조의2,
전자제공조치를 취하는 경우 소집통지기재사항	95조의3
전자제공조치사항기재서면	63, 95조의4
정의	2, 231
조직변경주식교환	2, 22
조직변경주식이전	2
조직변경후지분회사	2, 180
존속주식회사등	2, 191, 192, 196
종류주식	19, 20, 25, 41, 54, 150

종류주식의 내용	20
종류주주	2, 19, 20, 95, 96, 121
종류주주총회	2, 19, 20, 95, 96, 121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19
종류창립총회	2, 17
주권	22, 24, 35, 39, 47, 48, 49
주권발행회사	2, 22, 24
주권상실등록일	2, 22, 24
주권상실등록자	2, 49, 25
주식 취득자	2
주식 교부	2
주식교부계획의 승인에 관한 의안	91조의2
주식교부모회사	179조의3
주식교부모회사가 양수받은 주식교부자회사의 주식 등의 금액	213조의4
주식교부모회사의 사전공시사항	213조의2
주식교부모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213조의3
주식교부자회사	4조의2,
주식교환 완전모주식회사	2
주식교환 완전모합동회사	2
주식교환 완전모회사	2
주식교환등완전모회사	2, 218의2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	2, 218의4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가 책임추궁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의 통지방법	218의4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사전공시사항	184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사후공시사항	190
주식등	2, 186, 195
주식등매도청구시 특별지배주주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	33의5
주식매도청구	2, 22, 33의5, 33의7, 33의8
주식병합에 관한 사전공시사항	33의9
주식병합에 관한 사후공시사항	33의10
주식의 단수	5052
주식의 병합	35, 63, 5목의2, 93
주식이전	2, 22, 24, 35, 67, 91, 186, 206, 210
주식이전 설립완전모회사	2
주식이전 완전자회사	2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에 주식인수권의 장부가액 관한 의안	25 91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사후공시사항	210
주식회사가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의 통지방법	218의7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에 관한 사항	119, 123
주식회사의 회사임원에 관한 사항	121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42의2, 55의2
주주명부 관리인	2, 41
주주명부 기재사항	2, 22, 35
주주명부	2, 22, 24, 35, 39, 41, 47, 234
주주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42의3, 55의4
주주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반대통지기간의 초일	42의4
주주에 의한 책임추궁등의 소제기의 청구방법	217
주주제안의 경우 기재사항	7목
주주총회참고서류	63, 65,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4의2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주주총회참고서류의 기재의 특칙	8목
증권발행 신주예약권	2
증권발행 신주예약권부사채	2
지명위원회등	2, 77, 81, 101, 111, 121, 124, 126, 129, 132, 133
지명위원회등의 의사록	111
지분회사	2, 160, 178, 179, 180, 182, 183, 185, 191, 192, 204, 205
지정매수인	2, 22, 26

집행임원 등의 보수	111, 111조의2, 11조의3

[즈]

창립총회	2, 9, 10, 12, 15, 16, 17, 18, 231, 234
창립총회 참고서류	2, 9, 10, 17
창립총회의 의사록	16
채권자집회 참고서류	2, 172
책임면제를 받은 임원등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주는 의안 등	84의2
책임면제의 결의 후 받는 퇴직위로금 등	115
책임추궁등의 소	2, 217, 218의2
책임추궁등의 소제기	217
청산	2, 147, 216
청산 주식회사	2
청산 지분회사	2
청산인회설치회사	2, 20, 142
청산인회설치회사의 업무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42
청산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는 경우	151
청산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148
청산주식회사의 업무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40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54

최종사업연도	2, 25, 33의2, 33의7, 33의9, 180, 181, 182, 183, 184, 187, 188, 191, 192, 193, 196, 199, 204, 205, 206, 207, 208, 218의6
최종완전모회사등	2, 218의2
출자의 이행가장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이사 등	46의2
출자이행가장에 관해 책임을 줘야할 발기인등	7의2
취득조항부 신주예약권	2
[티]	
특별목적회사	4
특별목적회사의 특칙	4,
특별지배주주	2, 33의5, 33의7, 33의8, 35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	33의4
특정관계사업자	2, 74, 74의3, 76, 124
특정책임	2, 113, 218의5, 218의7
특정책임추궁의 소	2, 218의5, 218의7
특정책임추궁의 소제기의 청구 방법	218의5
[히]	
해임	10, 11, 66, 78, 79, 80, 81, 121, 126
협정채권	2, 153, 153, 154, 155
협정채권자	2, 153, 154, 155

회계감사인	2, 10, 12, 16, 66, 67, 72, 77, 81, 85, 89, 91, 93, 101, 109, 110, 111, 113, 126, 182, 184
회계감사인설치회사에 있어서 사업내용의 보고	4목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의안	10, 77
회계감사인의 해임 또는 부재임에 관한 의안	81
회계참여	2, 16, 72, 74, 75, 79, 83, 89, 91, 93, 96, 101, 102, 103, 105, 107, 109, 110, 111, 113, 121, 125, 128, 232, 234
회사등	2, 3, 3의2, 12, 74, 74의3
회사임원	2, 96, 118, 119, 121, 122, 123, 124, 128
회사임원의 선임	96
흡수분할	2, 23, 35, 87, 120, 134, 178, 183, 187, 189, 192, 195, 196, 201, 207
흡수분할 승계주식회사	2
흡수분할 승계지분회사	2
흡수분할 승계회사	2
흡수분할 주식회사	2
흡수분할 합동회사	2
흡수분할 회사	2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201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189
흡수합병	2, 25, 35, 86, 120, 134, 182, 183, 184, 186, 187, 191, 192, 193, 195, 196, 200, 204, 205, 207

흡수합병 소멸주식회사	2
흡수합병 소멸회사	2
흡수합병 존속주식회사	2
흡수합병 존속지분회사	2
흡수합병 존속회사	2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182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200

회사법 시행규칙 일본어 색인

숫자는 조를 나타냅니다.

[あ]

委員会	2, 5, 111, 124, 128, 131, 132, 133
訴えを提起しない 理由の通知方法	218, 218の4
売渡株主等に対して通知 すべき事項	33の6
親会社株式	2

[か]

会計監査	2, 10, 12, 16, 66, 67, 72, 77, 81, 85, 89, 93, 101, 109, 110, 111, 113, 126, 182, 184
会計監査人	2, 10, 12, 16, 66, 67, 72, 77, 81, 85, 89, 91, 93, 101, 109, 110, 111, 113, 126, 182, 184
会計監査人の選任に関する議案	10, 77
会計監査人の解任又は不再 任に関する議案	81
会計監査人設置会社におけ る事業内容の報告	4目
会計参与	2, 16, 72, 74, 75, 79, 83, 89, 91, 93, 96, 101, 102, 103, 105, 107, 109, 110, 111, 113, 121, 125, 128, 232, 234

会社役員	2, 96, 118, 119, 121, 122, 123, 124, 128
会社役員の選任	96
解任	10, 11, 66, 78, 79, 80, 81, 121, 126
外国会社	2, 23, 27, 74, 120, 134, 182, 184, 187, 207, 214, 220
完全子会社	2, 88, 91, 184, 186, 190, 193, 194, 195, 198, 202, 203, 206, 210, 219
完全親会社	2, 35, 118, 190, 218의3
株券	22, 24, 35, 39, 47, 48, 49
株券発行会社	2, 22, 24
株券喪失登録日	2, 22, 24
株券喪失登録者	2, 49, 25
株式交換完全親会社	2
株式交換等完全子会社が責任 追及等の訴えを提起しな い理由の通知方法	218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 事前開示事項	184
株式交換完全子会社の事後 開示事項	190
株式等	2, 186, 195
株式の端数	50, 52
株式の併合	35, 63, 5目の2, 93
株式の併合に関する事前開 示事項	33의9
株式の併合に関する事後開 示事項	33의10

式等売渡請求に際して特別	
支配株主が定めるべき事項	33の5
株式移転	2, 22, 24, 35, 67, 91, 186, 206, 210
株式移転計画の承認に	
関する議案	91
株式移転完全子会社の事後開	
示事項	210
株式取得者	2
株式交付	2
株式交付親会社	179条の3
株式交付親会社が譲り受ける	
株式交付子会社の株式等	
の額	213条の4
株式交付親会社の株式に準ずる	
もの	213条の3
株式交付親会社の事前開示事項	213条の2
株式交付子会社	4条の2,
株式交付計画の承認に関する	
議案	91条の2
株式会社が特定責任追及の訴	
えを提起しない	
理由の通知方法	218の7
株式会社の新株予約権等に	
関する事項	119, 123
株式会社の会社役員に関す	
る事項	121
株式引受権の帳簿価額	25
旧株主による責任追及等の	
訴えの提起の請求方法	218の2

株主に対して通知すべき事項	42の2, 55の2
株主に対する通知を要 しない場合	42の3, 55の4
株主に対する通知を要しない 場合における反対通知の 期間の初日	42の4
株主名簿	2, 22, 24, 35, 39, 41, 47, 234
株主名簿管理人	2, 41
株主名簿記載事項	2, 22, 35
株主提案の場合における 記載事項	7目
株主総会参考書類	63, 65,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4の2,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株主総会参考書類の記載の特則	8目
監査	2, 10, 12, 19, 72, 74, 75, 76, 77, 80, 82, 83, 84, 89, 91, 94, 98, 100, 101, 103,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21, 124, 126, 129, 130, 131, 132, 133, 140, 142, 143, 148, 182, 184, 232, 234
監査の範囲が限定されている監 査役の調査の対象	108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 報酬等に関する議案	82の2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 選任に関する議案	74の3
監査等委員である取締役の	

解任に関する議案	78の2
監査等委員の報告の対象	110の2
監査等委員会の監査報告 の内容等	130の2
監査等委員会の議事録	110の2, 232
監査報告	2, 105, 107, 129, 131, 132, 133, 147, 148, 182, 183
監査役	2, 10, 19, 20, 72, 74, 76, 80, 83, 84, 89, 91, 93, 98, 100, 101, 105, 107, 108, 109, 110, 112, 129, 130, 132, 133, 140, 142, 143, 148, 182, 184
監査役の監査報告の内容	129
監査役の選任に関する議案	10, 76
監査役監査報告等の通知期限	132
監査役会	109, 130, 132, 133 148, 232
監査委員会の監査報告の内容等	131
期間の初日	55の5
議決権行使書面	9, 11, 17, 63, 66, 95, 153, 155, 172, 174, 232, 234
議事録	16, 17, 72, 95, 101, 109, 110の3, 111, 143, 158, 177, 232
業績連動報酬	98条の5, 121
議事録等	2
銀行等	2, 5, 7
旧株主による責任追及等の訴え の提起の請求方法	217
協定債権	2, 153, 153, 154, 155
協定債権者	2, 153, 154, 155

業務の適正を確保するため の体制	98, 100, 110의4, 112
業務執行者	2, 74, 75
業務執行取締役	2, 121, 128
吸収分割	2, 23, 35, 87, 120, 134, 178, 183, 187, 189, 192, 195, 196, 201, 207
吸収分割承継株式会社の 事後開示事項	201
吸収分割株式会社の事 後開示事項	189
吸収合併消滅株式会社の 事前開示事項	182
吸収合併消滅会社	2, 25, 35, 86, 120, 134, 182, 183, 184, 186, 187, 191, 192, 193, 195, 196, 200, 204, 205, 207
吸収合併存続株式会社	2
吸収合併存続株式회사 의事後開示事項	200
吸収合併存続持分会社	2
吸収合併存続会社	2
金銭等	2, 35, 108, 184, 194, 195, 198, 202, 203
欠損	68
計算関係書類	2, 85, 102, 108, 126 129
計算関係書類의承認	85
計算書類	2, 103, 104, 118, 120, 181, 182, 183, 184, 188, 191, 192, 193, 199, 204, 205, 206, 208, 214, 232, 234
計算書類等	2, 103, 182, 183, 184, 191, 192, 193,

	204, 205, 206, 232, 234, 236
計算書類等の備置き	103
計算書類に関する事項	213条の8
決算報告	150
検査役	5, 43, 59, 228, 229
子会社及び親会社	3
子会社による親会社株式の取得	23
公開買付け等	2, 6, 30, 31, 32, 36, 37, 38, 43, 50, 51, 52, 149
公告	164, 181, 182, 184, 188, 199, 208, 214, 220
交付等の指定	236
交付株式	55の2, 55の3
[さ]	
債権者集会参考書類	2, 172
市場価格を	6, 30, 32, 33, 36, 37, 38, 43, 50, 51, 52, 59, 182, 184
事前開示	180, 182, 183, 184, 191, 192, 193, 204, 205, 206
残余財産	20, 23, 27, 149, 150, 151, 182
指名委員会等の議事録	111
指定買取人	2, 22, 26
招集の決定事項	9, 63, 153
承認	2, 20, 22, 24, 26, 84の2, 85, 86, 87, 88, 89, 90, 91, 92, 120, 138
社外監査役	2, 19, 74, 76, 96, 124

社外取締役	2, 19, 74, 82, 84의2, 96, 113, 122
社外取締役を置いていない 場合等の特則	74의2
社外役員	2, 74, 76, 82, 118, 123, 124
社外役員等に関する特則	124
社債	2, 32, 33, 51, 165, 168, 169, 182, 184, 195
社債管理者	162, 163, 165, 169, 170, 173, 177
社債管理補助者	165, 173, 177
社債管理補助者の資格	171条의2
社債権者集会	2, 165, 172, 173, 174, 177, 232, 234
社債権者集会参考書類	2, 172
社債原簿管理人	2
社債 原簿記載事項の記 載等の請求	168
‘社債等	2, 32, 33, 51
社債等の端数	51
社債発行会社	2, 167, 173, 177
社債を引き受ける者の募集 に際して取締役会が 定めるべき事項	110의5
出資の履行の仮装に関して責任 をとるべき発起人等	7의2
出資の履行の仮装に関して責任 をとるべき取締役等	46의2
取得第項付新株予約権	2
種類株式	19, 20, 25, 41, 54, 150

種類株式の内容	20
種類株主	19, 20, 95, 96, 121
種類株主総会	2, 19, 20, 95, 96, 121
種類株主総会における取締役又は監査役の選任	19
証券発行新株予約権	2
証券発行新株予約権付社債	2
償割当て	2
新株予約権	2, 23, 27, 32, 32, 33, 51, 56, 57, 58, 59, 114, 119, 120, 123, 134, 135, 137, 151, 180, 182, 183, 184, 186, 187, 191, 196, 204, 205, 207, 234
新株予約権に係る払込み等の 仮装に関して責任をと るべき取締役等	62の2
新株予約権の株主に対する通 知を要しない場合	55の4
新株予約権の株主に対する通 知を要しない場合に おける反対通知の新 株予約権付社債券	2, 56, 57
新株予約権原簿記載事項の 記載等の請求	56
新株予約権取得者	2
新設合併契約の承認に関 する議案	89
新設合併消滅株式会社	2
新設合併消滅会社	2

新設合併設立株式会社	2
新設合併設立会社	2
新設分割会社	2, 205, 209, 211
新設分割株式会社の事 前開示事項	205
新設分割株式会社の事 後開示事項	209
信託社債	165
事業譲渡等	2, 63, 92, 138
事業報告	2, 73, 118, 119, 120, 121, 124, 125, 126, 129, 132, 133, 182, 184
事業報告の附属明細書の内容	5目
事後開示	189, 190, 200, 201, 209, 210, 211, 212, 213
自己の株式を	2, 23, 25, 27, 30, 122, 134, 135, 137, 151, 182, 187, 196, 207
自己の株式を取得する ことができる場合	27
自己新株予約権	2, 25
執行役等の報酬	111, 111条の2, 11条の3
縦覧等の指定	234
純資産額	2, 25, 33, 33, 137
譲渡等承認請求者	2, 26
清算	2, 147, 216
清算人会設置会社	2, 20, 142
清算人会設置会社の業務の適	

正を確保するための体制	142
清算株式会社	2
清算株式会社が自己の株式を 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	151
清算株式会社の監査報告	148
清算株式会社の業務の適正を確 保するための体制	140
責任の免除の決議後に受ける 退職慰労金等	115
責任免除を受けた役員等に対 し退職慰労金等を 与える議案等	84の2
責任追及等	217
設立費用	5
設立時監査役	2, 10, 16
設立時募集株式	2, 8
設立時発行株式	2, 5, 8
設立時株主	2, 9, 10, 11, 12, 15, 17
設立時執行役	2, 16
設立時取締役	2, 10, 16, 18
設立時会計監査人	2, 10, 16
設立時会計参与	2, 10, 16
説明義務	15, 71
選任	2, 9, 11, 12, 18, 19, 20, 63, 66, 67, 74, 75, 76, 77, 93, 96, 97
全部取得第項付種類株式	2, 27, 151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得	33の2, 33の3, 63, 5目の2, 85の2, 93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の取 得に関する事後開示事項	33の3
組織変更後持分会社	2, 180
創立総会	2, 9, 10, 12, 15, 16, 17, 18, 231, 234
創立総会の議事録	16
創立総会参考書類	2, 9, 10, 17
存続株式会社等	2, 191, 192, 196
[た]	
対価	2, 30, 77, 92, 113, 114, 115, 123, 126, 178, 179, 182, 184
貸借対照表	2, 3, 25, 120, 134, 135, 137, 145, 146, 147, 148, 152, 161, 180, 181, 182, 183, 184, 185, 187, 188, 191, 192, 193, 195, 199, 204, 205, 206, 207, 208, 214, 232, 234, 236
貸借対照表等	2, 232, 236
対象株式	2, 26, 39
対象会社の事前開示事項	33の7
対象会社の事後開示事項	33の8
代表取締役	2, 113
単元未満株式売渡請求	2, 25, 37
単元株式数	2, 34, 41, 54
定義	2, 231
電子公告	2, 180, 199, 207, 220, 221, 223
電子署名	225
電子提供措置	2, 41, 63, 66, 95条の2

電子提供措置事項記載書面	63, 95条の4
電子提供措置をとる場合における	
招集通知の記載事項	95条の3
電磁的記録	16, 35, 101, 143, 158, 181, 208, 220, 221, 223
電磁的記録に記録された事項	
を表示する方法	226
電磁的方法	2, 9, 10, 11, 14, 40, 42, 53, 55, 63, 65, 70, 73, 79, 94, 133, 153, 154, 155, 157, 164, 172, 173, 174, 176, 217, 218, 222, 223, 229, 230
登記	182, 184, 220
特別目的会社	4
特別目的会社の特則	4
特別支配株主完全子法人	33の4
特定責任追及の訴えの提起	
の請求方法	218の5
登録株式質権者	2, 47
取締役	2, 10, 16, 18, 19, 20, 21, 44, 45, 46, 60, 61, 62, 63, 64, 65,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4の2, 85, 86, 87, 88, 89, 90, 91, 92, 93, 97, 98, 100, 101, 102, 105, 107, 109, 110, 111, 112, 113, 115, 118, 121, 123, 129, 132, 133
取締役会	3, 20, 21, 44, 45, 46, 62, 85, 93, 99, 101, 105, 107, 113, 118, 124, 126
取締役会の議事録	101
取締役の報酬等に関する議案	82

取締役の個人別の報酬	98条の5
取締役の解任に関する議案	78, 78の2

[な]

日本にある外国会社の財産に についての清算に関する事項	216

[は]

発起人の説明義務	15
発行可能株式総数	2, 41, 54
発行可能種類株式総数	2, 41, 54
発行済株式	1, 25, 34, 122, 219
一株当たり純資産額	2, 33
分配可能額	2, 68
補欠の会社役員の選任	96
補償契約	2, 74条の3, 75, 76, 77, 121, 125, 126
報酬等	2, 63, 76, 77, 82, 83, 84, 113, 121, 124, 126
報酬等の額の算定方法	113
保存	98, 100, 112, 140, 231, 232, 233, 238
保存の指定	232
募集株式	2, 8, 41
募集社債	2, 99, 141, 162, 165, 166募集事項の通知
等を要しない場合	40, 53

[ま]

役員等のために締結される保険契約 - 11節	
役員等賠償責任保険契約 - 2, 74条の3, 75, 76, 77, 119, 121条の2	

申込みをしようとする者に対し て通知すべき事項	54
持分会社	2, 160, 178, 179, 180, 182, 183, 185, 191, 192, 204, 205
[ゆ]	
有価証券	2, 6, 40, 43, 53, 59, 181, 182, 188, 199, 208
[や]	
役員等	2, 9, 10, 11, 12, 63, 66, 67, 113, 114, 115
[ら]	
利益の供与に関して責任をと るべき取締役等	21
臨時決算日	2, 182, 183, 191, 192, 193, 204, 205, 206
臨時計算書類	2, 182, 183, 184, 191, 193, 204, 205, 206, 232, 234
累積投票	18, 97
累積投票による設立時取締役 の選任	18
累積投票による取締役の選任	97
連結計算書類	2, 118, 120

역자 약력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경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본 대장성 금융재정연구소 실무연구원
법무부 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사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방어법제개선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심의회위원회 위원
일본 동경대학 법과대학원 특임교수
일본 동지사대학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비교회사법 총서 3 (개정판)

일본 회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日本 会社法 施行令 施行規則

저 작 권 법무부

역 자 권종호

개 정 판 2025년 1월

인 쇄 도서출판 동강

TEL. 02-503-516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61번지 에이스평촌타워 B113호

※이 책은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